

교리와 장정 (교정본)

2005-2009

·
역사

헌법

통치기구

성례
·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MANUAL/2005-2009

CHURCH OF THE NAZARENE

KOREAN EDITION

2005년 6월 26일-30일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개최된 제 26차 중앙총회의 허가를 얻어 출판함.

편집위원

DEAN G. BLEVINS

CURTIS LEWIS JR.

FRANK M. MOORE

R. DOUGLAS SAMPLES

JACK STONE

한국어 판 번역 및 감수위원

유동형

황규원

김영수

박철우

머 리 말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를 삼으라??(마 28 : 19)에 응답하는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최우선의 목적은 성경에 명백히 규정된 바대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전파하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들로 교제하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신자들을 온전히 성결하게 함으로써 성결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초대교회 안에 충만했던 영적인 능력과 삶의 단순성이 있게 하는 것이다.??(25)

나사렛성결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써 존재한다. 우리의 분명한 과업은 성경에 밝히 규정된 바대로,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교화하며, 신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성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것으로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 : 19-20, 요 20-21; 막 16 : 15 참조)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응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 목표가 믿음에 부합한 교리와 시대에 준하는 모범적 윤리관 및 생활 태도를 포함하여 일치된 정책 및 처리 과정 등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 2005-2009년 판 장정은 본 교단의 연합을 간략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신조와 교회의 개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일반 규약 그리고 조직과 처리의 원칙들을 포함하는 교회 헌법을 담고 있으며, 현 사회의 중요 사안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싣고 있다. 아울러 개교회와 연회 그리고 중앙총회의 조직을 다루고 있으며, 교회 처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록하고 있다. 중앙총회는 본 나사렛성결교회의 법과 교리 형성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본 장정은 2005년 6월 26일-30일에 걸쳐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열린 제 26차 중앙총회에 파견된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행 지침서로서의 공적 권위를 지닌다. 장정은 본 교단의 믿음의 내용과 실천 방법들에 대한 공식 성명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나사렛 교인들은 거기에 내포된 교리적 의의를 수락하고 성결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것을 서약하고 입교한 다음, 장정의 규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증거를 손상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며 나아가 전 나사렛 교인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치리는 독특한 방식을 지닌다. 정치의 형태로 볼 때, 그것은 순전히 감독집권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적으로 회중집권제도 아닌 대의정치를 표방한다. 이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교회의 심의와 법 형성 과정에 있어서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서, 양자 간에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게 교회의 일에 대한 참여와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진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특별한 헌신과 명약관화한 목적의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한 교리와 치리 과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빠르게 확장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인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정의 내용을 습득함으로써 교단의 역사와 교리 및 교의, 그리고 나사렛성결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윤리 행위에 대하여 익히 아는 일은 우리 교인들의 의무이다. 누구든지 여기에 실린 여러 가지 권고들을 적극 수용한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충성심과 봉사 정신이 더욱 신장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각자의 영적 수고의 능률 또한 극대화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을 최고의 안내자로 삼고, 본 교단의 공식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장정을 믿음과 행함, 그리고 치리 절차의 지침서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쁨 가운데 다가올 4년의 기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중앙감독회

James H. Diehl

Jesse C. Middendorf

Paul G. Cunningham

Nina G. Gunter

Jerry D. Porter

J. K. Warrick

목 차

머리말

제1부 역사

역사

제2부 교회 헌법

헌법서문

제1장 신조

제2장 교회

제3장 조직과 통치기구

제4장 수정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제1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2장 결혼과 이혼 또는 결혼 말소

제3장 인간생명의 성스러움

제4장 성생활

제5장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제6장 교회제직

제7장 회의 절차

제8장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수정

제4부 통치 기구

서문

제1장 개교회

제1절 조직, 명칭, 법인설립, 재산, 제한, 통합, 해산

제2절 회원권

제3절 전도 및 교회 회원권위원회

제4절 회원권 이동

제5절 회원권 종료

제6절 교회 회의

제7절 교회 연도

제8절 목회자 청빙

제9절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 제10절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갱신
- 제11절 제직회
- 제12절 집사
- 제13절 장로
- 제14절 주일학교부
- 제15절 나사렛국제청년회/NYI협의회
- 제16절 나사렛 탁아소/학교들
- 제17절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 제18절 재정모금 금지
- 제19절 교회 명칭 사용
- 제20절 교회 후원 단체
- 제21절 개교회 유급직원

- 제2장 연회
- 제1절 구역 및 명칭
- 제2절 회원권 및 연회시기
- 제3절 연회임무
- 제4절 연회회의록
- 제5절 연회감독
- 제6절 연회총무
- 제7절 연회재무
- 제8절 연회실행위원회
- 제9절 연회목회심의부
- 제10절 연회목회연구부
- 제11절 연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
- 제12절 연회교회재산관리부
- 제13절 연회재정위원회
- 제14절 연회 기관목회 책임자
- 제15절 연회주일학교부
- 제16절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 제17절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 제18절 연회 유급직원
- 제19절 연회 해체

- 제3장 중앙총회
- 제1절 기능과 조직
- 제2절 총회 회원권
- 제3절 총회 회기 및 장소
- 제4절 특별회의
- 제5절 중앙총회 준비위원회
- 제6절 중앙총회 업무
- 제7절 중앙감독
- 제8절 명예 및 은퇴 중앙감독
- 제9절 중앙감독회
- 제10절 중앙총무
- 제11절 중앙재무
- 제12절 중앙위원회
- 제13절 중앙교회-관계위원회
- 제14절 기독교 실천위원회
- 제15절 소명 받은 부흥사 복지위원회
- 제16절 국제 연구과정 실행위원회
- 제17절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 제18절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협의회
- 제19절 국가위원회
- 제20절 지구

- 제4장 고등 교육
- 제1절 교회와 신학교/신학대학
- 제2절 국제고등교육협의회
- 제3절 국제 교육부

제5부 사역과 및 기독교 봉사

- 제1장 사역자의 소명과 자격
- 제2장 사역자의 구분과 역할
- 제1절 평신도 사역자

- 제2절 목회 사역자
- 제3절 행정 사역자
- 제4절 기관 사역자
- 제5절 여사역목사
- 제6절 교육 사역자
- 제7절 부흥사
- 제8절 기독교 교육 사역자
- 제9절 음악 사역자
- 제10절 선교사
- 제11절 담임목회자
- 제12절 성가 부흥사
- 제13절 특별 사역

제3장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 제1절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교육
- 제2절 기독교 사역준비의 일반지침

제4장 신입장과 사역규정

- 제1절 개교회 전도인
- 제2절 인정 교육자
- 제3절 사역목사
- 제4절 장로목사
- 제5절 목사 신입인준
- 제6절 은퇴목사
- 제7절 교역자의 이적
- 제8절 일반규정
- 제9절 교역자의 사임 또는 제명
- 제10절 교역자의 회원권 및 명예 회복

제6부 사법행정

- 제1장 과실에 대한 조사 및 교회의 징계
- 제2장 과실에 대한 조치
- 제3장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에 대한 조치

- 제4장 평신도에 대한 징계
- 제5장 교역자에 대한 징계
- 제6장 절차 규약
- 제7장 연회 소청부
- 제8장 중앙 소청부
- 제9장 지구 소청부
- 제10장 권리 보장

제7부 구획

생략

제8부 성례

- 제1장 세례식
- 제1절 세례
- 제2절 유아세례
- 제3절 헌아식

- 제2장 정회원 입회식
- 제3장 성찬식
- 제4장 결혼식
- 제5장 장례식
- 제6장 임원 임명식
- 제7장 성전 봉헌식

제9부 기관규칙

- 제1장 나사렛국제청년회
- 제2장 나사렛국제선교회
- 제3장 주일학교

제10부 서류 양식

- 제1장 개교회
- 제2장 연회
- 제3장 고소장

제11부 부록

제1장 중앙총회 임원

제2장 행정위원회, 협의회, 교육기관

제3장 운영정책

제4장 현행도덕 및 사회문제

제12부 한국총회 특별내규

총회운영규정

장로직 내규

제1부

역사

역사

역사적 기독교와 웨슬리주의 성결의 유업

하나의 거룩한 신앙: 나사렛성결교회는 “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의 일원임을 자인해 오면서, 그 교회에 충성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 교단은 신구약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곧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역사가 사도 시대에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믿는다. '나사렛 성결교인'이라 함은 모든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받은 이 땅 위의 유일한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런 뜻에서, 나사렛성결교회는 그리스도교 역사 초기 5세기 동안의 일련의 초교파적 기독교 신조들을 적절한 신앙의 표현들로 받아들인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완전성결의 교리와 체험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특별한 소명에 응해 온 반면에,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동시적 강조를 통해 사도적인 사역을 육성하고 지속시키며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사도적 교회와의 일치로 도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왔다.

웨슬리의 부흥운동 : 이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여러 가지 종교적 흐름 가운데

특히 18세기의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사렛 교인들에게 전해져 왔다. 173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내에서 넓은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주로 영국 교회의 성직자였던 요한 웨슬리와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헛필드의 지도하에 생겨났다. 그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부흥 운동의 특징으로서, 평신도들의 복음 전파, 간증, 훈육, 그리고 열심 있는 제자들의 각종 모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societies', 'classes', 'bands' 등이 있었다. 영적 부흥 운동의 효시들로는 독일 경건주의와 그 창시자라고 할 만한 야곱 스페너(Jacob Spener),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요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를 중심한 뉴잉글랜드 지방의 각성운동을 들 수 있다.

웨슬리의 위대한 부흥 운동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거듭나는 거듭남, 역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성결, 그리고 은혜의 확증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요한 웨슬리의 고유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서 이 땅 위에서 완전성결에 대한 강조점을 들 수 있는데, 웨슬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로운 계획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러한 웨슬리의 신학적 강조점들이 영국 감리 교회의 초기 선교 활동에 의해 세계 전역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북미대륙에는 ??대륙을 개혁하고 대륙 온 땅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띠고 1784년 감리교 회중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19세기의 성결 운동 :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고조되어 미국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감리교 성직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지침서?(Guide to Christian Perfection)의 최초 편집자인 디모데 메리트(Timothy Merritt)가 성결 운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은 뉴욕의 피비 파머(Phoebe Palmer)로서, 그녀는 성결 운동의 촉진을 위한 화요일 기도 모임의 인도자였다. 그런데 감리교 감독들과 교육가들, 그리고 다른 많은 교역자들이 성결의 체험을 갈망하며 최초의 여성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였다. 파머 여사는 무려 40여 년간이나 대중 집회의 연사로서, 그리고 각종 저서의 저술가로 활동하였다. 특별히 “성결의 지침서” (Guide to Holiness)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책의 편집인 역할을 맡아 성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갔다.

성결 운동은 감리교의 테두리 밖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와 아사 마한(Asa Mahan)은 둘 다 오벌린(Oberlin) 대학 출신으로서, 당시 부흥 강사였던 윌리엄 보드맨(William Boardman)처럼 장로교와 회중교단 내에서 새롭게 성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침례교 부흥 강사인 얼(A. B. Earle)은 자신이 속한 교단 내에서 성결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었다. 한나 위톨 스미스(Hannah Whitall Smith)는 케이크 교도이면서 또한 인기 있는 성결 운동 부흥사로서 1875년에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오늘날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전이 되었다.

1867년에 감리교회의 목사인 존 우드(John A. Wood)와 존 인스킵(John Inskip) 그리고 그 외 몇몇 사람들이 뉴저지 주의 바인랜드(Vineland)에서 처음으로 연속 전국 캠프 집회 연합체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국 성결 연합회(현재는 그리스도인 성결 연합회)로 알려져 왔다. 20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이 연합회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성결 운동 집회들을 후원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및 지방 단위의 성결 연합회들이 출현하였고, 성결 교단의 주요 출판사들이 각종 간행물과 서적들을 앞 다투어 출판하였다. 성결 운동을 주창한 사람들의 주장은 웨슬리 감리교회(1843)와 자유 감리교회(1860), 그리고 영국의 구세군(1865) 등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80년대에는 독특한 신생 성결 교단들이 출현하였는데 인디애나의 앤더슨(Anderson) 파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결교(Holiness) 파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이다. 그 외 기존의 오래 된 전통 교단들도 성결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완전성결에 관한 웨슬리의 성결론을 채택한 메노파(Mennonites)와, 형제 교회(Brethren), 그리고 동료애를 표방하는 프렌드교회(Friends) 등이 그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파(Brethren)와 복음주의 프렌드 동맹(Evangelical Friends Alliance)은 이른바 영적 전통의 혁신을 가져온 본보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결 그룹의 연합

1890년대에는 새로운 종류의 독립 성결 단체들이 일어났는데 독립 교회들과

도시선교 단체, 가정 구호단(rescue homes), 그리고 각종 선교 및 전도 협의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전국 규모의 성결교회로 연합하기를 소원하였으며, 이 일이 동기가 되어 현재의 나사렛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The Association of Pentecostal Churches of America) : 1897년 7월 21일 회원 51명에 힐러리(F. A. Hillery) 목사를 목회자로 하는 민중 복음 교회(People's Evangelical Church)가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에서 조직되었다. 그 이듬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린(Lynn)에서 데이비스(C. Howard Davis) 목사를 목회자로 하여 선교 교회(Mission Church)가 조직되었다. 1890년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이 교회들의 대표들과 다른 독립 성결 단체들의 대표들이 매사추세츠 주의 록(Rock)에 모여 로드아일랜드와 뉴햄프셔(New Hampshire),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복음주의 중앙 성결 연합회(Central Evangelical Holiness Association)를 조직하였다.

1892년 복음주의 성결 연합회는 안나 S. 헨스콤(Anna S. Hanscombe)을 안수하였는데, 그는 나사렛 교단의 모체 연합회에서 그리스도교 사역자로 안수 받은 최초의 여자 목사였다. 1894년 1월에는 사업가 후플(W. H. Hoople)이 브룩클린 전도단(Brooklyn mission)을 설립하였는데, 그 이듬해 5월에 유틀카 애비뉴 오순절 성막 교회(Utica Avenue Pentecostal Tabernacle)로 재조직되었다. 또한 그 이듬해 연말에는 벅포드 애비뉴 오순절 교회(Bedford Avenue Pentecostal Church)와 임마누엘 오순절 성막 교회가 조직되었다. 1895년 12월에는 이들 세 교회의 대표들이 교회 헌법을 채택하고 교회의 교리와 부칙 등을 채택하여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를 형성하였다.

1896년 11월 12일에 뉴욕 브룩클린 시에서 복음주의 중앙 성결 연합회(the Central Evangelical Holiness Association)와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의 합동 위원회가 소집되어 통합 계획을 모색하였고 그 통합 단체명은 그대로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라 하기로 합의했다. 이 연합회의 주요 인사들로는 레이놀즈(Hiram F. Reynolds), 호슬레(H. B. Hosley), 데이비스(C. Howard Davis), 후플(William Howard Hoople), 그리고 나중에 참여한 엔겔(E. E. Angell) 등이 있다. 이들 중 몇 사람은 원래 평신도 설교자들이었으나 후에 교회의 요청에 따라 목사로 안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연합회의 결정적인 임무는 선교하는 일이었으며, 선교 총무였던 레이놀즈(Hiram F. Reynolds)의 지도하에 케이프

버데 아일랜드(Cape Verde Islands)와 인도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선교에 진력하였다. 그리고 ??볼라 크리스찬??(The Beulah Christian)이라는 책자를 협회의 공식 간행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의 성결교회(The Holiness Church of Christ) : 1894년 7월에 테네시(Tennessee) 주의 밀란(Milan)이라는 곳에서 해리스(R. L. Harris) 목사가 임종 직전에 신약 그리스도의 교회(New Testament Church of Christ)를 조직하였다. 그 후 해리스(R. L. Harris) 목사의 미망인이었던 케이글(Mary Lee Cagle) 여사가 남편의 일을 계속 하였으며 동 교단의 초창기의 주요 지도자가 되었다. 엄격히 말해서 이 교회는 정치 형태로는 회중 교회로써 아칸소(Arkansas) 주와 텍사스(Texas) 주 서부 지역에 두루 퍼져있었고, 교인들은 주로 앨라배마(Alabama) 주와 미주리(Missouri) 주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케이글(Mary Cagle) 여사와 그녀의 동역자 쉿스(E. J. Sheeks) 여사는 1899년에 최초의 안수 후보자들 가운데 섞여 안수를 받았다.

1888년에 들어서면서 텍사스에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에서 온 토머스 로저스(Thomas Rogers) 목사와 데니스 로저스(Dennis Rogers) 목사에 의하여 성결교회(The Holiness Church) 라는 이름을 가진 소수 회중의 교회들이 조직되었다.

1901년 저니간(Charles B. Jernigan) 목사에 의하여 텍사스 주 반알스타인(Van Alstyne)에 최초의 독립 성결교회(Independent Holiness Church)가 조직되었으며, 창립 초기부터 채프먼(James B. Chapman) 목사가 이 교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교단은 빠른 속도로 부흥 발전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데니스 로저스 목사가 이끈 교회들이 독립 성결교회에 가입하였다. 이윽고 1904년 11월에는 그리스도 신약 교회와 독립 성결교회의 대표들이 텍사스 주의 라이싱 스타(Rising Star)에 모여 통합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장정을 제정하였고, 또한 그리스도 성결교회(Holiness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 명칭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통합은 그 이듬해 텍사스 주의 파일럿 포인트(Pilot Point)에서 열린 중앙 대표 협의회에서 완성을 보았다. 아울러 공식 간행물 ??성결의 복음??(The Holiness Evangel)을 교단의 기관지로 발간하였다. 그 외 교단 내의 대표 교역자들로는 피셔(William E. Fisher), 스캇(J. D. Scott), 업처치(J. T. Upchurch)를 들 수 있으며, 핵심적인 평신도 지도자들로는 쉿스(Edwin H. Sheeks), 밋참(R. B. Mitchum), 다니 밋참(Donie Mitchum)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의 교단 내의 여러 지도자들은 텍사스 성결

연합회(the Holiness Association of Texas)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텍사스 주 그린빌(Greenville)에 인접한 브니엘(Peniell)의 한 대학을 후원하기 위한 초교파 단체였다. 그 연합회는 또한 남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성결 운동 홍보지인 '오순절 대변자'(Pentecostal Advocate)를 후원하였는데, 그것은 1910년에 나사렛 교단의 기관지가 되었다. 그 연합회의 주요 인물들로는 디저넷(E. C. DeJernett) 목사와 평신도였던 맥코넬(C. A. McConnell) 씨를 들 수 있다.

나사렛성결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 : 1895년 10월에 브리지(Phineas F. Bresee) 목사와 의사였던 위드니(Joseph P. Widney) 씨가 각각 자신들의 가족과 볼드윈(Alice P. Baldwin), 개이(Leslie F. Gay), 노트 부처(W. S. and Lucy P. Knott), 맥키(C. E. McKee) 씨 등을 포함하여 약 100명으로 구성된 나사렛성결교회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조직하였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완전성결의 실재를 전파하는 최초의 교단임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성결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스스로 특별히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예배 처소에 대한 불필요한 단장이나 장식물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대변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속적인 생각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못 영혼들의 구원과 궁핍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 같은 취지하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일반 규약과 신조, 제한적 감독권에 기초한 치리, 집사 임명 절차 및 목사안수 과정 그리고 예식 절차 등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1898년부터 교회 장정으로 출판하였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The Nazarene)이라는 간행지를 발간하였고 후에 '나사렛 사절'(The Nazarene Messenger)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주로 서부 해안을 끼고 퍼져 나갔는데 로키 산맥의 동부로부터 일리노이(Illinois) 주에 이르기까지 각 곳에 교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새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 목사들 가운데는 브라운(H. D. Brown), 셰퍼드(W. E. Shepard), 루쓰(C. W. Ruth), 켄트(L. B. Kent), 라이드(Isaiah Reid), 크레이턴(J. B. Creighton), 코넬(C. E. Cornell), 피어스(Robert Pierce), 그리고 윌슨(W. C. Wilson) 등이 있다. 그리고 새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 받은 이들로는 위드니(Joseph P. Widney), 웰레이스 부처(Elsie and DeLance Wallace),

놏트(Lucy P. Knott) 그리고 걸빈(E. A. Girvin) 등이다.

브리지(Phineas F. Bresee) 목사는 38년간의 다양한 목회경력, 즉 목회자, 감독, 편집자, 대학이사 그리고 감리교 캠프 집회의 설교자로서의 경험과 사람을 끄는 그의 독특한 인품 때문에 여러 성결 교단들을 국가적 규모의 단체로 통합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통합년도 : 1907 -1908. 나사렛성결교회의 부 중앙감독으로서 웨슬리안 계통의 성결 운동 단체 내에서 두터운 교분을 쌓아온 루쓰(C. W. Ruth) 목사에 의하여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The Association of Pentecostal Churches of America)와 나사렛성결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 그리고 그리스도 성결교회(the Holiness Church of Christ)가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와 나사렛성결교회 대표들이 1907년 10월 10일-17일까지 시카고에서 중앙총회를 가졌는데, 두 그룹의 대표들은 감독의 권한과 개교회의 독립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교회의 치리 형태에 합의를 보았다. 감독들은 기존 교회를 육성하고 보살피며 새로운 교회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권한은 결코 자립 교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중앙총회는 양 단체의 이름을 따서 통합 교단의 명칭을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The Pentecostal Church of the Nazarene)라고 하였다. 초대 중앙감독으로는 브리지(Phineas F. Bresee) 목사와 레이놀즈(Hiram F. Reynolds) 목사가 피선되었으며, 그리스도 성결교회의 대의원들이 참관자로 참석하여 총회의 업무에 시종 참여하였다.

이듬해에는 또 다른 두 건의 교단 가입이 있었다. 1908년 4월에는 브리지(P. F. Bresee) 목사가 텍사스 주의 브니엘(Peniell)에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를 조직하여 텍사스 성결 연합회의 주요 인물들을 그리로 인도함으로써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9월에는 그리스도인 성결교회(the Holiness Christian Church)의 펜실베이니아 연회가 해당 교단의 중앙총회의 승인 하에 스스로를 해체하고 트럼보(H. G. Trumbaur) 목사의 인도 하에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의 제2차 중앙총회는 텍사스 주 파일럿 포인트(Pilot Point, Tex)에서 1908년 10월 8일 -14일까지 그리스도 성결교회의 중앙협의회와 연합 회의로 모였다. 양자 간의 오랜 통합 준비 기간이 ??두 교회의 통합을 이제 완성하기로 하자??는 밋참(R. B. Mitchum)의 동의안에 대해 루쓰(C. W. Ruth)가 제청함으로써 10월 13일 화요일 오전에 종결되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의안에 찬성하였다. 브리지(Phineas Bresee) 목사는 이

동지안의 가결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오전 10시 40분경에 열의에 찬 분위기 하에 만장일치의 거수투표로 채택되었다.

교단 이름 변경 : 1919년 중앙총회는 35개 지방 총회의 청원에 따라 교단의 이름을 '나사렛성결교회' (the Church of the Nazarene)라고 공식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순절'(Pentecostal)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들 때문이었다.

추가 가입

1908년 이후 여러 다른 단체들이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게 되었다.

오순절 선교회(The Pentecostal Mission) : 1898년 컴벌랜드(Cumberland) 장로교의 부흥사인 맥클러칸(J. O. McClurkan)이 테네시 주와 인접한 주에서 온 성결교인들을 한데 묶어 '오순절 동맹' (Pentecostal Alliance)이라는 연합체를 내쉬빌(Nashville)에서 조직하였다. 이 연합체는 선교정신에 불타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쿠바(Cuba), 과테말라(Guatemala), 멕시코(Mexico), 인도(India) 등지에 파송하였다. 맥클러칸(McClurkan)은 1914년에 별세하였는데 그 이듬해에 후에 오순절 선교회로 명명된 그의 그룹이 오순절 나사렛 교회와의 통합을 이루었다.

스코틀랜드 오순절 교회(Pentecostal Church of Scotland) : 1906년 글라스고(Glasgow) 시에 있는 파크헤드 회중 교회(Parkhead Congregational Church)의 샤프(George Sharpe) 목사는 웨슬리의 성결 교리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목회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떠난 80명의 교인들이 즉시 파크헤드 오순절 교회(Parkhead Pentecostal Church)를 세웠으며, 이와 함께 다른 교회들도 조직되어, 그들이 1909년 스코틀랜드 오순절 교회를 세웠다. 이 교단 역시 1915년 11월에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와 통합을 이루었다.

평신도 성결 연합회(The Laymen's Holiness Association) : 평신도 성결 연합회는 1917년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주의 제임스타운(Jamestown)에서 댄포드(S. A. Danford)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는 다코타(Dakotas) 와 미네소타(Minnesota) 및 몬타나(Montana) 주 지역에서 웨슬리안 성결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함이었다. 이 그룹은 '성결의 평신도'(The Holiness Layman)라는 간행지를 발간하였다. 모리슨(J. G. Morrison)목사는 1919년에 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다른 25명 이상의 부흥사 및 사역자들과

함께 연합회를 이끌어갔다. 1922년 모리슨 박사를 위시로 한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무려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함께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헵시바 신앙 선교 연합회(Hephzibah Faith Missionary Association) : 아이오와(Iowa) 주 타볼(Tabor)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 연합회는 1893년 위버스(Elder George Weavers)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그 후 6개국 이상에 80명이 넘는 사역자들을 파송하였다. 1950년에 이르러 이 연합회의 타볼(Tabor)지역 회중들과 남아프리카 선교회 및 다른 지역의 회중들이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국제 성결 선교회 (International Holiness Mission) : 1907년 영국 런던에서 사업가이며 평신도 설교자였던 토마스(David Thomas)가 성결 선교회(Holiness Mission)를 창설하였다. 존스(David Jones)의 지도하에 남부아프리카 지역(Southern Africa)에서 선교 사업이 개발, 확장되어 1917년에는 국제 성결 선교회로 명명되었다. 이 선교회는 맥클래간(J. B. MacLagan) 감독의 산하에 있던 영국 내의 28개 교회와 1,000명 이상의 신자 및 36명의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던 아프리카 선교 사업과 함께 1952년 10월 29일에 나사렛교회와 통합하였다.

갈보리 성결 교회(Calvary Holiness Church) : 1934년 국제 성결 선교회에서 순회전도 (전도여행)를 해온 제임스(Maynard James) 목사와 포드(Jack Ford) 목사가 갈보리 성결 교회를 세웠다. 1955년 6월 11일에 나사렛 교회와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약 22개의 교회와 6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나사렛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 성결 선교회(IHM)와 갈보리 성결교회(CHC)가 가입하게 된 것은 당시 나사렛 교회의 연회 감독이었던 프레임(George Frame) 목사의 이상과 공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캐나다 복음 사역자 교회(Gospel Workers Church of Canada) : 1918년 온타리오(Ontario)의 고프(Frank Goff)에 의해 조직된 이 교회는 초창기에 '성결의 사역자들'(Holiness Workers)이라고 불리던 그룹에서 유래하였다. 그 교회는 1958년 9월 7일에 나사렛성결교회와 통합을 이루었는데 이로써 5개의 교회와 약 200명의 회원이 캐나다 중부 연회에 추가 가입되었다.

나이지리아 나사렛성결교회(Church of the Nazarene - Nigeria) : 1940년대에 나이지리아에 웨슬리안 성결 교단(Wesleyan-Holiness Church)의 한 교회가 토착민의 지도하에 조직되었다. 그 교회는 국제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에

언급된 교리와 명칭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나사렛성결교회라는 이름을 채택하였다. 에카이데(Jeremiah U. Ekaidem)의 지도하에 1988년 4월 3일에 나사렛성결교회와 정식으로 연합하였다. 이로써 39개의 교회와 6,500명의 회원을 가진 새 연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화 교회로 지향

나사렛성결교회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시작되었다. 1908년 연합총회를 발단으로 나사렛성결교인들은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멕시코, 케이프 버데 아일랜드,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19세기 선교 운동의 산증인으로써 현재의 나사렛 성결 교단을 형성한 각종 기독교 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세계 각 곳으로의 확장은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에 의하여 1898년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 오순절 선교회는 1900년에 중앙아메리카, 1902년 캐리비안, 그리고 1909년에 남아메리카에서 활약하였다. 아프리카에서 1907년에 활동했던 나사렛 교인들은 후에 교단 선교사로 인정받게 되었다. 1945년에는 호주 및 남태평양(Australia-South Pacific)으로, 그리고 1948년에는 유럽 대륙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나사렛성결교회는 이미 웨슬리안 성결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던 개교회의 목회자들인 호주의 버그(A. A. E. Berg) 목사나 이탈리아의 로소(Alfredo del Rosso) 목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선교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교단의 활동을 이처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나사렛성결교회는 역사적으로 피선교국 내의 사역자들의 힘에 의존해 왔다. 그들은 개교회에서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선교사역에 협력하였다. 1918년에 인도의 한 선교사는 3명의 자국민 설교자와 4명의 교사, 그리고 3명의 권서인과 5명의 성경 교사들을 보조 사역자로 두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1936년까지의 나사렛 교단 내의 자국민 사역자와 선교사의 비율은 거의 5대 1 이상이었다.

2005년 현재 나사렛성결교회의 선교지역은 모두 150개국에 달한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국의 문화적 토양에 걸맞은 방법으로 나사렛성결교회를 토착화함으로써 각국의 정체성을 서로 연결시키는 모자이크 판을 만들어 국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제적인 사역의 독특성 : 오래 전부터 나사렛 교단의 국제적인 활동에는 전도 사역과 구제 사역, 그리고 교육 활동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적극적인 전도 사역의 실례로는 슈멜젠바흐(H. F. Schmelzenbach)와 트레이시(L. S. Tracy), 와이난스(Esther Carson Winans), 그리고 크리코리안(Krikorian)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전도 사역의 상징처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역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와 산하 연합회는 계속하여 복음 전파와 그로 말미암은 부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나사렛 구제 사역은 일찍이 인도의 기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또한 고아를 돌보는 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활동은 1920년대 초기에 중국 타밍푸(Tamingfu)에 브리지 기념 병원(Bresee Memorial Hospital)을 세우기 위해 조직된 나사렛 의료 선교 협회(Medical Missionary Union)에 의해 보강되었다. 교단내의 의료 사업은 주로 스와질란드(Swaziland)에서 개발, 확장되었고 각각 다른 형태의 구제사역들이 세계 전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교육이야말로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적인 사역의 일면을 제공한다. 일찍이 1905년에 캘커타(Calcutta)에서 수코다 바나지(Sukhoda Banarji)에 의해 창설되고 그 다음해 나사렛성결교회가 인수한 '소녀들을 위한 희망보육원'(Hope School for Girls)이 그 실례이다.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외 지역의 나사렛 교인들은 기본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목회 사역을 위한 훈련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코스타리카와 필리핀과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 외에, 미국과 한국과 캐나다와 아프리카에는 여러 개의 일반대학이 있으며, 일본에는 단과 대학이, 아프리카에는 한 개의 교육대학이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와 인도와 아프리카에는 각각 간호학교가 있으며, 그 외 전 세계적으로 37개의 신학교 및 신학대학들이 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이처럼 선교 사역의 구성 요소들이 활발히 발전해감에 따라 눈부신 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2005년 현재 나사렛성결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13, 600여 교회에 속한 정회원 1, 496, 296명 규모의 단일 교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오늘의 교단은 단지 믿음 안에서 ??국제적인 참여??를 추구하는 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 실제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1976년 중앙총회에서는 국제화 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ization)를 두기로 결의하였으며, 아울러 동 위원회는 1980년 중앙총회의 보고를 통해 세계를

지구 단위로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각 지구의 경계 및 그 수는 이후로 자주 변경되어 왔는데, 현재는 아프리카 지구, 아시아-태평양 지구, 캐나다 지구, 캐리비안 지구, 유라시아 지구,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구, 남아메리카 지구, 그리고 미국 내의 8개 지구들이 있다.

제 2 부

교 회 헌 법

헌법서문

제1장 신조

제2장 교회

제3장 조직과 통치기구

제4장 수정

헌법서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과 특히 은혜의 두 번째 역사인 완전 성결 교리와 체험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의 타 교파와 효과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우리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이미 확정된 헌법 제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기본법 또는 헌법으로서 신조와 그리스도인의 일반 규약, 그리고 조직 및 통치기구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채택하여 공포한다.

제 1 장 신 조

제1절 삼위일체의 하나님

1. 우리는 한 분의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홀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목적하심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통치적이며 거룩하심을 믿는다. 그는 본질상 삼위일체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창 1; 레 19 : 2; 신 6 : 4-5; 사 5 : 16; 6 : 1-7; 40 : 18-31; 마 3 : 16-17; 28 : 19-20; 요 14 : 6-27; 고전 8 : 6; 고후 13 : 14; 갈 4 : 4-6; 엡 2 : 13-18)주1)

제2절 예수 그리스도

2.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이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부와 더불어 영원히 계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두 완전한 본성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지요, 참 인간으로서 신인(神人)이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진정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인간의 완전한 본성을 갖추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다.

(마 1 : 20-25; 16 : 15-16; 눅 1 : 26-35; 요 1 : 1-18; 행 2 : 22-36; 롬 8 : 3, 32-34; 갈 4 : 4-5; 빌 2 : 5-11; 골 1 : 12-22; 딤펢전 6 : 14-16; 히 1 : 1-5; 7 : 22-28; 9 : 24-28; 요일 1 : 1-3; 4 : 2-3, 15)

제3절 성령

3.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격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며 능률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며, 신자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요 7 : 39; 14 : 15-18, 26; 16 : 7-15; 행 2 : 33; 15 : 8-9; 롬 8 : 1-27 갈 3 : 1-14; 4 : 6; 엡 3 : 14-21; 살전 4 : 7-8; 살후 2 : 13; 벰전 1 : 2; 요일 3 : 24; 4 : 13)

제4절 성경

4. 우리는 성경의 완전영감을 믿는다. 이로써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일체 오류 없이 계시해 주시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신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다.(눅 24 : 44-47; 요 10 : 35; 고전 15 : 3-4; 딤펢후 3 : 15-17; 벰전 1 : 10-12; 벰후 1 : 20-21)

제5절 원죄와 자범죄

5. 우리는 죄가 인류 시조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가 사망을

초래함을 믿는다. 죄는 두 종류 즉 원죄 또는 타락성과 자범죄 또는 개인죄가 있음을 믿는다.

5.1. 우리는 원죄 혹은 타락성이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그리고 처음 조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순결한 상태에서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혐오하고 영적 생명을 상실하여 악에 치우칠 뿐 아니라 계속하여 악을 범하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성령의 세례에 의하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길 때까지 중생을 얻은 자의 새 생명 속에도 원죄가 계속 남아있음을 믿는다.

5.2. 우리는 원죄가 실제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유전된 경향성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대책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자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

5.3. 우리는 자범죄 또는 개인죄란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알려진 법을 자의로 위법한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범죄는 본의 아닌 불가피한 결핍, 허약성, 과오, 실수, 실패, 또는 시조 타락의 결과로 인해 완전한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타 행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에 거역하는 자세나 태도를 무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이다. 자범죄란 근본적으로 사랑의 법에 대한 위법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죄

(창 3 : 6 : 5; 욥 15 : 14; 시 51 : 5; 렘 17 : 9-10; 막 7 : 21-23; 롬 1 : 18-25; 5 : 12-14; 7 : 1-8 : 9; 고전 3 : 1-4; 갈 5 : 16-25; 요일 1 : 7-8)

자범죄

(마 22 : 36-40(요일 3 : 4 포함); 요 8 : 34-36; 16 : 8-9; 롬 3 : 23; 6 : 15-23; 8 : 18-24; 14 : 23; 요일 1 : 9-2 : 4; 3 : 7-10)

제6절 속죄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것과, 이 속죄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모든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믿는다. 이 속죄는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와 죄와 분별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은혜에 의해 유효하나 책임 연령에 도달한 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에만 유효함을 믿는다.

(사 53 : 5-6, 11; 막 10 : 45; 눅 24 : 46-48; 요 1 : 29; 3 : 14-17; 행 4 : 10-12; 롬 3 : 21-26; 4 : 17-25; 5 : 6-21; 고전 6 : 20; 고후 5 : 14-21; 갈 1 : 3-4; 3 : 13-14; 골 1 : 19-23; 딤후 2 : 3-6; 딤후 2 : 11-14; 히 2 : 9; 9 : 11-14; 13 : 12; 벰전 1 : 18-21; 2 : 19-25; 요일 2 : 1-2)

제7절 선행은총

7.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그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을 믿는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었으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공로로 돌이켜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믿고 호소할 수 없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죄로부터 떠나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선행을 따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이나 완전성결의 체험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신앙을 저버릴 수 있으며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 없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 및 도덕적 책임

(창 1 : 26-27; 2 : 16-17; 신 28 : 1-2; 30 : 19; 수 24 : 15; 시 8 : 3-5; 사 1 : 8-10; 렘 31 : 29-30; 겔 18 : 1-4; 미 6 : 8; 롬 1 : 19-20; 2 : 1-16; 14 : 7-12; 갈 6 : 7-8)

본연의 무능력

(욘 14 : 4; 15 : 14; 시 14 : 1-4; 51 : 5; 요 3 : 6a; 롬 3 : 10-12; 5 : 12-14, 20a; 7 : 14-25)

무상은총 및 믿음의 역사

(겔 18 : 25-26; 요 1 : 12-13; 3 : 6b; Acts 5 : 31; 롬 5 : 6-8, 18; 6 : 15-16, 23; 10 : 6-8; 11 : 22; 고전 2 : 9-14; 10 : 1-12 고후 5 : 18-19; 갈 5 : 6; 엡 2 : 8-10; 빌 2 : 12-13; 골 1 : 21-23; 딤후 4 : 10a; 딤후 2 : 11-14; 히 2 : 1-3; 3 : 12-15; 6 : 4-6; 10 : 26-31; 약 2 : 18-22; 벰후 1 : 10-11; 2 : 20-22)

제8절 회개

8. 회개란 죄에 관해서 진심으로 철저한 마음의 변화로서, 개인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의 자발적인 전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위나 고의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회개하도록 요구됨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도와 마음 속 깊이 참회하게 하고 자비의 은총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용서와 영적 생명을 믿을 수 있게 한다.

(대하 7 : 14; 시 32 : 5-6; 51 : 1-17; 사 55 : 6-7; 렘 3 : 12-14; 겔 18 : 30-32; 33 : 14-16; 막 1 : 14-15; 눅 3 : 1-14; 13 : 1-5; 18 : 9-14; 행 2 : 38; 3 : 19; 5 : 31; 17 : 30-31; 26 : 16-18; 롬 2 : 4; 고후 7 : 8-11; 살전 1 : 9; 벧후 3 : 9)

제9절 칭의, 중생, 양자

9.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의 사법적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범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를 의롭다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10. 중생 혹은 신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회개한 신자의 도덕적 본성이 영적으로 소생하여 뚜렷한 영적인 생명을 얻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1.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의롭게 되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12. 칭의, 중생, 양자 됨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체험에 있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회개 후 믿음에 의해서만 일어나며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 하심을 믿는다.(눅 18 : 14; 요 1 : 12-13; 3 : 3-8; 5 : 24; 행 13 : 39; 롬 1 : 17; 3 : 21-26, 28; 4 : 5-9, 17-25; 5 : 1, 16-19; 6 : 4; 7 : 6; 8 : 1, 15-17; 고전 1 : 30; 6 : 11; 고후 5 : 17-21; 갈 2 : 16-21; 3 : 1-14, 26; 4 : 4-7; 엡 1 : 6-7; 2 : 1, 4-5; 빌 3 : 3-9; 골 2 : 13; 딤후 3 : 4-7; 벧전 1 : 23; 요일 1 : 9; 3 : 1-2, 9; 4 : 7; 5 : 1, 9-13, 18)

제10절 완전성결

13. 완전성결이란 중생한 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원죄 또는 타락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랑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완전성결이란 성령 세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죄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체험을 하게 되며 믿는 자에게 그의 생활과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완전성결은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며 완전한 헌신이 있을 후 믿음에 의해 순간적으로 얻어진다.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마음의 정결??. ??성령의 세례??. ??축복의 충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같은 여러 용어로 불리며 각각 다른 면을 나타낸다.

14.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에는 뚜렷한 분별이 있음을 믿는다. 전자는 완전성결의 결과로써 순간적으로 얻어지며, 후자는 은혜 속의 성장의 결과이다. 우리는 완전성결의 은혜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는 충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이 충동은 의식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인격이나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및 개선의 필수 조건과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의도적 노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손상되고 은혜 자체가 좌절되어 마침내 잃어버려진다.(렘 31 : 31-34; 겔 36 : 25-27; 말 3 : 2-3; 마 3 : 11-12; 눅 3 : 16-17; 요 7 : 37-39; 14 : 15-23; 17 : 6-20; 행 1 : 5; 2 : 1-4; 15 : 8-9; 롬 6 : 11-13, 19; 8 : 1-4, 8-14; 12 : 1-2; 고후 6 : 14-7 : 1; 갈 2 : 20; 5 : 16-25; 엡 3 : 14-21; 5 : 17-18, 25-27; 빌 3 : 10-15; 골 3 : 1-17; 살전 5 : 23-24; 히 4 : 9-11; 10 : 10-17; 12 : 1-2; 13 : 12; 요일 1 : 7, 9)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신 30 : 6; 마 5 : 43-48; 22 : 37-40; 롬 12 : 9-21; 13 : 8-10; 고전 13; 빌 3 : 10-15; 히 6 : 1; 요일 4 : 17-18)

마음의 정결

(마 5 : 8; 행 15 : 8-9; 벧전 1 : 22; 요일 3 : 3)

성령의 세례

(렘 31 : 31-34; 겔 36 : 25-27; 말 3 : 2-3; 마 3 : 11-12; 눅 3 : 16-17; 행 1 : 5; 2 : 1-4; 15 : 8-9)

축복의 충만

(롬 15 : 29)

그리스도인의 거룩

(마 5 : 1-7 : 29; 요 15 : 1-11; 롬 12 : 1-15 : 3; 고후 7 : 1; 엡 4 : 17-5 : 20; 빌 1 : 9-11; 3 : 12-15; 골 2 : 20-3 : 17; 살전 3 : 13; 4 : 7-8; 5 : 23; 딤후 2 : 19-22; 히 10 : 19-25; 12 : 14; 13 : 20-21; 벧전 1 : 15-16; 벧후 1 : 1-11; 3 : 18; 유 20-21)

제11절 교회

1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교제, 말씀 전파와 성례전 집행 및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상호 책임 이행을 통하여 그 생활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거룩한 삶, 복음 전도, 제자 육성, 그리고 봉사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교회는 역사적 실체로서 문화적 조건에 맞추어 조직되고 개교회와 우주적 공동체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소명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특별 사역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의 통치 하에 생활하도록 부르신다.(출 19 : 3; 렘 31 : 33; 마 8 : 11; 10 : 7; 16 : 13-19, 24; 18 : 15-20; 28 : 19-20; 요 17 : 14-26; 20 : 21-23; 행 1 : 7-8; 2 : 32-47; 6 : 1-2; 13 : 1; 14 : 23; 롬 2 : 28-29; 4 : 16; 10 : 9-15; 11 : 13-32; 12 : 1-8; 15 : 1-3; 고전 3 : 5-9; 7 : 17; 11 : 1, 17-33; 12 : 3, 12-31; 14 : 26-40; 고후 5 : 11-6 : 1; 갈 5 : 6, 13-14; 6 : 1-5, 15; 엡 4 : 1-17; 5 : 25-27; 빌 2 : 1-16; 살전 4 : 1-12; 딤후 4 : 13; 히 10 : 19-25; 벧전 1 : 1-2, 13; 2 : 4-12, 21; 4 : 1-2, 10-11; 요일 4 : 17; 유 24; 계 5 : 9-10)

제12절 세례

16.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한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표시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과 거룩과 공의 안에서 순종할 전적 의사를 진술하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세례는 새 언약의 상징이므로 필요한 기독교적 훈련을 아이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의 언약이 있을 때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세례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점수례(點水禮), 주수례(注水禮), 침수례(浸水禮) 등으로 베풀 수 있다.

(마 3 : 1-7; 28 : 16-20; 행 2 : 37-41; 8 : 35-39; 10 : 44-48; 16 : 29-34; 19 : 1-6; 롬 6 : 3-4; 갈 3 : 26-28; 골 2 : 12; 벧전 3 : 18-22)

제13절 성찬식

17.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기념과 교제를 위한 성찬

예식이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적인 성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 구원 및 모든 영적 축복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을 공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성찬 예식은 그 의미를 경건하게 감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며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 된다. 또한 교제의 의식이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이다.(출 12 : 1-14; 마 26 : 26-29; 막 14 : 22-25; 눅 22 : 17-20; 요 6 : 28-58; 고전 10 : 14-21; 11 : 23-32)

제14절 신유

18. 우리는 성서적 진리인 신유의 역사를 믿으며 따라서 신자들로 하여금 기회 있는 대로 병자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도구로 삼아 병자들을 낫게 하심을 믿는다.(왕하 5 : 1-19; 시 103 : 1-5; 마 4 : 23-24; 9 : 18-35; 요 4 : 46-54; 행 5 : 12-16; 9 : 32-42; 14 : 8-15; 고전 12 : 4-11; 고후 12 : 7-10; 약 5 : 13-16)

제15절 그리스도의 재림

19.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는 못하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돌리어 주를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믿는다.(마 25 : 31-46; 요 14 : 1-3; 행 1 : 9-11; 빌 3 : 20-21; 살전 4 : 13-18; 딤후 2 : 11-14; 히 9 : 26-28; 벤후 3 : 3-15; 계 1 : 7-8; 22 : 7-20)

제16절 부활, 심판, 운명

20.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몸이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

21.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생에서 행한 그의 행위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될 장래의 심판을 믿는다.

22.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창 18 : 25; 삼상 2 : 10; 시 50 : 6; 사 26 : 19; 단 12 : 2-3; 마 25 : 31-46; 막 9 : 43-48; 눅 16 : 19-31; 20 : 27-38; 요 3 : 16-18; 5 : 25-29; 11 : 21-27; 행 17 : 30-31; 롬 2 : 1-16; 14 : 7-12; 고전 15 : 12-58; 고후 5 : 10; 살후 1 : 5-10; 계 20 : 11-15; 22 : 1-15)

제 2 장 교 회

제1절 일반 교회

23.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2절 개교회

24. 개교회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허락과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제와 봉사를 위하여 함께 모인 중생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3절 나사렛성결교회*

25.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치리에 따라 자의로 결합되어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인의 회개와 신자의 완전성결과 거룩 속에서의 성장과 전 인류를 향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초대 신약 교회에 나타난 단순성과 영적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본래의 교단 명칭은 나사렛 교회(Church of the Nazarene)이나 한국에서는 국제 본부의 승인을 얻어 1974년 7월 29일부터 나사렛성결교회로 개명 공포하였다.

제4절 신앙 공동 선언

26. 교회 회원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특전은 그가 중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필수적인 신앙의 고백만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신앙 선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6.1.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26.2.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26.3.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므로 악에 기울어진다고 믿는다.

26.4.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이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됨을 믿는다.

26.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지배 하에서 구원 받는 것을 믿는다.

26.6.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고 뒤이어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믿는다.

26.7. 거듭난 것과 신자의 완전성결 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26.8.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

제5절 그리스도인의 일반규약

27. 지상의 교회에 소속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된 특권이며 거룩한 의무가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사렛성결교회에 연합하여 우리와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과 활기찬 신앙심으로 죄에서 구원된 증거를 보여주며 모든 내재된 죄악에서 깨끗해졌거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도록 요구한다. 다음의 사항을 지키므로써 하나님께 헌신함을 증명해야 한다.

27.1. 첫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시된 믿음과 실행의 규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지킨다.

(1)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출 20 : 3-6; 레 19 : 17-18; 신 5 : 7-10; 6 : 4-5; 막 12 : 28-31; 롬 13 : 8-10).

(2)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면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시도하는 일(마 28 : 19-20; 행 1 : 8; 롬 1 : 14-16; 고후 5 : 18-20).

(3)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엡 4 : 32; 딤후 3 : 2; 벧전 2 : 17 요일 3 : 18).

(4) 서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믿음의 식구를 돕는 일(롬 12 : 13; 갈 6 : 2, 10; 골 3 : 12-14).

(5) 타인의 육신이나 영혼을 위해 선행을 추구하는 일. 기회와 능력이

허락하는 한 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며 또한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일(마 25 : 35-36; 고후 9 : 8-10; 갈 2 : 10; 약 2 : 15-16; 요일 3 : 17-18).

(6) 십일조와 헌금으로 목회자, 교회, 그리고 교회 사업을 위해 헌금하는 일(말 3 : 10; 눅 6 : 38; 고전 9 : 14; 16 : 2; 고후 9 : 6-10; 빌 4 : 15-19).

(7) 공중 예배(히 10 : 25), 말씀으로 가르침(행 2 : 42), 성찬 예식(고전 11 : 23-30), 성서 탐구와 묵상(행 17 : 11; 딤후 2 : 15; 3 : 14-16), 가족 및 개인 헌신 예배(신 6 : 6-7; 마 6 : 6)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성례와 은혜의 집회에 충성스럽게 참석하는 일.

27.2. 둘째, 다음에 열거한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한다.

(1)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출 20 : 7; 레 19 : 12; 약 5 : 12).

(2) 불필요한 세속적인 활동에 가담함으로써 주일을 모독하고 주일의 신성을 부인하는 행위에 몰두하는 일(출 20 : 8-11; 사 58 : 13-14; 막 2 : 27-28; 행 20 : 7; 계 1 : 10).

(3) 결혼 전 또는 결혼 외의 성관계,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 혹은 방탕 그리고 무례한 행위(출 20 : 14; 마 5 : 27-32; 고전 6 : 9-11; 갈 5 : 19; 살전 4 : 3-7).

(4)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로운 버릇이나 습관. 그리스도인은 그들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해야 한다(잠 20 : 1; 23 : 1-3; 고전 6 : 17-20; 고후 7 : 1; 엡 5 : 18).

(5) 말다툼, 악을 악으로 갚는 일, 험담, 중상, 억측을 퍼트려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고후 12 : 20; 갈 5 : 15; 엡 4 : 30-32; 약 3 : 5-18; 벧전 3 : 9-10).

(6) 부정직, 매매에 부당한 이득, 거짓 증거, 그리고 범죄에 상당한 일(레 19 : 10-11; 롬 12 : 17; 고전 6 : 7-10).

(7) 외모를 사치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에 어울리는 간소하고 겸손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잠 29 : 23; 딤후 2 : 8-10; 약 4 : 6; 벧전 3 : 3-4; 요일 2 : 15-17).

(8)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음악, 문학 및 오락(고전 10 : 31; 고후 6 : 14-17; 약 4 : 4).

27.3. 셋째, 성심껏 교회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교리를 위반하지 않고 전적으로 준수하여, 계속적으로 교회가 증거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엡 2 : 18-22; 4 : 1-3, 11-16; 빌 2 : 1-8; 벧전 2 : 9-10).

제 3 장 조직과 통치기구

제1절 정치 형태

28. 나사렛성결교회는 대의제도(代議制度)의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

28.1. 우리는 개교회를 보조하여 그 사명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독직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감독의 직무는 도의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해 주며 관리 및 방법의 조력을 제공하고 어디에서나 새로이 교회를 조직하고 새 교회의 조직과 선교를 격려한다.

28.2. 우리는 감독에게 부여된 권한이 완전히 조직된 교회의 독립적인 활동에 간섭할 수 없음을 동의한다. 각 교회는 중앙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목회자를 선택할 권리를 향유한다. 각 교회는 각종 회의에 파송하는 대표를 선출하며 독자적인 재정 관리와 그 지역의 생활과 활동에 관계되는 그 밖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제2절 개교회

29. 개교회의 회원은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조직된 사람들로서, 구원의 체험과 우리의 교리를 신봉하고 우리의 정치 체제에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의향을 표명한 후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이에 의하여 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들로서 구성된다.(100-107)

제3절 연회

30. 중앙총회는 총회가 공정하다고 인정한 평신도와 교역자 대표들을 회원으로 하는 연회를 조직하되 모든 현직 안수목사들은 회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연회 대표들의 자격을 결정한다. 중앙총회는 연회의 경계를 결정하며 연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200-5.7)

제4절 중앙총회

31.1. 구성 : 중앙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연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들, 중앙총회에서 수시로 선출한 직책상의 회원들과, 중앙총회에 의해 임명된 나사렛성결교회의 세계선교/전도국과 미국/캐나다선교/전도국 관할 하에 있는 연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31.2. 대의원 선출 : 각 연회에서는 중앙총회가 열리기 16개월 이내, 여행비자나 기타 특별 준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24개월 이내에 중앙총회에

보낼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중앙총회의 규정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때에 교역자 대표는 나사렛성결교회의 현직 안수목사여야 한다. 각 3단계의 연회는 최소한 1명의 교역자 대표와 1명의 평신도 대표를 파송할 수 있으며 중앙총회에서 결정한 교회 회원 수에 비례한 기준에 따라 추가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각 연회에서는 정 대의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203.23, 301-1.1)

31.3. 신입장 : 연회의 총무는 중앙총회에 파송할 정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에게 각각 대의원 피선증서를 발부하고 연회가 끝나는 즉시로 나사렛성결교회 중앙총무에게 대의원 피선증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1.4. 정족수 : 중앙총회가 개회되면 총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무 집행을 위한 정족수가 된다. 일단 정족수가 되어 개회한 후에는 정족수가 미달되어도 미결 의사(未決議事)처리하고 정회에 들어갈 수 있다.

31.5. 중앙감독 : 중앙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 안수목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숫자만큼의 중앙감독을 투표에 의해 선출할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중앙감독회가 구성된다. 중앙총회 사이에 중앙감독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중앙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305.2, 316)

31.6. 총회의장 : 중앙감독회에서 지명된 중앙감독이 중앙총회의 매일 회의를 사회한다. 그러나 만일 중앙감독이 지명되지 않았거나 부재중일 때는 중앙총회에서 총회대의원 중의 한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다.(300.1)

31.7. 의사 진행 규칙 : 중앙총회는 조직의 방법, 의사 진행 절차, 위원회, 그리고 기타 질서 있는 의사 처리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관장하는 의사 진행 규칙을 채택한다. 본 규칙은 중앙총회 대의원의 선출 및 자격을 심사할 것이다.(300.2-0.3)

31.8. 중앙 소청위원회 : 중앙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 회원 중에서 중앙 소청위원을 선출하며, 그 재판 관할과 권한을 규정한다.(305.7)

31.9. 권리와 한계

(1) 중앙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를 위한 법률 제정의 권한과 본 교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나사렛성결교회와 어느 관점에서든지 관련 또는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서들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300, 305-5.9)

(2) 중앙총회로부터 임명됨이 현명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개교회도 목회자를 청빙하는 권한을 박탈당할 수 없다.(115)

(3) 모든 개교회와 제직들과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항상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 4 장 수 정

32. 본 교회의 헌법의 조항들은 중앙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의원 3분의 2의 찬동이 있을 때 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3단계 그리고 2단계의 연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중앙총회나 3단계, 혹은 2단계의 연회 어느 편에서나 먼저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이 정당한 방법으로 채택되면 곧 중앙감독회 명의로 그 투표 결과를 공고해야 하며 이로써 이 수정안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제1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2장 결혼과 이혼

제3장 유산

제4장 성생활

제5장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제6장 교회제직

제7장 회의 절차

제8장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수정

제 1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33. 교회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즐거이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옛사람 ’ 즉, 옛 육적인 마음과 함께 행동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 새사람 ’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새롭고 거룩한 생활 방식을 입게 된다.(엡 4 : 17-24)

33.1. 나사렛성결교회는 시간을 초월한 성서적 원칙을 현대 사회에 연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교회의 교리와 규약을 여러 나라와 문화 속에 알리고 이해시키도록 한다. 우리는 십계명이 신약에서 재주장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형성하며 모든 점에서 전폭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3.2. 성령에 의해 비취치고 인도되어지는 집합적인 기독교 양심의 개념에 진실성이 있음을 또한 인정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국제적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상세히 설명하여 성결의 윤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회의 역사적 윤리 규범이 부분적으로 다음 항목들에서 표현되어 있다. 그 규범들은 거룩한 삶의 길잡이와 조력사로서 주의 깊게 양심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교회의 양심을 범하는 자들은 자신의 파멸과 교회의 증거에 손상을 초래한다. 문화적인 조건에 따른 적응은 중앙감독회에 조회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3. 피해야 할 행위들을 수록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포괄적일지라도 어떠한 목록도 이 세상의 모든 형태의 악을 다 포함한다고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교인들이 열심히 성령의 도움으로 법률의 단순한 문자 범위 밖의 악에 대한 민감성을 배양함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법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 : 21-22)는 훈계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33.4.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정기 간행물과 설교를 통해 기본적인 성서적 진리를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5. 교육은 사회의 사회적 및 정신적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공공 교육 기관은 모든 사람을 교육시킬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기관들은 그들의 교육 영역에 법정의 지시 하에 제한을 받아 사실상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주일학교, 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어린이집, 노인의 집, 대학, 그리고 신학교 등 나사렛 교육 기관은 유년, 청년, 그리고 장년들에게 성서적 원리와 윤리 규범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우리의 교리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종종 세속적인 인도주의를 가르치거나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미흡한 공공 교육 기관을 대신하거나 혹은 그것에 첨가해서 행하여질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교육은 가정에서의 성결 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공 기관에 증인이 되고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공공 기관에서 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마 5 : 13-14)

34. 우리는 특히 다음에 열거한 행위들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1.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는 오락 행위. 나사렛 교인들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다음 3가지 원칙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여가 시간의 기독교적 관리이다. 둘째는 최고의 도덕규범을 기독교 가정에 적용해야 하는 의무의 인식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도덕적으로 대 혼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악한 것들이 세속적인 문학,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들의 성역인 가정생활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속된 영역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안전책을 고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전하고 성서적 가치를 긍정하는 오락 행위를 격려해야 한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대중매체와 예술 부문 등 이 문화의 잘못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격려한다.] 셋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형태의 상업적 유희업에 의해 유발된 폭력, 호색, 음화, 신성 모독, 점성술과 같은 사회악과 같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신성 모독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러한 종류의 유희 행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을 없이하고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폭력과 쾌락, 그리고 호색을 조장하며, 신성 모독 또는 점성술 등을 허용하거나, 또는 세속주의, 감각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오락 행위들과 미디어 상품들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도덕적 규범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성결한 삶에 이르는 높은 차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강단이나 정기 간행물들을 통해 각종 대중매체에 나타난 선과 악을 분간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을 개발시켜 주는 기본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요한 웨슬리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수 받은 한 가지 원칙, 즉 무엇이든 자신의 이성을 약화시키고, 의식의 민감성을 손상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며, 영적인 일들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며,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현상을 방조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 곧 죄라는 말을 대중매체의 해악을 분간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33.2-33.4, 903.12-3.14)(롬 14 : 7-13; 고전 10 : 31-33; 엡 5 : 1-18; 빌 4 : 8-9; 뱀전 1 : 13-17; 뱀후 1 : 3-11)

34.2.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간에 복권 추첨 및 다른 형태의 노름 행위. 교회는 이러한 행위의 최종 결과는 개인과 사회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정한다.(마 6 : 24-34; 살후 3 : 6-13; 딤후 6 : 6-11; 히 13 : 5-6; 요일 2 :

15-17)

34.3. 서약에 묶인 비밀 결사 혹은 조직의 회원이 되는 행위. 그러한 조직체들이 갖는 유사 종교적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헌신 언약을 퇴색시키고 그들의 비밀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공개적인 증거에 위배된다.(고전 1 : 26-31; 고후 6 : 14-7 : 1; 엡 5 : 11-16; 약 4 : 4; 요일 2 : 15-17)

34.4. 모든 형태의 사교춤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며 적절한 도덕성의 함양 및 그 억제책을 파기시키는 경향이 있다.(마 22 : 36-39; 롬 12 : 1-2; 고전 10 : 31-33; 빌 1 : 9-11; 골 3 : 1-17)

34.5. 주류를 음료로 사용하거나 술의 판매, 술의 판매를 위한 장소의 허가를 위해 영향력을 주거나 찬성 투표하는 행위, 부정 의약품의 사용 혹은 판매 행위.

술을 음료로 사용함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에 관한 인간 경험과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한 술과 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관한 의학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로 헌신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기보다 전적으로 금지하기를 주장한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는 사랑에 따라 모든 해로운 주류를 전적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요청한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903.12-3.14)(잠 20 : 1; 23 : 29-24 : 2; 호 4 : 10-11; 합 2 : 5; 롬 13 : 8; 14 : 15-21; 15 : 1-2 고전 3 : 16-17; 6 : 9-12, 19-20; 10 : 31-33; 갈 5 : 13-14, 21; 엡 5 : 18)

(발효되지 않은 술만이 성찬 예식에 사용된다.)(413.11, 427.7, 428.2, 429.1, 802)

34.6. 처방 없이 환각제, 흥분제,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과 정규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 행위, 그러한 의약품들은 책임한 관계 의사의 조언과 감독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마 22 : 37-39; 27 : 34; 롬 12 : 1-2; 고전 6 : 19-20; 9 : 24-27)

제 2 장 결혼과 이혼 또는 결혼 말소

3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의 결속으로 묶여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과 교제,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로서 가족 간의 유대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 의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나사렛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실천 방안을 촉구한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결혼의 영속성을 위한 성경적 계획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결혼 제도는 인간의 무흠 시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사도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간의 교제와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번식을 위해 결합하는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이 성스러운 유산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겨야 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고려하는 대상과의 결합이 성경적 요건에 부합한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난 후에야만 결혼을 성립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제정해 놓으신 여러 가지 축복, 이를테면 거룩한 교제, 부모의 직분, 그리고 서로간의 사랑 등 가정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혼인 서약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서로에 대한 도덕적 결속이므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곧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처사이다.(창 1 : 26-28, 31; 2 : 21-24; 말 2 : 13-16; 마 19 : 3-9; 요 2 : 1-11; 엡 5 : 21-6 : 4; 살전 4 : 3-8; 히 13 : 4)

35.1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은 남녀 간 서로에 대한 전 생애적 위임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혼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다. 하지만 그러한 위반이라도 진실한 회개와 믿음 그리고 겸손을 내포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서 결코 멀지 않다. 특별한 경우 자신들의 의지에 반대하는 이혼을 당하거나, 법률적 혹은 신체적 보호를 위해 이혼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는 바이다.(창 2 : 21-24; 막 10 : 2-12; 눅 7 : 36-50, 16 : 18; 요 7 : 53-8 : 11; 고전 6 : 9-11; 7 : 10-16; 엡 5 : 25-33)

35.2.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은 결혼식을 엄숙히 시행하는 일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받는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회중에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지닌 성스러움을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혼식을 집행하기 전에 가능하면 꼭

혼전상담을 실시하되 거기에는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영적 지도 방안까지 포함시키도록 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초가 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결혼식을 집례 해야 한다.(107-7.1)

35.3.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들은 결혼 생활이 불행에 빠질 경우 자신들의 서약과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조화 속에서 가정을 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련의 구속적인 행동양식을 추구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부부는 자신들의 목회자나 또는 자신들을 적절히 지도해 줄 그 외의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 상담과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성실히 따르거나 그리스도인다운 해결책을 열심히 모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이혼이나 재혼 시에는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 모두 504조의 1항과 2항 그리고 505조의 2항과 1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35.4.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죄 그리고 인간적 연약성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까지 구속하실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상반되는 죄라 할지라도 복음에 명시된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해 두지 않는다.

결혼 생활이 무산되고 재혼이 뒤따르는 경우 결혼 당사자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대속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의 중생의 증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혼의 성스러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각을 갖게 될 때 교회의 정식회원이 될 수 있다.(27, 107.1)

제 3 장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

36.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을 믿으며, 유산, 배아 줄기 세포 연구, 안락사를 반대하며, 장애인이나 고령인을 위한 합당한 의료적 보살핌을 중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인공 유산.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임을 인정하며, 그러한 성스러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믿는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태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양육되고 지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잉태의 순간부터 아이는 인간 생명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이다. 이

생명은 계속된 발달을 위해 어머니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생명이 잉태의 순간부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인적인 편의나 인구 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위적인 유산을 반대한다. 우리는 유산을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산모나 태아, 또는 양자 모두가 출산 이후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명한 의학적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라라도 태아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결정은 분명한 의학적 처방과 기독교적인 상담의 기초 위에서만 내려져야 한다.

유산에 대한 책임 있는 반대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모자(母子)를 돌보는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제정과 후원에 전력해야 한다. 뜻밖의 임신의 위기를 맞는 경우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단의 신자들이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며 기도과 상담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같은 경우에 맞는 후원을 위해서 상담소나 임신모 가정, 그리고 기독교 입양관련단체 등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성적 책임에 대한 기독교적 표준이 간과된 나머지 유산을 임신중절을 위한 방편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신약 성서적 윤리를 실행할 것과 유산 문제를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 지침이 되는 보다 폭넓은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창 2 : 7, 9 : 6; 출 20 : 13; 21 : 12-16, 22-25; 레 18 : 21; 욥 31 : 15; 시 22 : 9; 139 : 3-16; 사 44 : 2, 24; 49 : 5; 렘 1 : 5; 눅 1 : 15, 23-25, 36-45; 롬 12 : 1-2; 고전 6 : 16; 7 : 1 이하; 살전 4 : 3-6)

나사렛성결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유산의 비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개교회와 성도 개개인은 유산을 체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개교회 회중들은 임신의 의도적 결과로 얻게 된 육체적, 감정적, 영적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소망의 공동체들이다.(롬 3 : 22-24; 갈 6 : 1)

유전 공학과 유전자 치료. 나사렛성결교회는 유전자 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유전 공학의 사용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전자 치료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 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사회적 불의를 조장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인종적, 지적, 사회적 우월성(우생학)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유전 공학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정상 출산을 대신하기 위하여, 인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DNA 연구를 반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견손, 침해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 자비와 정의의 수호가 유전 공학과 유전자 치료에 우선해야만 한다.(미 6 : 8)

수태 이후의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와 다른 의학적, 과학적 시도들. 나사렛성결교회는 성인의 조직, 자궁, 제대혈, 동물, 기타 인간의 것이 아닌 배아 물질과 같은 것으로부터 얻어진 줄기 세포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학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을 침해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는 의로운 목적을 갖고 있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인간 배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나 치료적 개입이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 배아들로부터 만들어진 줄기 세포들의 사용에 반대한다.

우리는 미래의 과학적 발전이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이나 다른 도덕적, 성경적 법들을 범하지 않는다면 이 연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태 이후의 인간의 생명을 취하여 그 어떤 목적이나 형태의 연구를 위해 인간 배아들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우리는 유산된 태아에게서 나온 조직의 사용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건 반대한다.

인간 복제. 우리는 인간의 복제를 반대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귀한 것이다. 인간의 복제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다룬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창 1 : 27)

안락사(의사의 도움으로 행해진 자살을 포함함). 우리는 안락사(말기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 또는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이 임박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몸이 약화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가 기독교적 믿음에 합치되지 않음을 믿는다. 이것은 안락사가 말기 환자에 의해 요청 또는 동의된 경우(자의적 안락사)와 말기 환자가 동의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이 없는 경우 (타의적 안락사)에도 해당된다. 우리는 기독교회에 의해서 안락사가 역사적으로 거부된 것이 성경에서 유래된 기독교적 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믿음의 중심적 확신에 해당된다는 것을 믿는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간 자신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믿는 기독교적 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어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인간 생명과 공동체 위에 부여한

가치를 침식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 이것은 고통을 종결시키는 데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둔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운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적 오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하기를 촉구한다.

죽음의 허용.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독교적 믿음과 관습의 범주 안에서 인위적 생명 유지 기구를 환자에게서 떼어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입장은 계속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 연장을 위한 특별한 수단의 적용이 그 환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희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우리는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기독교적 믿음 안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과정이 인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제 4 장 성생활

37.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의 성생활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위해 의도한 거룩과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본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이 확인되고 표현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있어서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성생활은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서만 향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들은 성생활을 서로에게는 물론,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스도께 스스로를 내어맡기는 더욱 폭넓은 헌신과 위임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에게 인간의 성생활이 지닌 거룩한 속성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인내 속에서 결혼의 궁극적 취지를 실현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목회자들과 기독교 교육자들은 성생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의 미덕을 찬양하는 한편, 성생활에 대한 일체의 기만 및 왜곡 행위를 엄히 경계하도록 강권해야 한다. 성생활 자체를 궁극적 취지로 삼는다면, 또는 음욕과 성도착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악용함으로써 성생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에는, 그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간의 결혼 서약 외에

일어난 모든 형태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한 성의 거룩성과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는 죄악으로 여긴다.

동성연애는 일종의 인간 성생활에 그릇된 방법이다. 우리는 동성 연애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적 도착의 깊이를 인지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죄악이며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성서적인 입장을 지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성연애의 실행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전 6 : 9-11). 우리는 기독교적 윤리와 동성연애의 행위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일체의 태도와 진술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성윤리의 성서적 규범에 관한 명확한 설교와 가르침을 적극 권장한다.(창 1 : 27; 19 : 1-25; 레 20 : 13; 롬 1 : 26-27; 고전 6 : 9-11; 딤후 1 : 8-10)

제 5 장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38. 청지기직의 의미 :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물질의 소유주이시며 인간은 생명과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이므로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청지기직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청지기직의 수행에 대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그의 방식에 있어 체계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자원과 관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헌금 제도를 설정하셨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전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십일조와 헌금을 충실히 헌납하여야 한다.(140)

(말 3 : 8-12; 마 6 : 24-34; 25 : 31-46; 막 10 : 17-31; 눅 12 : 13-24; 19 : 11-27; 요 15 : 1-17; 롬 12 : 1-13; 고전 9 : 7-14; 고후 8 : 1-15; 9 : 6-15; 딤후 6 : 6-19; 히 7 : 8; 약 1 : 27; 요일 3 : 16-18)

38.1. 저축식 십일조 : 저축식 십일조란 성도가 소속한 교회에 성심껏 그리고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서 성서적이며 실천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은 저축식 십일조 계획에 근거하며 나사렛성결교회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 의해 저축소로 간주될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일원인 모든 사람은 주님에 대한 최소의 재정적인 의무로서 그들의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성실하게 헌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심에 따라 개교회, 연회, 교육 기관, 그리고 중앙총회 등 모든 교회를 유지하도록 자유의사에 의한 헌금을 추가로 바칠 것을 권면한다.

나사렛성결회 개교회에 바쳐진 십일조는 전교회를 지탱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의 마음에 주어진 다른 모든 기회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8.2. 기금 모금 및 분배 : 복음 전파와 교회 건물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십일조 및 헌금을 바치는 것과 관련된 성서적 가르침에 비추어 나사렛성결교회는 기금을 모금할 때에 그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성서적 원칙을 손상하거나, 복음의 말씀을 방해하거나,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거나 교인들의 노력을 잘못 인도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개교회, 연회, 교육 기관 그리고 중앙총회의 각종 프로그램 상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출을 할 때는 개교회들은 기금 모금 계획을 채택, 시행할 것과 중앙, 교육기관 그리고 연회부담금을 매월 지불할 것을 권장한다.(130, 154, 155-55.2, 413.21)

38.3. 목회 후원 :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 : 14)는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교회의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목회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업을 위해 돈을 모음으로써 목회를 돕는 과업에 모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것과 목회자의 급료를 매주 규칙적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한다.(115.4)

38.4. 종신 소득권의 증여, 계획 및 거처된 기부: 평생 동안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청지기로서 수입 및 소유재산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수행에 본질적인 요소이다. 나사렛성결교회는 평생 동안의 신실한 청지기직을 위한 필요를 인정하며, 미래를 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인정한다. 그리고 계획되고 거처된 기부를 통하여 기독교적 청지기직을 장려하기 위한 나사렛성결교회기금을 창설하였다. 민법은 종종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유산을 분배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조심스럽고 합법적인 유언이나 유언장을 준비하는데 유의할 것이며 이때 개교회, 연회, 교육기관 그리고 중앙총회의 선교, 복음 전도, 교육, 그리고 자선 등 각종 사역에 임한 나사렛성결교회를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제 6 장 교회제직

39. 우리는 개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치리 정책 및 실천 사항들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규칙적인 예배 출석과 십일조 및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113.9-13.10, 127, 145, 146)

제 7 장 회의 절차

40. 교회 장정상의 적용 가능한 법과 법인체 신조, 그리고 치리에 관한 준칙에 의거하여 개교회, 연회, 중앙총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 및 자치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에 따라 의사 절차를 규정, 통제한다.(113, 203, 300.3)

제8장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수정

41.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들의 규정은 해당 중앙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4 부

통 치 기 구

서문

제1장 개교회

제2장 연회

제3장 중앙총회

제4장 고등교육

서 문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며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선교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를 삼는 일??로서, 그것은 신자들을 성도로서의 사명과 교회 일원의 반열에 들게 하며, 아울러 각자의 믿음에 부합하는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골 1:28)

구원의 역사와 온전하게 하는 일, 그리고 가르침과 헌신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이다. 이 교회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연회와 지구에 속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연합의 근간이 되는 것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에 열거된 바대로 신조와 정책, 규정, 그리고 절차 등이다.

연합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장정의 신조에 나타나 있다. 모든 지역 및 언어권의 사람들이 이를 번역하고 널리 보급하여 그 취지에 맞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신조는 나사렛성결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연합을 가시적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중앙총회인데, 이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 설정과 법령 제정, 그리고 선거 등을 관장하는 최고의 권력 기구이다.(300)

두 번째의 가시적 형태는 국제 중앙위원회로서, 이는 전체 교회를 대리한다.

세 번째는 중앙감독회가 있는데, 이들은 장정을 해석하며, 그와 관련한 문화적 적용 방안들을 승인하며 목회직을 임명하는 권한 등을 갖는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치리 구조는 대의적으로, 한편으로는 지나친 감독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인 회중 제일주의의 양 극단을 모두 지양한다.

나사렛성결교회가 활동하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문화적 혹은 정치적 차이점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장정 4부의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수록된 개교회와 연회 혹은 지구 교회의 치리 절차에 대한 응용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같은 응용방안에 대한 청원서가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 장 개교회

제1절 조직, 명칭, 법인설립, 재산, 제한, 통합, 해산

100. 조직 : 개교회는 연회감독 혹은 관할 중앙감독 또는 이들이 위임한 안수목사에 의하여 조직된다. 새로 조직된 교회의 공식 보고문은 해당 사무국을 통하여 중앙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29, 107, 208.1, 433.12)

100.1. 언어가 다른 민족의 교회 : 조직된 개교회는 교회의 시설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성서 연구반을 만들어 그들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성서 연구반은 교회 유형의 선교나 완전 조직교회로 발전될 수 있다.(100) 이것은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하나의 교회 명칭 아래 한 회중 이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개개의 회중이 완전 조직된 교회가 아닌 이러한 언어가 다른 민족의 교회에서 연회실행위원회는 연회감독과 관할하는 중앙감독의 승인 하에 다음의 조건을 가정하여 조직된 개교회의 권리와 특권을 회중들에게 허락할 수 있다.

- (1) 이 회중들은 조직된 개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법인을 구성할 수 없다.
- (2) 이 회중들은 조직된 개교회 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따로 가질 수 없다.
- (3) 이 회중들은 연회감독과 조직교회의 제직회 그리고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빚을 지지 못한다.
- (4) 이 회중들은 교회의 담임목회자와 상의를 거친 후 연회 감독의 명백한 허락이 아니면 조직교회로부터 한 일원으로 분리되어 철수할 수 없다.

101. 명칭 : 새로 조직된 교회의 명칭은 연회감독과의 합의 하에 개교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02.4)

101.1. 명칭 변경 : 나사렛 개교회의 명칭 변경은 교회 정회원의 사무총회 혹은 특별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교회 제직회가 연회감독에게 변경안을 제출하고 연회감독은 연회실행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얻는다.
- (2) 개교회는 투표를 실시한다.
- (3) 연회실행위원회가 변경을 연회에 보고하며 연회는 그 변경의 승인을 투표로 정한다.(102.4)

102. 법인 설립 :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장로는 교회를 법인화하여 당 장로와 그들의 후계자들이 그 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만일 민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법인 정관에 법인체의 권한을 규정하며 장정 속에 나사렛성결교회 중앙총회가 인정하고 천명하는 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규정한다. 이 법인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개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가 관리 및 관장한다.

102.1. 연회실행위원회가 개교회 또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증자했다라도 연회실행위원회가 투자한 금액을 개교회가 상환할 경우 연회실행위원회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102.2. 개교회가 법인체로 조직될 경우 모든 취득 재산은 가능하면 법인

명의로 증서로 교회에 양도하여야 한다.(102.6)

102.3. 목회자와 교회제직회 서기는 법인화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교회 대표와 서기가 되며 부동산 저당 설정, 저당 해제, 계약 관계와 장정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104-4.3항에 밝힌 제한 조건에 따라 기타 교회 법정 서류에 서명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02.4. 각 개교회의 법인 설립 조항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은 반드시 ??나사렛성결교회(나사렛성결회)??라는 어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나사렛성결교회” (나사렛성결회)라는 명칭은 교회 간판, 공식 문구, 교회 출판물에 기재되어야 한다.

(2) 법인체의 세칙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이 된다.

(3) 법인설립 조항은 동일지역의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면세 혜택을 개교회로 하여금 못 받게 하는 어떤 규정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법인체가 해산되면 그 재산은 연회실행위원회에 귀속되어야 한다.

법인 설립 조항은 그 지역의 법률 하에 적절한 경우 추가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개교회의 재산을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 규정은 절대로 포함할 수 없다.(101-1.1, 104.3, 106.1-6.3)

102.5. 한 조직교회 이상이 같은 시설을 나누는 언어가 다른 민족의 교회에서는, 연회법이 허락하는 곳이면 공동합병이 있을 수 있다.

102.6. 법인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 교회명의는 재산 증권이나 신탁증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에 ??나사렛성결교회(나사렛성결회)??라는 말을 포함해야 한다.(102.2)

103. 재산 : 개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교회 건물 또는 사택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혹은 대규모 수리를 계획할 때에는 연회감독과 연회교회재산위원회에 제의하여 그들의 의견, 충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입과 건물 건립 혹은 대규모 수리를 할 때에 연회감독 및 연회교회재산위원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저당 잡히거나 안 잡히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부채도 질 수 없다.(233-34.5)

103.1. 교회제직회와 연회감독 및 교회재산위원회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감독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여 그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교회 또는 연회감독 중 누구나 당 결정을 중앙감독회에 상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고나 상고의 반증 또는 거기에 관련된 논증은 관할 담당 중앙감독에게든지 중앙감독회에든지 서면 제출해야 한다. 제직회나 연회감독은 상고나 상고의

반증 또는 관련된 논증의 사본을 개입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직회 상고의 상세한 기록은 상고의 해결책 및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논증 그리고 투표한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04. 제한 : 개교회는 부동산의 매매, 재담보를 포함한 저당, 교환, 또는 기타의 어떤 방법으로든 부동산을 저당 잡히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사무총회 혹은 이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소집된 특별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를 하거나, 개교회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재산을 기증하는 것에 대한 교회제직회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투표에 의한 승인이 있거나, 연회감독과 연회교회재산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113.3-13.4, 113.7, 113.14, 234.3)

104.1. 개교회의 부동산을 당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저당할 수 없다.

104.2. 개교회는 저당을 잡히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에 대한 보험 수입을 오직 부동산의 구입이나 원 부동산의 더 나은 활용이나 다른 부동산의 부채를 갚는데만 사용할 수 있다.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 하에서만, 그 수입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04.3. 이사 또는 개교회는 재산을 나사렛성결교회의 사용 외에 전용할 수 없다.(113-13.1)

104.4. 교회 탈퇴 : 중앙총회의 규정과 합의된 조건 및 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개교회가 한 단체로서 나사렛성결교회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106.2-6.3)

105. 통합 : 둘 혹은 그 이상의 개교회들은 교회 출석 회원의 투표와 관련된 교회들에 의해서 소집된 특별총회의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통합할 수 있으며 통합 절차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통합은 각 교회의 제직회의 전 회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연회감독, 연회실행위원회 그리고 관할 중앙감독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제직을 선출하고 목회자 청빙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된 특별총회에서 사회원들에 의해 통합의 매듭이 지어진다. 연회감독 또는 그가 지명한 안수목사가 그 연회를 사회한다.

이상의 절차로 생겨난 조직은 종전 교회들의 회원 및 교회의 각 부서를 포함하여, 각 교회의 재산 및 부채의 내력 등을 연회감독, 연회실행위원회, 그리고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얻어 통합해야 한다. 거기에는 중앙, 교육기관, 그리고 연회 할당액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감독의 통보를 받으면 교회 명부에서 폐기된 교회들의 명칭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나사렛성결교회 중앙 총무에게 부여된다.

106. 교회활동 중지 및 해산 선언 : 교회는 연회실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일정한 과도기 동안 그 활동이 중지될 수 있다.

106.1. 개교회는 연회감독의 추천과 연회실행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은, 연회감독이 관할 중앙감독과 상의하고 중앙감독의 확답을 듣고 난 후에 취할 수 있다.

106.2. 개교회가 해산된 경우 또는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탈퇴된 경우나 탈퇴 시도의 경우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서 확인된 대로), 교회의 잔여 재산은 어떤 식으로든 여타의 취지를 위해 전용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은 그 교회가 법인체로 등록된 연회대리인으로 행사하는 연회실행위원회 혹은 다른 공인된 대리인에게 이양되어서 연회의 지시에 따라 나사렛성결교회의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산된 개교회의 재산을 위탁받은 재정담당위원회 혹은 제직회는 오직 연회실행위원회 혹은 연회에서 임명한 대리인의 명령 혹은 지시 하에 관할 중앙감독의 서면 승인을 받고 동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연회와 연회실행위원회의 지시를 따라 재산의 양도 또는 매각에 의한 대가를 인도해야 한다.(104.4, 222.17)

106.3. 해산된 교회 또는 나사렛성결교회를 탈퇴 또는 탈퇴를 시도하는 교회의 재정담당위원회 혹은 제직회는 그 교회의 재산을 나사렛성결교회를 위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 전용할 수 없다.(104.4, 141-44, 222.17)

106.4. 공식적으로 해산된 교회들에 한해서 중앙 총무의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106.5. 개교회의 활동중지가 선언되면, 교회의 모든 자금 및 유가 증권의 서명인들은 같은 자산액을 연회 실행위원회에 이전하여 예입하게 한다. 이에 따르기를 거절할 경우는 연회 실행위원회가 결의에 따라 모든 구좌를 해지하고 모든 자산의 관리권을 맡을 권한을 갖게 된다.

제2절 회원권

107. 정회원 :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에 의하여 개교회로 조직된 모든 자들로서 구원의 체험과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를 신봉하는 일과 나사렛성결교회의 통치제도에 순응할 것을 밝힌 다음 목회자나 연회감독 또는 중앙감독에 의해서 공중 앞에서 입회된 모든 자들은 개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그러나 교회의 사무총회나 혹은 특별총회에서 만15세 이상의 [활동 중인]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29, 35.4, 111, 113.1, 413.3, 417, 427.8, 433.8-33.9)

107.1.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할 때, 교회 회원의 특권과 책임, 신조, 그리스도인의 일반규약 및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의 요구 사항,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설명해야 한다.

목회자는 전도 및 교회 회원권 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유자격 후보자를 공중 예배석상에서 규정된 입회식문(801)을 사용하여 교회회원으로 입회시킨다.(27, 33-39, 110-10.4, 225)

107.2. 개척교회 회원 : 개교회의 조직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개척교회에서는 107조와 107.1 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접수하고 년차 통계에 보고하여야 한다.

108. 준회원 : 연회가 규정을 둔 곳에서는 개교회가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준회원은 교회 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지지만 투표권과 교회 직분은 가질 수 없다.(203.24)

108.1. 준회원은 언제나 목회자와 전도 및 교회 회원권 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접수될 수 있고 또한 제명될 수 있다.

109. 비활동 회원 : 개교회는 109.1조와 109.2조의 이유에 해당하는 자들을 비활동회원이라 지칭한다.(112.3, 133)

109.1.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회원권을 둔 교회에서 활동을 중지한 개교회 교인은 이사 간 곳에서 나사렛성결교회에 참여할 것과 그 교회로 회원권 이전을 청원할 것을 권면해야 한다.

109.2. 만일 교인 중에 누구든지 가능한 한 교회에 나와 정상적인 교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제직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예배 모임에 연속 6개월 동안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회원권은 전도 및 교회 회원권 위원회의 추천과 교회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정지될 수 있다. 그 경우 제직회의 결의가 있고난 후 일주일 이내에 목회자는 당사자에게 새롭게 힘을 내도록 편지를 보내야 한다. 제직회에서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면 목회자는 회원명부에 ??제직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권 정지 란에 옮김(년 월 일)??이라고 쓴다. 그 후 120일 동안 기도과 간구로 유보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 회원 당사자는 제직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정상적인 자격을 지닌 회원명부란에 옮겨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서에는 회원으로서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서약과 개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적극 참여할 것에 대한 재대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직회에서는 그 요청서에 대해 60일 이내에 적절한 회신을 보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사람에 대한 정식 회원권은 전도 및 교회회원권위원회의 추천과 교회제직회의 결의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109.3. 비활동 회원은 활동적 회원들로 구성된 개교회 정회원에 포함되나 단, 연회에 보고 시에는 (1) 정회원과 (2) 비활동 회원을 따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109.4. 비활동 회원은 사무총회나 교회 특별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제3절 전도 및 교회회원권위원회

110. 교회제직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도 및 교회회원권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목회자가 그 의장이 되며 위원은 목회자의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10.1. 개교회 복음전도를 촉진하며 복음전도의 열매를 보존하려고 힘쓰는 일.(107-7.1, 129.24)

110.2. 교회 전체의 생활에 있어서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회제직회에 건의하는 일

110.3. 중앙 및 연회의 교단 복음 전도 계획을 실천하는 개교회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일.

110.4.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입회된 정회원이어야말로 복음전도의 참 결실을 보존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새로 회심한 자에게 일관성 있는 헌신 생활과 개인적으로 혹은 목회자가 지도하는 회원 준비반에 성경과 장정 공부를 통해 교회 회원의 자격을 얻도록 권장하는 일.(26-27, 35.4)

110.5. 새 회원들을 완전한 성도의 교제 및 교회 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힘쓰는 일.

110.6. 목회자를 도와서 새 회원의 영적인 지도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110.7. 목회자에 의해서 지명된 개교회 부흥을 위한 부흥사를 교회제직회에 추천하는 일. 매년 적어도 1회 이상의 부흥회가 임명 또는 등록되고, 재직 중인 부흥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것을 권장한다.

110.8. 목회자가 전도 및 교회 회원권 위원회와 회원 입회에 관해서 상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없다.(107.1)

제4절 회원권 이동

111. 이명 : 목회자는 회원이 요청할 때에 다른 나사렛성결교회로 회원 이명증서(813.4양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이명증서는 3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새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접수했다는 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전 교회의 회원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813.5)

111.1. 추천서 : 목회자는 회원이 요청이 있을 때 다른 복음주의 교회로 추천서(813.2양식)를 써 줄 수 있으며 추천서의 발부와 동시에 당 교회로부터 그의 회원권은 상실된다. (112.2)

제5절 회원권 종료

112. 교역자 : 인정전도사나 안수목사가 나사렛성결교회 외의 다른 교단과 연합하여 회원권을 갖거나 목회를 할 때에는 그 목회자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즉시로 해당 연회의 목회심의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목회심의부는 해당 목회자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만일 연회의 목회심의부에서 해당 목회자를 목회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할 시에는 해당 교회의 목회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의 정회원 명부에서 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로 인해 그의 개교회 회원권은 즉시 상실되며 그의 명부에는 ??타교파와 연합하였으므로 제명??이라고 기록한다.(427.9, 433.10-33.11)

112.1. 평신도 : 개교회의 평신도 회원이 다른 종교 기관에서 전도할 자격증을 받았거나 안수를 받았을 경우와, 또는 독립교회나 선교사업에 종사할 때에 만약 그가 자기가 회원으로 소속된 개교회의 제직회로부터 연차적인 서면승인과 그 교회가 속한 연회실행위원회의 연차적인 서면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 때문에 그의 개교회 회원권은 즉시 소멸된다.

112.2. 제적 : 회원이 요청할 때 목회자는 제적증서(813.3양식)를 발부하며 이로써 그 사람의 회원권은 즉시로 끝나게 된다.(111.1, 112)

112.3. 비활동 회원이 선언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그 회원의 이름은 교회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교회 명부에서 제적된다. 교회제직회의 그러한 결의 후에 목회자는 해당회원 명부에 ??교회제직회에 의해 제명(년 월 일)??이라고 기재한다.(109, 133)

제6절 교회 회의

113. 협의 및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모인 개교회 회원의 모임을 교회 회의라고 부른다. 교회 장정상의 적용 가능한 신조와 치리에 관한 준칙에

의거하여 개교회, 연회, 중앙총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 및 각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에 따라 의사 절차를 규정, 통제한다.(40, 104, 113.7, 115, 415)

113.1. 교회 회의에서는 활동 중인 회원으로서 만 15세 이상의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107, 109-9.4)

113.2. 교회 회의에는 부재자 투표를 위한 조항이 없다.

113.3 사무처리 : 선거를 포함한 어떤 의제도 교회의 정신과 질서에 입각하여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교회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113.4. 민법 준수 :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함에 있어 민법이 특별한 절차 규정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142)

113.5. 사회자 : 직책상 개교회의 의장이 되는 목회자나 연회감독 혹은 관할 중앙감독, 아니면 연회감독이나 중앙감독이 임명한 사람이 교회의 사무총회 또는 특별총회를 사회할 수 있다.(210.1, 307.9, 413.23)

113.6. 서기 : 교회제직회의 서기는 교회 회의의 서기가 된다. 서기가 결석일 때는 임시 서기를 선출한다.(135.4)

113.7. 사무총회 : 개교회의 사무총회는 연회가 열리기 전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동 회의 개최는 적어도 2주일 전에 강단에서 공고해야 한다. 이 사무총회는 교회제직회의 승인 하에 1일 이상 열릴 수 있으며 1회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13.8. 보고 : 사무총회에서는 다음의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개교회의 목회자(413.15), 주일학교부장(146.6),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151.4),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153.2), 여사역목사(406), 개교회 전도인(426.1), 제직회 서기(135.2)와 재무(136.5)

113.9. 추천 위원회 : 추천 위원회는 다른 추천이 없는 제직과 위원 그리고 연회대의원들을 추천하는 일을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 수는 3명 내지 7명으로 하되 목회자를 포함하여 제직회에서 제의한 방법에 의해 구성한다. 목회자는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받은 자들은 모두가 장정 39조항이 밝힌 대로 교회제직에 요하는 자격을 완비하였음이 확실해야 한다.

113.10. 선거 : 사무총회에서는 개교회의 집사(137), 장로(141, 142.1), 주일학교장(146), 그리고 교육위원들(145)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이들은 차기 교회 연도 동안 봉사하고 그들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

때까지 시무한다. 교회제직으로 피선된 자들은 모두 그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의 회원이라야 한다. 우리는 개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도록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치리 정책 및 실천 사항들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규칙적인 예배 출석과 십일조 및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39, 127, 145, 146)

113.11. 법률이 허락하고 정식으로 소집된 사무총회에 출석한 교회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절차와 피선 숫자를 승인 받아 제직을 선출한 다음 집사와 장로로 지정된 수효는 137 및 141조와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제직이 선출되면 제직회는 담당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한다. 만일 교회가 제직회의 일부로 145조에 일치하여 교육 위원회를 선출했으면 그 위원회는 교회제직회의 교육 위원회를 형성한다.(145-45.10)

한 개교회가 목회와 선교활동을 위해 구성되는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제직회와 위원회 구조가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단, 이러한 것들은 연회 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 서면으로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구조가 그 나라의 민법적 요구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113.12. 법률이 허락하고 합법적으로 소집된 사무총회에 출석한 교회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절차를 승인 받은 교회에서는 연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교회제직회 회원의 2분의 1을 2년 직으로 하거나 또는 3분의 1을 3년 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매년 그 동수의 인원만을 선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피선된 교회제직의 지정된 집사와 장로의 수효는 137 및 141조에 일치해야 한다.

113.13. 교회의 사무총회에서는 중앙총회가 채택한 규정 201-1.2에 따라 연회에 파송할 평신도 대의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13.14. 교회 특별총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언제라도 소집될 수 있으며 또는 목회자나 연회감독 혹은 관할 중앙감독의 동의를 얻어 교회제직회에 의해서도 소집될 수 있다.(104)

113.15. 교회의 특별총회 공고는 언제나 동 회의 개최 전 최소한 두 정규 예배 시에 강단에서 해야 하며 또는 민법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115-15.1, 122, 137, 139, 142.1, 144)

제7절 교회 연도

114. 교회 행정 연도는 개교회의 통계 연도와 일치를 이루며 교회 연도로 인정된다.

114.1. 통계 연도는 연회가 열리기 전 90일 이내에 끝나며 새 통계 연도는 전 통계 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222.1)

제8절 목회자 청빙

115. 안수목사 또는 인정전도사(412)는 정식으로 소집된 개교회의 사무총회 혹은 특별총회에서 투표연령에 달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개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된다. 단, 이때에 안수목사나 인정전도사는 교회의 제직회가 연회감독과 협의한 후 제직회의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추천을 얻어야 하며 이 추천은 연회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교회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안수목사나 인정전도사의 경우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될 수 없다. 목회자 청빙은 이하 관계조항에 나타난 규정에 따라 갱신 및 연장되어야 한다.(118, 121-23, 129.2, 160.8, 208.9)

115.1. 교역자는, 청빙을 투표한 교회 총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목회자 청빙에 대한 수락을 통고해야 한다.

115.2. 교회제직회와 목회자는 서로 그들의 목표와 기대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121, 129.3-29.4)

115.3. 목회자가 정식 시무에 들어간 후 되도록이면 빨리 목회자와 회중은 목회자 취임 혹은 서약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일치와 방침을 찬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연회감독이 예배를 인도한다.

115.4. 목회자를 청빙하면 개교회는 제안된 보수를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이 보수액은 교회제직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보수에 관하여 개교회 혹은 제직회와 목회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목회자의 보수 전액 지출은 개교회의 도덕적 의무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합의한 보수를 계속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한 무능 또는 실패가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고려될 수 없다. 그리고 목회자가 실제로 시무한 임기 중에 거출된 금액 이상에 대해서나 그 외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가 책임질 수 없다.

개교회는 또한 목회자의 여비와 이사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38-8.3,

129.8-29.9)

115.5. 목회자의 보수는 그가 개교회에 공식적으로 봉사하는 첫 주일 전의 월요일부터 계산되기 시작한다.

116. 개교회가 조직되어 5년이 되지 않거나 전년도 교회 사무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35명 이하인 경우, 또는 연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정 보조를 받는 교회의 목회자는 관할 중앙감독 및 연회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회감독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208.1-8.3, 208.5, 208.16)

117. 목회자 선정에 관하여 제직회와 연회감독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제직회나 혹은 연회감독이 관할 중앙감독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중앙감독의 결정을 본 후에도 제직회나 연회감독은 중앙감독회에 그러한 결정을 상고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상고나 상고의 반증, 혹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논증은 관할 중앙감독 혹은 중앙감독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교회제직회나 연회감독은 상고나 상고의 반증 또는 관련된 논증의 사본을 개입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교회제직회 상고의 상세한 기록은 상고의 해결책 및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논증 그리고 투표한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만일 고려중에 있는 교역자가 사임하거나 목회 후보자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상고 진행은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회감독과 교회제직회는 목회자 선정을 다시 계속한다.

118. 인정전도사가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을 경우 그의 교역자 인정 허가가 갱신되지 않을 때에는 연회 폐회와 함께 그의 목회 청빙이 종료된다.

119. 목회자는 그의 임기 만료 전 최소한 30일 전에 제직회와 연회감독에게 서면 사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사임할 수 없고, 그리고 제직회와 연회감독의 서면 승인 없이는 사임할 수 없다. 사임이 수락되면 시무 종료를 쌍방 합의에 의한,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119.1. 사임하는 목회자는 제직회 서기의 협조를 얻어 현주소와 함께 정확한 교회 회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 명단은 마지막으로 출간된 연회회의록과 숫자상 일치하되 현 연도의 탈락 및 추가분을 명시해야 한다.

120. 교회제직회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인준으로, 회중은 공동목회자들(co-pastors)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 (1) 공동목회자들은 책임과 권위의 실천적 분배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회감독의 지휘 아래, 교회 제직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
- (2) 공동목회자들이 직분에 있어서 동등하나, 한 사람이 교회제직회에 의해서

공식적 의장으로 지명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법인의 대표와 제직회의 의장으로 일한다.

(3) 목회자 재심과정은 교리와 장정 122조 및 120.1조에 규정된 대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한 명의 공동목회자가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남아있는 공동목회자는 교회의 목사로 일하도록 연회감독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단, 60일 이내에 목회적 관계의 문제가 교회제직회에 상정되어야 하며 그 때 교회는 115조에 규정되어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9절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121. 해마다 목회자와 제직회는 교회와 목회자의 기대와 목표를 갱신하기 위한 계획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간에 양해되어진 목표와 계획과 목적들에 관한 서면기록 내용들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 서면기록은 연회감독에게 제출되어야한다.(115.2, 129.4)

121.1 목회자와 회중은 쌍방의 기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추구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화해 정신으로 성경의 원칙들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5-2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온 차이점을 해결하는 성경의 원칙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서로 대면하여 그 차이점을 이야기함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이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 그 차이점들의 해결을 위해 1명 내지 2명의 도움을 청하라.
3. 이 대면의 이야기와 소그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야만 교회제직회에 내놓으라.
4.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정신으로 차이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10절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갱신

122. 교회와 목회자 정기 갱신 : 교회제직회는 목회 시무 만 2년이 되기 전 60일 이내에 연회감독, 혹은 연회감독이 임명한 안수목사나 평신도와 회의를 갖고 그 후에는 매 4년마다 회의를 가져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재심사해야 한다. 연회감독, 혹은 연회감독이 임명한 안수목사나 평신도는 교회제직회와 가질 재심 회의 일정과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재심 회의 일정은 목회자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심 회의는 실제 회의(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제직회) 때 실시된다. 연회감독의 재량으로 재심의 한 부분이 목회자의 부재 속에 진행되어질 수 있다. 목회자의 배우자가

제직회의 회원인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재심에 참가할 수 없다.

이 정기 재심을 위한 교회제직회의와 모임의 취지를 설명해 줄 공식적인 광고 인쇄물이 교회제직회와 연회감독이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재심을 위해 만나기 전 주일에 회중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재심 회의에서 목회 지속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다. 회의의 근본 취지는 공식적인 교회제직회의 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만일 교회제직회가 교회 회원들에게 목회 지속 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회 청빙은 지속된다.

교회제직회는 투표하여 목회자 청빙 지속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교회 회원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제직회는 무기명투표로 행해지며 제직회 모든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만일 교회제직회가 교회 회원들에게 목회 지속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투표했을 경우에는 투표 결의 후 30일 이내에 이 목적을 위해 정식으로 소집되어 실시된 교회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문제의 표제는 “현재 목회 청빙을 계속할 것인가” 라고 제출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행하여지며 유권자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요한다. 만일 교회 정회원들이 현재의 목회 청빙에 대해 찬성 투표했을 경우, 그러한 투표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목회직을 계속한다. 그 반대일 경우 목회직은 투표 이후 30일 내지 180일 이내에 연회감독에 의해 정해진 날로 종료된다. 정기재심의 일부로서, 선교, 비전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성취하기 위한 발전에 관해 개교회 목회자와 교회제직회가 연회감독을 위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122.1. 계표 위원회 위원장은 공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목회 재심 투표 결과를 알려야 한다.

123. 교회와 목회자 특별재심 : 정기 재심 중간에 개교회제직회는 연회감독, 혹은 연회감독이 임명한 의장으로 봉사할 장로 목사의 입회하에 선출된 전체 교회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서만 공식 특별 재심회의가 된다.

연회감독과 교회제직회가 목회직 지속 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교회에 제출해야 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을 경우, 그 나라의 민법이 달리 요구하는 외에는 연회감독과 교회제직회는 교회제직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해 그 문제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 문제의 표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된다: ??현재의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계속될 것인가??? 교회와 목회자 특별재심회의는 회의 때 실시된다.(113.14) 그 나라의 민법이 달리

요구하는 외에는 만일 투표 연령에 달한 정회원들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교회가 목회자의 현재 목회직을 지속하도록 결정했을 경우, 그러한 투표가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목회직의 임기를 지속한다.

그러나 교회가 현재 목회직 지속을 위한 투표에 의해 부결을 내렸을 경우 목회직 임기는 투표 이후 180일 이내에 연회감독이 정한 날로 종료된다.(122-22.1)

124. 개교회 위기 상태 : 개교회가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연회감독이 알았을 경우,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연회실행위원회의 2명의 장로목사, 2명의 평신도와, 의장으로 시무할 연회감독으로 구성된다.(208.3)

124.1.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판단과 관할 중앙감독의 인준으로 개교회가 재정이나 윤리 상의 문제, 혹은 다른 어떤 문제로 위기 상태에 처해있고 이 위기 상태가 교회의 안정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여겨질 경우,

(a) 목회 지속 여부에 관련한 문제가 연회감독 혹은 연회감독이 임명한 연회실행위원회 위원에 의해 마치 교회제직회가 장정 122조항에 의하여 투표에 부친 것처럼 개교회 회중에게 제출할 수 있고, 또는

(b) 목회자, 그리고 교회제직회의 임기는 연회실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얻어 종료될 수 있다. 연회감독은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명된 교회의 제직회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절 제직회

127. 회원 : 모든 개교회 제직회는 목회자, 주일학교 교장,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만일 회장이 목회자의 배우자로 제직회 일을 사양하면 부회장이 제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회장이 목회자의 배우자로서 제직회 일을 하기로 선택하면, 그 또는 그녀는 목회자의 재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장로, 집사, 그리고 교회 사무총회에서 제직회의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주일학교부 부원들로 구성한다. 그리고 교회제직회의 정회원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연회가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안수목사와 인정전도사, 그리고 개교회 유급직원은 개교회 제직회의 일원으로 일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개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치리 정책 및 실천 사항들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규칙적인 예배 출석과 십일조 및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39, 113.9-13.12, 137, 141, 145, 146, 151, 153.2, 160.4)

128. 회의 : 교회제직회는 회계연도 초에 업무를 시작하고 매월 정기 제직회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회의는 목회자나 연회감독 혹은 목회자의 승인 하에 교회제직회 서기에 의해 소집되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연회감독의 동의하에 교회제직회 서기가 소집할 수도 있다. 사무총회와 회계연도 시작 사이에는 새로 선출된 제직회는 기구 조직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규정에 따라 교회제직회 서기와 재무 및 자신들에게 선출할 권한이 있는 다른 직책의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129.19-130)

129. 업무 : 교회제직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29.1.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목회자와 협조하여 교회의 이익과 사업을 돌보는 일.(156, 415)

129.2. 연회감독과 협의하여 목회자로 적격한 안수목사나 인정전도사를 교회에 추천하는 일. 단, 이러한 추천은 연회감독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115, 208.9)

129.3. 새로 부임하는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목표와 기대에 대한 서면 성명서를 작성하는 일.(115.2)

129.4. 해마다 1회씩 교회의 기대와 목표, 계획 및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갱신하기 위해 목회자와 함께 계획회의를 갖는 일.(121)

129.5. 개교회에 의하여 목회자가 정식으로 청빙될 때까지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임시 목회자를 주선하는 일(209, 421)

129.6. 수입과 지출 계획에 있어서 교회와 모든 보조기관들,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연간 예산안을 초안하고 채택하는 일.

129.7. 제직회의 다음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분과위원회를 임명하는 일.

(1) 교회 예산에 관해 상황을 파악하는 일

(2) 교회의 재정 상황 및 사업에 관하여 제직회에 보고하는 일.

129.8. 목회자가 받는 보수를 결정하는 일과 최소한 1년에 한 번 목회자의 보수를 검토하는 일.(115.4, 122)

129.9. 목회자, 임시 목회자, 혹은 기타 교회 유급직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목회자와 직원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함으로써 계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열기를 복돋우는 일.(115.4)

129.10. 교회제직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건강한 목회 사역과 평생 교육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회감독의 자문을 얻어, 한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시작하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제공해야 한다. 안식년의 때와 기간은 목회자와 교회제직회와 연회 감독과 상의하여 결정된다. 목회자의 봉급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불되어야 하며 교회제직회는 안식년 기간 동안 강단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안식년휴가정책의 설립과 실행을 위하여 개교회 회중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적당한 부서에 의해 과제들이 개발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129.11. 부흥사에게 줄 보수와 주택비 보조를 결정하는 일과, 그리고 초청되었을 때에 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통지하는 일.

129.12. 제직회의 결정으로 목회자가,

(1) 개교회의 전도인으로, 혹은

(2) 평신도 전도인으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일과 갱신하는 일.(402.3, 426.1, 426.3)

129.13. 제직회의 결정으로 장정이 요구 시 목회자의 추천에 따라 개교회 영역 밖의 사역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 및 교역자의 후보자를 포함하여 어떤 특정한 사역의 임명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회에 추천하는 일.

129.14. 목회자의 추천이 있을 때에 제직회의 결정으로 연회 인정전도사 임명이나 갱신을 지망하는 사람을 연회에 추천하는 일.(426.5, 427.1)

129.15. 목회자의 추천을 얻어 제직회의 결정으로 406조와 일치하여 연회 사역목사의 자격 갱신을 연회에 추천하는 일.

129.16. 주일학교부의 추천과 목회자의 승인 하에 아동부 간사, 그리고 장년부 간사를 선출하는 일.(145.6)

129.17.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에 따라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에서 선출된 나사렛국제청년회장을 승인하는 일.

129.18. 나사렛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교장을 승인하는 일.(152, 160.1, 208.12, 413.18)

129.19. 장정 39조에 명확히 밝힌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교회의 회원 중에서, 교회 회기 연도 말까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얻을 때까지 시무할 서기를 첫 번째 모임에서 선출하는 일.(39, 113.6, 128, 135.1-35.7)

129.20. 장정 39조에 명확히 밝힌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교회의 회원 중에서, 첫 번째 모임에서 교회 회기 연도 말까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얻을 때까지 시무할 재무를 선출하는 일. 목회자의 직계 가족의 구성원(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부모)은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인준 없이 개교회의 재무로 일할 수 없다.(128, 136.1-36.6)

129.21.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과 모든 보조기관들을 포함하여 개교회의 모든 금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게 하는 일과 그것을 정기 월례 회의와 개교회의 사무총회에 보고하는 일.(136.3-36.5)

129.22. 개교회 수입의 모든 금전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2명 이상으로 된 위원을 임명하는 일.

129.23. 개교회 재무의 재정 장부와 나사렛국제청년회와 주일학교부와 나사렛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과 기타 개교회의 재정 장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감사할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일. 목회자는 개교회의 모든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129.24. 3명 이상의 전도 및 교회 회원권 위원회를 임명하는 일.(110)

129.25. 적당하다면 회원 75명 이하의 개교회에서 주일학교부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일.(145)

129.26. 교회 회원에 대하여 서면 고소가 제출되었을 때 5명으로 된 재판 위원회를 임명하는 일.(504)

129.27. 연회감독의 서면 승인과 목회자의 추천을 얻어 개교회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선출하는 일.(151, 152, 160-60.1, 208.12)

129.28. 매년 연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개교회 전도인 혹은 인정전도사를 무보수 협동 목회자로 선출하는 일.

129.29. 직권 상 목회자를 의장으로 하는 개교회의 장기 계획 수립 위원회를 지명하는 일.

129.30. 교회 내,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남용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일.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교회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30. 개교회 제직회는 중앙총회에서 채택되고 연회에서 승인한 계획을 받아들여 목회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금과 연회활동기금을 거출하고 정규적으로 상납한다.(317.12, 334.8)

131. 청지기직의 의미. 장정 38-8. 4 참조

132. 새로 조직된 개교회에서는 주일학교부가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교회제직회가 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한다.(145)

132.1. 새로 조직된 교회의 제직회와 목회자는 언제 주일학교 교장을 선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129.25, 145, 146)

133. 교회제직회는 교인이 비활동적 회원이라고 선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비활동적인 그 회원의 이름을 회원 명부에서 제명할 수 있다.(109-9.4, 112.3)

134. 교회제직회는 개교회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자격 인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35. 교회 서기 : 교회제직회의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5.1. 모든 교회회의 또는 제직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충실히 보관하고 기타 서기직에 관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한다.(119.1, 129.19)

135.2. 교회 사무총회에서 교세 보고를 포함하여 교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113.8)

135.3. 등기, 인쇄물, 대여증, 교회 회원 명부, 교회 연혁, 교회제직회 회의록, 재단 법인 서류를 포함하여 개교회에 관한 공식 서류와 기록, 그리고 법적 서류 등이 화재 방지와 안전 보존을 위해 개교회 구내에 신성하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 가능하면 은행이나 유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보관소에 맡기도록 한다. 그러한 일의 방도는 항상 목회자와 교회 재무와 상의해야 하며 그러한 일의 책임은 신속하게 공식 교회 서기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35.4. 사무총회나 특별총회의 서기가 되며 이 사무총회 또는 특별총회의 회의록이나 기타 서류의 보관자가 된다.(113.6)

135.5. 목회자 청빙, 목회자 청빙 지속 여부 등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연회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며 이 보고서는 투표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135.6. 개교회에 목회자가 없을 경우 모든 교회회의나, 제직회의 회의록을 복사하여 회의 후 3일 이내에 연회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135.7. 목회자와 함께 부동산, 저당증서, 저당권 양도, 계약서, 그리고 별도로

장정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교회의 기타 법적 서류를 서명한다.(102.3, 103-4.2)

136. 교회 재무 : 교회제직회 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6.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교회의 금전을 수납하고 교회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한다.(129.21)

136.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연회부담금을 연회재무에게, 해당 사무국을 통하여 중앙총회 부담금을 중앙 재무에게 송금한다.(413.17)

136.3. 모든 금전 출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129.21)

136.4. 교회 제직회에 매월 상세한 재정 결산 보고를 한다.(129.21)

136.5. 교회 사무총회에 연간 재정 보고를 한다.(113.8, 129.21)

136.6. 재무 직분이 정지될 때에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교회제직회에 인도해야 한다.

제12절 집사

137. 교회 집사는 3명 이상 13명 이하여야 한다. 집사는 교회 회원 중에서 사무총회 또는 특별총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다음 교회 연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봉사한다.(39, 113.7, 113.10, 127)

138. 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8.1. 별다른 직책이 주어지지 않는 한 구제활동이나 전도, 그리고 교회 확장 등과 같은 개척교회와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책임을 띠고 교회성장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138.2.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후원한다. 성경적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은 실행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행 6 : 1-3, 롬 12 : 6-8) 그러므로 집사는 봉사, 관리, 격려, 공훈, 심방, 그리고 기타 사역을 이행하는데 시간을 바치고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138.3. 교회제직회의 결정에 의해 110-10.8에 약속된 대로 전도 및 교회 회원권 위원회로서 봉사한다.

138.4. 모든 교회 회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조직화한다. 특별히 인접한 단체의 다른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한 사역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138.5. 지역사회에 있어서 기독교 활동 및 봉사 단체와 접촉하여 봉사한다.

138.6. 개교회의 공중 예배와 그리스도인 육성을 위해 목회자를 돕는다.

138.7. 성찬식의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며 목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분찬의 업무를 담당하여 목회자를 돕는다.(34.5, 413.11)

139. 집사 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충원할 수 있다.(113.14)

140. 집사들은 청지기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회자는 물론 중앙재무의 청지기직 사역부와 협력하여 개교회의 생명자원의 청지기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38-8.4)

제13절 장로*

141. 교회의 장로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교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 다음 교회 회기년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이 주어질 때까지 봉사한다.(39, 113.10, 127)

142. 교회 장로 선출에 관한 민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히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113.4)

142.1. 민법상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로는 사무총회나 그 목적을 위해 정식으로 소집된 특별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113.7, 113.10)

143. 장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43.1. 교회가 법인 조직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또는 민법에 정해 있을 경우,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연회감독이나 연회실행위원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장로는 교회 재산 취급에 관한 102-4.4의 규정에 따라 교회의 재산권을 유지 관리한다.

143.2. 교회제직회의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교회의 시설 계획과 재정 계획을 지도한다.

144. 장로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충원할 수 있다.(113.14)

*“ 장로” 명칭에 관한 중앙감독회의 승인.

장정의 명칭인 ??이사??란 명칭보다는 ??장로??란 명칭을 사용하자는 한국 나사렛성결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중앙감독회는 신중한 협의를 한 후에, 몇 가지 연회의 조건과 결의를 전제로 승인하였는데, 1977년 3월에 중부연회와 남부연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제14절 주일학교부

145. 각 개교회는 주일학교부, 또는 교육위원회를 교회제직회의 한 분과로 교회 사무총회에서 세워 교회의 기독교 교육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회원 75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교회제직회가 그 책임을 이행한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직책상의 위원들인 주일학교 교장(146), 목회자, 국제선교회장, 청년회장, 아동부장, 장년부장들과 교회 사무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에 의해 피선된 3명 내지 9명의 위원들이다. 모든 위원들은 엇갈리게 2년을 임기로 선출되고 다음 교회 회기년도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이 주어질 때까지 봉사한다. 피선된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총원할 수 있다. 만일 교회가 제직회의 한 분과로 교육위원회를 선정한 경우, 교회는 이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적어도 장정이 규정되고 있는 집사와 장로의 최소 인원을 따라야 한다. 직책상 위원들은 제직회원이 아닐지라도 위원회 위원이 된다.(137, 141)

우리는 개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도록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치리 정책 및 실천 사항들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규칙적인 예배 출석과 십일조 및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39)

주일학교부 또는 교육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45.1. 개교회 기독교 교육의 사역을 계획, 조직, 추진 및 실시하는 일. 이 일은 목회자의 직접적인 보살핌과 주일학교 교장의 지도 및 개교회 제직회의 방침에 따라 행해지되 중앙위원회에 의해 설정되고 중앙 본부 주일학교 사역 및 나사렛국제청년 위원회와, 장년부, 청년회, 아동부의 각 사무국에 의해 추진된 목표와 표준에 일치해야 한다. 또한 이 일에 포함되는 것은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각종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중심적인 사역들이다. 주일학교는 전도하는 일과 함께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 할 성경공부 및 교리공부 등을 제공한다. 탁아소/학교들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과 수련회나 여름(겨울)성경학교, 독신자를 위한 성경공부반과 같은 연간 그리고 특별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해가 활성화되고 신자들의 삶 속에 융화되는 기회를 제공한다.(413.23)

145.2.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최다의 불신자들을 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 자세, 습관을 계발시키며, 기독교 가정을 형성하도록 돕고 신자들을 준비시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고, 그들을 양성하여 적절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하게 한다.

145.3. 성경 공부와 교리적 해석의 기본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나사렛성결교회의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활동의 커리큘럼 교재를 결정하는 일.

145.4. 주일학교 준칙에 일치하여 개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 및 조직하는 일.(812)

145.5. 주일학교 교장 선거 후보로 1명 또는 그 이상을 목회자의 승인을 받아 교회 사무총회에 추천하는 일. 단 후보자 추천회의에는 현직 주일학교 교장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

145.6. 목회자의 승인을 얻어 아동부장 및 장년부장으로 일할 사람들을 교회제직회에 추천하는 일.

145.7.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장의 승인 하에 아동부 및 장년부장들의 추천을 받아 아동부 및 장년부 임원들을 선출하는 일.

145.8. 모든 연령층의 주일학교 총괄자들, 교사들, 그리고 직원들을 선출하는 일.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 모범적이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정책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사렛국제청년회장과 아동부와 장년부의 부장에 의해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받은 사람은 목회자와 주일 학교 교장에 의해 인준되어야 한다.

145.9. 주일학교부 사역자들과 교회 전체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직하고 추진하며 감독하는 개교회 평신도 연속 교육 책임자를 선출하는 일. 주일학교부는 평신도 연속 교육 책임자를 그의 직권 상 그 부서의 부원으로 지명할 권리가 있다.

145.10. 정기 회의를 소집하는 일과, 교회년도(114)와 같은 주일학교부 연도 초기에 서기는 물론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임원들을 선출하여 체계를 세워 나가는 일. 목회자 또는 주일학교 교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46. 주일학교 교장 : 교회 사무총회에서는 참석하여 투표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의하여 1년간 시무, 또는 그의 후임자가 선임할 때까지 시무할 주일학교 교장을 선출한다(39). 주일학교부는 목회자의 승인을 얻어 현직 주일학교 교장을 ??찬??, ??반??의 신임 투표에 의해 재선에 부칠 수 있다. 주일학교 교장의 결원은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총원되어야 한다.(113.10, 145.5) 신임 주일학교 교장은 직책상 연회 대의원(201)과, 개교회 제직회(127) 및 주일학교부(145)의 회원이 된다.

우리는 개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치리 정책 및 실천 사항들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규칙적인 예배 출석과 십일조 및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39)

주일학교 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46.1. 개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활동을 총괄하는 일.

146.2. 주일학교 준칙(812)에 일치하여 주일학교를 관장하는 일.

146.3. 등록 및 출석 증가와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

146.4. 주일학교부 또는 교육위원회(201)와 교회제직회의 정기회의를 사회하고 주일학교부를 지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

146.5. 교회제직회에 주일학교부의 연간 예산을 제출하는 일.

146.6. 교회제직회에 월례 보고하는 일과 교회 사무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

147. 아동/장년 협의회와 부장들

주일학교부를 위한 가장 좋은 조직은 아동, 청년, 장년의 연령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다. 각 연령 그룹에는 그 일을 조직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질 협의회를 둔다. 그러한 협의회는 해당 연령 그룹의 부장, 주일학교의 대표들, 그리고 교회가 그 연령 그룹을 위해 장려하는 다른 부서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해당 연령 그룹 부장과 협의하여 그 연령 그룹의 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달성을 위한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아동부 및 장년부 협의회는 모든 활동은 그룹부장과 주일학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령 그룹부장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7.1. 그(녀)가 지도하는 연령 그룹협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협의회로 하여금 각 연령 그룹 내의 사람들을 위한 주일학교 활동 전체를 조직, 추진, 조정하도록 인도하는 일.

147.2. 주일학교부는 제직회와 협력하여 개교회의 아동, 청년 혹은 장년의 등록 및 출석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주일학교의 해당 부서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을 함.

147.3. 그(녀)가 지도하는 연령 그룹을 위한 주일, 탁아소/학교들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연례 및 특별 보충활동과 전도 및 친교 활동을 위하여 지도력을 나타내는 일.

147.4. 그(녀)에게 맡겨진 연령 그룹의 여러 활동을 위해 주일학교 감독자,

교사, 그리고 임원들을 포함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주일학교부에 추천하는 일.(39) 추천된 자들은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7.5. 보충 커리큘럼을 사용하기 전에 주일학교부의 승인을 얻는 일.

147.6. 주일학교부와 평신도 연속 교육부장과 협력하여 연령 그룹의 사역자들을 위해 지도자 양성교육을 제공하는 일.

147.7. 주일학교부 및 제직회, 또는 그 어느 한 쪽에 연간 예산을 청구하며 예산 승인에 일치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일.

147.8. 개교회에서 그(녀)의 지도하에 움직이는 여러 연령 그룹의 활동에 대한 모든 보고를 접수하는 일. 주일학교의 등록, 출석, 그리고 사역 활동에 대한 보고는 매월 주일학교교장에게 제출한다.

147.9. 개교회 주일학교의 전반적인 사역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3개월마다 그(녀)의 연령 그룹 활동을 주일학교부에 제출하는 일.

148. 아동부 협의회 : 아동부 협의회는 출생으로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개교회 주일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데 그 책임을 진다. 협의회는 최소한 1명의 주일학교 대표자와 개교회가 제공하는 다른 어떤 아동 활동의 책임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테면 어린이 교회학교, 수련회, 방학 성경학교, 성경퀴즈대회, 선교 교육, 영아반,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의 책임자들을 말한다. 협의회의 크기는 개교회 어린이의 필요가 파악되고 지도자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기관의 수요에 의해 다양하게 정해진다.

아동부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8.1. 장정 147조 1항에서부터 147조 9항에 명시한 모든 연령 그룹의 부장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하는 일.

148.2.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실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아동 선교 교육 책임자(부장)를 임명하는 일. 임명받은 자는 나사렛국제선교회와 아동부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이 보직을 위한 피추천인은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9. 장년부 협의회 : 장년부 협의회는 장년을 위한 개교회 주일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데에 그 책임을 진다. 장년부 협의회는 최소 1명의 주일학교 대표자와 개교회에서 제공한 다른 어떤 활동의 책임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테면 결혼 및 가정생활반, 노년반, 독신장년반, 소그룹 성경연구반, 평신도 수양회, 여자 성인반, 남자 성인반,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의 책임자들을 말한다. 협의회의 크기는

개교회 장년의 필요가 파악되고 지도자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 기관의 수호에 의해 다양하게 정해진다.

장년부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49.1. 장정 147조 1항에서부터 147조 9항에 명시한 모든 연령 그룹의 부장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하는 일.

제15절 나사렛국제청년회/NYI 협의회

150. 나사렛국제청년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도움으로 개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개교회 그룹은 개교회제직회의 권한과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칙 아래 조직된다.

150.1.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의 계획에 따라 조직하는데 그것은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 및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일치하여, 개교회 청년사역 필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150.2.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12살부터 대학생, 청년을 위해 계획되고 조직된 사역에 책임이 있고, 개교회 청년사역을 위해 비전을 가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에 의해 조정된다. 주일학교에 속한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모든 일은 주일학교부장과 주일학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0.3.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개교회 필요에 따라 회장과 다른 임원들-청년 대표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개교회 목회자나 청년담당목회자-로 구성된다.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 임원은 그들이 사역하는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협의회는 교회제직회에 책임을 진다.

150.4.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과 협의회 임원은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또한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의 회원이 되는 청년회 회원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이 될 수 있다.

151. 나사렛국제청년회장 :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인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원들에 의해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다. 지명된 사람은 개교회 목회자와 교회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직책상 교회제직회(127)와 주일학교부(145), 연회(201)의 회원이 된다. ??회장??이라는 용어가 특정 문화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협의회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투표해 사용할 수 있다.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51.1. 개교회 내의 청년 사역의 발전/부흥을 돕기 위해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의 의장을 맡는 일.

151.2. 나사렛국제선교회의 회장과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는 일.

151.3. 147조 1항에서부터 147조 9항에 명시한 모든 연령 그룹 부장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일.

151.4. 매월 교회제직회와 개교회 사무총회에 보고하는 일.(113.8, 127)

151.5. 청년 담당 목회자가 고용될 때, 담임목회자는 교회제직회와 청년회 협의회와 상의하여 청년 담당 목회자에게 나사렛국제청년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청년 담당 목회자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에게 부여된 의무 중 약간을 수행한다. 그러나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개교회 청년 사역의 대표가 되는 등 중요하다. 담임목회자, 청년담당 목회자,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어떻게 그들이 함께 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지와 그들의 지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청년 담당 목회자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으로 시무할 수 없다.(160.4)

제16절 나사렛 탁아소/학교들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152. 나사렛 탁아소/학교들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은 연회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회제직회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국제본부 어린이부/주일학교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 학교장과 학교이사회는 개교회 제직회에 책임을 지며, 연례보고를 해야 한다.(129.18, 208.12-8.13, 222.11, 413.23, 414)

152.1. 폐교: 개교회가 탁아소/학교(들)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운영을 중지할 필요를 느끼면,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회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와 상의하고 난 후에야 폐교할 수 있다.

제17절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153. 중앙나사렛국제선교대회와 중앙총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에 따라서,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교회제직회의 공인으로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를 어느 연령별 단위로라도 조직할 수 있다.(811)

153.1. 개교회 국제선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 부분으로 담임목회자와 교회제직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414)

153.2.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은 담임목회자에 의해 임명된 3명에서 7명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목회자는 이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 추천위원회는 교회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 후보자를 1명 또는 그 이상을 추천한다. 회장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회장은 그 국제선교회가 속한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는 직책상 교회제직회의 일원이며, 만일 회장이 목회자의 배우자일 경우 부회장이 대신하여 제직회원이 될 수 있다. 그가 봉사하는 임기 중에 개최하는 연회의 대의원이 된다. 회장은 교회 사무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113.8, 114, 122, 127, 201)

154. 개교회 국제선교회에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체 활동을 위해 모든 기금은 개교회의 세계선교기금으로 충당한다. 단, 십일조위원회에 의해서 인준된 특별한 선교계획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154.1. 그 해의 세계선교기금을 완납한 후에 세계 선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거둘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은 ??인준된 선교 특별헌금??이라 한다.

155. 중앙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거둔다.

155.1. 세계선교기금 또는 중앙 활동을 위해 바친 지정 헌금

155.2.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의 특별 헌금.

155.3. 이상의 기금은 개교회나 연회의 경비 혹은 자선 목적으로 조금도 사용할 수 없다.

제18절 재정모금 금지

156. 개교회나 그 임원 또는 회원이 그 교회의 경제적 필요나 특별 행사를 위해 다른 교회 임원 또는 회원에게 모금을 간청하거나 재정적 원조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연회 안에 있는 개교회나 회원에게 모금을 간청할 수 있다.

157. 중앙 위원회 또는 중앙 위원회의 어느 분과 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은 개교회의 회중이나 회원으로부터 세계선교기금 외에 선교사를 위하거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간청할 수 없다.

제19절 교회 명칭 사용

158. 나사렛성결교회의 명칭 즉, 어느 개교회 혹은 나사렛성결교회와 부속되어 있거나 결연되어 있는 법인 혹은 기관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의 일부는 사전에 나사렛성결교회 중앙 위원회나 중앙감독회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명이든 그 이상이든 어떤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이라도, 그리고 어떤 법인 또는 조합, 조직, 연맹, 그룹 혹은 다른 어떤 단체라도 상업적, 사회적, 교육적, 자선적 혹은 그 외의 다른 성격을 띤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단, 본 규정은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따라 인정된 공식 나사렛성결교회의 제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절 교회 후원 단체

159. 연회 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와 중앙감독회의 명확한 서면 동의 없이 개교회, 개교회제직회, 연회소속의 법인, 연회의 위원회 또는 그 어느 것에 소속된 2명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개인적 또는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음의 법인, 연맹 조합, 그룹 혹은 기타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일원이 될 수 없다. 즉, 상업적, 사회적, 교육적, 자선적 또는 기타의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주로 또는 전적으로 나사렛성결교회의 유익 또는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후원하거나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그 단체에 참여하게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객, 거주자, 의뢰인, 회원 또는 회주가 되도록 권유하고 후원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일원이 될 수 없다.

제22절 개교회 유급직원

160. 교회에서 시간제 혹은 전임으로 어떤 중요한 평신도 봉사를 위해 자신들을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의 직무를 인정하지만 교회란 기본적으로 자발적 집단이므로 능력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무과 특권으로 하고 있다. 개교회나 개교회의 어떤 부속 또는 관계기관에 있어서 교회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교역자 또는 평신도 유급직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자유 봉사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지불항목 예산을 포함하여 교회 재원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허락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위한 청원은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서면 제출해야 한다.(129.27)

160.1.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장을 포함하는 모든 개교회의 특수사역에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소명적 사역의 관계로 들어간

유급직원들은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받아 교회제직회에서 선출한다. 모든 추천은 연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회감독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160.4, 208.12)

160.2. 개교회 직원의 고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사전 서면 승인과 교회제직회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만일 임기 종료 이전(교회 회계연도의 종료)에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임목회자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 그리고 교회제직회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담임 목사는 교회 각 직원의 활동에 대해 매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제직회와 상의하여 직원 개발 및 활동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다. 해고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고용 임기의 만료가 되기 최소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129.27)

160.3. 개교회 직원의 임무와 봉사 내용은 담임목회자가 결정하고 감독한다. 각 교회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한지 30일 이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료한 활동 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60.4. 교회의 유급직원은 그 교회의 제직으로 선출될 수 없다. 만일 교회제직회 회원이 교회의 유급직원이 되어야만 할 경우 그는 제직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160.5. 목회자가 사임할 때, 개교회의 통일성과 안정성 그리고 진행 중이던 사역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목회자가 사임하거나 은퇴할 때, 개교회 제직회는 연회감독에게 협동목사가 사역을 지속할 것을 승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승인되면, 새로운 목회자가 취임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목사가 장정 160에 근거하여 다음 해를 위해 자신의 유급보조자를 임명할 때까지 90일간 효력을 가진다.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책임자들은 신입 목회자가 부임하는 해의 학교 연도 말까지 유효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교회의 어떤 부속 또는 관계 기관의 최고 실무 임원은 그의 실무 계약 기간 중에 신입 목회자가 부임 시 시무 계약 기간 말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 부임한 목회자는 이전에 고용된 직원들을 재고용하도록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160.6. 목회자가 변경 시 직원들에 대한 160.5의 결과와 관련하여 교회 직원과 제직회의 회중과 교섭하는 것이 연회감독의 책임이다.(208.12)

160.7. 장정 100.1에 해당하는 회중의 담임 목회자는 교회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60.8. 유급직원으로 시무하는 이는 어떤 자라도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그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칭명 받을 자격이 없다.(115)

제2장 연회

제1절 구역 및 명칭

200. 중앙총회는 교회 회원을 연회로 나누어 조직한다. 연회의 명칭 및 구역은 중앙총회나 해당 연회가 결정할 수 있으나 관할 중앙감독의 최종승인이 있어야 한다.(30)

200.1. 새 연회 창립 : 나사렛성결교회의 새 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창립된다 :

1. 한 연회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연회의 3분의 2 득표를 요구함)
2. 둘 이상의 연회가 연합하여 다른 형태의 연회로 되는 경우
3. 현존하는 연회 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연회가 설립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연회가 통합되는 경우
5. 새 연회를 설립하기 위한 추천은 관할 중앙감독(들)에게 상정되어야 한다.

연회 감독(들)과 연회 실행위원회(들) 또는 국가위원회(들)는 이 문제를 승인하고, 관할 중앙감독(들)과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얻어 투표를 위해 연회/연회들에 이 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30, 200, 200.4)

200.2. 나사렛성결교회의 선교 사업은 개척 지역으로 시작하여 결국 새 연회를 설립하고 연회 구역을 설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다음 중 가능한 한 빨리 3단계 연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1단계- 1단계의 연회는 전략적인 발전과 복음 전도를 위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지구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 설립된다. 이를 위한 요청은, 관할 중앙감독(들)과 중앙감독회의 최종 승인을 위해, 지구장에 의해 제기되거나 또는 특정 연회가 지구실행위원회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연회의 설립을 지원하는 연회감독이나 연회 실행위원회에 의해 제기된다.(200.1, #5) 세계선교/전도국과 관련이 있는 지구들 내의 자국 선교 연회의 감독은 지구장이 세계선교/전도국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 중앙감독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해당 지구에서는 자국 선교 연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기타 지구들에서는 관할 중앙감독이 자국 선교 연회의 설립을 후원하는 연회의 감독들과 연회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임명한다.(204.2)

지역전략책임자와 지구장의 판단에 세계 선교부와 관련된 지구에 1단계 연회가 재정적 위기나 도덕적 위기나 또 다른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연회의 안정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될 때, 지구장은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 하에 세계선교/전도국장과 상의하여 연회가 위기라고 선언한다.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과 함께 지구장은 다음해 정기적으로 계획된 총회 때까지, 현재 실행위원회 대신 연회의 관리를 위해 잠정적인 실행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지구장과 지구 실행위원회가 없는 지구의 연회에 대해서는 중앙감독회와 상의한 후 관할 중앙감독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2단계- 2단계 연회의 설립은 적절한 수의 완전한 조직교회와 안수목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연회의 하부 구조가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다. 그 설립 절차는 관할 중앙감독이 선교국 담당자와 지구장, 그리고 해당 연회감독의 임명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중앙감독회에 추천함으로써 이행된다. 연회감독은 선출될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다. 2단계 연회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은 최소한 10개의 조직교회와 500명의 정회원, 그리고 5명의 안수목사 등이다. 설립 당시 최소한 연회 행정비용의 50%는 연회의 활동 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연회 실행위원회나 국가위원회는 관할 중앙감독에게 이 같은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204.2) 지역전략책임자와 지구장의 판단에 세계 선교부와 관련된 지구에 2단계 연회가 재정적 위기나 도덕적 위기나 또 다른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연회의 안정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될 때, 지구장은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 하에 세계선교/전도국장과 상의하여 연회가 위기라고 선언한다.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과 함께 지구장은 다음해 정기적으로 계획된 총회 때까지, 현재 실행위원회 대신 연회의 관리를 위해 잠정적인 실행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지구장과 지구 실행위원회가 없는 지구의 연회에 대해서는 중앙감독회와 상의한 후 관할 중앙감독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3단계- 3단계의 연회는 적절한 수의 완전한 조직교회와 안수목사, 그리고 정회원들이 갖추어진 경우 그 선포가 가능하다. 지도력과 하부 구조, 예산 집행의 책임, 그리고 교리적 건전성 등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선포는 관할 중앙감독이 연회감독의 임명에 참여한 부서장과 지구장과 다른 개인들과 위원회들의 자문을 얻어 행해진 추천을 바탕으로 중앙감독회에 의해 이루어진다.(203.13) 연회감독은 장정 규칙에 의해서 선출된다. 3단계 연회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은 최소한 20개의 조직교회와 1,000명의 정회원, 그리고

10명의 안수목사 등이다. 연회 실행위원회나 국가위원회는 관할 중앙감독에게 이 같은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3단계 연회는 연회 행정과 관련하여 100% 자력 충원해야 한다. 연회감독은 장정 규칙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된다. 3단계의 연회 역시 소속 지구의 하급 기관으로서, 관할 중앙감독이 지구장을 통해 연회 운영에 필요한 의사 전달 및 치리방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할 중앙감독의 판단에 연회가 재정적 위기나 도덕적 위기나 또 다른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연회의 안정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될 때, 중앙감독회와 중앙총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연회가 위기라고 선언될 수 있다. 관할 중앙감독은 중앙감독회와 중앙총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회감독을 제명한다; (2) 현재의 실행위원회 대신 연회의 관리를 위해 잠정적인 실행위원회를 임명한다; (3) 연회의 건전성과 선교 효과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그와 같은 중재들을 시도할 수 있다.(307.8, 322)

200.3. 연회 구분 및 연회 구역 변경 기준 : 연회 발전이나 연회 구역 변경을 위한 일단의 제안은 지구 사무국이나 국가위원회, 또는 연회 실행위원회에서 제기되어 관할 중앙감독에게 제출된다. 그 같은 제안에는 다음 내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1. 논의 중인 신규 연회가 연회의 설립을 정당화할만한 인구 중심지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
2. 연회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교통 및 통신 시설은 구비되었는지의 여부
3. 연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줄 자격 있는 안수목사 및 평신도 지도자의 숫자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의 여부
4. 후원 연회들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3단계 연회 형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연회사역기금, 수입, 충분한 수의 정회원 및 조직교회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200.4. 통합 : 두 개나 그 이상의 3단계 연회는 각 연회 총회의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통합할 수 있다. 이 통합은 각 연회의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연회가 소속된 관할 중앙감독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합과 그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가 결정한 장소와 시기에 결말을 지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진 조직은 각 연회의 재산과 부채를 합친다.(200.1) 1단계 연회와 2단계 연회는 장정 200.2에 요약된 새 연회 형성을 위한 규정에 따라 통합될 수 있다.

200.5. 통합에 포함된 연회들이 통합에 실패하거나 연회 통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회 실행위원회의 3분의2 찬성투표에 의해 요구된다면 다음 해 중앙총회에 통합 실행을 위해 추천할 수 있다.

200.6. 연회감독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돕기 위해 그 지방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들이나 지방회장들을 활용할 수 있다:

- 1. 그 지역이나 선교지의 목회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동지애를 구축하는 일.**
- 2. 목회 발전, 교회 성장, 전도, 교회의 개혁과 재개혁을 위한 격려와 전략화를 통해 그리스도 사역을 장려하는 일.**
- 3. 연회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한 사역들을 실행하는 일.**
- 4. 지방 회중들과 연회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일**

제2절 회원권 및 회의시기

201. 회원권 : 연회는 사역 중인 장로목사(429-29.3, 430-30.1, 433.9), 모든 사역목사(428-28.4, 433.9), 모든 사역 중인 인정 교역자(427.8), 모든 은퇴 교역자(431-31.1), 연회총무(216.2), 연회재무(219.2), 연회에 보고하는 연회 상임위원장들, 그 연회의 개교회 회원으로 있는 나사렛 고등 교육 기관의 평신도 교장들, 연회주일학교부장(238.2), 연회연령별 부장들(아동부, 장년부),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239.4),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240.2), 각 개교회의 새로 선출된 주일학교 교장 또는 부교장(146), 각 개교회의 새로 선출된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또는 부회장(151), 각 개교회의 새로 선출된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부회장(153.2), 혹은 연회에 그들의 보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 대의원과 장정 402-23.1에 규정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는 자, 연회실행위원회의 평신도 대표들(221.3), 그 연회의 개교회 회원으로 있는 모든 은퇴한 평신도 선교사들, 그리고 개교회의 연회평신도 대의원들(30, 113.13, 201.1-1.2)로 구성된다.

201.1. 정회원 수 5,000명 미만의 연회산하에 속한 개교회의 대의원 수는 정회원 50명 이하에 있어서는 2명, 정회원 50명을 초과할 때는 매 50명의 과반수마다 1명을 추가한다.(30, 113.13, 201)

201.2. 정회원 수 5,000명 이상을 가진 연회산하에 속한 개교회의 대의원 수는 정회원 50명 이하에 있어서는 1명, 정회원이 50명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데 50명의 과반수마다 1명을 추가한다.(30, 113.13, 201)

202. 연회 시기 : 연회는 해마다 개최하며 관할 중앙감독이 지정하는 시기에

지난 연회에서 정한 장소나 연회감독이 주선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202.1. 추천위원회 : 연회가 개최되기 전에 연회감독은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추천위원회를 임명해서 연회 기간 중에 봉사하게 한다. 이 위원회는 연회 개최 전에 통상의 분과위원 및 임원 후보자 추천을 한다.(212.2)

제3절 연회업무

203. 회의법 : 교회 장정상의 적용 가능한 법과 법인체 신조, 그리고 치리에 관한 준칙에 의거하여 개교회, 연회, 중앙총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 및 자치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에 따라 의사 절차를 규정, 통제한다.(40)

203.1. 연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03.2. 새로 조직된 교회들을 포함하는 연회의 사역을 요약한 연회감독의 연례 보고를 청취하고 접수하는 일.

203.3. 목회자 혹은 임명 부흥사로 봉직하는 모든 안수 및 인정 교역자들로부터 보고서를 청취 혹은 접수하고 모든 장로목사와 그리고 여사역목사의 인품을 심사하는 일. 현역에 봉사하지 않는 다른 장로목사 및 사역목사, 인정 교역자, 그리고 402-23.1의 사역을 위한 연회증명서를 소지한 자들의 구두 보고를 대신하여 연회총무에게 제출된 서면 보고를 연회의 결의에 의해서 수리한다.(418, 427.8, 433.9)

203.4. 개교회 제직회 또는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서 소명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목회심의부의 찬성 추천을 얻어 신중히 심의한 후에 인정 교역자로 자격을 인정하거나 갱신하는 일.(129.14, 426.5, 427.1, 427.3)

203.5. 개교회 제직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사역목사직에 소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목회심의부의 찬성 추천을 얻어 신중히 심의한 후에 사역목사로서의 자격을 갱신하는 일.(129.15)

203.6. 목회심의부의 추천에 의하여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직에 합당한 모든 요구 조건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는 일.(428.3, 429.3)

203.7. 목회심의부의 추천에 의하여 타 교파로부터 전입해 온 사람들 중 자격이 있고 나사렛성결교회의 보직을 즐만하다고 판단될 때 그 자격을 인정하는 일.(427.2, 430-30.2)

203.8. 타 연회로부터 전입하려는 자들로서, 교역자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 그리고 교역자 회원권을 지닌 자들, 그리고 연회목회심의부의 재가를 받은

임시 전입자들까지 포함하여 402, 406-9.1,과 일치한 사역의 임무를 계속하는 자들이 연회의 회원권을 부여할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목회심의부의 절차적인 추천에 의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228.9-28.10, 432-32.2)

203.9. 목회심의부의 찬성 추천에 의하여 타 연회로 전적을 희망하는 교역자들과 연회목회심의부의 재가를 받은 임시 전입자들을 포함하여 402, 406-9.1,과 일치한 사역의 임무를 계속하는 자들에 대한 목회심의부의 서류를 발급하는 일.(228.9-28.10, 432-32.1)

203.10. 목회심의부의 찬성 추천에 의하여 402-23.1 에 명명되고 정의된 사역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1년 연한부로 임명 또는 등록시키는 일.

203.11.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장로목사 한 사람을 연회감독으로 선출하여 다음 연회가 끝난 후 30일까지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하는 일. 현직 연회감독의 재선 여부는 "가", "부"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징계 조처로 인해 목사 임직을 포기한 적이 있는 장로목사는 연회감독직에 선출될 수 없다. 누구든지 70세가 넘게 되면 연회감독직에 선출되거나 재선될 수 없다.

203.12. 3단계 연회 혹은 2단계 연회감독(200.2)이 최소 2년 동안 연회를 위해 봉직한 후면 연회는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받아 4년의 임기로 그를 재선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을 위한 선거의 절차는 "가", "부"의 무기명 투표 결과 3분의 2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03.13. 중앙감독과 연회임원들 즉, 연회 실행위원회, 연회 주일학교부 부장,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및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들, 연회총무, 연회재무 등이 연회감독의 연장 임기 중 현 년도 이상은 시무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임원들은 그 의사를 연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의안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한다. ??현 연회감독의 임직을 금년 연회 후에도 계속하도록 할 것인가??? 만일 연회가 3분의 2이상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연회감독의 임직을 계속하도록 결의하면 그러한 투표가 없었던 것과 같이 시무를 계속한다. 그러나 투표에 의해서 연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연회감독의 임무는 그 연회의 종료와 함께 30-180일 이내에 끝나며, 그 날짜는 관할 중앙감독이 연회 임원들의 자문을 얻어 결정한다.(204.2, 206)

203.14. 연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3년간을 시무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연회 실행위원회를 위해 시무하게 될 3명의 장로목사와 3명의 평신도 대표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일.

연회의 총 회원수가 5, 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2, 500명을 초과 및 마지막 2, 500명의 과반수마다 각 1명의 장로목사와 평신도 대표를 추가한다.(221)

203.15. 4년간 시무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될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장로목사(단, 이들 중 1명은 연회감독이라야 함)를 연회 목회심의부 부원으로 선출하는 일. 목회심의부는 연회 개최 전 그 권한에 속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모임어 가능한 한 연회 개최 전에 그 임무를 완료한다.(226-28.10)

203.16. 4년간 시무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할 장로목사 5명 또는 그 이상을 연회 목회연구부 부원으로 선출하는 일.(229)

203.17. 목사 안수 후보자들을 준비시키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회차원에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각 연회별로 목회심의부와 목회연구부에서 종사할 사람들을 해당 수별로 모두 선출하여 연회의 목회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연회감독은 목회 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위원들을 목회심의부와 목회연구부, 복권위원회 그리고 기타 여러 개의 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조직할 수 있다.(226, 229)

203.18. 장정 233의 규정에 따라 연회재산관리부 부원을 선출하는 일.(204.1)

203.19. 다음 중의 하나 또는 둘을 결정하여 선출하는 일.

(1) 연회감독을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전도부원.

(2) 연회전도부장.

이들은 다음 연회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하게 된다.(204.1, 212)

203.20. 237의 절차에 따라 연회 주일학교부 부원을 선출하여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하는 일.(204.1, 212)

203.21. 연회의 결정에 따라, 4년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동수의 평신도 및 교역자 대표를 연회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일. 연회감독과 연회재무는 직책상 위원이 된다.(237-37.2)

203.22. 4년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연회감독을 포함해서 3명의 안수목사와 2명의

평신도로 구성되는 연회소청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일.(509)

203.23. 중앙총회 개회 전 16개월, 또는 여행 비자나 기타 특별 준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중앙총회 개회 전 24개월 이내에 개최된 연회의 한 회기에서 모든 평신도 대의원과 1명의 교역자 대의원인 연회감독을 제외한 모든 교역자 대의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일. 모든 3단계 연회는 중앙총회에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각 연회의 연회감독은 이때에 중앙총회에 참석하는 교역자 대표의 한 사람이 되며 나머지 교역자 대표는 장로목사여야 한다. 연회감독의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새 연회감독이 임명되지 않고 공석일 경우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 대의원이 연회감독의 의석을 차지한다. 추천 위원회는 당 연회로부터 선출될 수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 수의 최저 3배의 인원을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들 중에서 허락된 수의 정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을 301.1-1.3에 따라 선출한다. 선출된 대의원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종 충실히 모든 중앙총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31.1-1.3, 301.1-1.3, 303, 330.1)

203.24. 연회의 결정으로 개교회를 위해 준회원 제도를 확립하는 일. 그러나 준회원은 교세를 대표할 목적 하에 정회원으로 계수되어서는 안 된다.(108)

203.25. 모든 연회재무의 장부를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연회회계감사위원회 혹은 회계 감사원이나 공인 회계사로 하여금 매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03.26. 연회총무로 하여금 보존용으로 문서철하여 과거 4년간의 연회회의록을 중앙총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일.(205.3-5.4, 217.7)

203.27. 연회심의부의 추천에 따라 은퇴 교역자 신분을 부여하는 일. 어떤 변화가 있을시, 연회 목회심의부의 추천을 받아 연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28.8, 431)

203.28. 연회내의 모든 나사렛성결교회 사업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일.

203.29. 나사렛성결교회의 정신과 규율을 좇아 별도 규정이 없는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일.

204. 기타 연회규약 : 민법이 허락하면 연회는 연회실행위원회를 법인화할 수 있다. 재단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의 목적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동산 및 사유 재산의 구매, 소유, 판매, 교환, 담보, 신용 대부, 저당, 임대, 재산 양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임의로 갖게 한다.(222.5)

204.1. 장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가능하면 연회산하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사이에는 동등한 수의 위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204.2. 1단계 연회와 2단계 연회의 감독들은 장정 200.2.에 의해 선정된다. 2단계 연회는 단계별 필수 조건을 다 갖추게 될 때까지는 1단계 연하로 격하될 수도 있다.

204.3. 연회의 의장이 연회의 사무 처리를 소집하거나 또는 계속 할 수 없다고 고려하여 연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휴회할 경우에는 관할 중앙감독이 중앙감독회와 협의한 후에 연회의 휴회 전에 미처 선출되지 못한 모든 연회임원들을 임명하여 1년간 시무하게 한다.

제4절 연회 회의록

205. 연회 회의록은 연회의 정규 의사록이다.

205.1. 이 회의록은 필기, 타자 또는 인쇄된 원고로서 단정하게 제본되어야 한다.

205.2. 업무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

205.3. 이 회의록은 중앙총회에서 검토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성스럽게 편집해야 한다.(203.26, 217.7)

205.4. 매 4년분의 공식 회의록은 보존용으로 문서철하여 연회 및 중앙총회 서류철과 함께 비치되어야 한다.(217.5, 217.7)

205.5. 회의록은 가급적 중앙감독회와 협의 후에 중앙 총무가 작성한 목차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 목차는 연회 개최 전에 연회총무에게 시달린다.

205.6. 회의록에는 목회자들의 개교회에 대한 임무는 물론, 해당 연회가 참여하고 있는 연금 및 원호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연금 위원회에 원호 요청을 할 때 고려 대상의 자격이 있는 교단적인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연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 회원들에 대한 모든 정규 및 특별 활동 업무도 수록되어야 한다.(115)

제5절 연회감독

206.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감독직의 첫 임기는 연회 종료 후 30일부터 시작된다. 그 임기는 선출된 지 2년째 되는 연회 종료 후 30일까지 계속된다. 선출 후 2년째 되는 연회에서 연회감독이 재임기로 선출되거나(203.11-3.12)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부여받는다. 관할 중앙감독이 임명한 연회감독직의 첫 임기는 연회감독이 임명받은 그 교회 회기년도의 남은 시무 후에 2년째 연회 종료 이후 30일자로 끝난다. 상기연회에서 연회감독이 재임기로 선출되거나(203.11-3.12)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부여받는다.(203.11-3.13)

207. 어떠한 이유로든지 연회 사이에 공석이 생기면 중앙감독들은 연회실행위원회와 연회 주일학교부 부장과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및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연회총무, 연회재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의하여 증원한다. 그 협의는 위원회를 전체로서 소집하여, 관할 중앙감독에 의해 거명된 이름들 이외에, 다른 이름들을 거명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307.6)

207.1. 1단계 또는 2단계 연회의 연회감독직은 관할 중앙감독의 추천으로 사유와 함께 공석으로 선언되어질 수 있다. 제 3단계 연회의 연회감독직은 연회실행위원회, 연회 주일학교부 부장,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장 및 연회국제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연회총무와 연회재무의 3분 2이상의 투표로 공석임이 선언되어질 수 있다.(321)

207.2. 현직 연회감독이 임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관할 중앙감독은 연회 실행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자격 있는 목사를 임시 연회감독으로 지명할 수 있다. 연회감독의 자격 상실에 관한 질의는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307.7)

207.3. 연회감독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시 연회사무국의 직원들, 조감독(assistant superintendent)과 사무국 비서와 같은 유급 또는 무급의 연회를 지원하는 또는 연회와 제휴된 법인들의 대표는 연회감독직의 종료 일자에 맞추어 그들의 사임이 발효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들 중의 한 명 이상의 임원은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의 서면 승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새 감독의 임직 시행 일자를 넘어서지 못한다.(241.3)

207.4.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연회감독은 연회 실행위원회와 상의한 후,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으로, 이전에 고용되었던 직원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241.3)

208. 연회감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8.1.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담당 연회 안에서 교회를 조직, 승인, 그리고 감독하는 일.(100, 433.12)

208.2.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 연회내의 각 교회를 심방하고 영적인 문제나, 재정 및 목회 사항에 관한 개교회 제직회의 상담에 응함으로써 적절한 충고와 도움을 주는 일.

208.3. 연회감독이 교회가 약하고 쇠퇴하는 상황에 있고, 그것의 지속이

교회의 활력과 교회의 선교 효율성을 위협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형편에서는 연회감독이 목회자 및 교회제직회와 연락을 취하고 그 형편을 평가할 수 있다. 선교 효과성을 방해하는 상황에 이르러 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목회자 및 교회제직이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목회자 혹은 제직회와 일한 후, 연회감독이 간섭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는 연회고문회 및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나 거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1) 목회자 제명, (2) 교회제직회 해체, (3) 교회의 건강과 선교의 효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특별한 간섭 착수.(123-23.1)

208.4. 122조에 따라 개교회 제직회와 함께 정기 목회자 재심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일.

208.5. 자신이 속한 연회에서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개척교회를 특별 관리하는 일.

208.6. 연회총무 직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연회실행위원회에 후임자를 추천하는 일.(216.1)

208.7. 연회재무 직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연회실행위원회에 후임자를 추천하는 일.(219.1)

208.8. 특수 목회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증진시킬 연회기관 목회자를 임명하는 일.(236)

208.9. 개교회의 목회자로 장로목사 또는 인정 교역자를 추천하는 일에 관하여 교회제직회와 협의하여 그 추천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115, 129.2, 160.8)

208.10.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지속 여부에 관한 심의를 교회제직회가 요구하면 90일 이내에 목회자 특별 심의(123)를 예정하는 일.

208.11. 장로목사를 담임목회자로 하고 있지 않은 개교회 제직회에서 개교회 전도인이 되고자 하는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의 개교회 전도인 자격증 또는 자격증 갱신을 요청할 때 그것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426.1, 426.3)

208.12. 담임목회자가 제직회에 서면 신청한 무급 부교역자들이나, 기독교 교육 목회자 혹은 책임자,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부장, 음악 지휘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교장 등과 같은 유급직원 추천을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연회감독이 추천된 개교회 유급직원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기준은 개교회와 연회, 그리고 중앙총회의 차원의 의무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능력에 있다. 교역자들의 자질을 검토하여 선출하는 일은 담임목회자의 책임이며, 연회감독은 다만 추천된 사람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권을 지닐 뿐이다.(129.27, 162-62.8)

208.13. 개교회가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사역 실시를 요청할 때 연회실행위원회와 함께 이것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154, 222.11, 414)

208.14. 연회실행위원회 서기와 함께 연회의 모든 법적인 서류를 집행하고 서명하는 일.(222.5)

208.15. 연회의 모든 유급직원을 연회실행위원회에 추천하고 감독하는 일.(241)

208.16. 116조에 따라 목회자를 임명하는 일.

208.17. 만일 교회가 조직된 지 5년 미만이거나 그전 교회 연차회의 때 35명 미만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연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또는 교회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교회제직회 회원(집사들, 장로들), 주일학교부 교장, 그리고 기타 교회 임원들(총무, 재무)을 임명하는 일. 총 제직회 수는 3명이상이어야 한다.(116, 124)

208.18. 담당 연회내의 교역자에 대한 고소 진상을 장정 505-5.3에 의거하여 조사하게 하는 일.

208.19. 연회감독은 장정 407.4에 따라 해당 부흥사와 협의하여 종신 부흥사에 대한 자체 평가를 계획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209. 연회감독은 목회자가 공석 중인 교회에 교회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 교역자를 파송하여 다음 연회 때까지 시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회제직회나 개교회 측에서 만족한 목회자로 신임을 받지 못할 때는 연회감독이 그 목회자의 파송을 취소할 수 있다.(129.5, 421, 426.6)

210. 목회자나 임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모든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 일.(412)

210.1. 개교회 사무총회 또는 특별총회를 사회하거나 대리인을 지명하는 일.(113.4)

211. 관할 중앙감독이 어떤 사유로 연회총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자를 임명하지 못했을 때 연회총회가 별도 대책을 세울 때까지 그 연회총회를 개최하고 사회하는 일.(307.4)

212. 연회감독은 연회재정위원회(203.21), 연회감사위원회(203.25), 연회목회심의회(226.1), 연회목회연구부(229.1), 연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232), 연회교회재산관리부(233), 연회 주일학교부(239), 연회 소청부(509), 그리고 장정에 또는 연회의결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연회 부서와 위원회들의 공석이 있을 때 이를 충원하는 일.

212.1. 장정이나 연회결의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회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의 모든 위원장들과 서기들을 임명하는 일.

212.2. 연회감독은 연회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다음 연회에 앞서 지명된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위원회나 부서를 위해 임명을 준비할 수 있다.(202.1)

213. 직책상 연회 실행위원회(221.2), 연회목회심의회(227.1)의 의장이 되는 일.

213.1. 직책상 그(녀) 자신이 시무하는 연회의 모든 상임부서 및 선출직 위원회 회원이 되는 일.(203.20-3.21, 233, 237, 810, 811)

214. 연회감독의 모든 공식 활동은 연회에 의해 재심, 수정, 그리고 소청의 대상이 된다.

214.1. 연회감독은 연회감독의 임무에 관계되는 목사의 배치나 기타 문제들에 관해 항상 관할 중앙감독과 중앙감독회의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제6절 연회총무

216. 연회총무는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선출되며 다음 연회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시무한다.(222.16)

216.1. 연회총무가 어떠한 이유로든 연회회기 중 사임하면 연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연회실행위원회가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208.6)

216.2. 연회총무는 직책상 연회의 회원이 된다.(201)

217. **연회총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17.1. 연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성실하게 보관하는 일.

217.2. 연회의 모든 통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217.3. 모든 통계표를 중앙총무에게 발송하여 공식 회의록으로 발간되기 전에 감사받게 하는 일.(325.6)

217.4. 모든 연회 관계 서류를 보관하며 후임자에게 즉시 이관하는 일.

217.5. 매 4년간의 완전한 공식 회의록을 철하여 보존하는 일.(205.4)

217.6. 매 연회의 충분한 부수의 인쇄된 회의록 사본을 나사렛성결교회 중앙본부 임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중앙본부에 발송하는

일.

217.7. 철하여 보존된 이전 4년간의 완전한 공식 회의록을 중앙총회에 제출하는 일.(203.26, 205.4-5.5)

217.8. 총무 직책과 관계되는 모든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일.

217.9. 총무의 임기 중 자기에게 위탁되어지는 모든 사무적인 일을 해당 연회분과 위원회 혹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는 일.

218. 연회총무는 연회에서 선정하여 주는 수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절 연회재무

219. 연회 실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연회재무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시무한다.(222.15)

219.1. 연회재무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연회회기 중에 사임할 경우 연회실행위원회는 연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그(녀)의 후임자를 선출한다.(208.7)

219.2. 연회재무는 직책상 연회의 회원이 된다.(201)

220. 연회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20.1. 중앙총회나 연회 혹은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지정되었거나, 또는 나사렛성결교회가 필요, 요구하는 금전을 수납하고 그 금전을 연회 및 연회 실행위원회의 지시와 정책에 따라 지출하는 일.

220.2. 정확한 금전 출납을 기록하고 연회감독이 연회 실행위원회에 제출할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연회에 연례보고를 하는 일.

제8절 연회 실행위원회

221. 연회 실행위원회는 직책상의 연회감독과 연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3명의 장로목사와 3명의 평신도로 구성되며 다음 연회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 매해 선출되거나 4년을 넘지 않은 임기를 갖고 선출되며, 그 연회의 회원수가 5, 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2, 500 회원마다 그리고 마지막 2, 500회원의 과반수를 넘을 때 각 1명의 장로목사와 1명의 평신도를 추가 선출한다.(203.14)

221.1. 연회 실행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면 나머지 실행위원회 위원에 의해서 충원된다.

221.2. 연회감독은 직책상 연회 실행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221.3. 연회 실행위원회의 평신도 위원은 직책상 연회, 연회주일학교 대회, 연회국제선교 연합대회, 연회청년연합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1, 221)

222. 연회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22.1. 1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 연도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정하는 일.

222.2. 연회감독에게 연회의 개교회 목회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상의하는 일.(416)

222.3. 인정 교역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엔, 3명 또는 그 이상의 장로목사들로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는 일.(505-5.3)

222.4. 인정 교역자에 대한 고소가 인정되어 기소된 경우 징계 위원회를 선정하는 일.(505.5-5.6)

222.5. 민법이 허용하고 연회가 승인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일. 상기 규정에 의거 법인이 설립되면 연회실행위원회는 법인체의 목적을 위해 필요 혹은 편리한 동산 및 부동산의 매입, 소유, 매각, 교환, 저당, 대부, 담보 설정, 대여 및 양도 등을 스스로의 결의에 의해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연회감독 그리고 연회실행위원회 서기 혹은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법인 설립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부동산의 양도, 저당, 저당 해소, 계약 및 기타 연회 실행위원회의 법적 서류를 집행하고 서명해야 한다.(204)

222.6. 민법이 위의 법인 설립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에 있어서는 연회가 연회의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 혹은 편리한 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매매, 취득, 매각, 교환, 저당, 대부, 담보 설정, 양도 등을 스스로의 결의에 의해 수행할 권한을 갖는 연회이사회로 연회 실행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다.(102.6, 106.2, 222.5)

222.7. 개교회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에 있어서는 연회 실행위원회는 충분한 법률 상담인의 제안을 듣고 그 지역에 적합한 시범 법인체를 조직한다. 이 시범 법인체는 언제나 102-102.5의 규정을 포함한다.

222.8. 해당 연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그리고 모든 부서를 감독하는 연회감독에게 자문자격으로 보좌하는 일.

222.9. 중앙감독회에 연회건물 설립 계획을 제출하는 일. 이러한 계획안은 실제 운영하기 전에 중앙감독회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319)

222.10. 담임목회자로 시무하는 인정 교역자의 인정 갱신을 추천하는 일.(427.5)

222.11. 정규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을 운영하겠다는 개교회의 요청을 승인 혹은 거절하는 일. 연회감독 및 연회실행위원회의 재량으로 연회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 실행위원회에 개교회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에 적용할 정책과 절차 그리고 철학을 추천하고, 그러한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설립과 보조 그리고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152, 208.13, 414)

222.12. 연회에 고용되어 있는 유급직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일.(241-41.1)

222.13. 회기 사이에 필요시 연회감독과 상의하여 운영 예산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로 행사하고, 이것을 연회에 보고하는 일.(220.1)

222.14.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는 모든 연회재산 및 그 소유권을 나사렛성결교회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법단체가 전용 못 하도록 보호, 방지하는 일.(102.4, 106.5, 204)

222.15.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활동할 연회재무를 선출하는 일.(219)

222.16.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활동할 연회총무를 선출하는 일.(216)

222.17. 106조 2항에 명시된 대로, 부동산 권리증서의 이양을 시행할 목적으로,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탈퇴한 교회의 탈퇴 사실을 증명하는 일.

222.18. 203조 26항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연회의 휴회 때까지 일하기 위한 연회감사위원회를 선출하는 일. (203.26)

222.19. 소집된 회의 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을 요약하여 매년 연회에 보고하는 일.

223. 연회 실행위원회는 연회 개최에 앞서 해당 연회산하의 인정 교역자, 기독교 교육 목회자(409), 혹은 사역목사(406)로서 타 연회로 진출을 원하는 자들에게 회원권 이명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진출을 받아들이는 연회 실행위원회는 이명 증서를 접수하면서 상기한 장로목사, 인정 교역자, 기독교 교육 목회자 혹은 사역목사에게 해당 연회회원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진출을 받아들이는 연회 실행위원회의 이명 접수의 최종 승인권은 목회심의부의 호의적인 추천을 근거로 진출을 받아들이는 연회가 갖는다.(203.8-3.8, 228.9-28.10, 432-32.2)

223.1. 연회 실행위원회는 다른 교단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연회회원에게 청원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813.2)

224. 연회 실행위원회는 교회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교회의 제직회와 협의하고 본인의 진술을 공정한 후 연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연회인정 여사역목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25. 연회 회기 중 나사렛성결교회에 입회를 원하는 다른 복음주의 교회의 장로목사 또는 인정 교역자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연회 실행위원회가 이 증서를 검토한다. 연회실행위원회의 찬성 추천에 의해서만 개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허락된다.(417, 427.2, 430)

제9절 연회 목회심의부

226. 목회심의부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장로목사로 구성되며 그 중의 1명은 연회감독이 된다.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4년간 시무하나 부원은 매년 적절한 인원 비율로 연회에서 피선될 수 있다.(203.15)

226.1. 연회 회기 중 목회심의부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연회감독이 충원한다.(212)

227. 목회심의부의 선출에 이어 연회감독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227.1. 연회감독은 직책상 목회심의부의 부장으로 시무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요청에 따라 목회심의부는 다음 연회 폐회 시까지 시무할 수 있는 부장 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213)

227.2. 목회심의부는 자체 부원들 중에서 상임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연회의 비용으로 적절한 기록 제도를 마련하게 하며 그 기록은 연회의 소유가 된다. 이 서기는 목회심의부의 모든 활동을 조심스럽게 기록하여 목회심의부에 관련된 다른 기록과 함께 성실히 보존하고 후임자에게 즉각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

228. 목회심의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28.1. 연회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제출된 장로 목사직과 그리고 인정 교역자 직에 대한 신청을 신중히 검토, 평가하는 일.

228.2. 개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 및 교역자의 후보인들을 포함하여 어떤 특정된 목회 사역에 인정 증서를 받고자 원하는 자에 대해 신중히 검토, 평가하고 있는 다른 어떤 특별한 신분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신중히 검토, 평가하는 일.

228.3. 각 후보자에게 구원의 개인적 체험, 성령 세례에 의한 완전성결의 개인적 체험,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 그리스도인의 일반규약 및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그리고 교회 치리 체제에 대한 완전동의, 은혜와 은사의 지적, 도덕적, 영적 자격의 증거, 그리고 그가 소명을 느끼는 종류의 목회에 대한 일반적 적성 등에 관해서 상세히 질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일.

228.4. 각 후보자의 면모를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후보자가 실제로 그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지, 또는 후보자가 지망한 사역이 오히려 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일.

228.5. 임시 목회자로 임명, 개교회 전도인이 그의 임명 후에 개최되는 연회 이후에도 그 직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 그의 재임명에 관한 승인을 심사하는 일.(426.6)

228.6. 안수 교역자가 2년간 계속적으로 연회에 보고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의 이름을 인쇄된 장로목사 명단에 계속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연회에 건의하는 일.

228.7. 장로목사로서 적절한 허가 없이 다른 교적을 갖게 되었다든가, 다른 교파 또는 단체의 목회자로서 합동했다든가 또는 독립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때는 그의 장로목사 자격의 보류 여부를 연회에 천거하는 일.(112, 433.11)

228.8. 은퇴를 요청하는 교역자나 신체적 결함으로 현역 목회 일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심의부가 판정한 자, 또는 연령 때문에 목회 일을 그만 두기를 원하는 자를 위해 연회에 은퇴 교역자 신분을 추천하는 일.(203.27, 431)

228.9. 연회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임시 진출자들을 포함하여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타 연회로 진출하는 목회자, 또는 인정 교역자들을 연회에 추천하는 일.(203.9, 432-32.2)

228.10. 연회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임시 전입자들을 포함하여 계속적인 목회 활동을 위해 타 연회로부터의 전입하는 목회자, 또는 인정 교역자들을 연회에 추천하는 일.(203.7, 432-32.2)

제10절 연회 목회연구부

229. 연회 목회연구부는 연회에서 선출된 5명 또는 그 이상의 장로목사로 구성되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4년간 시무한다. 그런데 그들의 임기는 해마다 일정한 비율의 위원들을 선출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203.16)

229.1. 연회 회기 사이에 목회연구부에 공석이 생기면 연회감독이 이를

총원한다.(212)

230. 목회연구부를 선출한 연회가 폐회하기 전에 연회감독 혹은 연회총무는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무 분담을 결정한다.

230.1. 목회연구부는 부원 중에서 부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안수목사 중에서 서기를 선출하고, 그들을 다른 부원들과 함께 교역자 후보자들이 안수에 필요한 학습을 완료할 때까지 교역자 연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고 진급시키는 임무를 갖는다. 그들은 교역자 후보자가 안수를 받을 때까지 모든 학점의 기록을 보관한다.(230.5, 424.1-24.3)

230.2. 부장은 목회연구부의 다른 부원들에게 목회 준비를 위한 연수 과정에 등록한 후보생들을 책임지고 감독할 임무를 분담시킨다. 그러한 분담은 상호 협의 하에 따른 변경이 없는 경우 부원 재임 기간 동안 후보생들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한 계속된다.

230.3. 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목회연구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매년 목회연구부의 사업을 감독한다. 부장의 유고시엔 서기가 임시 그의 일을 대행한다.

230.4. 서기는 연회의 경비로 목회 연구에 관한 적절한 기록부를 마련해야 하며, 이 기록부는 연회의 소유로 안수에 관한 지침서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다.

230.5. 목회연구부의 다른 부원들은 목회연구부의 모든 회의에 충실히 출석하고, (1) 형제처럼 격려, 조언, 지도하고 (2) 교역자들이 성적 비행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무엇인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례를 제시하거나 또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목회 윤리에 관하여 지도한다.(230.1)

230.6. 목회연구부는 연회감독과 국제본부 목회발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연구과정 실행위원회(COSAC)를 통하여, 나사렛 대학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유효한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도우며 지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31. 목회연구부는 인정 교역자나 다른 후보들이 각종 유효한 학과 과정을 추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강좌나 세미나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할 수 있는 서적을 구비한 문고를 승인된 연회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231.1. 연회 목회연구부 부장 및 서기는 연회감독과 상의하여 유효한 목회 교육 연수 과정에 학생들을 등록시킬 권한이 있다.(230.1-30.2, 424.1-24.3)

231.2. 목회연구부는 공인된 안수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31.3. 목회연구부는 연회 전에 목회심의부에서 각각의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동안에 후보자의 교육 경력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목회심의부에 제출해야 한다. 연회 목회연구부는 여러 가지 연수 과정에의 보직 및 진급 절차 등을 추천해야 하며 그러한 보직이나 진급 그리고 졸업 등의 절차는 해당 실행위원회(COSAC) 과정을 통하여 국제본부 목회발전 담당부서에 의해 제공된 일반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231.4. 연회 목회연구부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공인된 나사렛교육기관과 해당 연구과정 실행위원회 (COSAC)를 통하여 국제본부 목회발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연회감독의 총괄적인 지도하에 연회산하의 안수 교역자 및 기타 교역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촉진할 책임을 진다. 그 같은 지속적인 교육에는 교역자로서 성적인 비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목회자로서의 바른 윤리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제11절 연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

232. 연회는 연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 피선된 자들은 다음 연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203.19)

232.1. 연회전도부 혹은 전도부장은 연회감독과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그리스도 몸의 기능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면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와 회합을 가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부흥사를 초청하고 개교회 부흥의 필요를 강조하고, 다른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을 써서 성결 복음의 필요성을 권장하고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연회에 영향을 주도록 힘쓴다.

제12절 연회교회재산관리부

233. 연회교회재산관리부는 직책상 부원이 되는 연회감독과 두 명 이상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된다. 동 관리부의 부원은 연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되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한다. 연회의 찬성투표에 의해서 연회실행위원회가 동 관리부의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

234. 연회교회재산관리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4.1. 연회 실행위원회와 협조하여 연회산하의 교회 건물과 교회와 관계된 건물들의 건축을 촉진시키는 일.

234.2. 교회 재산의 권리 증서를 확인 보존하는 일.

234.3. 개교회가 부동산 구입이나 교회 건축 혹은 목사관 건축 등에 관하여 제의해 왔을 때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을 하는 일.(103)

234.4. 연회감독과 함께 부동산 구입이나 교회 건물 건축에 관한 개교회의 계획안 및 채무 행위에 관한 모든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교회재산관리부는 보통 다음의 지침들에 따라 채무 증가 요청을 승인해 줄 수 있다 :

(1) 개교회가 채무 증가 승인을 요청하기 전 2년 동안 모든 재정 분담금을 완불했을 경우.

(2) 전체 채무액이 이전 3년간 매년 모든 명목으로 지출한 평균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3) 건물 구조 변경이나 건축의 세부 설계안이 교회재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채무액과 지불 기한이 교회의 영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경우. 단,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요청을 교회재산관리부가 승인해 줄 때는 연회감독과 연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234.5. 연회에서 교회 재산에 관하여 지시하는 그 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

제13절 연회재정위원회

235. 연회재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5.1. 연회 전에 모여 모든 예산과 재정 분담 금액,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개교회 분배 문제에 관하여 연회에 추천하는 일.

235.2. 연회에서 연회재정에 관한 일에 지시하는 그 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203.21)

235.3. 모든 수용된 예산들을 위한 예산 토대 (budget base)를 결정하는 사용된 방법과 적용된 백분율을 연회의사록에 출판하는 일.

제15절 연회 기관목회 책임자

236. 연회 기관목회 책임자는 연회감독에 의해 임명된다. 기관 목회자 책임자는 연회감독과 협의하여 특별한 기관 목회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증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장이나 관공서, 그리고 학교나 군부대 등에 대한 전도 사역의 발판을 마련하고 후원해야 한다.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흘어져 있는 나사렛 기술자 및 군무원들을 위해 부대 근처에 전담 목회자들을 지정 배치함으로써 현지에서 봉사하면서도 교단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8.8)

제16절 연회주일학교부

237. 연회주일학교부는 집행위원회를 연회감독과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과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과 연회주일학교부 부장에다 3명의 추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추가 위원들 중 3분의 1은 연회 혹은 연회주일학교부 대회에서 선출하여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3년간씩 시무하게 된다. 연회주일학교부를 처음 조직할 때는 3명의 추가 위원들이 6명의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출되는데, 그 3명의 임기는 각각 3년, 2년, 1년이 된다. 그러나 연회의 전 회원이 5, 000명을 초과할 경우 피선 및 피선된 자의 수는 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10명의 위원 중 최소 4명은 평신도이어야 한다. 연회의 회기 중간에 생긴 주일학교부의 결원은 연회감독이 임명하여 충원시킬 수 있다.(212)

연회주일학교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7.1. 그들의 선출 이후 일주일 내에 조직을 위한 회의를 가져 직책상 주일학교부의 부원이 될 서기 및 회계와 장년부 책임자, 아동부 책임자, 평신도 연속 교육 책임자를 선출하는 일. 필요하다면 여겨질 경우 다른 책임자들을 집행위원회에 의해 추천하고 주일학교부가 선출할 수 있다.

237.2. 연회의 주일학교에 대한 모든 관심사를 관장하는 일

237.3. 아동부 협의회*를 선출하는 일. 협의회 회장은 연회 아동부 책임자가 되며 그 협의회 회원들은 소년 소녀 캠프, 수련회, 방학 성경 학교, 성경 퀴즈, 어린이 주일학교, 영아반,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서의 연회책임자들이 된다.

* 아동부 및 장년부 협의회 임무에 관한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주일학교부 핸드북??(Sunday School Ministries Handbook)을 보라.

237.4. 장년부 협의회*를 선출하는 일. 협의회 회장은 연회 장년부 책임자가 되며 그 협의회 회원들은 결혼 및 가정생활반, 노년반, 독신장년반, 평신도 수양회, 소그룹 성경 연구반, 여자 성인반, 남자 성인반,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서의 연회책임자들이 된다.

237.5. 연회주일학교부 연차 대회를 주선하는 일.(237)

237.6. 연회감독과 협의하여 연회주일학교부의 부장 및 부원들을 연회에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연회주일학교부 대회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237.7. 모든 개교회 주일학교부 부장과 연령 그룹 책임자들 및 청년회장으로 하여금 연회주일학교부 대회에 참석하며 기회가 부여되는 대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일.

237.8. 연회를 지방회로 나누어 조직하고 지방회장들을 임명하여 연회주일학교부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므로 주일학교부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37.9. 연회 혹은 지방회의 평신도 연수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일.

237.10. 중앙위원회의 주일학교국을 도와 연회 및 개교회 주일학교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하는 일.

237.11. 연회 주일학교부의 연간 예산을 연회재정위원회에 천거하는 일

237.12. 연회 평신도수양회를 책임지는 일. 연회 장년부 책임자는 직책상 연회 평신도수양회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37.13. 연회에 해야 할 부장의 보고를 승인하는 일.

237.14. 주일학교부의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책임 수행을 위해 연회감독 혹은 연회주일학교부 부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빈번히 회의를 가지는 일.

238. 연회주일학교부 부장. 연회 혹은 주일학교부 대회에서는 연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연회주일학교부 부장을 선출하여 1년 또는 2년간 시무하도록 한다. 연회주일학교부가 추천하고 연회감독이 승인할 경우 현직 부장은 ??가??, ??부??의 신임 투표에 의해 재선될 수 있는데 단, 그러한 투표 방법은 연회주일학교부에 의해 천거되고 연회감독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연회회기 중간에 생긴 결원은 장정 2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될 수 있다.(237.6)

연회주일학교부 부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238.1. 등록 증가와 출석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연회의 주일학교에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아동부, 청년회, 장년부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일.

238.2. 직책상 연회 및 주일학교부, 그리고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의 회원이 되는 일.

238.3. 중앙위원회의 주일학교국에 매월 정확한 주일학교 통계보고를 하고

연차 연회회의록을 위해 연회주일학교부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제17절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239. 나사렛 청년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나사렛국제청년회 현장 및 연회감독, 연회실행위원회 그리고 연회의 권한 하에서 조직된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연회소속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원들과 개교회 그룹들로 구성된다.

239.1.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현장 및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의거하여 연회 청년 사역의 필요에 맞춰 채택된 연회 나사렛 청년회 회칙에 따라 조직한다.

239.2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에 의해 조정되고, 12세 이상의 청년, 대학생, 청장년들을 위해 사역을 계획 및 조직할 책임과 집합적으로 개교회 청년 사역을 위해 비전을 심어주는 책임을 진다. 협의회는 연회감독 및 연회 실행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주일학교부에 속한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의 모든 일은 연회주일학교 부장 및 주일학교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9.3.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역 간사들과 연회감독으로 구성된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 임원들과 협의회 회원들은 나사렛 연회사역 계획에 따라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 대회에서 선출되어 무보수로 봉사한다. 피추천인들은 연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특별문화권에서는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의 표결에 의해 보다 적절한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

239.4.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의 임무는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의 방침과 지도력을 제공하고, 연회의 청년 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의 의장 역을 맡고,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회에서 사회하며, 연회의 해당 위원회에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요청사항을 제출하고, 그 연회산하의 개교회들 내에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 개발을 권장하는 일이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 그리고 매년 연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직책상 연회의 대의원이 된다.(201)

제18절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240.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연회산하의 개교회 국제선교회로 구성되며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산하 기구가 된다.(811.2-11.3)

240.1.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중앙나사렛국제선교회대회와 중앙위원회의 세계선교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에 의해서 다스린다. 본 회의는 연회감독, 연회실행위원회, 연회, 그리고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협회의회의 지시를 받는다.(811)

240.2.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은 무보수로 시무하며 직책상 연회의 대의원이 된다.(201)

제19절 연회유급직원

241. 연회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급직원이 필요하게 되면 교역자이건 평신도이건 그러한 사람들을 관할 중앙감독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 연회감독이 추천하고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러한 직원의 고용 임기는 1년 이상은 안 되나 연회감독의 추천과 연회실행위원회의 과반수 득표로 갱신될 수 있다.(208.15)

241.1. 임기 만료 전에 그러한 자를 해고할 때는 연회감독의 추천과 연회실행위원회의 과반수 득표를 필요로 한다.(222.12)

241.2. 그러한 연회유급직원의 임무와 봉사는 연회감독에 의해 결정되고 감독 받는다.

241.3. 국가 노동법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새 연회감독이 연회에서 그의 행정 임무를 시작할지 30일 이내에 유급직원의 임기는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사무비서 등의 서기 보조원은 상기 조항에서 제외된다.) (207.3-7.4)

241.4. 연회총무나 연회재무와 같은 별도의 연회선출직 및 임명직에 봉사하면서도 연회 유급 보조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절 연회해체

242 연회해체는 중앙감독회의 안목에 연회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판명될 때 중앙감독회에서 이를 제의하고 나사렛성결교회 중앙 위원회에서는 이 제의에 따라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공식적인 공고에 의해 성립된다.(200)

242.1. 연회가 정식으로 해체되면 현존한 재산은 중앙총회의 지시에 따라 중앙 위원회의 감독을 거쳐 전반적인 나사렛성결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해체된 연회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된 법인 또는 재산 유지 이사들은 중앙 위원회에서 임명한 대행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대행자에게 납부한다.(106.2, 106.5, 222.5)

제 3 장 중앙총회

제1절 기능 및 조직

300. 중앙총회는 교회 헌법에 따라 교리 제정과 입법 그리고 선거를 주관하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최고 기관이다.(31.1-1.9)

300.1. 중앙총회는 중앙감독이 공동 및 개별적으로 사회한다.(31.6, 307.2)

300.2. 중앙총회는 자체의 판단과 형편에 따라 임원들을 선출하며 자체의 사무 처리를 위해 조직화한다.(31.7)

300.3. 교회 장정상의 적용 가능한 법과 법인체 신조, 그리고 치리에 관한 준칙에 의거하여 개교회, 연회, 중앙총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 및 자치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 에 따라 의사 절차를 규정, 통제한다.(40)

제2절 총회회원권

301. 중앙총회는 다음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3단계 연회로부터 선출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 단, 연회감독은 교역자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며 나머지 교역자 및 평신도 대의원들은 나사렛성결교회 연회에서 선출한다. 명예 및 은퇴 중앙감독, 중앙감독, 중앙총무, 중앙재무, ??성결의 소리??(the Herald of Holiness Today) 편집인, 중앙 위원회 여러 국, 부의 실행 국장 및 부장들, 중앙 교육 위원장, 지구장들,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지구 신학교 및 대학의 총장들(한 개 이상의 학교가 존재하는 지구에서는 1인 대표자를 지구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학교 이사들이 여러 연회대표들로 구성되는 초지구적 학교의 장들, 나사렛 출판사 사장, 캐나다 나사렛성결교회 자국총회장, 나사렛성결교회기금 의장, 부흥운동 책임자, 50명 이하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지구의 선교사 대의원 1명, 51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선교사 대의원 2명으로서 각 지구의 실행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만약 지구에서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교사 대의원들은 세계선교국에서 선출된다.

301.1. 3단계 연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대의원을 중앙총회에 파견할 자격이 있다. 먼저 교회 정회원 수 2, 000명까지는 1명의 안수 교역자와 1명의 평신도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고, 2,000명 이상 1명에서 3, 500명까지와 그 후 매 1명에서 3, 500명의 초과 정회원 당 1명의 추가 임직된 안수 교역자 및 1명의 추가 평신도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안수 교역자??라는 용어는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를 뜻한다.

301.2. 2단계 연회는 1명씩의 평신도 대의원과 목회자 대의원을 중앙총회에 파송할 자격이 있다. 임명받은 안수 목회자 대표는 연회감독이 되며, 동수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한다.

301.3. 1단계 연회는 1명의 대의원을 중앙총회에 파송할 자격이 있는데 연회감독이 대의원이 된다. 그는 피선 당시 그 연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만약 연회감독이 연회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연회의 회원 중 후보 대의원을 선출한다.

301.4. 임명된 안수 교역자의 대의원권은 중앙총회에 그를 대표로 파송하기 위해 선출한 연회로부터 이탈하여 중앙총회 개회 이전에 다른 연회산하의 새로운 목회 임지로 옮기거나 나사렛성결교회의 임명된 목회직을 떠날 경우에는 취소된다. 연회에 의해 정식으로 은퇴할 경우, 중앙총회에서는 대의원 또는 대의원권을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301.5. 평신도의 대의원권은 중앙총회에 그(녀)를 대표로 파송하기 위해 선출한 연회를 떠나 중앙총회 개회 전에 다른 연회산하의 교회로 교적을 옮길 때에는 취소된다.

제3절 총회회기 및 장소

302. 중앙총회는 매 4년마다 6월 중에 중앙감독들과 중앙감독회에 의해 선출될 동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중앙총회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중앙감독들과 동수의 상기 위원회들은 비상시 중앙총회의 회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02.1. 중앙총회는 주일에 시작하여 온종일 예배와 경건한 순서를 갖는다. 업무를 조심성 있고 질서 있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폐회 시에 있을 예배 순서를 만든다. 중앙총회는 자체의 폐회 시간을 결정한다.(31.4)

제4절 특별회의

303. 중앙감독회 혹은 과반수의 중앙감독들은 전체 연회감독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앙 특별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그 시기와 장소는 중앙감독들과 중앙감독회가 선출한 특별위원들이 정한다.

303.1. 중앙 특별총회로 모이게 될 경우에는 최종 중앙총회에 파송되었던 대의원, 후보 대의원 또는 정식으로 피선된 유자격 후임자들이 그대로 특별총회의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으로 수고한다.

제5절 중앙총회 준비 위원회

304. 중앙총무와 중앙재무 그리고 적어도 중앙총회 개최 1년 전에 중앙감독회가 선출한 3명의 위원들이 중앙총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304.1. 중앙총회 준비 위원회는 중앙총회의 안위와 편리와 능력을 위해서 사무실 전시 및 장소, 영접과 식사 등 제반 필요한 세부 절차 일체를 준비하며 또 이를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04.2. 중앙총회 준비 위원회는 중앙감독들과 함께 중앙총회의 여러 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중앙총회 자체의 예배 위원회가 임명될 때까지 처음 3일간에 필요한 총회관련의 각 중요 행사와 성찬 예식 그리고 기타 예배 순서 등도 포함된다. 단, 이 모든 순서는 중앙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6절 중앙총회 업무

305. 나사렛성결교회 장정 제31조 9항에 준한 중앙총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305.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보고 그리고 기타 문서상 나타난 모든 결의, 추천, 시행법 등의 검토를 위해 그것들을 정식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총회 상임 위원회나 특별 입법 위원회 혹은 지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는 일. 참조 분과 위원회(Reference Committee)는 단지 특정한 지구(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한해서 해당 지구의 중앙총회 간부 대의원들의 모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장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안들은 반드시 전체 중앙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05.2. 유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차기 중앙총회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중앙감독들을 필요한 인원수만큼 선출하는 일. 단, 처음 투표는 ??가??, ??부??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현직 중앙감독들에 대한

신임을 묻고, 처음 투표 후 남아있는 공석은 피선될 때까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충원한다. 중앙감독직에 자격이 없는 자가 처음 무기명 투표에서 표를 받을 경우, 그의 이름은 선거 투표명단에서 삭제하고 그 처음 무기명 표결의 보고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중앙감독직에 자격이 없으므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이름이 삭제되었음?? 징계 조처로 교역자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 장로목사는 중앙감독직에 피선될 자격이 없다. 선거 당시 35세 미만이거나 68세 이상 된 자는 중앙감독직에 피선될 수 없다.(31.5, 306, 900.1)

305.3.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중앙감독을 명예 감독으로 선출하는 일. 단, 이때 해당 중앙감독은 신체 결함이 생겼거나 65세가 되었어야 한다. 명예 감독직은 종신직으로 이해된다.(314.1)

305.4. 중앙감독이 만 68세에 달했거나, 중앙총회의 판단으로 신체적인, 고령, 혹은 기타의 자격상 결함으로 인해 중앙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를 은퇴감독으로 선출하는 일. 단, 해당 중앙감독은 상당한 기간 동안 중앙감독으로 시무한 자이어야 한다. 또 중앙총회는 본인의 청원에 의해서 만 65세가 된 중앙감독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사이의 기간 중에 은퇴를 요구했을 때, 중앙감독회의 추천에 의해 중앙 위원회가 그 요구를 허용할 수 있다.(314.1)

305.5. 314.2에 의거하여 은퇴 중앙감독의 은퇴 연금을 결정하는 일.

305.6. 장정 331.1-32.4의 규정에 의해 차기 중앙총회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중앙 위원을 선출하는 일(330, 901.1)

305.7. 차기 중앙총회가 끝나고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하게 할 5명의 장로 목사로서 구성되는 중앙 소청부를 선출하는 일. 의장과 총무는 중앙감독 위원회에서 선출한다.(31.8, 510, 901.2)

305.8. 하기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여러 지구에 이바지하는 교육기관들의 조정 위원회를 선출하는 일.

- (1) 조정위원회들은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은 각 지구에서 온 자들로 구성된다.
- (2) 교육 기관이 여러 지구에 기여할 경우, 그 위원회의 선출은 그 학교들의 혜택을 받는 지구들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총회 지구 대의원 회의에서 하게 된다.

305.9. 나사렛성결교회 헌법에 순응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일반적인 복지가 되며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을 위한다는 이치가 확실한 한, 성경과 조화되는 그 밖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일.(31.9)

제7절 중앙감독

306. 중앙총회에서 선출 받은 중앙감독들은 차기 중앙총회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한다.

(305.2)

306.1. 중앙감독은 재임 기간에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직분을 겸할 수 없다.(307.10)

306.2. 중앙감독은 직책상 중앙총회의 대의원이 된다.(301)

307. 중앙감독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07.1. 중앙총회가 채택한 법과 규례에 따라 나사렛성결교회를 총괄하는 일.

307.2. 나사렛성결교회의 중앙총회와 중앙 위원회를 공동 및 개별적으로 사회하는 일.(300.1, 334.3)

307.3.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 대상자로 정식 선출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거나 다른 장로목사들을 임명하여 안수하는 일을 대리하게 하는 일.(433.5-33.6)

307.4. 3단계 연회를 사회하는 일.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연회의 사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세운다.(202, 211)

307.5. 연회를 사회하는 중앙감독은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와 함께 해당 교회로부터 온 대의원들과 합의하여 정식으로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한 개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임명하는 일.(214.1)

307.6. 중앙감독들은 연회와 연회사이의 기간에 연회감독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연회의 실행위원회와 주일학교부 부장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및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의한 후 연회를 다스릴 연회감독, 연회총무, 연회서기를 공동 및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일.(207)

307.7. 현직 연회감독이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관할 중앙감독은 연회 실행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격 있는 장로목사를 임시 연회감독으로 봉사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자격 상실 여부는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7.2)

307.8. 관할 중앙감독은 3단계 연회의 위기 선언을 중앙감독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200.2, 322)

307.9. 관할 중앙감독은 개교회의 사무총회나 특별총회를 사회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113.5)

307.10. 중앙감독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어느 중앙 위원회 위원도 되지

못한다.(306.1)

307.11. 중앙감독의 모든 공식 행위는 중앙총회의 검토와 수정의 대상이 된다.

307.12. 어느 중앙감독의 공식 행위는 중앙감독회의 다른 중앙감독들의 만장일치의 가결에 의해 무효화할 수 있다.

307.13. 어느 중앙감독 직분의 자격은 중앙감독회의 다른 중앙감독들의 만장일치 가결과 2단계와 3단계 전체 연회감독들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해서 실격이 될 수 있다.

제8절 명예 및 은퇴 중앙감독

314. 모든 명예 및 은퇴 중앙감독들은 직책상 중앙총회 대의원이 된다.(301)

314.1. 명예 및 은퇴 신분에 선출된 중앙감독들은 중앙감독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일체의 공직에서 떠난다. 그러나 현직 중앙감독 중에서 와병, 입원, 및 기타 불가피한 긴급 사태로 인하여 어떤 과업 수행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감독회 결의로 은퇴 중앙감독 중 누구에게 임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305.3-5.5, 900.1)

314.2. 중앙감독을 위한 연금 혜택은 교회의 적격한 방책인 중앙 교회 연금 계획 규정에 준한다.(305.5)

제9절 중앙감독회

315. 중앙감독들은 감독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특별관할권을 갖고 있는 특정한 규정들을 감독회의 각 회원에게 분배하고 시무하게 한다.

316. 결원 :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사이의 기간에 중앙감독회에 사망 또는 기타 원인으로 결원이 생기면 공석 보선을 위해 선거를 요청하는 여부는 중앙감독회가 결정한다. 중앙감독회의 결정을 접수하는 즉시 중앙서기는 정규 연회(3단계)의 모든 중앙 위원(회원)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선거가 요청되면 정규연회(3단계)의 중앙 위원(회원)들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해 나사렛성결교회 장로목사 중에서 차기 중앙총회가 끝날 때까지 중앙감독의 결원을 충원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출한다.(31.5, 305.2)

316.1. 중앙총회는 선거 결과를 중앙감독회에 보고하고 중앙감독회는 그 보고를 나사렛성결교회에 공고한다.

317. 중앙감독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17.1. 세계 전역에 퍼진 나사렛성결교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일. 중앙감독은 3단계 연회를 지도하고 이끌며 일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17.2. 세계선교국장과 해당 국가의 행정 책임자 및 지구장들과 협의하고 중앙감독회 및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구들의 임무 변경을 건의하는 일.

317.3. 중앙위원회 산하의 모든 위원회와 사무국을 감독하는 일. 어떠한 위원회나 사무국에서 채택한 방침이나 계획은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요한다. 중앙감독회는 중앙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사무국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천할 특권이 있다. 그들은 또한 세계선교국에서 선교사로서의 임명을 위해 나사렛성결교회 중앙 위원회에 추천한 모든 자들에 대한 인준 가부의 권한을 갖는다.

317.4. 중앙위원회 실행위원회와 함께 중앙총무나 중앙재무의 선출을 위해 1명 이상의 후보를 중앙 위원회에 내놓음으로써 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일.

317.5. 3분의 2이상의 표결의 의해 사유와 함께 중앙총무, 중앙재무, 국장, 부장, 나사렛 출판사 사장직의 실격을 공포하는 일.

317.6. 중앙총회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중앙 소청부 부원의 공석을 충원하고 소청부 의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일.(305.7, 511, 901.2)

317.7. 중앙총회 혹은 중앙위원회 사이의 기간에 어떤 특별 위원회 혹은 분과 위원회에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일.

317.8. 나사렛성결교회 중앙위원회가 행한 중앙 위원 보선 결의를 인준하는 일.

317.9. 나사렛 출판사 법인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할 때 남은 위원들의 추천에 의거하여 그 공석을 충원하는 일.(337)

317.10. 중앙위원회 모든 국의 관할 중앙감독들 및 국제 교육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의 고문들로 봉사할 중앙감독들을 임명하는 일.(901.5)

317.11. 중앙교육부 목회발전부와 함께 개교회 전도인과 인정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 혹은 교역자로서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목회 연수 과정을 편성하는 일.(424-25)

317.12. 지구촌 선교를 위한 우리의 관심 사안들에 대하여 체계를 수립하고 보존함은 물론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함께 세계 전도기금을

연회별로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30, 334.8)

317.13. 요청에 따라 과거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에게 서면으로 자격 회복을 승인하는 일.(434.7, 435.2)

318. 중앙감독회는 중앙총회에 상고를 전제로 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법규를 해석하며 장정의 모든 조례들의 의미와 긴요성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는다.

319. 중앙감독회는 연회수양관 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이 계획은 먼저 중앙감독회의 서면 승인 없이 착수해서는 안 된다.(222.9)

320. 중앙감독회장은 임의의 재량으로 이혼자를 나사렛성결교회의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에 임명할 수 있다.(35.1-35.3, 428.3, 429.3)

321. 중앙감독회는 관할 중앙감독의 건의 하에 2단계 연회나 1단계 연회의 어느 연회 감독직의 자격 상실을 사유와 함께 공포할 수 있다. 아울러 3단계 연회의 감독직에 대해서도 해당 연회 실행위원회와 연회 주일학교부,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및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장들, 연회총무, 연회재무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그 상실을 공포할 수 있다.(207.2)

322. 중앙감독회는 3단계 연회가 위기임이 선언된 것을 승인할 수 있다.(200.2, 307.8)

323. 중앙감독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에 순응함을 전제로 하여 교회의 일반 규례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의 명령을 좇아 나사렛성결교회를 받들기 위한 어떠한 일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0절 중앙총무

324. 중앙위원회 세척 규정대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총무는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혹은 장정 317.5의 규정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시무한다.(900.2)

324.1. 중앙총무는 직책상 중앙총회의 대의원이 된다.(301)

324.2. 만일 중앙위원회 사이의 기간에 어떤 사유로 중앙총무 직에 공석이 생기면 317.4의 규정대로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총원된다.(334.23)

324.3. 중앙총무는 중앙감독회와 중앙위원회에 순종하여야 한다.

325. 중앙 총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25.1. 중앙총회와 중앙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해서 보존하는 일.

325.2.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체 통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325.3. 중앙총회에 속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후임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하는 일.

325.4. 중앙 소청부의 모든 결정 사항을 영구 보존용으로 철하여 귀중하게 보관하는 일.(513)

325.5. 신청이나 징계조처 혹은 사임으로 입수된 모든 교역자들의 자격 증서를 서류철에 보관하였다가 그들을 받아들인 연회에서 설정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송달해 주는 일.(434-34.1, 434.6)

325.6. 공식 출판을 위해서 작성된 연회통계표를 감수하는 일.(217.3)

325.7. 연회목회자 자격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항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일.

325.8. 중앙총회의 상세 내용들을 연회를 통해 요구하는 대의원들에게 또는 세계 선교지구의 경우, 그들의 지구 사무국을 통해 요구하는 대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일. 이것은 디지털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325.9. 최신판 장정의 완전한 본문을 <http://www.nazarene.org>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일. 그 포맷은 가능한 한 모든 개인 컴퓨터, PDA 등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5.10.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외의 어떠한 업무도 성실히 실천하는 일.

326. 중앙총무는 전체 교회에 속한 일체의 법적 서류들을 보관 및 신탁하는 책임자이다.

326.1. 중앙총무는 본 교단의 부흥 발전과 관련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권한이 있으며 상기 자료와 기록을 보관하는 책임자이다.

326.2. 중앙총무는 902.10에 의거하여 역사적 장소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27. 중앙총무는 중앙감독들과 협력하여 중앙총회 개최 전에 회의 법규, 장정 수정 초안 등을 포함해서 중앙총회의 과업 수행에 신속을 기할 수 있게 할 만한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총회 경비에서 지출한다.

327.1. 중앙총무는 중앙총회가 선임해 주거나 중앙총회 사이의 기간에 중앙감독회가 임명해 주는 인원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11절 중앙재무

328. 중앙위원회 세칙 규정대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재무는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혹은 규정 317.5의 규정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시무한다.(900.3)

328.1. 중앙재무는 직책상 중앙총회의 대의원이 된다.(301)

328.2. 중앙재무는 본부의 재정 사무에 관하여 중앙재정국, 관할 중앙감독과 중앙감독회와 중앙 위원회에 순종해야 한다.

329. 중앙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29.1.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체 공익에 속하는 기금을 보관하는 일.

329.2. 하기의 기금을 수납하고 시령에 따라 지출하는 일. 미국/캐나다선교전도국, 홍보부, 재정국, 주일학교 및 나사렛국제청년국, 국제선교국, 기타 중앙위원회 혹은 그 산하의 어떤 국의 소속 기금, 중앙감독회, 중앙 예비비, 중앙총회 경비, 기타 중앙 교회 후생금,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그리고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330.3)

329.3.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증금을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보험 기관에 지정된 액수만큼 신탁하는 일.

329.4. 보관자로서 관장하고 있는 중앙 각 기관의 재정 상황을 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하는 일.

329.5. 중앙 위원회에 매년 투자 재정을 포함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체 재정 현황을 보고하는 일.(334.13)

329.6. 적절한 보험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된 연금용 기금으로부터의 수익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과 이와 같은 보험 계약들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하는 일.

329.7.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학교, 고아원, 보호기관 및 기타 다른 기관들로부터 매월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확보하는 일.

제12절 중앙위원회

330. 나사렛성결교회의 중앙위원회는 미주리 주 법규에 따라 설립된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의 종교적 자선 법인체로서 331.1-32.4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들 가운데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중앙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다. 교회 지구를 대표하여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려면 그 사람은 해당 지구의 개교회 회원이어야 함은 물론 그 지구의 거주민이어야 한다.(305.6, 333)

330.1. 중앙위원회의 고용인이나 중앙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교육 기관에 속한 하부기관의 고용인은 중앙 위원으로 피선되거나 중앙 위원직을 지속할 수

없다. 연회나 기타 중앙 본부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하부 기관에서 파송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330.2. 중앙총무는 직책상 중앙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330.3. 나사렛성경교회의 중앙재무는 직책상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 각 국의 재무가 된다.(329.2)

331. 중앙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331.1. 중앙총회 대의원들을 선출한 후, 각 3단계의 정규 연회의 대의원들은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정규 연회는 두 명의 안수 교역자와 두 명의 평신도의 이름을 제출한다. 지구 실행위원회가 있는 지구에서는 추천된 이름을 먼저 국가위원회에 보내고 곧이어 지구 실행위원회로 보내는데 여기서 각 3명의 후보를 선출하여 중앙총회 지구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게 한다. (203.23)

331.2. 중앙총회 각 지구의 대의원들은 상기 후보자 명단 중에서 다음과 같이 중앙총회에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정회원 100, 000명 이하의 각 지구는 1명의 안수 교역자와 1명의 평신도를 추천한다. 정회원 100, 000명을 초과 200, 000명까지의 각 지구는 2명의 안수 교역자 곧, 1명의 연회감독과 1명의 목회자 혹은 부흥사, 그리고 2명의 평신도를 추천한다. 정회원 20, 000명을 초과하는 지구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1명의 평신도와 1명의 안수 교역자를 추가 추천한다.

(1) 정회원 200, 000명을 초과하는 지구에서 1명의 안수 교역자는 목회자 또는 부흥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연회감독이 되며, 또 다른 한 안수 교역자는 상기한 두 부류 중 어느 한 부류에 속한 자가 된다.

(2) 어떤 연회도 2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둘 수 없고, 어떤 지구도 6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둘 수 없다.(단, 기관의 대표자이거나 보조 위원의 경우는 제외함) 어떤 한 연회의 후보자들 중 2명 이상이 그 지구의 다른 연회들의 후보자들보다 많은 표를 얻을 경우 다른 연회의 차순 최고 득표자들이 그 지구의 후보로 피선된다.(305.6, 901.1)

(3) 각 지구에서 각 부류별로 최고 득표를 한 평신도(들), 목회자나 부흥사 그리고(혹은) 연회감독이 과반수 투표에 의해 중앙 위원회 후보로 중앙총회에 추천된다. 6명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큰 지구의 경우, 평신도와 안수 교역자 중에서 각각 차순 최고 득표자들을 추가 후보로 추천한다.(902.9)

(4) 지구 실행위원회가 대부분의 선출된 대의원들이 중앙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구 대의원의 투표가 중앙총회가 시작되기 6개월

내에 우편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실행되어질 수 있다. 중앙위원회 임원들을 중앙총회에 우편 또한 전자로 추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지구 실행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되어야 하고, 이것이 시행되기 전 승인을 얻기 위해 중앙총무국에 상신되어야 한다.

331.3. 국제 교육부(BOE)는 교육 기관들에서 2명의 안수 교역자와 2명의 평신도로 구성된 4명의 후보자를 중앙총회에 추천해야 한다.(330.1)

331.4.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협의회 가운데서 2명을 중앙총회에 추천한다.(341.4)

331.5.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는 협의회 가운데서 2명을 중앙총회에 추천한다.(342.3)

332. 중앙위원회 위원 선거는 하기 규정과 같다.

332.1. 각 지구에서 추천된 각 후보자는 중앙총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표에 의해 당선된다.(902.9)

332.2. 국제 교육부에 의해 추천된 후보 중, 중앙총회는 2명을 선출하되 그 중 1명은 안수 교역자이고 1명은 평신도이어야 한다.

332.3. 중앙총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선출한다.(341.4, 901.3)

332.4. 중앙총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선출한다.(342.3, 901.4)

333.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그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이 4년 임기 중에 그가 대표로 선출된 지구에서 교회 회원권이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그의 위원 자격은 즉시 종료된다. 그로 인해 생긴 결원은 신속히 충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거주지 이동 혹은 교회 전적이 4년 임기 중 두 번째 정식회의 이후에 행해질 경우는 그가 선출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다.(330)

333.1. 중앙위원회 및 그 산하의 국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중앙감독회의 추천에 의해 가급적 빨리 중앙총무에게 2명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의 성명을 제출하면 그 공석이 생긴 지구의 연회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의 우편 투표로 1명을 선출하되 각 2단계와 3단계 연회 실행위원회는 1표를 투표할 수 있다. 교육 대표국의 경우는 추천된 후보들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과반수의 투표로 1명을 선출하게 한다. 나사렛국제청년회의 경우는 추천된 후보들을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에 제출하여 과반수의 투표로 1명을 선출하도록 한다. 나사렛국제선교회의 경우,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관할 중앙감독의 자문을 받고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의 과반수의 투표로 1명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의 임무

334. 중앙위원회는 모든 국가와 지구, 그리고 연회와 개교회 차원의 위원회들로 하여금 웨슬리적 전통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증진시키며, 또한 각 나라와 지구 내에 세계적 교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촉구하며 용기를 북돋운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가 지시하는 바를 전제로 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부서의 재정 및 실질상의 사업들을 증진시킨다. 중앙위원회는 여러 부서 사이의 계획과 활동을 조정, 연결 및 통일시키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일치된 정책의 확립을 도모한다. 중앙위원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상의 통일과 격식상의 완벽을 기한다는 안목으로 나사렛성결교회 산하 모든 부서와 그 관련 기관들의 재정 감사를 명할 권리를 소유하며 또한 중앙 위원회 산하 여러 국의 사업 행정은 물론 본 교단과 관련 또는 그 일부인 모든 조직체 및 기관의 사업이나 행정 사무에 대한 고문 기관이 된다. 이러한 산하의 모든 국 및 조직체 그리고 기관들은 중앙위원회의 충고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이에 합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334.1. 중앙위원회는 합법적으로 매각, 유증, 유업, 기부 혹은 기타 행위에 의해 자체에게 위탁된 부동산과 사유 재산을 매입, 소유, 보존, 관리, 저당, 매각, 양도 및 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 채무, 부과 및 포기 등의 행위권을 소유하며, 따라서 이러한 위임 사항을 수행하고 자체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부해 주는 권한도 소유한다.

334.2. 중앙위원회는 장정 316조와 305.2에 의거하여 공식 중인 중앙감독을 추천한다.

334.3.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 개최 전 혹은 폐회 직후에 회집하여 자체 조직을 위해 법인 정관 및 세칙 규정에 따라 임원 및 분과 위원 그리고 부서위원 등을 선출하여 4년간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중앙감독들은 중앙위원회의 총회의를 공동 및 개별적으로 사회한다.

334.4. 회의 : 중앙위원회는 동 법인체의 세칙 규정에 따라 연차 회의를 지정된 시기에 미국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서 개최한다. 단 연차 회의의 시간, 날짜 및 장소는 중앙위원회 및 그 부서들의 최대 편익을 위해 정규 혹은 특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34.5. 특별회의 : 중앙위원회의 특별 회의는 의장, 회장, 혹은 총무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334.6. 재정국 : 중앙위원회가 선정한 재정국은 신탁 기금의 적절한 투자 책무를 담당한다. 중앙위원회는 산하 각 부서에서와 중앙본부 사무소에서 다음 1년간을 위해 청구된 예산 청구 안을 일단 재정국에 회부하고 각 청구 예산에 대한 재정국의 제언을 청취한다. 이 재정국은 중앙 위원회에 의해 맡겨진 다른 임무도 수행한다. 이 재정국은 또한 자체 회합에 관한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34.7. 세계선교기금 : 세계선교기금은 교단 전체의 활동을 보조, 유지, 그리고 증진하기 위해 전 교단에 의해 거출되어야 할 모든 부서 예산 및 기타 기금의 총합계이다. 중앙위원회는 교회의 여러 부서 및 기관에 의해 제출된 청구안과 중앙재무의 제안에 의해 세계전도기금으로부터 각 부서할당 금액과 기금 할당액을 결정한다. 각 부서 할당 예산과 함께 세계선교기금이 결정되려면 중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중앙감독회에 그것을 제출하여 검토, 제안 및 수정을 받아야 한다.

334.8. 중앙위원회가 다음 회계 연도를 위해 총 예산액을 결정하였으면 중앙감독회와 중앙위원회는 중앙 예산액을 연회와 중앙의 균등한 공익 혜택을 위한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연회별로 할당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130, 317.12)

334.9. 중앙위원회는 어떤 부서 혹은 기금에서 요청한 금액을 증감할 권한이 있다. 중앙총회에서 채택한 재정 지원 항목은 중앙위원회에 회부되고 중앙위원회는 중앙 교회의 전체 재정 수입 범위 내에서 교회의 어떤 기관 혹은 시설의 연간 예산 할당액을 현존하는 경제 여건에 맞게 비율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334.10. 중앙위원회는 자금 사정이 허락되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될 때는 세계선교기금 중에서 나사렛 신학교와 나사렛 성서 대학을 위한 예산 책정을 승인한다.

334.11.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 사이의 기간에 감독들에 대한 급료 및 연관된 후생 혜택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334.12. 보고서 : 중앙위원회는 정식회의에서 산하 각 국으로부터 재정 보고를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 상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접수한다. 산하의 각 국은 또한 다음 1년간의 지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34.13. 중앙재무는 매년 중앙위원회에 지난 1년간 자기가 관리인으로서 신탁

기금 및 투자금을 포함해서 모든 자금을 수입, 지출하였던 재정 상황에 대해 세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고는 중앙위원회 산하 국들의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1년간의 세밀한 지출 예산안을 첨부한다. 중앙재무는 중앙위원회를 위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329.5)

334.14.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 개회 전 혹은 폐회 직후에 회집하여 중앙위원회 세칙 규정에 따라 중앙총무와 중앙재무를 선출하여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직무하게 한다.

334.15. 중앙위원회의 미국 지구 대표위원들은 미국 연금 복지 위원회를 선출하는데, 미국의 각 지구를 대표하는 1명씩의 위원과 일반 그리스도인 1명을 그 구성원으로 선출한다. 선거 후보자들은 미국 연금 복지 위원회의 세칙에 규정된 대로 중앙감독회에 의해 추천된다.(336)

334.16. 중앙위원회는 매 중앙총회가 끝난 후 나사렛 출판사 이사회를 선출하여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337)

334.17. 중앙위원회는 334.20에 명시된 방법과 중앙위원회 세칙에 따라 나사렛 출판사 사장을 선출한다.

334.18. 특정 지구나 국가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는 중앙위원회의 상정안은 중앙위원회 내의 실행위원회와 중앙감독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지구의 중앙위원 모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다.

334.19.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 혹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공인받은 어떤 상임 위원회나 분과 위원회를 어떤 국(들) 혹은 부에 적절히 연관시켜 온전을 이루게 하고 그 업무와 책임 그리고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

334.20. 국장 : 중앙위원회는 그 산하 여러 국의 각 국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317.5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한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이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다 : 현직 국장이 있을 경우 추천위원회는 ??가??, ??부??의 투표로 그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수를 추천할 수 있다. 이 직무에 유능한 후보자들의 발탁은 중앙위원회 세칙 규정대로 조사 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추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성과 함께 2명 이상의 이름을 추천 위원회에 내놓아야 한다. 6명의 중앙감독과 중앙위원회 산하 각 국의 인사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위원회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름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위원회 준칙에 명기된 대로 선출한다.

334.21. 실행 임원 봉급 : 중앙위원회는 국장 및 부장들을 포함하고 책임 수준 및 공로를 인정해 주는 봉급 구조에 대비하여 ??업무 평가?? 및 봉급 급여 안을 설정, 서류화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국장들, 나사렛 출판사 사장 그리고 기타 중앙위원회에 의해 인정받아 선출된 임원들의 봉급을 매년 검토하고 승인한다.

334.22. 중앙위원회는 중앙총회 혹은 중앙위원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334.14와 334.20에 수록된 직무 및 중앙총회나 중앙위원회 혹은 그들이 선출한 국들에 의해서 설치된 기타 실행 직무에 공석이 생길 경우 중앙위원회 세칙과 317.4의 규정대로 추천을 받아 충원한다.

335. 은퇴 : 334.14와 334.20에 수록된 모든 임원 및 기타 기관장, 그리고 중앙감독 혹은 중앙총회가 선출한 특별위원회들과 중앙위원회 및 산하 국들에 고용된 기타 기관장들의 은퇴는 그들이 만 70세가 된 후에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 때에 행해진다. 공석이 생길 경우 장정의 절차에 따라 충원한다.

제13절 중앙 교회-관계위원회

= 은급위원회 =

336. 각 교회 관계 은급 계획의 신탁 책임을 갖는 은급위원회 혹은 동등 권위의 위원회를 둔다. 은급 계획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인정받아 필요에 따라 조직, 개체 연회, 여러 연회, 국가, 개체 지구, 혹은 여러 지구의 수준에서 봉사한다.(334.15)

336.1. 중앙위원회는 자체가 인정한 모든 세계 전역의 은급 계획에 관한 지침을 설정, 옹호한다. 그 지침은 어떤 은급 계획안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위해 기반이 된다.

336.2. 모든 은급 계획은 은급 복지 국제 위원회를 통해 소정 양식 및 형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연례 보고를 한다.

= 나사렛 출판사 이사회 =

337. 나사렛 출판사는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의 한 법인체로서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되는 나사렛 출판사 사장, 직책상 법인체의 서기가 되는 중앙총무, 주일학교부 및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의 중앙 위원 중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 1명, 중앙감독회에서 추천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최대 6명.

그들은 다음 중앙총회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 결원이 생겼을 때는 중앙감독회가 추천한 자들 중에서 당선되지 않은 자들 중에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충원된다.

337.1. 이사회장(들)은 나사렛 출판사의 정책과 계획 그리고 사업 운영을 검토하고 지도하며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헌장과 나사렛 출판사의 준칙에 맞게 시무하며 중앙감독회와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337.2. 나사렛 출판사 이사회는 나사렛 출판사의 준칙에 명시된 대로 매년 1회 혹은 그 이상의 회의를 갖는다.

337.3. 나사렛 출판사 사장은 주요 지출과 연간 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기 전에 나사렛 출판사 이사회장(들)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37.4. 나사렛 출판사 사장은 나사렛 출판사의 경영을 위한 나사렛 출판사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장)들과 중앙위원회에 매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37.5. 나사렛 출판사 사장이 선출되어야 할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조사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해야 하며, 추천 위원회는 6명의 중앙감독과 직책상 이사가 아닌 3명의 이사 그리고 3명의 중앙위원회 실행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외의 선출 과정은 334.20에 일치한다. 그(녀)는 관할 중앙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37.6. 나사렛 출판사 사장은 본부 국장 회의와 기획 예산 협의회의 일원이 된다.

제14절 기독교 실천위원회

338. 중앙총회 이후에 중앙감독회는 실천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중 한 명은 중앙총무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중앙 기독교 실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38.1. 본 교인들에게 현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술, 담배, 마약 및 도박에 대한 건설적인 정보를 교회 교리와 조화 있게 개발하도록 하는 일과 교단적인 대화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일.

338.2. 결혼의 신성함과 기독교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아울러 이혼의 심각성과 사악성을 강조하는 일. 특별히 결혼이란 전 생애에 걸친 언약으로서 죽음 이외의 것으로는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성경의 원칙을 부각시킨다.

338.3. 시민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일하는 단체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본 교인들을 격려하는 일.

338.4. 본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며, 비밀 서약에 의한 비밀 결사 가입, 기독교인의 윤리관식을 저하시키는 각종 오락이나, 기타 유사한 세속적인 활동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 경계하는 일.(34.1)

338.5. 각 연회로 하여금 기독교 실천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조력하고 격려하며 각 연회본과 위원회에 현 시대의 도덕 문제 등에 관한 지식과 자료를 공급함으로써 각 교회에 그것을 배부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일.

338.6.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의적인 문제점들을 관측하고 해당 조직체들에게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일.

제15절 소명 받은 부흥사 복지 위원회

339. 소명 받은 부흥사들의 복지위원회는 직책상 위원장인 부흥회 조정자와 4명의 종신 부흥사들, 그리고 한 명의 목회자로 구성된다. 미국/캐나다선교/전도국장은 부흥회 조정자의 자문을 얻어, 동 위원회의 후보 위원들의 명단을 중앙감독회에 제출함으로써 동의와 지명을 구한다. 동 위원회나 또는 위원으로 지명된 자들은 소속 연회에서 전업 부흥사로 위임된 부흥사들이 종신 부흥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면담한다.(408.3) 아울러 동 위원회는 나사렛 교단 내의 순회 부흥사들의 상태를 조사하며 부흥사와 전도자들을 중앙위원회 산하의 적절한 부서에 천거하는 일을 한다. 공석들은 부흥회 조정자의 자문을 얻어, 미국/캐나다선교/전도국장으로부터 받은 추천을 근거로 중앙감독회로부터 임명을 받아 채워진다.(317.7)

제16절 국제 연구과정 실행위원회

340. 중앙총회가 끝난 후, 목회발전 부장은 지구교육조정관의 자문을 얻어 국제 연구과정 실행위원회 (ICOSAC)에서 일할 후보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동 위원회를 위한 후보자들로는 목회자 대표, 행정 대표, 교육 대표와 평신도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 ICOSAC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교회를 대표해야만 한다. 중앙감독회는 4년 동안의 임기로 봉사하도록 국제 연구과정 실행위원회를 임명한다. 국제 연구과정 실행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이상 모임을 가지며, 장소는 목회발전 부장에 의해 결정된다.(424.1-24.2, 424.5)

제17절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341. 나사렛 청년 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회 헌장과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중앙감독 및 중앙위원회의 권한 하에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조직된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세계 전역의 나사렛 개교회 및 연회조직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원들로 구성된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중앙총회가 승인한 나사렛국제청년회 헌장 및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에 따라 다스려진다.

341.1. 4년마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와 상의하여 중앙감독회가 정한 시기에 모인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에서 지정된 회원들로 구성된다.(810).

341.2. 대회는 세계 회장과 세계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그들은 직책상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 회원이 되고 무보수로 봉사한다.

341.3.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일반 청년회원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이 지정한 대표들로 구성된다.(810) 나사렛국제청년회 국장은 직책상 협의회에서 봉사한다. 협의회는 주일학교/나사렛국제청년회국을 통해 중앙위원회와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감독에게 책임이 있으며, 나사렛국제청년회 헌장 및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의 권위 하에 움직인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는 이어지는 중앙총회가 종료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341.4.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중앙총회가 선출한 한 사람을 나사렛성결교회 중앙위원회의 대표가 되게 한다.(331.4, 332.3)

341.5.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중앙총회에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를 대표해 참석하는데, 그 때 그(녀)의 임기는 끝난다.(301).

제18절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협의회

342.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협의회는 중앙회장, 중앙 실행총무,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회칙에 의해서 지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선출된 수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342.1. 중앙협의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에 의해서 통치된다.

중앙협의회는 중앙위원회의 세계선교위원회의의 보조 기관이다.(811)

342.2. 중앙 실행총무는 세계선교국 관할 중앙감독과 협의한 세계선교국장에 의해 추천되고 중앙감독회의 선거 추천과 함께 과반수의 투표 인준을 위해 세계선교국에 내놓기 전에 중앙협의회의 과반수의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천이 인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계선교국장과 중앙감독회는 중앙협의회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해 1명이 인준 받을 때까지 다른 후보들을 추천한다. 중앙 실행총무는 직책상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의 회원이 되고 세계선교국의 직원이 된다.

342.3.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는 중앙위원회에 1명의 대의원을 파송하고 이 대의원은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의 후보 추천에 의해 중앙총회에서 선출된다.(331.5, 332.4)

342.4.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협의회의 지시 하에 정규 중앙총회 직전에 매 4년마다 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에서 회칙에 따라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협의회 회원을 선출한다. 본 대회에서는 또한 중앙 회장을 선출하며 그는 직책상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협의회 회원이 된다.(811)

제19절 국가위원회

343. 필요한 경우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교회 개척, 기존 연회의 발전 및 새로운 연회의 건설, 목회자 훈련, 자원 개발, 그리고 은퇴 목회자를 위한 연금 계획 등을 위한 일원화된 전략을 가동시키고 재산의 취득, 증식, 매매, 그리고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해당 국가 내에서의 나사렛 교단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업무로서 장정 상 해당 규정이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위해 국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그 같은 기구는 그 나라 안에서 나사렛성결교회의 법적 권위를 갖는 기관이다. 조직된 연회가 단지 하나뿐인 나라의 경우 정식으로 선출된 연회실행위원회가 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다루는 국가위원회가 된다. 두 개 이상의 연회가 설립된 나라에서는 국가위원회가 정식으로 지명되거나 선출된 연회감독들뿐만 아니라, 연회 실행위원회의 회원들 가운데 연회에서 선출된 한 명의 장로목사와 두 명의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감독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연회감독들 외에 안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해당 국가 내에 한 개 이상의 지구가 있는 경우 해당 지구의 정식 중앙위원회의 대표들이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국가 내에 한 개 이상의 지구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대표들과 추가 안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대표가 되어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331-31.2)

그러한 국가위원회의 조직 혹은 법인에 관한 조항의 사본은 중앙총무에 의해 즉시 철해져야 한다. 국가위원회에 의해 처리된 업무는 어떤 것이든지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위원회의 연차 회의 및 특별 회의의 회의록은 중앙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중앙총무에게 제출되기 전에 지구 실행위원회에 의해 찬성, 반대를 통해 검토된다.

제20절 지구

344. 기원과 목적 : 교회의 범세계적인 성장에 따라 몇 개의 연회조직을 지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구이라는 명칭으로 집대화한다.

나사렛 교단의 중앙 본부의 제재를 받는 일단의 연회들로서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동질감을 갖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추천과 중앙감독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동일한 행정 지구로 편성될 수 있다.

344.1. 지구 정책 : 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감독회는 지구 실행위원회의 동의하에 지구의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 같은 구조 조정은 세부적인 필요성과 여러 가지의 잠재적인 문제점들, 실제적인 현상들, 그리고 해당 지구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중앙감독회는 신조에 대한 불변의 위임을 내포하며, 무엇보다도 성결 교리와 거룩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 교단의 선교의 열의를 복돋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44.2. 임무 : 지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개척 지구나 연회, 그리고 기관들을 통해 나사렛성결교회의 임무를 증진시키는 일.
2. 지구 내의 각 연회 및 기관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도와 영감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구의 인식을 키우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따른 교재와 전략 들을 개발하는 일.
3. 중앙총회 및 중앙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피선될 후보들을 추천하는 일.
4. 장정의 규정대로 학교 및 대학,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
5. 해당 지구로부터 정책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발하는 데에 권한을 행사하는 일.(344.3)
6. 지구별 실행위원회의 모임을 계획하는 일.
7. 343조와 344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위원회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답는다.

344.3. 지구 실행위원회 : 각 지구별로 지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역할은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구장을 보조하며, 국가위원회의 의사록을 중앙총무 사무실로 보내기에 앞서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하여 보내며, 세계선교국에 추천할 선교사 후보들이나 철수할 선교사들을 면접하며, 지구장이나 전략 책임자들, 또는 사역 조정자들의 보고를 접수하며, 장정의 규정에 따라 중앙 총회에 참석할 선교사 대표들을 선출하며, 그리고 국제 교육 기관 위원회의 교장이나 학장, 또는 총장을 중앙총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일 등이다.

지구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각 지구의 필요와 발전과 요구에 따라 지구별로 변동이 가능하다. 지구장은 지구 실행위원회의 구성을 세계선교국장과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천한다. 직책상 회원은 관할 지구 중앙감독과 세계선교국장 그리고 의장으로 시무하는 지구장이 된다. 세계선교국 임원은 지구 실행위원회를 위한 피선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조력자로 봉사할 수는 있다. 지구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총회 지구 대의원 회의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지구 실행위원회는 중앙총회 사이에 총원될 수 있다. 지구장은 지구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구 복음 회의나 지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44.4. 지구장 : 필요한 경우 각 지구마다 중앙감독회가 세계선교국장의 동의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 지구장을 돕으로써 나사렛 성결교회의 정책과 관습에 일치하는 활동을 통해 산하 연회와 개교회, 그리고 각 기관들이 나사렛 교단의 선교 정책과 그 활동 방안들을 따르도록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구장의 재선에 앞서, 세계선교국장과 관할 중앙감독에 의해 지구 실행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재심이 행해져야한다. 긍정적 재심은 재선을 위한 추천의 보증이 된다.

각 지구장들은 행정적으로 세계선교국과 중앙위원회에 속하며,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앙감독회의 지시를 따른다.

344.5. 지역전략책임자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구장은 그 지구에 현장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세계 선교정책과 장정 절차에 따라 지역전략책임자들의 임명을 세계선교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지역전략책임자는 지구장의 지시에 따른다.

344.6. 지구 연구과정 실행위원회 : 지구 연구과정 실행위원회(RCOSAC)는 직책상 위원장이 될 지구 교육 책임자와 지구장의 자문으로 선택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RCOSAC의 위원들은 그 지구를 위한 목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목회자, 행정가, 교육자, 평신도).

344.7. 지구 연구과정 실행위원회의 의무 : RCOSAC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그 지구 나사렛성결교회의 안수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표준이 되는 그 지구 안수에 관한 지침서(Sourcebook on Ordination: SOO)를 개발하는 일. 지구 SMD는 장정에 명시되어 있고 안수를 위한 발전 표준에 관한 국제 지침서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 최소한의 표준을 반영해야만 한다.

(2) 그 지구 목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유효한 절차를 발달시키며 그 프로그램이 지구 COSAC과 ICOSAC의 최소한의 표준에 맞는가를 검증하는 일.

(3) 이 표준들을 목회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구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는 일.

(4) 지구 지침서와 국제 지침서 표준의 준수를 위해 목회 교육 프로그램 제출물을 검토하는 일.

(5) 지구 목회 교육 프로그램의 채택과 승인을 위해 국제 연구과정 실행위원회에 동 프로그램을 상신하는 일.

제4장 고등 교육

제1절 교회와 신학교/신학대학

380. 나사렛성결교회는 시초부터 고등교육에 헌신해 왔다. 교회는 대학을 위해 학생들과 행정 요원 및 교원 공급은 물론 재정 및 영적 후원을 제공한다. 대학은 교회의 청년들과 많은 장년들을 교육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계로 내보낸다. 교회 산하의 대학은 개교회는 아니라 해도 교회의 필수적 부분이며 교회의 한 표현이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인생의 가치성과 위엄성을 믿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받고 영적, 지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딤후 2 : 21)이 되도록 한다. 개교회 활동-복음 전도, 기독교 교육, 구호 사역, 그리고 예배 행위의 제일 되는 과업과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본보여

주는 것이다. 개교회 수준의 청장년 기독교 교육은 인간 성장의 여러 단계에서 복음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출생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수준 혹은 모든 수준의 탁아소/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그 목표와 기능에 맞추어 협력해야 한다. 중앙 교회 수준에서는 고등 교육 혹은 사역 준비 기관을 장려하는 역사적 업무를 지속한다. 또한 그 기관들은 중앙총회에서 책정되고 장정 상에 표명된 나사렛성결교회의 신학 및 철학에 맞추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380.1. 교육적 선교백서 : 교육의 사명서 웨슬리주의와 성결운동의 성서적 및 신학적 입장에 근거를 두고 교단의 명백한 사명에 책임을 지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은 교육을 추구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육성시켜서 교회와 세계에 봉사함에 있어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 시종일관한 기독교적 이해를 나타내도록 지도함을 그 목표로 한다. 그 외에 그러한 고등 기관들은 커리큘럼 제공과 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학자 양성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힘써 졸업생들을 적절히 준비시켜 그들이 선택한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직무에 임하게 한다.

380.2. 중앙총회는 국제 교육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학위 수여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존하는 교육 기관의 지위를 향상, 또는 개선하는 일은 중앙위원회가 국제 교육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인준할 수 있다. 어떤 개교회나 교회들의 결합 또는 개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의 그룹도 국제 교육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지 않는 한 대학 수준의 기관이나 교역자 양성의 기관들을 설립 또는 후원할 수 없다.

제2절 국제 고등 교육 협의회

381. 국제 고등 교육 협의회를 두는데 그 협의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 교육 위원회는 총장, 교장, 원장, 혹은 책임자(혹은 특정한 대표)와 지구의 교육 조정관들, 교육 부장, 세계선교국장, 그리고 국제 교육 위원회 관할 중앙감독으로 구성된다.

382. 국제 교육부는 세계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 기관들을 위해 중앙 교회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이 부서는 13명의 부원으로 구성된다 : 즉,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8명과 직책상 위원이 되는 5명으로써, 즉 2명의 중앙위원회 교육 대표, 세계선교국장, 목회발전부장, 그리고 교육 부장이다(383). 교육위원장, 세계선교국장, 2명의 중앙위원회 교육 위원 그리고 국제 교육 위원회 관할 중앙감독과 세계선교국 관할 중앙감독으로 구성되는

추천 위원회는 8명의 위원 피선을 위해 8명의 후보자를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추천한다.

교회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대표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명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1명의 지구 교육 조정관, 3명의 평신도, 2명의 안수 목회자로 교육 조정관이 지명되지 않은 세계 선교 지구에서 지명된 자들, 최대 2명의 대표성을 지닌 자. 어떠한 세계 선교 지구도 그 지구가 한 명의 대표자를 갖게 될 때까지 1인 이상 임명될 수 없다.

지명과 임명의 과정에서 특별히 교육자로서 문화 교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소지자에게 중점을 두도록 한다.

국제 교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82.1. 교육 기관들은 법적으로 법인체의 헌장 또는 정관에 일치하며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규정된 지침과 조화를 이룬 헌법과 준칙을 갖고 있는 해당 이사회에 지배하에 있음을 확실하게 해 두는 일.

382.2. 나사렛 교육 기관들의 이사회 이사들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우수한 회원들이어야 함을 확실하게 해 두는 일.

그들은 교회 장정에 명시된 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완전성결 및 관례를 포함하여 신조에 완전 일치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고등 교육 이사회는 같은 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되도록 한다.

382.3. 선물 및 유산 그리고 기증 등을 통해 교육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매년 중앙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정책에 따라 이런 자금의 할당을 천거하는 일.

382.4. 교육부장은 국제 교육 기관위원회로부터 제공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접수하고 선처하는 일 :

(1) 연간 통계 보고 (2) 연간 감사 보고 (3) 내년을 위한 회계 연도 예산

382.5. 국제 교육부의 역할은 교육 기관들과 중앙감독회 및 중앙위원회의 고문격이지만 또는 후원과 지지를 권고 및 제공하는 일.

382.6. 주로 교육기관과 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 나사렛 교육 기관과 관계되는 일들에 봉사하는 일.

382.7.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는 국들이 업무 보고를 하고 천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앙감독회와 중앙위원회에 그 업무와 천거 내역을 제출하여 인준 받는 일.

383. 국제 교육부의 집행인은 교육부장인데 그는 중앙감독회가 승인하고, 2명의 중앙위원회 교육 대표와, 국제 교육부 및 세계선교국 관할 중앙감독들, 세계선교국장, 그리고 국제 고등 교육 협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추천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2명 이상의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중앙 위원회의 3분의 2 찬성 득표로 선출된다.(382)

교육부장은 추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위원회에서 가부를 묻는 투표방식에 의해 현직에 재임될 수 있다. 교육부장의 임무는 중앙위원회 세칙에 상술되어 있다.(382)

384. 모든 교육 기관의 헌법과 세칙은 나사렛성결교회가 교회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산을 입수함을 지적하는 재산 분리 및 처분에 관한 정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 5 부

사역과 기독교 봉사

제1장 사역자의 소명과 자격

제2장 사역자의 구분 및 역할

제3장 목회자 교육 과정

제4장 목회자의 목회 규정

400. 나사렛성결교회는 모든 신자가 만민을 섬겨야 한다는 복음의 위탁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며 주장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다 직무적이고 공적인 사역을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수한다. 우리 주님께서 열두 사도를 불러 택하여 안수하시고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를 보내사 전파하게??(막 3 : 14)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복음의 사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주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 교회는 성경과 체험에 입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하는 특별소명의 증인으로 부름 받지 않은 어떤 개인들을 또한 평생 봉사자로 부르심을 인정한다. 교회가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소명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후보자가 그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적절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401. 나사렛성결교회의 영속성과 능률은 주로 사역자들의 영적 자격과 인격과 생활태도에 달려 있다.(433.14)

401.1.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시간 엄수, 사려 분별, 근면, 열성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인도하는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즉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고후 6 : 6-7)자라야 한다.

401.2. 나사렛성결교회의 복음 사역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강을 소유하며 성령의 세례로 온전히 성결케 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이며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소명 받았음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401.3. 사역자는 또한 신자들이 온전함에 이르고 실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발휘하여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도록??(빌1 : 9)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이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구원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강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401.4. 사역자는 목회하기 위한 은혜뿐만 아니라 은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지식을 갈망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망해야 하며 성경에 계시된 속죄와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건전한 판단과 충분한 이해와 명백한 견해 등을 소지해야 한다. 그(녀)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은 품성이 성숙되며 죄인들은 회개에 이른다. 목회자는 기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401.5. 사역자는 미래의 사역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또는 사역자가 되기에 적합한 은사와 은혜를 지닌 사람들과 기독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는 사람들에게 목회의 소명을 일깨워줄 기회가 주어질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401.6. 안수 신학: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 제사장직과 사역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안수는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서 목회적 지도력을 위해 일련의 남녀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성경적 믿음을 반영하는 것임을 믿는다. 안수는 교회의 사실 확인적, 권위적 행동으로서, 이를 통하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청지기와 선포자로서 쓰시기 위하여 그 목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수는 온 교회와 온 세상에 이 후보자가 성결의 모범적인 삶을 살며, 공공 사역을 위한 은사와 은혜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식,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건전한 교리를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행 13:1-3; 20:28; 롬 1:1-2; 딤후 4:11-16; 5:22; 딤후 1:6-7; 5:22)

제2장 사역자의 구분과 역할

제1절 평신도 사역자

402.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역군들로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들에게 적격한 봉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400)

402.1.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 개척자나 비전임목회자, 교사, 평신도 부흥사, 청지기 사역자, 교회 사무 목회자 혹은 개교회 내의 기타 특정한 사역에 봉사할 사명을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안수 교역자가 되는 특별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평신도 사역 자격에 요하는 학과 과정을 풀해야 한다.

402.2.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얻어 개교회제직회는 평신도 사역자의 개인적 구원 체험은 물론 성경 교리 및 교회 업무에 대한 지식을 검토하고 스스로 그러한 사역을 위해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을 완비하도록 한다.

402.3. 개교회제직회는 담임목회자와 교회제직회 서기가 서명한 증서를 각 평신도 사역자 후보에게 발급할 수 있다.

402.4. 평신도 사역자 증서는 매년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얻어 교회제직회에 의하여 갱신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신도 계속교육(Continuing Lay Training)에 규정된 평신도 사역자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최소한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는 매년 제직회에 보고한다.

402.5. 연회임명 하에 교회 개척자, 임시 목회자, 겸직 목회자, 혹은 기타 전문 사역자로 시무하는 평신도 사역자는 유효한 연수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 서기가 서명 날인한 평신도 사역자 자격증을 연회실행위원회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신도 사역자 자격증은 매년 연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402.6. 그(녀)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개교회 밖에서 시무하려는 평신도 사역자는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 그들의 감독을 받고, 매년 그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회임명기간이 끝날 때에는 평신도 사역자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개교회를 통해 갱신 및 보고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402.7. 평신도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유효한 연구 과정을 이수한 후에 평신도

사역자는 계속하여 그(녀)가 선택한 사역에 따라 전문 분야의 연구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평신도 사역자 교육 지침서 [Continuing Lay Training Catalog] 참조). 그 성적 평가 및 기록 대책은 평신도 사역자 교육국(Continuing Lay Training Office) 내에서 마련된다.

402.8. 평신도 사역자는 세례와 성찬의 성례식을 집례할 자격이 없으며 결혼을 주례해서는 안 된다.

제2절 목회 사역자

403. 나사렛성결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직제인 장로목사직을 인정한다. 또한 나사렛성결교회는 교역자가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 : 11-12) 교회는 연회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혹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인정 교역자를 파송시키는데 필요한 다음의 직분들을 인정한다. 교회 담임목회자, 부총사, 선교사, 교사, 행정가, 기관목회자, 사역목사, 그리고 특별 사역자 등이다. ??임직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역 중에는 교역자 연수와 안수를 보통 요구하거나 그것을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 ??안수에 관한 지침서??는 사역의 각 종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회로 하여금 임직 사역자 대상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밝힐 수 있도록 돕는다. 임직 사역자만이 연회의 투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이 된다.

403.1. 특별사역에 임직한 자들은 모두 담당 연회에 매년 보고를 접수시킨다.

403.2. 특별사역에 임직한 자들은 모두 매년 담당 연회로부터 연회감독과 연회총무가 서명한 사역 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403.3. 특별 목회 사역에 임직한 자로서 의학 전문 관계 당국에 의해 더 이상 목회 활동을 못할 자로 판명된 자들은 모두 ??임직 활동 불능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사역 역할은 편의상 다음과 같은 순으로 나열한다.

제3절 행정 사역자

404. 행정 사역자는 중앙총회에서 중앙 임원으로 피선된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혹은 중앙 교회를 위해 시무하도록 중앙위원회가 선출 또는 채용한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혹은 인정 교역자 혹은 연회에서 연회감독으로 피선된 장로목사 혹은 연회를 위해 자신의 제일의 임무로서 연회사역을 위해

임명되고 고용된 인정 교역자이다. 여기에 속한 자는 임직 교역자이다.

제4절 기관 사역자

405. 기관 사역자는 연회 실행위원회와 중앙감독회에 의해 인준 받아 기관 사역자로 임명되었거나 정부에 의해 군목으로 임명된 장로목사 또는 사역목사를 말한다. 모든 기관 사역자는 해당 연회감독에 의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기관 사역자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나사렛성결교회의 규정에 의해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을 확보하고 장정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고 목회 심방과 슬픔에 대한 위로, 경책과 면려 등 죄인들의 회심과 신자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거룩한 신앙의 터전 위에 세우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추구해야 한다.(416, 433.9, 433.11)

제5절 여사역목사

406.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인 여성으로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타 기독교 박애 사업에 종사할 신성한 사명을 느끼고 생활에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의 유용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 1985년 이전에 여사역목사로 인정받아 헌신한 자는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말씀 전파 외에 전임으로 사역에 임명 받은 여성들은 사역목사의 규례에 준하는 안수 요구 사항을 완비해야 한다. 구호사역의 자격을 원하는 여성들은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요구사항을 필해야 한다.(113.8, 402-2.8)

제6절 교육 사역자

407.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기관 중 한 곳에서 행정 직원의 한 사람으로 고용된 교육자인 장로목사, 사역목사, 인정 교역자. 연회는 이런 사람을 그들이 임명된 사역을 위해 교육자로 지명한다.

제7절 부흥사

408. 부흥사는 자신을 순회 복음 전파에 헌신한 인정 교역자나 안수목사로서 교회로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세 가지 형태의 순회 복음 전도를 인정하며 그에 따라서 교역자를 임명하는데, 등록 부흥사, 위임 부흥사, 그리고 종신 부흥사 등이다. 개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로 복음 전도를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헌신하는 교역자이며, 은퇴하지 않은 부흥사는 임직

교역자이다.

408.1. 등록 부흥사는 장로목사나 연회 인정 교역자로서 복음 전도를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 같은 열심을 표명한 자이다. 그러한 등록은 1년 기한으로 한다. 차기 연회에서는 그의 전년도 전도활동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하여 갱신을 허락한다.

408.2. 위임 부흥사는 안수목사로서 만 2년간 등록 부흥사로서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자이다. 위임 기간은 1년이며 계속해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차기 연회에서 갱신된다.

408.3. 종신 부흥사는 직전 4년 연속 위임 부흥사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로목사로서 연회심의부의 추천을 거쳐 신적 소명에 의한 부흥사 권익 협의회와 중앙감독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다. 종신 부흥사에 대한 이 같은 역할 설정은 그가 위임 부흥사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거나 은퇴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 지속된다.(228.2, 431)

408.4. 종신 부흥사로 선출된 후 매 4년마다 해당 부흥사와 연회감독이 함께 일종의 교회/목회자 심의와 같은 정기적인 자체 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다. 연회감독은 해당 부흥사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그 모임의 일정과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심의를 마침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적 소명에 의한 부흥사 권익 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연임에 필요한 자질 요건을 평가하게 된다.(208.19)

408.5. 교회 또는 교회 어떤 부서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은퇴 신분을 유지하면서 부흥회나 전도 집회를 통해 사역의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장로목사나 인정 교역자는 '은퇴 후 전도 활동'을 위한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그 자격증은 1년간 유효하며 연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연회전년도의 복음 전도 실적에 따라 차기연회에서 갱신될 수 있다.

408.6. 연회사이의 기간에 복음 전도 분야에 일하고자 원하는 장로목사나 인정 교역자는 연회감독의 추천으로 중앙 목회자 발전부에서 인정한다. 등록 또는 위임은 연회감독의 추천에 의해 연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408.7. 부흥사 역할을 위한 자격증의 지침과 절차에 대하여서는 목회 향상 지침서에 나와 있다.

제8절 기독교 교육 사역자

409. 개교회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사역을 위해 채용된 인정 교역자는

기독교 교육의 임직 교역자가 될 수 있다.

409.1. 1985년 이전에 기독교 교육 교역자로 인정 혹은 임명받은 자는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장래 기독교 교육 목회직에 임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역의 자격을 위해 사역목사의 규례에 준하는 안수 요구 사항을 필해야 한다.

제9절 음악 사역자

410. 나사렛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음악 목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연회로부터 1년 기한부로 음악 사역자 임명을 받을 수 있다. 단,

- (1) 회원권을 두고 있는 교회조직회로부터 그러한 일을 하도록 추천을 받고,
- (2) 은혜와 은사 및 유용성의 증거를 보여주고,
- (3) 최소 1년간의 음악 목회의 경력을 가졌으며,
- (4) 자격 있는 교수 밑에서 최소 1년간 성악 교육을 받았으며 음악 사역자를 위해 설정된 유효한 연수 과정을 이수중에 있거나 완료했고,
- (5) 음악 사역자로서 정규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 (6) 교회 회원권을 두고 있는 연회의 지도하에 이 과업을 위한 지적 및 영적 자격과 아울러 일반 적성에 관한 세밀한 검사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203.10)

410.1. 이 사역을 제일의 직책과 사명으로 알고 있으며, 사역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임직 사역자로 인정된다.

제10절 선교사

411. 선교사는 세계선교/전도국 또는 미국/캐나다선교/전도국을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교역자, 혹은 평신도이다. 사역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임명받은 선교사는 임직 사역자로 인정된다.

제11절 담임목회자

412. 담임목회자는 교역자로서(115) 하나님의 부름과 신자들의 초빙을 받아 개교회를 돌보는 자이다. 개교회 담임목회자는 임직 사역자이다.(210)

413. 담임목회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413.1.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

413.2.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

413.3. 107 및 107.1에 의하여 개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일

413.4. 성례를 집행 하는 일

- 413.5.** 목회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돌보되 특히 병든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
- 413.6.**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일
- 413.7.** 최대한의 인내와 고리로 책망, 견책, 권유하는 일.
- 413.8.** 모든 전략을 다하여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자를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일.(25)
- 413.9.** 개교회 각 부 사업을 돌보는 일.
- 413.10.** 145조 8항에 의거하여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일.
- 413.11.**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예식을 집례 하는 일. 만일 인정 교역자로서 427.7(802조 참조)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지 못한 자라면 안수 교역자가 성례를 집례 하도록 준비한다.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목사의 감독 하에 베푸는 것이 배려되어야 한다.
- 413.12.**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 1-27. 33-39의 교회 헌법 및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매 교회 년도 내에(114) 회중에게 읽어 주거나 장정의 이 부분을 인쇄하여 매년 교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일
- 413.13.** 개교회 각 부서의 모든 통계 보고 작성을 검토한 후 즉시 모든 보고를 연회총무를 통하여 연회에 제출하는 일.(114.1)
- 413.14.** 연회와 중앙총회의 추진 목표와 계획에 일치시켜 개교회의 전도, 교육, 예배 그리고 확장 계획을 지도하는 일.
- 413.15.** 개교회 및 각 부서의 현황 보고와 장차 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관한 개요를 포함한 보고서를 교회 사무총회에 제출하는 일, 그 개요 중에는 특정 제직 또는 부서로 하여금 그 문제를 연구토록 하는 교회의 추천 또는 장차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취할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413.16** 교회 회원에 대하여 고소장이 제출되었을 경우 3명으로 구성되는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는 일.(501-1.2)
- 413.17.** 개교회 국제선교회를 통하여 지출된 세계선교기금이 즉시 중앙재무에게 송금되었고 연회목회 활동 기금이 즉시 연회재무에게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136.2)
- 413.18.** 개교회의 모든 유급직원을 제직회에 추천하고 감독하는 일.(160.1-60.3)
- 413.19.** 부동산 양도, 담보 설정, 담보 양도, 계약 및 그 외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법정 서류에 교회 서기와 함께 서명하는 일.(102.3, 103-4.3)
- 413.20.** 개교회 혹은 개교회 어떤 부서의 회원이나 교우가 같은 연회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교회와의 활발한 유대가 불가능할 경우 그가 이사 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목회자에게 그 회원 혹은 교우의 주소와 이름을 통보하는 일.

413.21. 제직회와 함께 중앙총회에서 채택되고 연회에서 동의한 계획에 따라 개교회에 부과된 세계선교기금 및 연회목회활동기금 할당금의 지출 안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하는 일.(38.2, 130, 154)

413.22.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회 회원권 이명 증명서, 추천서, 또는 전적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111-11.1, 112.2, 813.2-13.5)

413.23. 담임목회자는 직책상 개교회의 대표가 되며 교회제직회의 의장이 되고 모든 상임부 및 위원회 회원이 된다. 목사는 개교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127, 145, 150, 152, 153.1)

413.24. 사람들이 기독교 사역에 대해 갖는 소명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심에 따라 살도록 보살핀다. 여기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사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413.25.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하나님과 교회의 기대감을 성취하는 일(433.15)

413.26. 수년간의 목회사역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개인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기혼자의 경우 혼인의 거룩함은 물론 활기찬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414. 담임목회자는 개교회의 각 부서 및 나사렛 탁아소/학교(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책임자를 추천함에 있어 발언권을 갖는다.

415. 담임목회자는 개교회를 위하여 교회제직회의 과반수 투표 혹은 교회회의의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위임되고 지시되지 않은 한 어음을 발행하거나 재정적인 채무를 지거나 헌금을 집계하거나 교회 기금을 지출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조처가 취해질 때에는 연회실행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직회 또는 교회 회의록에 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연회감독의 서면 승인이 있기 전에는 담임목회자 또는 그의 어떤 직계 가족도 어떠한 교회명예의 수표에 이서할 권한이 없다. 직계 가족은 목사의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부모를 포함한다.(129.1, 129.21-29.22)

416. 담임목회자는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일치된 권고를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222.2, 433.2)

417. 다른 교파의 자격 증서를 제출하는 인정 교역자나 안수 교역자가 연회사이의 기간에 개교회 회원권을 신청했을 경우 담임목회자는 먼저 연회의

찬성하는 추천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107, 225)

418. 담임목회자는 그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연회에 복종해야 하며 연회에서 매년 보고하고 그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간단히 간증한다.

(203.3, 427.8, 433.9)

419. 담임목회자는 자동적으로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 만일 두 교회 이상을 겸임할 때에는 그가 선택하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433.8)

420.??목회활동??은 담임목회자 또는 부교역자 및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특수 목회에 종사하는 협동목회자를 포함하는데, 교회에 관련된 이 목회 활동 중 어느 분야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는 임직 사역자로 인정된다.

421. 임시 목회자 : 연회감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임시 담임목회자를 임명 시무하게 할 권한이 있다.

(1) 임시 담임목회자는 다른 어떤 사역에 시무 중인 나사렛성결교회의 인정 교역자, 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개교회 전도인, 평신도 목회자, 다른 교파로부터 전입 소속 중이거나 다른 교파 소속 목회자가 될 수 있다.

(2) 임시 담임목회자는 임시로 임명받아 영적 사역을 하지만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결혼을 주례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연회감독의 인정이 없이는 보고를 철하는 것 외에는 담임목회자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3) 임시 담임목회자의 교회 회원권은 그(녀)가 시무하는 교회에 자동적으로 전입된다.

(4) 임시 담임목회자는 어떤 다른 권리에 의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연회의 투표 자격 소지의 회원이 아니다.

(5) 임시 담임목회자는 연회감독에 의해 아무 때라도 해직 혹은 대치될 수 있다.

제12절 성가 부흥사

422.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가를 통한 전도 사업에 바치고자 하는 자이다. 사역 증서를 소지하고 전도 사업을 제일의 임무로 하여 거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성가 부흥사로서 교회나 교회의 어느 부서 혹은 어느 기관에서 은퇴 신분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임직 사역자이다.

422.1. 성가 부흥사 역할을 위한 증서의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는 목회 향상 지침서에 나와 있다.

제13절 특별 사역

423. 현역 중인 인정 교역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회가 승인하는 특별 사역에 임명될 수 있고 연회는 그(녀)를 임직 교역자로 기록한다.

423.1. 교회에 기여하는 교회 관계 기관의 임원으로 채용되어 사역하거나 소속 연회의 신중한 평가를 거쳐 교회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교육 기관이나 복음 전도 기관 혹은 선교 기관에 인준 받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는 433.11에 의거 특별 사역에 임명될 수 있다.

제 3 장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

제1절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교육

424.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결의 말씀을 언장 및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역자의 교육을 돕도록 마련되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한 중대성을 인정한다. 준비의 대부분은 주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서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를 위한 안수를 목적으로 행해진다. 연회 목회 연구부는 학생들의 선발과 그들에게 요구된 유효한 교육 과정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다.

424.1. 안수목사를 위한 교육적 기초의 이행

목회사역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나사렛 교단 내의 다양한 교육 기관과 교육 과정이 세계 각 곳에 분포되어 있다. 지구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요구사항은 각자가 속해 있는 세계 각 지구의 나사렛성결교회에 의해 제공되는 유효한 교과 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개중에는 학생들이 처한 특별한 여건 때문에 이 같은 요구에 부응키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교단은 다양한 정보 체계들을 사용함으로써 목회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융통성을 발휘한다. 연회산하 목회연구 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유효한 교육 과정과, 여러 개의 교육 기관들에 의해 개발된 신학교/신대학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것들은 안수를 위한 발전 표준에 관한 국제 지침서와 안수에 관한 지구 지침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일반적 표준에 준해야 한다. 전도사들은 신학교나 신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신학부에서 제공하는 안수 받는 데에 유효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함으로써 그들에게 요구되는 교과 과정을 끝마치게 되는데, 안수 받는 데에 필요한 교과과정은 목회 발전부를 통하여 국제 교과 과정 실행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어지고, 지구 교과과정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되고, 중앙위원회의 채택과 중앙감독회의 인준을 거쳐 마련된 규정을 따른다.

424.2. 안수목사를 위한 교육제도에 대한 문화적 적응

세계 각지의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한가지의 교과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세계 각 지구는 그곳 지구의 적절한 자원과 교육적 기대감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목회에 필요한 교육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에 적절한 교과 과정을 개발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지구 상황에 맞게 고안된 교과과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국제 교과 과정 실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감독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424.5). 세계 각 지구 내에서조차 문화적인 욕구와 자원 사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곧 해당 지구의 목회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의 특징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연회 목회연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구별로 고안된 목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적 적응 형태는 해당 지구의 교육 조정관 의 동의와 중앙 목회발전부와 국제 교과 과정 심의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24.3. 사역 준비를 위한 일반 교과

??교과??라는 말이 다분히 학문적 과정이나 그 내용을 뜻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 개념의 폭은 그보다 훨씬 광대하다. 교사의 성품과 자질,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교육 환경, 학생들의 교육 경력, 그리고 과목의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 형태의 교과를 구성할 수 있다. 더욱이 목회 준비를 위한 교과에는 목회에 필요한 교육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 또한 삽입되어야 한다.

여러 방면에 걸친 문화적 차이와 효용 가능한 자원의 다양성은 자연히 교과 형태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점들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수목사들을 위한 교육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은 중앙 목회 발전부의 동의를 요하며, 내용과 효능, 성품, 그리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각 과정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형식을 거쳐 추진된 교과

과정의 목적은 교역자들로 하여금 중앙감독회에서 결의한 다음과 같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 선언문의 취지를 적극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 과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마 28 : 19)에 대해 부응하기 위함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핵심 과제는 성경에 언급된 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관한 메시지를 보존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주된 목적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죄인의 회개, 신자의 완전 성결, 거룩함과 순수함, 신약의 초대 기독교회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은 영적 능력,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등이다.

유효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범주별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 신,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 및 선교에 대한 지식은 목회 사역의 필수 조건이다. 성경해석학과 성결교리 및 웨슬리 신학의 특징, 그리고 나사렛성결교단의 역사 및 정치에 대한 지식 등이 이 과정에 속한다.

능력 : 의사소통을 위한 구술 언어 소통 및 작문 기술, 조직 관리 및 지도력, 재정관리 능력, 그리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은 모두 목회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 방면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설교나 목회적 양육, 그리고 상담, 성경 해석, 예배, 효과적인 전도, 인적자원에 대한 성경적 청지기직, 기독교 교육과 교회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제공을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유효한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는 교육 제공자와 개교회간의 제휴가 요구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목회 실습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성품 : 개인의 성품 개발, 도덕, 영성, 그리고 개인 및 가족 간의 우애 등이 모두 목회의 핵심 조건들이다. 기독교 윤리와 영성 확립, 인간성 개발, 목회자로서의 인격 도야, 그리고 결혼 및 가정생활의 이해 등의 분야를 다루는 과정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 : 목회자는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뿐만 아니라, 현대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 같은 기초 위에서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는

문화의 세계관과 사회 환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류학과 사회학, 문화 간의 의사소통, 선교, 그리고 각종 사회집단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424.4. 나사렛성결교단에 속하지 않은 학교나 나사렛성결교단의 후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가 안수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연회 목회연구부가 지구 및 언어 군에 따라 마련된 안수 지침서에 진술된 교과 요구 조항에 따라서 평가한다.

424.5. 교과 과정, 학사 요건 및 공식 행정규약 등 일체의 사항들은 중앙목회발전부와의 제휴 하에 지구 및 언어 군에 따라 마련된 안수 지침서에 담겨 있어야 한다. 본 지구 지침서 및 필요에 의한 일체의 개정은 국제 연수과정 실행위원회와 목회발전부, 그리고 중앙위원회 및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지침서는 장정의 규정에 일치해야 하며, 또한 목회발전부와 국제 연수과정 실행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수를 위한 발전 기준에 대한 국제 지침서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연수과정 실행위원회는 중앙감독회가 임명한다.

424.6. 목회에 필요한 교육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모두 이행한 목회자의 경우, 그(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적 소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평생토록 배우는 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매년 20시간 동안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교육 기회를 갖거나(2학점 단위의 연장 교육), 지구, 또는 언어 군별로 마련된 지구 안수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모든 임직 또는 비임직 인정 목회자와 안수 목회자들은 매년 연회에 제출하는 교회/목회자보고서의 일환으로 각자 평생교육 과정에서 이룩한 진전을 나타내는 최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구 또는 언어 군별 지구 안수 지침서에는 학점 획득 및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매년 최소 20시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교육 시간, 또는 그와 동등한 시간만큼의 교육이 요구된다.(115, 121, 413.25, 433.15)

제2절 기독교 사역 준비의 일반 지침

425. 기독교 사역 준비를 위한 일반 지침은 다음과 같다.

425.1. 장로목사와 사역목사 자격증, 또는 사역자의 범주와 역할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와 함께, 유효한 교과 과정은 지구 안수 지침서에 기록되어 있다.

425.2. 행정적으로 세계선교국과 관련된 지구에서는 지구 안수 지침서에 진술된 대로 모든 유효한 교육 과정들이 지구 안수 지침서에 의해 처리되어진다.(424.2-24.3, 424.5)

제 4 장 신입장과 사역 규정

제1절 개교회 전도인

426. 개교회 전도인은 나사렛성결교회의 평신도로서 개교회제직회가 인준하여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사역하는데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은사를 더욱 개발함으로써 유용하게 해야 한다. 그(녀)는 평생 교육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426.1.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중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평생 사역을 추구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자가 있으면 장로목사가 담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목사의 추천을 얻어 그 교회제직회가 1년간 개교회 전도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장로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담임목회자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을 얻어 개교회제직회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후보자는 먼저 개인의 구원 체험, 성경,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의 규례에 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는 또한 그의 소명이 은혜와 은사와 유용성 등에 의해서 입증되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는 개교회의 사무총회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113.8, 129.12, 208.11)

426.2. 교회제직회는 각 개교회 전도인에게 목회자와 교회제직회 서기가 서명한 전도인 증서를 발급한다. 연회의 인정 증서를 받지 않는 자가 임시로 시무하는 교회의 경우, 그는 연회감독의 추천을 얻어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 개교회 전도인 증서를 발급받거나 갱신된다.(208.11, 222.10)

426.3. 장로목사가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인 경우 개교회 전도인 증서는 그 담임목회자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교회제직회에서 갱신할 수 있다.(129.12, 208.11)

426.4. 개교회 전도인은 연회 목회연구부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위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교회 전도인 증서는 만약 개교회 전도인이 유효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목 중에 적어도 2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연회감독의 서면 승인 없이는 2년 후에는 갱신될 수 없다.

426.5. 개교회 전도인으로서 적어도 만 1년간 시무하고 교역자를 위한 필수 연수 과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교회제직회에서 그를 해당 연회에 인정

교역자 자격 인준을 위해 추천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이 거절될 경우는 종전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129.12, 424, 427.1)

426.6. 개교회 전도인으로서 임시 목회자로 임명된 자가 그를 임명한 연회 이후에도 계속 시무하기를 원하면 심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9, 228.5, 421).

426.7. 개교회 전도인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식을 집례하거나 결혼을 주례할 자격이 없다.(427.7)

제2절 인정 교역자

427. 인정 교역자는 목회자의 소명과 은사를 받은 자로서 정식으로 연회에서 인정 교역자 자격 증서를 받음으로서 인준 받는다. 이것은 장로 목사 또는 사역목사가 될 수 있는 한 과정으로서 개교회 전도인 보다는 더 광범위한 사역과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해 교역자로 인정하고 임명하게 한다. 연회의 인정 교역자 자격증서에는 그 교역자가 안수목사나 사역목사 또는 안수를 추구하지 않는 연회 자격증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지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427.7)

427.1.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중에 평생 목회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연회에 의하여 교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1) 개교회 전도인의 자격을 만 1년간 지낸 자
- (2) 목회자를 위한 유효한 연수 과정의 4분의 1을 완전히 이수했거나 목회자를 위한 유효한 과정 중 나사렛성결교회 역사와 장정 및 5개의 추가 과정을 합격한 자, 또는 나사렛 대학이나 신학교에 등록된 자인 경우, 대학 혹은 신학교의 지정된 교과 단위의 4분의 1을 이수했거나 혹은 연회나 지구에서 실시하는 목회 훈련 센터의 과정을 4분의 1을 이수한 자. 이 필요조건에 대한 예외는 연회 목회 심의부에 의해 허락될 수 있는데, 단 후보자가 조직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인정된 연수 과정에 등록되어 있고, 매년 인정 갱신을 위해 장정이 요구한 최소량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며, 연회감독이 그 예외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3) 후보자가 회원이 되어 있는 개교회의 제직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위한 추천을 받고 그 추천서에 상세히 기입한 인정 교역자 신청서를 첨부한 자.
- (4) 은혜와 은사 및 유용성의 증거를 보인 자.
- (5) 후보자가 회원이 되어 있는 교회를 관할하는 연회의 지시 아래 그러한 사역에 필요한 영적, 지적, 그리고 기타 적성에 관하여 신중한 심사를 받은 자.

여기에는 연회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적절한 배경 검사를 포함한다. 배경 검사에서 그 후보자가 구원 받기 이전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435조 8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연회 목회 심의부에 의해서 그 후보자가 자동적으로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6) 인정 교역자 및 장로목사를 위한 필수 학과를 즉시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자.

(7) 어느 연회에 의해서 부과된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격 사항이 부과된 연회의 연회감독 및 실행위원회의 서면 해명서와 함께 결격이 해소된 자와 그들의 결혼 관계가 연회의 인정과 안수에 결격 사유를 초래하지 않는 자.

(8) 이전에 이혼하고 재혼했을 경우, 연회목회심의회는 추천서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서류를 중앙감독회에 보냄으로 인정과 안수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35.1-5.3, 129.14, 205.6, 426.5)

427.2.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해서 다른 복음주의 교파에서 오는 인정 교역자는 그들이 이전에 회원이었던 교파가 발급한 자격 증서를 제출하면 연회에 의해서 교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그들은 다음의 조건들에 부합된 자들이라야 한다.

(1) 적어도 나사렛성결교회의 개교회 전도인을 위해 요구되는 유효한 이수 학과와 동등한 과정에 합격한 자.

(2) 그들이 회원이 되어 있는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의 제직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3) 은혜와 은사 및 유용성의 증거를 보인 자.

(4) 연회의 지시 아래 그러한 사역에 필요한 영적, 지적 그리고 기타 적성에 관하여 신중한 심사를 받은 자.

(5) 연회인정 교역자 및 장로목사를 위한 유효한 학과를 즉시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자.(203.6)

427.3. 인정 교역자 증서는 차기 연회 폐회와 함께 그 효력이 종료되며 다음의 조건 하에서 연회표결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1) 갱신을 원하는 자는 인정 교역자 신청서를 세밀히 기입하여 연회에 접수시킨다.

(2) 유효한 이수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2개 과목을 수료했어야 한다.

(3) 회원으로 있는 교회의 담임목회자에게 지명 받아 제직회에서 그 갱신을 위해서 추천 받는다. 그러나 만약 필수 과정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오로지

그 불합격 이유에 대한 자필 사유서를 연회에 제출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단 이 때 그 사유서가 목회심의부에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사회하는 중앙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회는 어떤 사유나 임의의 권한으로 교역자 인정 갱신에 부결 투표를 할 수 있다. 연구 과정을 마친 다음 연회와의 단절된 관계를 유지해 온 인정 교역자들은 연회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인정 교역자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는 일 없이도 자신들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203.4)

427.4. 안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후보자는 처음 연회인정이 허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효한 학과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예외가 생길 경우에, 목회심의부의 허락을 받고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정 교역자 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학과 과정을 못 마친 이유로 안수의 자격을 상실한 인정 교역자는 연회실행위원회 및 목회심의부의 추천에 의하여 인정 교역자 자격 갱신이 허락된다.

427.5. 담임목회자로 봉사하고 있는 현직 인정 교역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 갱신을 위한 추천은 개교회제직회가 아니고 연회실행위원회에서 한다.(222.10)

427.6. 관할 중앙감독은 자신과 연회감독 그리고 연회총무가 서명한 인정 교역자 증서를 각 인정 교역자에게 발급한다.

427.7. 인정 교역자들은 말씀을 전파할 권한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한 종의 사역과 관련된 다양한 보조 목회에서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단, 그들은 매년 요구된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27.8. 모든 인정 교역자는 그들이 교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연회에 교역자 대의원 자격을 가지며 매년 보고를 해야 한다.(201, 203.3, 418)

427.9. 연회인정 교역자가 다른 교파와 연합하여 회원이 되거나 교역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로 인하여 즉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및 교역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록에 기입한다. ??타교파와 연합했으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과 목회직에서 제명??(107, 112)

제3절 사역목사

428. 사역목사는 교역자로서 그의 기독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 및 그의 은사와 유용성이 입증되고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 연회의 표결과 엄위한 안수 행위에 의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구별되고 기독교 사역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 자이다.

428.1. 사역목사는 설교의 특별 소명을 받은 증인은 아니다. 교회는 성경과 경험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교의 특별 소명을 받지 않는 어떤 개인들을 평생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개인들은 교회에 의해 인정되고 확증되며 모든 요구 조건을 완비할 때 교회가 설정한 책임들을 부여 받아야 함을 믿는다. 이것은 영구적 사역을 위한 직제이다.

428.2. 사역목사는 교육 규정의 요구 조건을 완비함은 물론 그가 받은 적격함은사와 은혜를 활용해야 하며 교회에 의해 인정받고 확증되어야 한다.

사역목사는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식을 집례하며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법이 금지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혼을 집례할 수 있다.(34.5, 35.2)

428.3.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교회의 모든 요구 조건을 갖추고 인정 교역자와 사역목사의 후보자를 위해 지정된 유효한 학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으며, 4년 동안 연회인정 교역자로 지냈거나, 그(녀)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개교회제직회나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 연회의 자격 인정 갱신을 위해 추천받아 목회심의부에 의해 신중히 검토되어 연회에 ??가?? 하다고 보고된 자는 연회의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사역목사 직에 선출된다. 단 그(녀)는 연속 4년 이상의 임명받은 교역자였어야 하며, 그들의 증언과 봉사가 그들의 사역의 소명이 다른 어떤 목적들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그리고 어느 연회에 의해서 부과된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동 연회의 연회감독 및 연회실행위원회의 서면 해명에 의해 해소되었으며 그(녀)의 결혼 관계가 그(녀)의 안수에 결격사유를 초래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35.1-35.3, 203.6, 320, 424)

428.4. 그(녀)의 사역을 이행해 나가면서 사역목사가 복음 전파(설교)의 사역을 위한 소명 의식을 가질 때 그(녀)는 목사 자격에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완비하고 사역목사 자격증을 반납함으로써 장로목사가 될 수 있다.

제4절 장로목사

429. 장로목사는 목회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의 은사와 유용성이 입증되고 적절히 교육한 경험을 쌓아 연회의 표결과 엄위한 안수 행위에 의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구별됨으로써 기독교 사역의 모든 기능들을 완전히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다.

429.1. 장로목사는 유일 직제에 입각한 공식 목회직임을 인정한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영구직이다. 장로목사는 교회 업무를 잘 처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집례하며 결혼을 주례한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종하여 행한다.(34.5, 35.2, 412-413.3, 413.11, 433.12)

429.2. 교회는 이 공식 목회직 소명을 받은 자가 말씀의 청지기이며 일생 동안 전력을 다해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429.3. 이 성직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를 위한 교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인정 교역자와 장로목사 후보자를 위해 지정된 유효한 학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나, 3년 이상 인정 교역자로 지냈거나, 또는 3년 후 자기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개교회의 제직회나 연회실행위원회로부터 인정 교역자 갱신의 추천을 받아 목회심의부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되어 ???가?? 하다고 보고된 자는 연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에 의하여 장로목사로 선출될 수 있다. 단 연속 3년 이상의 담임목회자 또는 등록 부흥사로 사역하고 그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선에서 활동적으로 일한 자, 혹은 연속 4년간을 전임 부교역자 또는 협동 목회자로 시무한 자나 1년간을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2년간을 전임 부교역자 또는 협동 목회자로 시무한 자, 혹은 4년간 나사렛 고등 교육 기관의 신학부에서 전임교수를 한 자나 중앙감독회가 승인한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 기독교 사역이나 어떤 지정된 역할을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현재 임명된 사역에 시무하고 있어야 하며, 파트타임으로 협동하고 있거나 협동목회자일 경우, 개교회 사역에 참여 정도에 따른 연속적인 사역기간의 연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증언과 봉사가 그들의 사역의 소명이 다른 모든 추구들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또한 연회에서 부과된 어떤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과된 연회의 연회감독 및 연회실행위원회의 서면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의 결혼 관계가 장로목사의 결격 사유를 초래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35.1-5.3, 203.6, 320, 424)

제5절 목사신임 인준

430. 다른 복음주의 교파의 안수 교역자로서 나사렛성결교회에 연합하고자 안수 증서를 제출하면 연회목회심의부가 그 목사의 성품과 개인 신앙 체형, 그리고 교리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한 후 그 자격증은 연회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단,

(1) 그들은 교리장정 및 나사렛성결교회사에 관련된 유효한 교과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동 교리장정과 역사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안수/인준 설문 조서??를 상세히 기입하여 연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3) 428-28.3나 429-29.3에 기술된 안수에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203.6, 225, 424)

430.1. 관할 중앙감독은 이와 같이하여 인준된 안수목회자에게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감독 및 그리고 연회총무가 서명한 인준 증서를 발급한다.(433.6)

430.2. 다른 교회의 안수 직위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교회가 발급한 안수증의 뒷면에 다음과 같이 기입 날인하여 본인에게 돌려준다.

주후 년 월 일부터 나사렛성결교회 제 회 연회에 의하여 인준됨

중앙감독

연회감독

연회총무

제6절 은퇴목사

431. 은퇴 목사란 그(녀)의 교역자 회원권을 둔 연회에서 연회의 목회심의부의 추천에 의거하여 은퇴 신분에 놓임을 받는 자이다. 신분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회목회심의부의 추천에 의해 연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3.27, 228.8)

431.1. 은퇴가 목회 활동의 정지를 강요하거나 연회회원권을 박탈하지 못한다. 은퇴 신분을 요청하거나 정상적 은퇴를 위한 연령에 있는 목회자로서 ??임직??하여 활약하는 목회자는 ??임직 은퇴?? 신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은퇴 때에 ??무임직?? 신분의 목회자는 ??무임직 은퇴??신분에 들어가게 된다.(201, 433.9)

제7절 교역자의 이적

432. 교역자가 다른 연회로 이적을 원할 때는 그(녀)의 교역자 회원권이 있는 연회의 투표 혹은 연회이후에는 연회실행위원회에 의해서 교역자 이적서가 발급된다. 그러한 교역자의 이적서는 연회개최 전에 실행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상기 교역자에게 목회심의부 및 연회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이적서가 접수된 연회회원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한다.(203.7-3.8, 223,

228.9-28.10)

432.1. 인정 교역자의 이적은 발급하는 연회의 목회연구부 서기가 정확히 증명한 연회 인정 교역자를 위한 유효한 학과 과정의 상세한 성적표를 접수하는 연회의 목회연구부 서기에게 보냈을 때에만 유효하다. 접수하는 연회의 목회연구부 서기는 인정 교역자의 성적표가 접수되었음을 그의 연회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이적한 교역자는 유효한 학과 과정의 성적을 접수하는 연회에 보고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230.1-230.2)

432.2 이적서를 접수한 연회는 이적서를 발급한 연회에 이적된 자의 회원권 접수를 통고한다. 그러나 접수 연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이적서가 수락되기 전까지는 이적 희망자는 발급 연회의 회원권을 소유한다. 그러한 이적은 접수 연회의 발급 일자로부터 차기 연회최종일까지 유효하다.(203.8, 223, 228.10)

제8절 일반규정

433. 다음의 용어 정의들은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일반 규정에 관계된 것들이다.

교역자 - 장로목사, 사역목사, 그리고 인정 교역자.

평신도 - 교역자가 아닌 나사렛교회의 회원.

활동중 -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중.

임직 - 교역자의 신분으로 장정 제5부 제2장에 열거된 역할 중 어느 한 가지를 실행중인 상태.

무임직 - 덕망있는 교역자가 현재 장정 제5부 제2장에 열거된 역할 가운데 아무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임직은퇴 - 은퇴를 요청한 시점에 임직 사역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 해당.

은퇴사임 - 은퇴를 요청한 시기에 임직 사역 중에 있지 않은 교역자에게 해당.

근신처리 - 근신 조치에 의해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상실당한 교역자의 상태.

안수증을 철회 - 덕망있는 교역자가 목회활동을 정지하고자 그(녀)의 안수증을 중앙총무로 하여금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자원하여 일시적으로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중지한 상태. 이 경우 그 교역자는 교역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제435조 2항에 의거하여 그(녀)의 안수증을 돌려받음으로서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이 회복되어진다.(434, 434.2, 434.8)

안수증 반납 - 교역자가 부도덕한 행위나 고소, 자백, 징계위원회의 일련의

조치, 또는 자발적인 행위 등 목회활동 정지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상실하고 그(녀)의 안수증을 반납한 상태. 그(녀)의 안수증을 반납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교역자의 일원이며 다만 근신 중에 처하게 된다. 그(녀)의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은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다.

사임 - 덕망있는 교역자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목회자로 간주되기를 거절하고 영원히 평신도로 남기 위해 교역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포기한 상태(434.1-434.2, 434.8); 이렇게 해서 사임한 사람은 더 이상 교역자의 일원이 아니다. 이 경우 교역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은 435.3에 따라서만 회복될 수 있다.

제적 - 434.3의 규정에 따라 교역자 명부에서 이름이 제거된 상태.

안수증 복구 - 안수증을 철회 줄 것을 요구한 교역자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복원함.

안수증 회복 - 안수증을 반납하거나 제거된 교역자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복원함.

명예 회복 - 징계를 받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포기하거나 목회자를 영적으로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킴은 물론 건설적이고 유용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끌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권리나 특전, 또는 책임감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소 -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나사렛성결교인이 특정 나사렛성결교인 한 사람의 행실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서명한 기록문서로서, 그 사실성이 입증되는 경우 기소 대상 교인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됨.

지식 - 누군가 자신의 감관을 사용하여 터득한 사실들을 자각함.

정보 -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여러 가지 사실들.

신조 -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한 바람직한 신앙 안에서 얻은 결론.

조사 위원회 - 의심되는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장정에 의거해 임명된 위원회.

정직 - 특정 교역자를 대상으로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징계 조치.

덕망있음 - 미해결된 고발 조치가 계류 중이거나, 현재 징계를 받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현재 안수증의 반납이나 사임 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

목회자를 말함.

433.1. 연회인정 교역자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연회의 실행위원회나 중앙감독회의 서면 승낙 없이 나사렛성결교회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독립 교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단체 산하의 독립 교회 임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녀)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433.11, 505.1)

433.2. 교역자는 언제나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합일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415)

433.3. 인정 교역자, 사역목사, 장로목사,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신체장애 혹은 노년 교역자들을 위한 보조 곧 후원 대책인 원호기금에 대해서 혜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그 교역자가 임직 목회자나 부흥사 혹은 연회가 승인한 다른 사역의 교역자로서 정규적으로 활약한 전임 시무자였어야 한다. 시간제로 임시 시무한 자는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33.4. 나사렛성결교회의 담임목회자나 부교역자 혹은 협동 목회자로 시무하는 사역중인 인정 교역자는 투표 자격이 있는 연회의 대의원이다.(201)

433.5. 장로목사직과 사역목사직에 피선된 후보자는 의장인 중앙감독의 안수로, 적절한 종교예식에 따라 중앙감독과 장로목사들에 의해 안수를 받는다.(307.3)

433.6. 관할 중앙감독은 이와 같이 안수된 자에게 자신과 연회감독 및 연회총무가 서명한 안수 증서를 발급한다.(430.1)

433.7.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증서가 분실, 소멸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연회실행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사본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한 추천은 직접 관할 중앙감독에게 해야 하며 중앙감독의 승인 하에 중앙총무가 발급한다. 증서 뒷면에는 ??사본??이라는 말과 함께 원본의 증서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만일 원본에 서명한 중앙감독이나 연회총무의 서명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중앙감독과 사본증서를 요청한 연회의 연회감독 및 연회총무가 증서에 서명한다. 증서 이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필봉으로나 활자로 기입하고 관할 중앙감독과 연회감독 및 연회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이 증서는 안수일 주후 년 월 일에(조직체)에 의해서(이름)에게 발급되었던 전 안수 증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것이며 전 안수 증서는 ()과 ()가 서명했던 것임. 전 증서는(분실, 소멸, 파손) 되었음.

중앙감독

연회감독

연회총무

433.8. 모든 장로목사와 사역목사는 어떤 개교회의 회원권을 보유해야 한다. 장로목사나 사역목사가 그(녀)의 안수증을 지지하는 연회의 개교회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그(녀)의 장로목사 또는 사역목사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419)

433.9. 모든 장로목사 및 사역목사는 그들의 교회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회에 교역자 회원권을 가지며 이 연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로서 연속 2년간 직접 또는 서신으로 연회에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연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권을 상실한다.(30, 201, 203.3, 418, 431.1)

433.10. 장로목사가 타교파와 연합하여 목회하거나 회원이 될 경우에는 그 사실 때문에 그(녀)의 나사렛성결교회 교역자 회원권 및 개교회 회원권은 즉시 상실된다. 그리고 연회는 그 회의록에 ??타 교파와 연합했으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권 및 목회직에서 제명??이라고 기록하게 된다.(107, 112)

433.11. 장로목사는 매년 연회실행위원회 혹은 중앙감독회의 서면 승낙 없이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독립 교회 활동을 정기적으로 인도, 즉 독립 선교 혹은 인정되지 않는 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또는 독립 교회나 타 종교 단체 혹은 타교파의 운영 간부와 연관을 가질 수 없다. 상기한 활동이 1개 연회이상에서 혹은 교역자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연회이외의 연회에서 행해지려면 그러한 활동에 가담하기 전에 중앙감독회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앙감독회는 해당 연회실행위원회에 상기승인 요청이 그들 감독회에 계류 중임을 통고해야 한다. 만약 장로목사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 목회심의회 전체 부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투표에 의한 추천과 연회의 결의에 의해서 나사렛성결교회 회원권을 박탈당한다. 어떤 특정한 활동이 ??독립 선교?? 혹은 ??인정되지 않는 교회활동?? 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앙감독회에 일임한다.(112-12.1)

433.12. 임직 교역자는 연회감독이나 관할 중앙감독의 승낙이 있을 때 개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정식 조직에 대한 보고는 연회감독에 의해 중앙총무 사무실에 제출, 첩해져야 한다.(110, 208.1)

433.13. 연회회원권 소지는 제2장에 밝힌 지정된 사역 중 어느 하나를 그(녀)의 제일의 사명으로 알고 현역목회에 계속 활동적으로 시무하는 담임목회자나 다른 임직 교역자에 한한다.

433.14. 나사렛성결교회의 인정 교역자나 장로목사는 직무상 그(녀)가

시무하는 동안 회중의 피상담자가 신뢰하고 그(녀)에게 한 대화 중 비밀의 성격을 띤 것은 어떤 것도 신의와 비밀로서 지키는 것이 나사렛성결교회 교역자로서의 의무이다. 그러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이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나사렛성결교회 교역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본 장정 제6부 제3장에 명시된 징계 조처에 처하게 된다.

433.15. 모든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들은 연회 목회연구부에서 운영하는 2학점 단위의 연장 교육이나, 또는 그에 상응한 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제9절 교역자의 사임 또는 제명

434. 중앙총무는 어느 기간 동안 사역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안수증을 철회 두고자 하는 덕망있는 교역자들의 안수증을 받아 안전하게 보관할 권한이 있다. 안수증을 철회할 당시 교역자들은 중앙총무에게 안수증을 철회 두도록 하는 목적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안수증을 철회 둔다고 해서 교역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총무를 통해 그들의 안수증을 철회 둔 교역자들은 장정 435.2. 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434.1. 덕망있는 교역자가 임직 사역을 중단하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직 외에 다른 소명이나 직업을 추구할 때 그(녀)는 교역자로서의 권리와 특전, 그리고 책임을 사임하고 그(녀)의 신분을 보유한 연회에 안수증을 반납하여 중앙총무의 관리 하에 둔다. 연회회의록에는 그(녀)가 ??본인의 성직을 사임했기에 교역자 명부에서 제명??이라고 기재한다. 이렇게 사임한 교역자는 그 안수증을 435.3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434.2. 교역자가 적어도 4년 이상 아무런 사역도 감당하지 않은 채 교역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이는 더 이상 그(녀)가 교역자로서의 활동에 참여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회심의부는 ??문제의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의 안수증이 연회심의부에 의해 철회되었음??을 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그 목회자의 성품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해당 교역자는 장정 435.2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안수증을 회복시킬 수 있다.

434.3. 교역자가 그(녀)의 개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다음 연회 때 까지 그것을 다른 어떤 나사렛성결교회에 입교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탈퇴 하였다고 서면 공포 하거나, 혹은 거주지를

옮기면서 1년 내에 신 거주지의 주소를 연회 목회연구부에 알리지 않았거나, 혹은 모호한 단체로 들어갔거나 타 교파에 회원 또는 교역자로 가입하거나, 혹은 장정 427.9와 433.9에 요구하는 매해 목회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될 수 있다. 단 연회심의부의 권고에 따라 연회가 그(녀)의 이름을 개교회의 회원명부와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자 명부에서 제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34.4. 덕망을 상실한 교역자는 연회실행위원회의 권고로 자신의 안수증을 반납해야한다.(435)

434.5. 교역자는 자신의 교역자 안수증을 반납하거나, 또는 505-508조에 따른 징계조치를 통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성직에서 제적될 수 있다.

434.6. 장로목사나 사역목사가 제적된 경우 그 안수증은 그 사람이 제적될 당시 소속하고 있던 연회의 결의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도록 중앙 총무에게 보내진다.(325.5)

434.7. 담임목회자와 개교회제직회, 그리고 그 교회의 임무를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덕망을 상실한 교역자의 자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녀)를 임시 교역자나 음악 지휘자, 주일학교 교사, 또는 그 외 다른 공식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단 그 교역자가 속해있던 연회감독과 관할 중앙감독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435.5-435.6)

434.8. 만약 은퇴하지 않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가 교역자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전임으로 세속적인 직업을 택했을 경우, 2년간의 기간이 지난 후 연회목회심의부는 필히 그(녀)를 교역자 명부나 문서에서 제명하고 그(녀)의 안수증을 중앙 총무에게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이 4년의 기간은 교역자로서의 활동을 정지한 후 곧 이은 연회로부터 시작한다. 연회심의부는 이 같은 조치를 연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것이 그(녀)의 인품에 손상을 주는 조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434.9. 이혼, 즉 결혼에 대한 법적 종료를 소송했거나, 또는 육체적 동거를 중단하기 위해 배우자와 육체적으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교역자는 48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연회감독과 교섭하여 자기가 취한 조처에 대하여 알린다.

(2) 연회감독 및 연회실행위원회 위원과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날 것을 합의하되, 만일 상호 협의 하에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연회감독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난다.

(3) 상기(2)의 회합에서 교역자는 자신이 취한 조처와 결혼 불화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덕망있는 교역자로서의 신분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당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교역자가 상기 요구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 그것은 곧 징계의 사유가 된다.

제10절 교역자의 회원권 및 명예 회복

435. 교역자로서의 덕망을 상실한 나머지 개교회의 회원권을 박탈당하거나 탈퇴한 교역자는 오로지 자기가 제명되었거나 탈퇴하였던 연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나사렛성결교회에 복귀할 수 있다. 교회 회원권과 교역자로서의 신분복귀를 위한 상소가 두 차례 거절당했을 경우 중앙감독회가 목회 복직이 가능한 다른 연회에 복귀 책임을 이전 요청할 수 있다. 목회 복직을 위한 모든 간청이 좌절되는 경우 안수목사는 중앙감독회의 동의를 얻어 평신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434.4)

435.1. 어떤 이유에서나 일단 연회의 명부에서 그 이름이 제명된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는 장정 43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녀)를 제명한 연회의 확고한 서면 동의가 없이는 다른 연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연회실행위원회는 연회와 연회 사이의 관할의 이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435.2. 덕망이 높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가 그(녀)의 안수증을 연회본부에 철회하였을 경우, 그 증서는 언제든지 그(녀)가 덕망을 회복하는 때에 그것이 철회해져 있던 연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에게 반려될 수 있다. 단 그(녀)의 안수증 반려는 연회감독과 연회실행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35.3. 덕망있는 장로목사나 사역목사가 장정 434.1과 434.8에 따라 그(녀)의 임직을 사임했을 경우, 그(녀)는 안수 질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임직 재 서약을 한 후, 연회심의부의 조사에 이어 그들의 호의적인 추천을 받아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거쳐 연회에 의해 전직에 복귀할 수 있다.

435.4. 안수증을 철회 한 장로목사가 병환 중에 있거나, 덕망있는 교역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소천한 경우 그의 인품과 덕망에 손상 없이 철회된 상기 목사의 안수증을 그의 가족이 중앙총무의 서면 요청과 증서가 철회해져 있던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받을 수 있다.

435.5. 언제든지 교역자로서의 합당한 권리와 특권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목회심의부는 그 교역자의 신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들 및 주변 상황에 대한 기록을 글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 기록에는 복귀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목회심의부의 제안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각 연회는 교리와 장정의 지침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된 서면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목회직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으로 목회직을 상실한 목회자의 반응, 복원, 화합의 모든 과정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그 조치가 적절했을 경우 목회심의부는 당사자와 함께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복귀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그 계획의 취지는 당사자의 영적 상태는 물론 감정, 심리, 그리고 신체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회복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 일을 주선한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하여 다방면의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주선자(들), 또는 지명자는 매 분기마다 복귀를 위한 일련의 조치의 진행상황을 목회심의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동 부에서 제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목회심의부는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복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35.6. 덕망을 상실한 교역자는 연회목회심의부와 연회실행위원회, 연회감독, 그리고 관할 중앙감독이 당사자가 복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으므로 당사자에게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교회나 예배를 위해 설교나 주일학교 가르침 혹은 어떤 다른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신분에 임할 수 없으며, 일체의 목회 사역을 맡을 수 없다. 그 같은 복귀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덕망을 상실한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회개하였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참된 회개에는 개인적인 죄책감을 절감함은 물론 충분한 기간 동안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에 봉사하는 일을 허락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505.1-5.2, 505.5, 505.11-5.12)

435.7. 덕망을 상실한 교역자가 덕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덕망의 상실을 결정했던 연회의 복귀를 요하는 추천에 대한 중앙감독회의 동의에 의해서만 덕망을 회복하고 안수증을 추인 받을 수 있다. 복귀추천서에는 연회감독과 목회심의부, 그리고 연회실행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안수증에 대한 추인, 동의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복귀계획에 있어서의 진전 여부가 관건이며,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역자가 성적인 문제에 연루된 경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복귀신청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없다.(505.1-5.2, 505.5, 505.11-5.12)

435.8.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나 동성애 또는 반복된 불륜 등과 같은 성범죄는 한순간의 타락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도덕성의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다. 따라서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극단적인 성범죄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기대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교회에서 그 어떤 지도적 위치나 신뢰를 요하는 일이나 사역의 봉사가 허용되어질 수 없다.(505.1-5.2, 505.5, 505.11-5.12)

제 6 부

사 법 행 정

제1장 과실에 대한 조사 및 교회 징계

제2장 과실에 대한 조치

제3장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에 대한 조치

제4장 평신도에 대한 징계

제5장 교역자에 대한 징계

제6장 절차 규약

제7장 연회 소청부

제8장 중앙 소청부

제9장 지구 소청부

제10장 권리 보장

제 1 장 과실에 대한 조사 및 교회의 징계

500. 교회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증언하는 증거의 효력을 높이며, 부주의한 사람들을 경계하며 교정시킬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제공하며, 그들을 복귀시켜 효율적인 봉사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명예와 자원을 보존하는데 있다.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반 규약이나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회원의 서약을 고의적 및 계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의 정도에 따라 친절하고 진실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마음과 생활의 거룩은 신약 성경의 표준인 것 같이 나사렛성결교회는 정결한 목회를 주장하며 교역자의 자격을 지닌 사람에게는 정통적 교리를 믿으며 생활에 있어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한다. 이처럼,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다. 교회에 대해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함이 징계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 과실에 대한 조치

501. 분별력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교회 내에서 권위와 신뢰를 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과실 때문에 교회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과 여타의 사람들에게 해가 초래될 것으로 여겨지거나, 그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 발생하여 그 사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01.1. 그런데 그 같은 사실이 교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 그러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교회의 대표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501.2. 과실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과실에 연루된 사람(들)의 교회내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연루된 자의 경우 -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

비회원의 경우 - 문제가 발생한 교회의 담임목회자.

평신도의 경우 - 그 평신도가 회원인 교회의 담임목회자.

교역자의 경우 - 해당 교역자가 활동 중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연회의 감독.

연회감독의 경우 - 관할 중앙감독.

기타의 경우 - 중앙총무/본부 운영직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사실 조회나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일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501.3.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의 목적은 예상되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일단 발생한 손해의 효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손해를 방지하거나 손해로 인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더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고소가 접수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조사 기간 중에 밝혀진 사실들은 고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에 대한 조치

502. 무고한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 때문에 손해를 겪어온 사실이 과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교회로 하여금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라 함은 과실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더 이상의 손해를 겪지 않도록 방치해 주며, 피해자와 피고소인,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고생하는 여타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피고소자의 배우자와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데에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조치에는 개교회와 연회, 그리고 대외적인 신임도나 교단의 위신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02.1. 개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치는 제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직회가 열리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교회마다 비상조치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502.2. 각 연회의 경우 일련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 소재는 연회실행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실행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회차원의 비상조치 계획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계획안은 동 위원회에서 전문 분야 종사자들, 즉 상담가나 사회 활동가, 통신 분야 전문가, 그리고 관련법규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치 전담반에 대한 임명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03. 합의에 따른 징계 문제 해결 : 본 장정에 규정된 징계 절차는 피고소자가 고소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실에 대한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징계 문제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3.1. 개교회의 징계 위원회 관련 사안들은 피고소인과 목회자간에 문서로 주고받은 합의가 제직회와 연회감독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개교회의 징계 위원회의 동의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503.2. 연회징계위원회의 관련 사안들은 피고소인과 연회감독 간에 문서로 주고받은 합의가 연회심의부와 관할중앙감독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연회징계위원회의 동의와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4장 평신도에 대한 징계

504. 만일 어떤 평신도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러한 고발은 적어도 6개월간 교회에 충실히

출석해온 최소 2명의 교회 회원의 작성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연회감독의 승인을 얻어 그 교회의 회원 3명을 조사 위원회로 임명한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직회에 접수시킨다.

조사와 이에 준한 절차가 끝나면 교회 회원 중 덕망있는 두 사람이 피의자의 잘못된 일에 서명을 하여 제직회에 접수시킨다. 이 때 제직회에서는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사건을 편애 없이 공평한 방법으로 청취하여 처리할 능력이 있고 편견이 없는 사람 5명을 임명, 개교회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만일 연회감독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규모나, 고소인들의 주장이 갖는 특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교회에서 5명의 위원을 선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담임목회자와의 협의를 거쳐 동 연회에 속한 다른 교회들에서 5명의 평신도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징계 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은 실행할 수 있는 대로 곧 청문회를 갖고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다. 증인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증거를 고려하여 사실이 입증되는 대로 징계 위원회는 온당한 사면을 하든지 징계를 견책, 개교회 회원권, 정지 또는 제명 등의 형식을 취한다. 회개, 사과,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504.1. 개교회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피소자 혹은 제직회는 30일 이내에 연회소청부에 상소할 수 있다.

504.2. 평신도가 개교회 징계 위원회에 의해 개교회 회원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그는 연회실행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동 연회산하 나사렛성결교회에 재입교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동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는 입교식을 위한 소정 격식에 따라 개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진다.(27, 33-39, 112.1-12.4, 801)

제5장 교역자에 대한 징계

505. 나사렛성결교회의 영속성 및 효율성은 대부분 교역자의 영적 자질과 품성, 그리고 행동 방식의 여하에 달려 있다. 동 교단의 교역자는 교단의 신뢰가 걸린 사람들로서 기쁨부음 받은 사람들로서의 숭고한 부르심과 기능 수행을 요청 받는다.

그러므로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목회할 대상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격을 구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부과된 높은 기대감 때문에 교역자와 그들의 사역은 종종 일반인의 비난과

오류에 대한 지적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런 이유에서 동 교단의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성경적 지혜와 성숙함을 갖고서 다음의 절차들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505.1. 어느 교역자가 교역자답지 않은 행위나 나사렛성결교회 신조에 위배되는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그리스도인의 일반 규약이나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문란하게 했을 시의 고소는 그 당시 덕망이 있는 나사렛성결교회 회원 최소 2명이 고소장을 작성 서명한다. 성적인 과실에 대한 고소는 그 과실에 관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누구도 서명할 수 없다. 서면고소장은 반드시 교역자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연회의 실행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고소장은 당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된다.

연회실행위원회는 고소가 접수되면 실질적인 통고 방안들 가운데 가장 용이한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통고 방법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역에서 가장 합법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통고방법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피소자 및 그(녀)의 변호인은 그 고소 내용을 검토할 권리가 있고 요청에 의하여 고소장 사본을 접수할 수 있다.(435.6-35.8)

505.2. 교역자에 대한 고소장의 서명은 서명자 자신의 합리적인 조사를 근거로 구성된 최상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신념을 전제로 하여 그 같은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담고 있는 것이다.(435.6-35.8)

505.3. 서면 고소가 접수되면 연회실행위원회는 3명 또는 그 이상의 안수 교역자와 2명의 이상의 평신도로 된 위원회를 임명하여 그 사실과 사실에 얽힌 진상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서명하여 서면 보고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한 후 피의 사실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장을 작성하고 안수 교역자 2명이 서명한다. 연회실행위원회는 기소장이 접수되면 실질적인 통고 방법들 가운데 가장 용이한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통고 방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합법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통고 방법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는 죄목과 그 구체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요청에 의해 즉시 그것들의 사본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통고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222.3)

505.4. 만일 조사가 끝난 후 교역자에 대한 고소가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악의에 찬 상태에서 접수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고소철이 곧 고소장에 날인한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된다.

505.5. 죄상이 접수되면 연회실행위원회는 그 연회소속 안수 교역자 5명과

2명 이상의 평신도를 임명해서 사건을 공청하고 결정을 내리게 한다. 이 5명은 연회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하며 교회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연회감독은 안수 교역자나 인정 교역자의 공청시 기소자 또는 기소자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징계 위원회는 전기소장과 관계되는 피의 사실을 벗겨주거나 사면하거나 혹은 피의 사실에 응당한 징계를 가할 권한을 소유한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징계의 과정에는 회개, 고백, 보상,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건의, 교회 회원권이나 교역자 회원권 제명 또는 양자 동시 제명, 공적이나 사적 견책 또는 기타 적절한 징계를 포함하는데 기타 징계에는 유예 기간 동안 징계의 중지 혹은 연기 등이 포함된다.(222.4, 435.6-35.8, 505.11-5.12)

505.6. 피고인이나 연회실행위원회가 그렇게하기를 요청할 경우, 징계 위원회로서 지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각 사건을 위한 지구 위원회는 피소된 교역자가 그(녀)의 회원권을 두고 있는 연회관할 중앙감독이 임명한다.

505.7. 어떠한 경우에도 1단계 연회에서는 선교사에 대한 재판 행위가 집행될 수 없다.

505.8. 징계위원회의 판결은 만장일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전 위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각각의 죄목과 명세에 관해 ??유죄?? 혹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해야 한다.

505.9. 본 법이 규정한 징계위원회의 모든 공청은 소청이 제기된 연회구역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집행된다.

505.10. 모든 공판 절차는 다음의 조항에 규정한 절차 규약에 의하여 행해진다.(222.3-22.4, 427.9, 433.11, 508)

505.11. 교역자가 교역자답지 않은 행위로 기소되어 유죄를 시인하거나 혹은 기소되지 않고서 유죄를 고백하면 연회실행위원회는 505.5에 규정된 징계 중 어떤 것도 부과할 수 있다.(435.6-35.8)

505.12. 교역자가 교역자답지 않은 행위로 고소되어 유죄를 시인하거나 혹은 징계위원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죄를 고백하면 연회실행위원회는 505.5에 규정된 징계 중 어떤 것도 부과할 수 있다.(435.6-35.8)

506. 징계위원회의 결정 후에 피소자, 연회실행위원회 또는 제소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중앙 소청부에, 그 외 세계 지구의 경우는 지구 소청부에 각각 상소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소는 판결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상소가

있으면 소청부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이에 따라 취해진 절차를 재검토한다. 소청부가 개인의 권리를 해치는 어떠한 편견의 본질적인 과오를 찾아냈을 때에는 전기의 절차나 판결을 부당하게 입은 피해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청문회를 명하여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507. 징계위원회의 판결이 피소된 교역자를 거슬러 교역 생활의 정지 또는 자격중의 취소로 결정되면 피소 교역자는 즉시 모든 교역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할 때는 이 태도로 말미암아 상소권을 상실한다.

507.1. 징계위원회로부터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이 있을 때 피소 교역자가 상소를 원하면 상소 통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소청부 서기에게 그의 안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그의 상소권은 그가 이 규정에 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접수된 증서는 소청부 서기가 사건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 소청부의 판결에 따라 증서를 중앙총무에게 송달하든지 교역자에게 반송해 주든지 한다.

507.2. 지구 소청부의 판결에 불만족한 피소자나 징계위원회는 중앙 소청부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한 상소의 절차는 다른 중앙 소청부 상소와 같다.

제6장 절차 규약

508. 중앙 소청부는 모든 산하 징계위원회 및 소청부가 지켜야 할 통일된 집행 절차 규약을 채택한다. 이 규약이 채택 공포된 후에는 모든 법적 절차 집행의 최고법이 된다. 인쇄된 절차 규약은 중앙총무에 의해 공급된다. 이 규약에 대한 소정 및 개정은 중앙 소청부가 수시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되고 공포되면 그것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효력과 권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채택된 개정법이나 수정된 규약에 따라 집행된다.(505.1)

제7장 연회 소청부

509. 정식으로 조직된 각 연회는 장정 203.22에 따라, 연회감독을 포함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2명의 평신도와 3명의 안수 교역자로 구성되는 연회 소청부를 둔다. 이 소청부는 개교회 소청위원회의 소송과 관련된 개교회 회원의 상소를 청문한다. 상소는 판결이 있을 후 또는 피해자가 판결의 사실을 안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상소장은 연회 소청부나 또는 그 위원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본은 해당 개교회 목회자와 교회제직회 서기에게 전달된다.(203.22)

509.1. 연회 소청부는 평신도 징계를 위해 임명된 징계위원회의 판결에 관한 교회나 평신도의 모든 상소를 공청,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8장 중앙 소청부

510. 중앙총회는 다음 4년간 또는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부여되기까지 시무할 5명의 안수 교역자를 선출하여 중앙 소청부를 구성한다. 중앙 소청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510.1. 모든 연회징계위원회 또는 지구 소청부의 판결과 처리에 대한 어떠한 상소도 공청하여 판결하는 일. 그러한 상소에 대한 상기 소청부의 판결은 권위 있는 최종 결정이 된다.(305.7)

511. 중앙총회 사이의 기간에 중앙 소청부에 생긴 결원은 중앙감독회에 의해 충원된다.(317.6)

512. 중앙 소청부 위원에 대한 일당 및 비용 지급은 그 위원들이 소청부의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한하여 중앙재무가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동등액을 지급한다.

513. 중앙총회는 중앙 소청부의 모든 결의와 영구 기록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305.4)

제9장 지구 소청부

514. 미국과 캐나다 외의 각 지구를 위해 지구 소청부를 둔다. 각 지구 소청부는 매 중앙총회 이후에 중앙감독회가 선출한 5명의 안수 교역자로 구성된다. 결원이 생길 경우 중앙감독회에 의해 충원된다. 지구 소청부의 절차 규약은 교회 장정 및 교회 사법장정에 나온 대로 중앙 소청부의 절차 규약과 같다.

제10장 권리 보장

515. 기소된 교역자나 평신도가 편애 없는 공정한 청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부당하게 연기할 수 없다.

무죄자의 허물을 벗겨주고 유죄한 자에게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서면 기소는 우선적으로 공청되어야 한다. 모든 피소자는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소자는 각각의 죄목과 상세한 내용에 관해 도덕적인 확신과 이성적인 의심의 여지 이상으로 유죄함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515.1. 중앙 소청부에 상소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행한 모든 증언의 기록을 포함하여 사건의 기록을 준비하는 경비는 청문이 집행되고 징계 행위가 취해지는 연회에서 부담한다. 상소하는 교역자는 상소에 대한 서면 주장은 물론 구두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권리는 피소자의 서면 요구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515.2. 교역자나 평신도가 비행이나 교회의 장정을 위배하여 고발, 기소되었을 경우 피소자는 기소자를 직접 대면하고 기소를 위한 증인들과 대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15.3. 징계위원회 앞에서 행해지는 증인의 어떠한 증언도 그것이 선서나 엄중한 확약 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면 증거로 받아들여지거나 고려될 수 없다.

515.4. 교역자나 평신도가 징계위원회 앞에 출두하여 심문에 답변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그가 선택한 변호인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변호인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신망을 받을만한 회원이어야 한다.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정회원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는 자는 신망을 받는 회원으로 간주된다.

515.5. 5년 이상 경과된 사건에 대한 기소 심문에 대해 교역자나 평신도는 해명할 의무가 없으며 소장이 접수된 시일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증거도 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해당사자가 법적 권한이 없는 18세 이하인 경우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을 작성할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5년의 시한은 피해자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지적 능력을 갖추 때까지 시효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어느 교역자이건 관할 법정에서 1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신의 안수증을 연회감독에게 반납해야 한다. 해당 교역자의 요청이 있고 사전에 징계위원회의 관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회실행위원회는 그 같은 판결의 진상을 조사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교역자의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515.6. 교역자나 평신도는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침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 위원회가 내린 처음 판결로 말미암아 본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청부가 발견했을 때에는 재심할 수 있다.

제7부

구 획

(구획내용 생략)

제 8 부

성례

제 1 장 세례식

제 2 장 정회원 입회식

제 3 장 성찬식

제 4 장 결혼식

제 5 장 장례식

제 6 장 직원 임명식

제 7 장 성전 봉헌식

제 1 장 세례식

제 1절 세례

800.세례식

800.1. 신자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는 외형적인 표시와 보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3-5)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이고 간결한 신조인 사도신경을 당신(여러분)이 믿고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이러한 믿음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예

문)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답)예

(주례 목사는 각자의 성명을 부르면서 각자가 원하는 세례 형식 -죽 물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붓거나, 혹은 물속에 잠그거나- 을 이용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2절 유아세례

800.2 유아세례

(목사의 부름에 따라 보호자들이 아이(들)와 목사 앞에 서면 목사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중생의 은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표시와 보증으로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셨으며 아이들을 안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어린 아기를 사랑하시고 친히 안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를 세례 받도록 데리고 오신 당신(여러분)에게는 이 아이(들)가 자라서 배우는 나이가 되면 먼저 이 거룩한 예식의 본질과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가르치고 탈선하지 않도록 교육함과 그 마음이 성경에 의해 인도함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함과 모든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 받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아래 묻는 말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당신(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이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모든 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감독하고 인생을 거룩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답)예

(집례 목사는 부모 혹은 후견인에게 어린이의 이름을 부르게 한 후 성명을 제창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말하기를)

나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후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거나 축복적인 기도를 한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아이(들)를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를 아동기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청년기의 유혹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와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의 현명한 교훈과 거룩한 본을 본받아 당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절 헌아식

800.3 헌아식 : 이 예문은 어린 아이의 부모나 후견인이 세례를 희망하지 않고 다만 헌아 한다는 의도를 가졌을 때에 사용한다. 어린이(들)와 부모나 후견인(들)이 함께 출석하면 목사가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말하기를 :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 19 : 13-14)
이 어린이(들)를 바치는 일은 당신(여러분)이 믿는 이로서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어린이(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죽어서는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여러분)은 일찍부터 이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며 그 성장을 보살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고 젊은 마음이 성경에 향하도록 하고 그의 발길을 성전으로 돌리도록 인도하고 악한 교제나 습관을 제거해 주는 것이 부모(후견인)로서 당신의 의무이며 이 어린이를 우리 주님의 성품과 훈계 속에서 양육하는 것이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힘쓰실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십니까?

답)예

목회자는 회중을 향하여 묻기를

문)이제 교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여 이 헌애한 부모들을 후원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게 하고 ○○○를 도와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답)예

(목사는 어린이(들)를 안고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를 바치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거나 즉흥적인 기도를 한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들)를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 주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로 아동기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청년기의 유혹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와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의 현명한 교훈과 거룩한 모범을 본받아 당신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제 2 장 정회원 입회식

801.정회원 입회식

(정회원 후보자들이 교회 제단 앞에 나와 서 있고 목회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 특전과 은혜는 대단히 귀하고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알 길이 없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형제적인 관심과 서로 염려하여 돌보며 의논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의 경건한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과 공동 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한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 서로 협력할 때에 훌륭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체함에 필수적인 간절한 신조가 있습니다.

주: 목회자는 다음의 신조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1: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필요로 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믿고, 중생한 후에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을 정결 혹은 완전성결하게 하는 보다 깊은 역사가 따른다는 것과 이 모든 은혜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증거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모두가 최후의 심판에서 상벌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믿습니까?

답) 예

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 구원 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답) 예

문) 여러분은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의 역사를 위해 바치며, 이에 관련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일반규약과 행동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답) 예

문)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 경건한 말, 거룩한 봉사를 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경건하게 바치고 은혜 받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물론, 모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생활의 완전성결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답) 예

(그러고 나서 목회자는 회원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목사는 각자의 손을 잡아 주면서 적절한 개인적인 인사와 함께 각자를 교회 정회원으로 소개한다.)

(다른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적서를 가지고 전입하는 경우의 예식)

_____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었던 ○○○ 씨가 이번에 본 교회 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각자의 손을 잡거나 혹은 그룹을 향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교회를 대표하여 당신(들)을 본 교회의 정회원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 주고, 또 당신(들)은 우리에게 축복과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실 당신(들)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택 2: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완전히 영감 받은 거룩한 책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지속적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소망 없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며,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누구든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종생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종생을 얻은 후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져야함을 믿으며, 성령은 신생을 증언하며 또한 성도들의 완전 성결을 증거하며, 우리의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26.1-26.8)

문)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믿습니까?

답) 예

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 구원 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답) 예

문) 여러분은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의 역사를 위해 바치며, 이에 관련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일반규약과 행동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답) 예

문)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 경건한 말, 거룩한 봉사를 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경건하게 바치고 은혜 받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물론, 모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생활의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답) 예

(그리고 나서 목회자는 회원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목사는 각자의 손을 잡아 주면서 적절한 개인적인 인사와 함께 각자를 교회 정회원으로 소개한다.)

(다른 교회의 전적서를 가지고 전입하는 경우의 예식)

_____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었던 ○○○ 씨가 이번에 본 교회 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각자의 손을 잡거나 혹은 그룹을 향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교회를 대표하여 당신(들)을 본 교회의 정회원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 주고, 또 당신(들)은 우리에게 축복과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실 당신(들)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3 장 성찬식

802. 성찬식

(성찬식은 이에 관한 적절한 설교나 성경 고린도전서 11 : 23-29, 누가복음 22 : 14-22, 또는 기타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후 집례 목사는 다음과 같은 초청의 말을 한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이 헌신의 기도로 끝맺는 참회와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실로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성찬을 들고 다른 목사 혹은 집사의 도움으로 성찬을 회중에게 나누어 준다. 떡이 나누어지고 있는 동안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 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포도주 잔을 나누어주고 있는 동안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회중 모두가 성찬을 들고 나면 목사는 감사와 서약의 기도로써 끝낸다.(34.5, 413.4, 413.11, 427.7, 428.2, 429.1)

주: 성찬식에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사용되어야한다.

제 4 장 결혼식

803. 결혼식

(당사자들이 법률과 목회자의 세심한 권고 및 지도 내용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정한 시일에 예식을 올리기로 한다. 정한 시일에 두 사람이 목사 앞에 와서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서도록 한 다음에 주례자는 회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거룩한 혼례를 올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인이란 우리 인간들이 순결하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며, 또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결합하는 신비로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시고 처음 이적을 행하심으로 결혼을 축복하셨으며 사도바울도 이 제도를 모든 사람 앞에 영예로운 일이라 치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성스러운 혼인을 올리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말한다.)

○○○군 ○○○양,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있는 두 사람에게 결혼 서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평생 동안 이어지며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갈라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언약이 어김없이 지켜지지만 한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행할 것을 추구한다면 두 사람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될 것이며, 두 사람의 가정 또한 영원히 평강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어서 목사는 남자에게 묻는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이 여자를 결혼한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법도에 따라 함께 살며 이 여자가 병들거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그를 늘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보호하며 두 사람이 사는

날까지 이 여자만을 위하여 그대 몸을 지키겠습니까?

대답)예

(목사는 다음에 여자에게 묻는다.)

다음은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결혼한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법도에 따라 함께 살며 이 남자가 병들거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그를 늘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고 돌보며 두 사람이 사는 날까지 이 남자만을 위하여 그대 몸을 지키겠습니까?

대답)예

(서로 마주 보며 오른 손을 잡고 신랑 신부는 다음과 같은 서약을 교환한다. 신랑은 목사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나 ○○○는 ○○○양을 나의 성혼한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다.

(신부는 목사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나 ○○○는 ○○○군을 나의 성혼한 남편으로 맞아 오늘부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다.

(원하면 반지 증정식을 여기에 삽입한다. 목사는 신랑의 들리리로부터 반지를 받아서 신랑에게 건네준다. 신랑은 반지를 신부의 손가락에 끼우면서 목사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이 반지는 나의 항상 순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써 드립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거나 즉흥적인 기도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가 되시고 모든 영적 은총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복을 비옵나니 성실하게 평생을 같이 산 이삭과 리브가처럼 저들이 오늘 서약한 것을 굳게 지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목사는 공포하기를)

이제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거룩한 결혼을 이루기로 합의하여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손을 마주 잡고 서약하였으므로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므로 사람의 뜻으로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여. 이 남녀를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들을 자비로 굽어 살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죽은 후 영생을 얻도록 하옵소서. 아멘.

(목사는 즉흥 기도나 축도, 혹은 즉흥 기도 후 축도로 예식을 끝낸다.) (427.7)

제 5 장 장례식

804. 장례식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사랑했던 분의 육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분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에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깊은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슬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족들과 함께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1-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 : 25-26)

기도(다음의 기도를 하거나 목사 자신의 말로 적절히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슬픔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침 햇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경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다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니, 고통스러울 때에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무리 위에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슬픔에 잠겨 있는 무리에게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좇아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옵니다. 아멘.

찬송 또는 특송

성경 봉독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 : 3-9) 또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마 5 : 3-4, 6, 8; 시 27 : 3-5, 11, 13-14; 46 : 1-6, 10-11)

설교

찬송 또는 특송

축도

하관식

(사람들이 다 모이면 목사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병독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욘 19 : 25-2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 : 51-58)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 : 13)

(이어서 목사는 다음의 식사 중 어느 하나를 읽는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은 원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제(또는 자매)의 시신을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몸을 닮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무덤 속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고인이 불신자일 경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 분(친구)의 육신을 매장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가신 이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고인이 어린이일 경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이 어린이의 시체를 무덤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신 동안 어린이를 품에 안아서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사랑하는 어린이를 받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비통한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분들의 무겁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저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으로 이생을 살다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13 : 20-21)

제 6 장 직원 임명식

805. 직원 임명식

(적절한 찬송을 부른 후 제직회 서기가 취임하는 직원의 성명과 직분을 읽는다. 호명된 자들은 앞으로 나와 강단 앞에 목사를 향해서 선다. 각자를 위한 서약서가 준비되었으면 목사는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기독교 봉사의 특수한 분야를 위해 일꾼을 뽑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1년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직원(혹은 교사)을 이제 임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 : 1-2)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 : 15)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 : 1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 6 : 6)

여러분들은 이제 강단 앞에 서서 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각 보조 기관의 일을 돌보기 위해 직책을 받게 되는 중대한 순간에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부과된 임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특별한 기회라 생각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실 때, 기쁨과 영적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과 여러 영혼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인격의 배양이 여러분의 책임이며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과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쇄된 서약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서약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각자는 스스로 헌신의 다짐을 하며 공약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서약=

1. 나사렛성결교회의 이상과 표준에 일치된 기독교적인 생활과 규범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2. 매일 기도와 성경 읽는 일정한 시간을 가짐으로 나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배양한다.
3. 정규 주일학교,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 그리고 기도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출석한다.
4. 내가 위임 받은 혹은 앞으로 위임 받을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임원회의 모든 정식 회의에 충실히 출석한다.
5. 지정된 시간에 출석치 못하거나 또는 나의 직분에 부과된 임무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상위 임원에게 통보한다.
6. 교단의 출판물을 광범위하게 읽고 나의 직분에 부과된 임무 수행에 유익한 기타 서적이거나 인쇄물을 읽는다.
7. 기회가 주어지면 평신도 연속 훈련 과정에 참가하여 자신과 나의 기능을 향상 시킨다.
8. 다른 사람의 영적 구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교회 내의 모든 전도 집회를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목사는 적절한 기도를 하고 헌신을 위한 특송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맡겨진 각자의 직책을 가지고 본 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할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선출 또는 지명을 통해 받은 각 직책에

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교회 조직체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행위와 교훈과 열심 있는 봉사로서 주님의 포도원에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회중을 일어서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앞으로 1년간 교회 일꾼으로 일할 지도자들의 서약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 회원으로서 충성으로 그들을 후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들에게 부과한 짐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문제를 이해해 주고 그들의 표면적인 실수에 대해 인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들로부터 도움이 요청될 때는 기꺼이 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구원 못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사는 폐회 기도를 인도하거나 전 교인에게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게 한다.)

제 7장 성전 봉헌식

806. 성전 봉헌식

목사 :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높으신 주님의 성호와 그의 영광과 그리고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건물을 봉헌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선과 온전한 은사의 근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모든 빛과 생명과 힘의 원천이며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찬양하기 위해

회중 : 우리는 지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목사 :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봉사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교회 전통을 남겨 주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신 분들을 기념하면서.

회중 :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건물(예배당, 교육관, 친교실 등)을 봉헌합니다.

목사 :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말씀의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의 교제를 위해

회중 : 이 하나님의 집을 엄숙히 봉헌합니다.

목사 :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회중 : 우리는 이 교제와 기도의 장소를 봉헌합니다.

목사 : 죄로부터 구원 받는 기쁜 소식을 나누며, 성결을 가르치는 성경을 전파하고 의를 가르치고 이웃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회중 : 우리는 경건하게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다같이 :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으로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성별시킨 이 건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봉헌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열심히 봉사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제 8 부

기 관 규 칙

제 1 장 나사렛국제청년회

제 2 장 나사렛국제선교회

제 3 장 주일학교

제 1 장 나사렛국제청년회(NYI)

810.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

= 서 문 =

나사렛성결교회는 청년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효과적인 사역은 모든 개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분야이다. 청년 사역 기관은 그러한 사명을 안고 있는 개교회를 돕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 나사렛국제청년회는 나사렛성결교단 내의 하나의 구별된 조직체이다. 그런 이유에서 청년회 임원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회원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조직체 자체는 적절한 수준에 맞는 해당 교회 기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나사렛성결교회 안에 속한 나사렛국제청년회(Nazarene Youth International : 이하 약칭 NYI)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설립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에 있으며(마태복음 28 : 19-10), 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거룩한 품성을 형성시킨다.
- (2) 회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교리 안에서 가르친다.
- (3) 회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며 전도훈련을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헌신과 예배와 회원 간의 교제와 청지기직 및 증거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시킨다.

제 3조 표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딤후 4 : 12)

제 4조 회원권

제1항 개교회

- (1)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원권은 만 12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모든 남녀에게 개방되며, 개교회의 임원과 청년 사역자들(Youth Workers)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도 가능하다.
- (2) 개교회 회원은 나사렛국제청년회에 가입하여 개교회와 나사렛구제사역부에서 허락한 청년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각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실제 회원 전체에 대한 정확한 회원 명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4)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만 12세 이상(중학생 이상)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회원명부에 등록된다.

제 2항 연회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정해진 연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 3항 중앙회

모든 지구, 연회, 그리고 개교회 차원의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를 구성하며,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감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일학교부 및 나사렛국제청년회국을 통하여 중앙위원회(General Board)와 관계한다. 나사렛국제청년회부의 사무실은 나사렛성결교단 본부내의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활동 기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 4항 사역대상 및 연령 구분

(1)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의 대상은 12세 이상/대학부학생/청장년층이며, 이는 지구, 연회, 그리고 개교회의 청년부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2)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연령 구분은 대표 구성 및 활동 내용을 세분화 할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 연령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중등부(12-14세)

* 고등부(15-18세)

* 청년 대학부(19세 이상)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연령층에 대한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 임원

제 1항 개교회

(1)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임원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및 재무 1명을 두거나, 또는 연차대회에서 회장 1명과 그리고 부서와 상관없이 적어도 3명을 선출하여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직책을 부여한다. 단, 모든 임원은 그들이 봉사하는 나사렛국제청년회가 속해 있는 개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임원은 해당 개교회의 회원들에 의하여 매년 선출되어 연회회기년도 동안, 그리고 차기 임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갖게 되기까지 봉사한다.

(3)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임명한 추천위원회에 의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추천위원회는 청년회 회장과 목회자를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4)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추천위원회는 청년회 회장 후보로 적어도 2명 이상의 명단(만15세 이상의 연령에 달하는 사람으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고 목회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회장으로 있던 자가 가부의 투표만으로도 재선될 수 있다. 회장은 연차대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며 투표 방식은 무기명으로 한다. 선출된 회장은 제직회(Church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회장은 제직회에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교회의 제직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이 제직회에 참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에 앞서서 회장의 연령을 최소한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회장은 개교회 사무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장은 개교회 나사렛 청년협의회(Local NYI Council)가 마련한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를 위한 예산안을 주일학교부 또는 제직회에 제출하여 그 예산을 청구한다.

(5)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직권 상 제직회의 일원이며, 개교회의 주일학교 사역부의 일원이며, 또한 연회대의원직을 겸한다. 유급직원은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유급직원은 청년 주일학교를 위해 활동하는 주일학교 사역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다.)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거나, 또는 임원회 등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청년회 부회장이나 임원회에서 선출되었거나 또는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6) 회장의 유고시에는 담임 교역자나 청년부 책임을 맡은 유급직원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개교회 나사렛 청년협의회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한다.

(7) 개교회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목회자와 청년회 책임을 맡은 유급직원 및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나사렛국제청년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담임 교역자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9) 나사렛국제청년회가 미처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제직회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실행위원회로 봉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 청년들의 필요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연회

(1)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그리고 재무 1명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1년간 봉사하도록 선출된다. 혹은 그들의

후계자들이 선출되거나 임명 될 때까지 2년간 연회감독의 승인과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다.

(2) 연회청년회장의 추천과 선출은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서 무기명 투표 3분의 2이상의 투표율에 의해 선출된다. 재선되는 회장은 그 투표가 연회 나사렛 청년부 협의회에 의해 추천되어, 가부로 재 선출될 수 있는데 지방감독의 승인과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회 3분의 2이상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인정된다. 반면, 연회감독에 의해 진행되는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의 추천에 의해 재선된 회장과 1명 이상의 유자격자로 이루어진 무기명 투표는 연차총회 추천을 위해 구성된다.

(3)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의 다른 임원들은 연회감독과 연회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을 포함하여 연회 나사렛청년 협의회에서 임명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들은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연회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총회는 연회 청년협의회로 하여금 연회청년회 서기를 임명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연회청년 협의회는 연회청년회 임원들을 연회청년회 실행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4) 모든 연회청년회 임원들은 해당 연회의 경계 내에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에 출석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3항 지구

(1)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으로는 지구 간부회의에서 선정되어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총회에서 선출된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과 그 외 다른 임원들로서 부회장과 총무, 서기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이 선출된 다음 협의회에서 각각 선출된다. 동 협의회는 지구 청년협의회 임원들을 지구 청년협의회의 실행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정관 1조 4항 참조)

(2) 지구 청년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인 경우, 각 연회의 청년협의회는 지구 청년협의회 모임 때에 지구 청년회 회장직에 대한 지명권을 하나씩 제출함으로써, (아니면 중앙 청년회 협의회의 총무를 통해 지구 청년협의회 회원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지구 청년협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구 청년협의회 모든 회원들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중앙 청년회 총회 때에 모이는 지구 간부회의에 2명 이상 6명 이하의 후보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그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무기명 찬성표를 얻은 자가 지구 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된다. 지구 청년협의회에서 결성한 여타의 임원들에 대한 추천은 각 연회 청년협의회나, 지구 청년협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지구 청년협의회 3분의 2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지구 청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동 협의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경우, 지구 청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행위원회가 추천위원회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3) 지구 청년회의 모든 임원들은 해당 지구의 경계 내에 나사렛성결교회에 출석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4) 지구 청년회 회장은 지구 청년협의회 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직권 상 중앙 청년협의회 의 일원이 되며, 중앙 청년회 연차총회의 대의원직을 겸한다. 지구 청년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구 청년회의 부회장, 또는 지구 청년협의회에서 선출된 대리인이 동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지구 청년회 회장들은 다음 중앙총회가 끝남으로써 자신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며, 아무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재직 중인 지구 청년회 회장이 충분한 자질을 갖추므로써 연임된 경우, 그는 예, 아시오 식의 투표에 의해 재 선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구 청년협의회가 그 같은 투표방식을 추천하고 지구 간부회의 3분의 2이상이 무기명 찬성투표의 동의를 통해 중앙 청년회 연차총회에서 선출된다.

(6) 중앙 청년회 연차총회사이에서 지구 청년 협의회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

a. 각 연회 청년협의회가 중앙 청년회 총무에게 한사람씩의 후보를 제출하면, 중앙 청년회 총무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지구 청년협의회를 소집한다.

b. 회장 선출은 지구 청년협의회 의 과반수 선출방식을 따른다. 중앙 청년회 총무의 지시가 있고 난 후, 투표는 우편으로 실시된다.

c. 지구 청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동 협의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지구 내의 연회청년회 회장들이 접수된 후보들 가운데 회장을 선출한다.

제4항 중앙회

(1)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은 회장 1명과 서기 1명으로 구성되며, 중앙

나사렛 청년대회(The General Convention)시 무기명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어 무보수로 봉사한다.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과 서기는 4년 임기 이상 재임할 수 없다.

(2)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그(녀)의 임기 마지막에도 중앙총회의 회원직을 갖는다.

(3)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부장으로서 봉사할 수 없다.(참조 :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 간사의 선출 방법과 책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부칙을 참조하라.)

(4) 중앙 청년회 연차총회사이애 중앙 청년회 회장이나 중앙 청년회 총무의 직분이 공석인 경우, 중앙 청년협의회를 위한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원되는데, 이 경우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 간사와 관할 중앙감독과 상의해야 하며, 중앙감독회의 동의를 통해 중앙 청년협의회 회원들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제5항 초문화적 용어의 사용

다양한 직분자들의 지위를 표기하는 용어의 의미가 적절치 않거나, 또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적절한 단계의 나사렛 청년 협의회의 투표를 통해 알맞은 용어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제1항 개교회

(1) 개교회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해당 개교회의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만큼 나사렛 청년연합회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출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임용된 스태프에게 청년 사역의 책임을 위임하고 있는 개교회의 경우는, 그 스태프가 선출된 임원들과 협력 하에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프로그램과 사역의 모든 국면을 총괄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개교회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그 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들로 구성되는데, 최소한 각 연령층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한 명씩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출된 다른 협의회 임원들과 청년 사역에 관여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청년 지도자들, 즉 주일학교와 주간 나사렛국제청년회 모임, 퀴즈대회, 선교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일은 청년 선교 책임자가 담당하는데, 그 사람은

개교회의 국제선교회 실행위원회와 개교회의 청년회 회장의 합의에 의해 지명되며, 개교회의 국제선교회협의회와 청년협의회 모두의 일원이 된다. 이 직분에 대한 추천은 담임목사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연령층의 대표들은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다.(5조 1항 3단락)

(3) 연중 발생한 개교회의 나사렛청년협의회 공석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투표로 충원한다.

(4) 개교회의 나사렛 청년협의회 대의원 구성 및 사역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를 세 가지의 세부적인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4조 4항 2단락) 하지만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각 연령층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5) 청년회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 나머지 보다 세부적인 연령층 구분을 요하는 교회들은 개교회 내에 연령층 구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연령층, 또는 해당 부의 책임자는 개교회의 청년협의회에서 지명되며 각각 해당 연령층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개교회의 청년협의회 대의원 숫자는 얼마든 증가될 수 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조화를 통해 청년부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6) 개교회 청년회의 각 세부 연령층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유급직원들을 두는 교회들은 각 연령층을 위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직회의 구성상 보다 많은 청년회 대의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한, 청년회장이나 대의원 한사람만이 제직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는 각 연령층으로 세분화된 청년부 전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7) 청년회원들의 숫자가 일곱 명 이하인 교회들의 경우 목회자가 개교회 청년협의회 회원들을 지명함으로써 청년부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제2항 연회

(1)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연회내의 청년들을 위하여 계획 수립과 총체적인 사역에 책임을 진다.

(2)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 연회감독, 연회청년전담 유급직원(있을 경우), 연회청년부 연차대회에서 부서와 관계없이 선출된 6명과 연차대회가 무기명 투표로 각 연령층에서 2명씩 선출한

대표위원(4조 4항 2단락), 그리고 연회청년부 연차대회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연회청년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각 연령층에 대한 사역 책임자들로 구성된다.(4조 2항 3단락)

(3) 연회청년부 연차대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연회청년협의회 임원 및 대표위원들로서 연회단위의 각 연령층 책임자와 사역 책임자(수련회, 성경퀴즈대회, 달란트대회 등)로 활동할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선출할 수 있다. 선출된 협의회 회원들은 연회청년회 임원 및 대표위원들과 함께 연차대회에서 결정한 각종 사역을 수행한다.

(4) 연회연차대회는 연회 청년협의회에 연회사역 책임자들을 임명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해당 연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나사렛 청년회원만이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6) 연회 청년협의회는 차기 연차대회까지 생기는 결원을 보강하되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7) 연회 청년협의회는 현행 연회체제 내에서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회감독과 협력하여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를 지방회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제3항 지구

1.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이렇게 구성된다.

1)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과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에서 결정된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의 다른 임원들.

2) 지구 내에 있는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장들.

3) 지구 내의 나사렛 대학들 및 신학교들의 학생 자치회 회장들.

4) 적절한 직권상의 지구책임자 혹은 나사렛국제청년회를 위한 특별한 협력 책임을 맡은 지구의 책임자.

5) 지구 청년 협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선출된 다른 사역 책임자들.

6)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에서 적절한 지역으로 선정한 곳의 소수 다인종 문화 공동체의 대표로서,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선출된 자.

7) 대학 및 신학교 학장에 의해 지명된 지구 내의 대학 및 신학교의 1인 대표.

8) 청년부 사역자가 없이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이나,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의 역량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들은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를 통해 청년부 사역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기금은 동위한 사역을 위해 각 지구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이 기부금들에 대해 중앙나사렛 청년협의회의 지도를 받는다.

3.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지구들에 대해서는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가 해당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장의 추천을 받아 3명 내지 5명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장과 함께 지구 나사렛 청년 실행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구의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부칙과 1조 4단락 참조)

제4항 중앙회

(1) 중앙 청년협의회는 중앙 나사렛 연차총회에서 채택된 부칙에 의해 규정된다.

(2)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중앙 청년협의회 임원들, 지구 청년협의회장들, 세 명의 대표위원들로 구성된다. 세 명의 대표위원 가운데 한 사람은 선거 당시 12-14세, 다른 한 명은 15-18세,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19-23세의 연령층에 해당된 사람이어야 한다.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 책임자는 직권 상 중앙 청년협의회 임원이 되어야 한다. 나사렛 학생지도자 협회의 현직 공동의장은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 임원이 된다. 이 협의회는 다음의 중앙총회가 끝나고 차기 임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갖기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3) 선출된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 임원 전원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임원임과 아울러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4) 부서에 관계없는 대표위원은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서 과반수 투표의 선출을 위해 지구 임원회의의 무기명 투표로 추천된다. 각 임원회의는 2명의 추천인까지 제안할 수 있다.

(5)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 회원이 그 직책을 사임하거나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장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혹은 4년의 임기 중에 교회 회원권을 옮긴 경우 공석이 생길 수 있다.

(6)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총회 사이의 중간에 중앙 청년협의회 대표위원 중에 공석이 생긴 경우,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 책임자와 상의하여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의 실행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어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원들의 3분의 2 표결의 선출로 보선된다.

(7)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지구 청년회장으로 하여금 지구 청년협의회를 주관할 권한을 부여한다.

(8)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자체의 활동을 보다 확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실행위원회의 구성을 명할 수 있다.(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부칙 4조 2항)

(9) 각급 수준의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유급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 유급직원들은 업무상 감독관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고용을 결정한 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인다.

제7조 입법회의

제1항 개교회

(1)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연차회의(Annual Meeting)는 장정 113.6에 따라 연회가 개최되기 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기타 사업을 위한 회의는 실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목회자의 승인을 거쳐 그 해 동안에 개최될 수 있다.

(2) 본 회의 임원은 회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차대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 파견할 대의원들은 회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차대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후보 대의원은 정대의원과 동수로 다수표제로 선출한다. 이 대의원들은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다.(제5조 제1항 3단락)

(3)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서만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업을 위한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다. 나사렛성결교회의회원권을 지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원들만이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연회

(1)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연회임원과 연회협의회 지도자들 및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산하 지방회 청년회장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본 대회에서 처리된다.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는 연회감독과 협력하여 연회청년회 연차대회의 진행을 담당하고 관할한다.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는 매년 한차례씩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에서 선정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2) 연회연차대회는 연회 협의회 회원, 연회감독,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산하 지방회 청년회장들, 개교회 담임목회자들 및 전담 유급사역자들,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신입회장 또는 부회장,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령 기준 안에 속하면서 연회의 임원을 맡은 안수 교역자, 연회평신도 실행위원회 그리고 회원 수 30명 또는 그 미만의 조직체에서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 3명의 대의원과 그리고 매 3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되는 대의원과 마지막 회에서 30명의 과반수가 넘을 경우 추가되는 1명의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능하면 대의원의 절반은 적어도 기본 연령층(만12세-만23세)에서 선출하고 또한 세 연령층(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는 대학부)에서 고루 대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단, 연회연차대회에 파견될 대의원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청년회원인 사람이어야 한다.

(3) 나사렛국제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개교회는 목회자가 직접 12세-40세의 연령에 해당한 1명의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4) 12-40세의 연령에 해당한 자로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임을 전제로, 나사렛 구제사역부의 책임자가 한 명의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5)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서는 헌법 제7조 3항 2단락에 따라 중앙 나사렛국제청년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부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다수표제로 실시하되 정대의원의 숫자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의원 추천은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제5조 2항 3단락)

제3항 지구

(1)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는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는데,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의 동의와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 추천에 의해 선정된 장소에서 1차로 열리며, 대회 중에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들과 청년회 사역 조정자들, 그리고 지구 내의 각 지역 및 분야별 청년회 협력 사역자들의 보고를 접수한다.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사안들이 이 대회를 통해 처리된다.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 모인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2) 대회가 소집되는 경우, 대회는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임원들과 지구 나사렛 청년협의회의 위원들, 지구담당관, 지구 내 각 지역, 또는 각 영역별 협력 사역자들, 지구 단위의 나사렛국제청년회에 대한 책임을 지닌 모든 유급직원들,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해당 지구에 속해 있는 각 연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들, 그리고 해당 지구 내의 나사렛대학교,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생자치회 회장(또는 자치회에서 선출된 회장 직무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부가적으로,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표단은 지구 나사렛 청년대회에 앞서 연회연차대회의 회원 수 보고에 근거하여 회원 수가 일차적으로 500명이거나 그 미만일 경우, 목회자 대표로 선출된 현직 안수목사 1명(개교회나 연회차원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활동에 적극 종사하는 상임 장로목사, 또는 연회인정 교역자), 그리고 개교회나 연회차원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활동에 적극 종사한 자로서 각 연령층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원 한 명으로 구성하고, 매 500명이 초과할 때마다와 마지막 회에서 500명의 과반수가 넘을 경우(251-499명) 목회자 대의원 1명과 각 연령층의 대의원 한 명씩을 추가한다. 연회연차대회의 회원 수 보고는 최소한 지구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회가 열리기 180일 전에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한다.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지구 나사렛국제청년대회가 열리기 전 2년 이내에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총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된 대의원 가운데 발생한 일체의 결원에 대해서는 연회 나사렛 청년협의회의 투표로 충원된다. 모든 대의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대표하는 연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의 정식 회원이어야 한다.

(3)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나사렛국제청년회가 없는 연회들의 경우,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대의원 한 명씩을 연회감독이 추천하고 이를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4항 중앙회

(1)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는 4년에 한 번씩 중앙총회(General Quadrennial Convention)를 개최한다. 본 총회는 주일학교부 총회와 대등한 자격의 부분으로서 열린다.(339.7) 본 총회는 기획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합회의로서 뿐만 아니라 나사렛국제청년회 고유의 입법상의 총회를 제공한다. 이 총회의 소집 시기와 기간은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의 상의 하에 주일학교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 간사와 그의 스텝은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와 협력하여 본 대회를 관장한다.

(2)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총회는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 회원들과 중앙 나사렛 회장,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서기,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간사,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들, 나사렛 학생지도자협회에 가입한 각 학교의 학생회장과 세계 각지의 교회, 대학, 신학교의 학생대표로 구성된다.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총회 시 공동의장으로 봉사하는 나사렛 학생지도자협회장은 나사렛 학생지도자 협회의 조직을 대표한다.

부가적으로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대표단은 중앙총회에 앞서 연회연차대회의 회원보고에 근거하여 회원 수가 일차적으로 1, 000명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목회자 대표로 선출된 현직 안수목사 1명(중앙총회 시 활동 중인 상임 장로목사 또는 연회인정 교역자), 대표로 선출된 당시 개교회 또는 연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에서 활동 중이던 평신도 대의원 1명, 그리고 중앙총회가 열릴 당시 만12세-23세 연령층에 속한 자로서 개교회나 연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에 활동 중이던 대의원 1명으로 구성하고, 매 1, 500명이 초과할 때마다와 마지막 회에서 1, 500명의 과반수가 넘을 경우(751-1499명) 목회자 대의원 1명과 평신도 대의원 1명, 그리고 중앙총회 당시 만 12세-23세 연령층에 속한 대의원 1명씩을 각각 추가로 선출한다. 연회연차대회의 회원수 보고는 최소한 중앙총회가 열리기 180일 이전에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한다.

중앙 나사렛 청년대회의 모든 회원들은 대회가 개최될 당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임은 물론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들이어야 하며, 아울러 만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대의원들은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앞서 18개월 이내, 또는 여행 비자 발급과 같은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24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연회연차대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동수의 후보 대의원은 다수표로 선출한다. 중앙총회의 모든 대의원 및 후보 대의원들은 총회가 열리기 직전 년도의 12월 31일까지는 선출되어야 한다.

(3) 중앙총회에 파견되는 대의원들은 중앙총회 시 해당 연회에 속한 나사렛성결교회의 청년 회원이어야 하고,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그(녀)가 대표하는 연회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단, 연회구획선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회원으로서 그들이 정기적인 교회 활동에 참가하는 연회와 경계선을 두고 서로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나사렛국제청년회가 조직되지 않은 연회의 경우, 중앙총회 대표는 연회총회에서 선택된 나사렛국제청년회원에 속한 연령의 한사람으로

구성된다.

제 8조 회칙 수정

(1) 본 회칙은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고, 중앙총회의 승인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회칙 수정에 관계된 모든 수정안은 중앙총회 개최 120일 전에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서기와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 수정을 위한 수정안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여타 3단계 연회의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나 그들이 선출한 회칙 수정건의위원회,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 또는 최소 6명의 대의원들의 합의가 있고 난 후,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서 합당한 수정안으로 판명될 경우,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가 있기 120일 이내에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서기나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간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수정안은 연차대회 이전에 중앙 나사렛 청년협의회와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의 수정위원회(각 지구마다 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에서 검토하고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연차대회에 제출되어 투표로 결정된다.

(3) 회칙 수정안 가운데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중앙 나사렛국제청년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따른다.

제 2장 나사렛국제선교회

811.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

811.1.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제 1조 명칭

본 회의 이름은 나사렛 성결교회 국제선교회 (NMI) 이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온 교회로 하여금 선교 사업에 활발하게 헌신하도록 하며 일치된 기도와 전 세계 구원의 필요성을 연구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나사렛성결교회 선교 지역에 관한 넓은 지식을 얻도록 하며 젊은이들을 격려 고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이 회칙 다른 조항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데 있다.

제 3조 조직

제 1항 개교회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개교회의 구성 기관이며,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를 통하여 목회자와 교회 제직회와 함께 협동적으로 일한다.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들을 가지기로 결정한다.(예를 들어, 주일학교부서들, 아동교회, 청년부, 분회, 특별선교부 등) 이러한 그룹들과 그 부서장들의 임명 및 선출은 목회자와 관련 지도자들의 승인으로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협의회에 의해서 행해진다.

제 2항 연회

연회 나사렛국제선교부는 _____ 연회 기관이며,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협의회를 통하여 연회감독, 연회실행위원회, 이와 관련된 다른 연회지도자들과 협동하여 일한다. _____ 연회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기관들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를 구성한다.

제 3항 중앙총회

중앙나사렛국제선교회는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선교회의 한 기관으로서,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협의회, 세계 선교국, 중앙총회의 세계선교협의회, 그리고 관할 중앙감독과 협력하여 일한다. 모든 연회 및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기관들은 중앙나사렛국제선교회를 구성한다.

제 4조 회원권

제1항 정회원

나사렛성결교회 정회원이며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선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1. 투표권 및 임원 피선거권은 아동 및 청년 분회를 제외하고는 만 15세 이상의 정회원에 국한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을 말한다.

제2항 협동회원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참가하는 자는 본회의 협동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협의회와 임원

제 1항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

1. 목적: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는 개교회에서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장려해야만 한다.

2. 구성

1) 동 협의회는 4명의 임원을 가진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2) 협의회 임원들은 선교 교육, 선교사 후원회 (LINKS), 기도와 금식, 선교 소명, 옥합헌금 서기, 선교사 건강관리, 근로봉사 전도단, 세계 선교방송 서기, 섭외, 나사렛 구제사역, 아동 선교, 청년 선교, 그리고 개교회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역을 위한 책임을 맡는다. 분회 회장들은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임원이 된다. 협의회 임원은 한 개 이상의 직위를 가질 수 있으나 투표에서 오직 한 표만을 갖는다.

3) 실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재무, 그리고 협의회가 선출한 다른 두 명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4) 모든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임원들은 직책상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의 승인으로 동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3. 추천, 선출, 임명, 공석

1) 추천: 협의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다. 담임 목회자는 추천 위원회를 임명하고 동 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한다.

2) 선출: 협의회 임원들과 최소 2명 이상의 추가 임원들이 총회 때 선출되며, 피선 이후 교회 시무력의 첫날 봉사하기 시작한다. 만약 개교회가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돈을 포함한 교회 기금을 관리하는 개교회 재무를 두고 있고 그가 개교회제직회에 의해 피선된 사람이라면, 그는 개교회 나사렛국제 선교 협의회의 직책상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는 개교회 국제선교 협의회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협의회 위원으로 나사렛 국제선교회의 재무직을 수행한다.

(1) 회장

i. 추천위원회는 1명 이상의 회장 후보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개교회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현직 회장의 재선 여부는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담임목회자의 승인 하에 가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iii. 회장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며 교회 시무년 1년 내지 2년 동안 봉사할 수 있으며, 개교회의 국제선교협의회와

목회자는 봉사 기간을 추천한다.

(2) 그 이외의 나머지 임원들은 1년 내지 2년의 봉사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이 봉사 기간은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와 목회자에 의해 추천된다.

이 선출은

i. 최다투표 또는

ii. 가부 선출로 하되, 선출 방식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고 목회자의 승인으로 시행된다.

(3) 봉사 기간이 1년인 추가 협의회 위원들은

i. 특별한 책임을 위해 선출되거나,

ii. 후에 정해질 책임을 위해 협의회 전체로서 선출되거나,

iii. 실행 위원회에서 임명된다.

(4) 연회 대회를 위한 대의원 및 대리자(alternates)는 연차 총회에서 무기명 최다투표로 선출된다. 대리자는 독립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거나, 개교회 협의회와 추천으로 대의원들과 동일한 무기명투표에서 선출될 수 있다.(대의원 수의 결정에 관해서는 제 6조 2항, 1, 3을 참조하십시오)

3) 임명: 추가 협의회 위원들은 1년 봉사직으로 목회자와 상의하여 실행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될 수 있으며, 교회 시무년 첫날부터 봉사하기 시작하거나, 아무 때나 임명된 후 바로 봉사를 시작한다.

4) 공석:

(1) 회장: 회장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실행위원회가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1명 또는 1명 이상의 회장직 후보를 추천한다. 본 선교회의 정기 회의나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회원의 무기명 과반수 표결로 보선된다.

(2) 다른 실행위원회 위원: 이 경우에는 실행위원회가 1명 또는 1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다. 선출은 본 선교회의 정기 회의나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회원의 무기명 다수 투표로 보선된다. 만일 그 개교회가 통합재무(unified treasurer)를 두고 있으면 그 공석은 그 교회 제직회에 의해서 채워진다.

(3) 기타 협의회 위원: 실행위원회의 임명에 의해서 그 공석을 채울 수 있다.

4. 협의회 위원들의 임무

1) 회장

(1) 개교회의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사업을 인도한다.

(2)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정규 또는 특별 모임을 주재한다.

(3) 선거나 협의회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모든 선교부의 강조점들을 장려하거나 책임을 대표한다.

(4)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와 제직회의 승인을 위해 연간 예산을 준비한다.
(5)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개교회 연차 총회, 개교회 목회자,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총무에게 매년 서면보고를 보낸다.

(6) 제직회,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대회, 연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한다. 만일 목회자의 배우자가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할 경우, 그(녀)가 개교회 제직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제직회에 봉사하도록 권한이 주어진다.

2) 부회장

(1)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2)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에 의해 지정된 다른 모든 일들을 수행한다.

3) 총무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연락을 수행하며, 통계 기록을 수행하고, 모든 사업 모임의 세부 사항들을 기록한다.

4)재무

(1) 모든 기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역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2) 모든 헌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정된 재무들에게 보내지도록 한다.

(3) 동 협의회와 필요한 경우, 교회 제직회 재무에게 모든 기록들을 제공한다.

5) 실행위원회

(1) 추가 협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협의회 공식의 채운다.

(2) 협의회 모임들 중간에 사업을 수행한다.

(3) 연차 총회 사이에 회장의 공식 시, 1명 또는 1명 이상의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6) 기타 협의회 위원

(1)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이나 강조점을 장려한다.(NMI Handbook 참조)

제 2항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협의회

1. 목적: 연회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는 연회에서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장려해야만 한다.

2. 구성

1) 동 협의회는 4명의 임원을 가진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2) 협의회 임원들은 선교 교육, 선교사 후원회 (LINKS), 기도와 금식, 선교 소명, 옥합헌금 서기, 선교사 건강관리, 근로봉사 전도단, 세계 선교방송 서기,

섭외, 나사렛 구제사역, 아동 선교, 청년 선교, 그리고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역을 위한 책임을 맡는다. 분회 회장들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위원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한 개 이상의 직위를 가질 수 있으나 투표에서 오직 한 표만을 갖는다.

3) 실행위원회는 연회감독, 국제나사렛선교협의회 임원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추천, 선출, 임명, 공석

1) 추천: 협의회는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다. 연회 실행위원회는 추천위원회를 임명한다. 연회감독은 연회 회장의 임명을 위한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한다.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은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다른 추천들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후보자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연회의 나사렛 개교회의 국제선교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선출: 회장과 적어도 4명의 추가 협의회 위원들, 그들 중 한 명은 부회장으로 지명되게 되는데, 이들은 연차 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이 4명의 협의회 위원은 총무와 재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5조 2항, 3. 2).

(3) 참조) 봉사 기간은 대회 1년 혹은 2년간이다. 대회 1년은 연회 대회의 휴회로부터 다음 연회 대회의 휴회까지를 말한다,

(1) 회장

i. 추천위원회는 협의회 회장직을 위해 적어도 2명 또는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회장이 연임을 위한 경우는 예외이다.

ii. 현직 회장의 재선 여부는 연회협의회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 하에 가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iii. 회장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며 대회 1년 내지 2년 동안, 또는 후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할 수 있다. 연회의 국제선교협의회와 연회감독은 봉사 기간을 추천한다.

(2) 부회장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i. 특별한 직무를 위한 직위로, 2명의 이름이 추천된다; 또는

ii. 협의회 전체를 위해 선출되되, 협의회에 의해 결정될 특별한 협의회 직임을 위해 선출한다. 또는

iii.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고 연회감독의 승인을 바탕으로 가부투표로 선출된다.

(3) 총무와 재무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 i. 연회 대회에 의해.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으로 가부 투표를 통해 대회 1년 또는 2년 동안 수행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또는
- ii.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으로 새로 선출된 연회협의회에 의해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연회감독의 승인으로 가부 투표에 의해 대회 1년 또는 2년 기간 동안 수행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iii. 만약 연회가 나사렛국제선교회 기금을 포함한 연회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 재무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연회협의회에 달리 명시하는 않는 한,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재무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임원들 이외에 3명의 협의회 위원은 대회 1년 또는 2년 기간 동안의 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이들의 직무는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추천위원회와 연회감독은 이들의 봉사기간을 추천한다.

(5) 나사렛국제선교회 지구 조정관들을 포함한, 추가 협의회 위원들은,

- i. 특별한 임무들을 위해 선출되어지거나; 또는
- ii. 협의회 전체를 위해 선출되되 후에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될 임무들을 위해 선출;
- iii. 실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지거나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회 협의회에 의해 임명되어질 수 있다.

봉사기간은 대회 1년 또는 2년 기간이다. 추천위원회와 연회감독은 임직기간을 추천한다.

(6) 청년 대표

- i. 연회 대회는 연회 협의회를 위해 1명 또는 2명 이하의 청년 대표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으며; 또는
- ii. 새로 선출된 연회 협의회는 연회 협의회를 위하여 1명 또는 2명 이하의 청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 iii. 추천은 연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실행위원회로부터 요청될 수 있다.
- iv. 봉사 기간은 대회 1년 동안이다.

(7) 임원들 이외에 2명의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연회 협의회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지며 그 봉사기간은 대회 1년 또는 그들의 후계자들이 선출될 때까지이다.

(8) 중앙 대회를 위한 대의원들과 대리자들은 연회 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대리자들은 독립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거나, 연회 협의회의 추천으로 대의원들과 동일한 무기명투표로 선출될 수 있다.(대의원 수의

결정과 선출 시기에 관해서는 제 6조 3항, 1, 3).(2)을 참조하시오)

3) 임명: 추가 협의회 위원들은 연회 감독의 자문을 얻어 실행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될 수 있으며,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연회 협의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4) 공석:

(1) 회장: 실행위원회는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출석한 연회 협의회 위원들의 다수결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된 사람은 다음 연회 대회의 휴회까지 봉사한다.

(2) 다른 협의회 위원들: 실행위원회 또는 연회협의회는 모든 공석을 임명으로 채운다. 새로 임명된 협의회 위원들은 다음 연회 대회의 휴회까지 봉사한다.

(3) 통합 재무: 연회가 통합 재무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공석은 실행위원회에 의해 채워진다.

4. 협의회 위원들의 직무

1) 회장

(1) 연회의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사업을 인도한다.

(2) 연회협의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연회 대회의 모든 모임을 주재한다.

(3) 선거나 협의회 결정에 의해 주어지지 않은 모든 선교부의 강조점들을 장려하거나 책임을 대표한다.

(4) 연회 재정 위원회에 의한 승인을 위해 연간 예산을 준비한다.

(5)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와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 지구 대표에게 매년 서면보고를 보낸다.

(6) 연회실행위원회, 연회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대회, 연회의 직책상 위원으로 봉사한다.

2) 부회장

(1)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2) 연회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에 의해 지정된 다른 모든 일들을 수행한다.

3) 총무

(1)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연락을 수행하며, 모든 사업 모임의 세부 사항들을 기록한다.

(2) 매년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들에게 보고 양식들을 발송한다.

(3) 통계 기록들을 편집하며 연회 회장,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간사, 중앙 협의회 대표 그리고 해당되는 곳이면, 세계 선교 지구들을 위한 나사렛국제선교회 프로그램 조정관에게 연차보고를 행한다.

4) 재무

- (1) 모든 기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역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 (2) 기금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정된 재무들에게 보내지도록 한다.
- (3) 정규 상세보고를 연회 협의회에 제공하며 연회 대회를 위한 연차 보고를 준비한다.
- (4) 적절한 연회 인사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재무 장부에 대한 연차 회계 감사를 준비한다.

5) 실행위원회

- (1) 추가 연회 협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협의회의 공석을 채운다.
- (2) 협의회 모임들 중간기의 사업을 수행한다.
- (3) 연차 총회 중간기에 회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2명의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6) 기타 협의회 위원

- (1)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이나 강조점을 장려한다.(NMI Handbook 참조)

제 3항 중앙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

1. 목적: 중앙 나사렛 국제선교협의회는 나사렛 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장려해야만 한다.

2. 구성

1. 중앙간사, 중앙회장, 나사렛성결교회의 각 지구 대표 1인
2. 실행위원회는 중앙간사(general director), 중앙회장, 부회장, 2명의 다른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세계선교국장은 중앙 협의회와 실행위원회의 임원이 된다.

3. 추천, 선출, 공석

1. 중앙간사의 임명과 선출
 - 1) 중앙 간사는 세계 선교국을 위한 관할 중앙감독과 상의하여 세계 선교국장에 의해 추천되어진다.
 - 2) 중앙협의회는 추천된 중앙간사후보를 무기명 과반수 득표에 의해 승인한다.
 - 3) 중앙위원회의 세계 선교협의회는 무기명 과반수 투표에 의해 추천을 승인하며 후보자를 중앙감독회에 천거한다.
 - 4) 중앙감독회는 중앙간사를 선출한다.
2. 중앙회장의 추천과 선출

1) 추천위원회는 중앙 간사, 중앙협의회로부터 온 3명의 지구 대표, 그리고 실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5명의 비중앙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동일한 지구로부터 2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이 나올 수 없다.

2) 중앙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3) 추천 위원회는 중앙회장을 위해 2명의 이름을 상신한다. 후보자들은 중앙감독회에 의해 승인되어진다.

4) 이 후보들로부터 중앙 대회는 무기명 투표 3분의 2의 찬성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5) 중앙회장은 중앙 대회 휴회로부터 다음 중앙 대회 휴회까지 또는 그(녀)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인준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6) 중앙회장은 재임만 허용된다. 1회의 재직 기간은 4년이다. 중앙회장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사람의 경우, 그 또한 2차의 온전한 임직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앙협의회 위원의 추천과 선출

1) 각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는 지구대표로서의 추천 투표를 위하여 대표 1명 또는 2명의 이름을 중앙 나사렛국제선교국에 상정해야 한다.

(1) 이 사람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회원이며 거주자여야 한다.(협의회 위원이 차기 중앙대회가 열리기 전 6개월 이내에 그 지구로부터 이주한 경우, 그 협의회 위원은 임기를 마칠 수 있다).

(2) 이 조항은 교회 회원권이 있는 곳으로부터 지구 경계 바로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추천 투표에 오른 이름들 가운데, 각 지구 간부회의는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대회에서 투표로 두 후보를 선택한다. 가장 높은 득표를 한 2명이 후보자로 선언된다. 그러나 이 2명은 동일한 연회에서 나올 수 없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두 번째 다득표자는 다른 연회로부터 온 세 번째 다득표자에 의해 대체된다.

3) 지구 간부회는 중앙 협의회를 위한 그 지구 대표 1인을 다수결로 선출한다.

4) 협의회 위원들은 중앙 대회 휴회 때부터 차기 중앙 대회 휴회 때까지 또는 그들의 후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봉사한다.

5) 중앙 협의회 위원 시무 임기는 2회의 연임에 국한한다. 1회의 시무 임기는 4년이다. 만약 그가 중앙협의회 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선출되었다면, 그 또한 2회에 걸쳐 온전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4.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선출

1) 중앙 협의회는 그 첫 번째 모임에서 1명의 부회장과 실행위원회를 위한 2명의 추가 위원을 선출한다.

2) 선출은 출석자의 무기명 다수결 투표로 행해진다.

5. 중앙위원회를 위한 나사렛국제선교회 대의원들의 추천과 선출

1) 중앙 협의회는 나사렛 성결 교회의 중앙위원회에 나사렛국제선교회를 대표할 2명의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다.

2) 중앙 총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대표를 선출한다.

6. 공석

1) 중앙 대회 사이에 중앙 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새 중앙 회장은 관할 중앙감독과 상의 하여 중앙 협의회의 3분의 2의 찬성득표로 실행위원회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 가운데 선출된다. 그는 차기 중앙 대회의 휴회까지 중앙 회장직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소집은 담당 중앙감독과 상의하여 중앙 협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2) 만일 중앙 대회 사이에 협의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각각의 해당 지구의 연회 실행위원회는 중앙 실행위원회에 1명의 후보자 이름을 상신하여야 한다. 중앙 실행위원회는 이 후보자들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공석은 그 지구를 위한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채워진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소집은 담당 중앙감독과 상의하여 중앙 협의회 실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3) 중앙 간사직에 공석이 생기면, 중앙 간사 추천과 선출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제 5조 3항, 3, 1)

4) 중앙 대회 사이에 실행위원회에서 공석이 발생하면, 중앙 협의회는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공석은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의 무기명 다수결 투표로 채워진다.

5) 공석이 중앙위원회를 위한 나사렛국제선교회 대의인에게 발생하면, 중앙 실행위원회는 담당 중앙감독과 상의하고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얻은 후 2명의 후보자를 상신할 수 있다.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는 다수결 투표로 중앙위원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4. 직무

1) 중앙 협의회 위원들

(1) 나사렛국제선교회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에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간사와 협력한다.

(2) 그들이 대표하는 지구에서의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3) 중앙 협의회의 매 모임에 그 지구의 나사렛국제선교회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중앙 총회의 선거를 위해 두 명의 협의회 후보를, 중앙위원회를 위한 나사렛국제선교회 대표로서 추천한다.

(5) 중앙 총회에서 통과된, 해당 지구와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수행한다.

(6) 실행위원회를 위해, 부회장과, 두 명의 다른 위원들을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간사

(1)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실행 임원으로 봉사한다.

(2) 중앙 협의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연회들에게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선교적 관심사를 전달한다.

(3) 나사렛국제선교회 지침서와 회칙을 해석한다.

(4) 중앙 사무국의 인사와 사업을 주관한다.

(5) 모든 나사렛국제선교회 출판물의 주편집자로 봉사한다.

(6) 기록과 보고를 편집하고 보관한다.

(7) 중앙 협의회, 세계 선교 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위해, 연차 재정 및 통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8) 중앙위원회의 세계 선교 위원회에 의한 승인을 위해, 협의회에 행해진 사업들에 관한 요약된 보고서를 준비한다.

(9) 중앙 협의회와 공조하여 중앙 대회 조직과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10) 중앙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세계 선교국을 통해, 요약된 중앙 대회 재정 및 통계 보고서를 준비한다.

(11) 직책상 중앙 총회의 위원으로 봉사한다.

3) 중앙회장

1) 중앙 협의회, 실행위원회, 중앙대회의 모임들을 주재한다.

2)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4) 부회장

(1)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실행위원회

(1) 협의회 모임간 사업을 수행한다.

(2) 중앙 대회 사이에 중앙 회장이 공식이 되는 경우, 중앙 회장을 위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3) 실행위원회의 1명의 공석을 위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4) 중앙 회장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임명한다.

제 6조 회의

제 1항 개교회 회의

1. 월례회

선교 정보, 영감, 기도를 위해 매월 1회 또는 그 이상 회의를 가져야 한다.

1. 이 회의는 정규적인 선교 봉사, 선교사 강사, 선교 공부, 선교 활동 및 행사, 선교 시기,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 강조점 파악 등의 형식을 띤다.

2.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과 협의회는 개교회의 선교 교육과 참여를 계획함에 있어 목회자와 공조한다.

2. 연차 회의

1. 연차회의는 연회대회 개최 전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되며 여기서 앞으로 1년간 시무할 실행 위원회/협의회를 선출하고, 연회대회를 위한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2. 개교회 협의회를 위한 투표 및 선출은 만 15세 또는 그 이상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으로 제한한다.

3. 협의회 회의

개교회 협의회는 개교회 조직의 사업을 계획하고, 보고하며,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영감을 주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적어도 4분기당 1회는 모여야 한다.

제 2항 연회 회의

1. 연회대회

1. 기구에 속한 사업을 보고하고 기도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부여하며 계획들을 발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회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2. 대회의 시기와 장소는 연회 감독과 상의 하여 연회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연회가 열리기 전 30일 안에 행해져야 한다.

3. 회원권

1) 오직 해당 연회의 회원만이 직책상 또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2) 대회의 직책상 회원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 연회 감독; 개교회의

모든 임명 교역자들과 전임 사례비를 받는 모든 부교역자; 연회 실행위원회 평신도 위원; 연회가 끝난 당해년의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새로 선출된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불참 시 새로 선출된 부회장;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위원; 은퇴 교역자; 은퇴 선교사; 자국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선교사 피임명자; 그들이 봉사하는 연회에 거주하는 모든 이전 연회회장 등이다.

3) 각 개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들이다.(만 15세이거나 그 이상) 선출된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25명 또는 그 이하의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로부터 2명의 대의원(협동회원을 제외); 이 수를 넘는 경우 각 25명당 1명 혹은 초과 과반수에 1명의 대의원 추가.

4) 출석 대의원들이 정족수를 형성한다.

2. 협의회

연회 협의회는 연차 연회대회 사이의 중간 기간에 적어도 2년에 1회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협의회 위원들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룬다.

제 3항 중앙 회의

1. 중앙대회

1. 기구에 속한 사업을 보고하고 기도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부여하며 계획들을 발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총회 직전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중앙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등록된 대의원들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룬다.

2. 대회의 시기와 장소는 담당 중앙감독과 상의하여 중앙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3. 회원권

1) 중앙대회의 직책상 회원은 중앙 협의회 위원; 세계 선교 지구들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프로그램 조정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연회회장이 출석할 수 없을 시 연회 부회장이 그 연회를 대표할 수 있음; 각 1단계 연회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연회 회장이 축석할 수 없을 시, 회장은 연회 감독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2) 중앙 대회를 위해 선출된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협동 회원을 제외한 정회원으로, 회원이 1000명 또는 그 이하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을 가지고 있는 3단계 또는 연회로부터 2명의 대의원이 파송될 수 있고, 매 추가 700명당 1명 또는 초과 과반수에 1명의 추가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3) 50명 이하의 선교사가 있는 지구는 1명, 51명 이상의 지구에서는 2명의 대의원을 파송하며, 이들은 각 지구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

4) 이들은 중앙 대회 개최 16개월 이내에 혹은 여행 비자나 다른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곳은 24개월 이내에 연회대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5) 선출된 중앙 대회 대의원은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대회 때에 선출 당시의 소속 연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선출된 대의원이 그 연회 밖으로 멀리 이사를 가면 이전 연회 대의원권은 상실된다. 단 연회구획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거주지가 그들이 정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 장소와 단지 경계만을 그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협의회 회의

중앙 협의회는 그에 해당되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4년 회기 중 최소 3회의 회의를 갖는다.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이다.

제 7조 기금

제 1항 개교회에서 거출된 기금

1. 세계선교기금

1. 세계선교기금을 위해 거출된 모든 기금은 중앙 재무에게 보내져야 한다.

2. 세계선교기금(WEF)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출된다:

- 1) 정규 WEF 헌금
- 2) 부활절 헌금과 추수 감사절 헌금
- 3) 신앙 약정 헌금(Faith Promise giving) 의 WEF 부분
- 4) 기도와 금식 헌금

2. 특별헌금

1. 할당된 세계선교기금 외에 옥합 성금, 세계 선교 방송 사업기금, 나사렛 구제 사역, 선교사 교회방문헌금, 선교사 건강관리, 선교사 후원회 (LINKS), 선교사 건강관리, 근로봉사 전도단, 나사렛국제선교회 국제 학생 장학 기금 등과 같은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할 수 있다.

2. 선교를 위한 추가 특별 헌금은 나사렛 국제 본부의 적법한 인사에 의해 승인, 허가해 줄 수 있다.

3. 중앙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는 중앙 차원으로부터 나사렛국제선교회를

통하여 장려되고 거출되는 모든 특별헌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3. 기금 배제

세계선교기금과 특별 헌금은 개교회 혹은 연회를 위해서나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개교회 경비

1. 개교회 선교회 경비는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에 의해 결정되며 개교회제직회에 의해 승인된다.

2. 개교회 선교회 경비 기금 중 일부는 분할 보관하였다가 연회대회로 파송되는 대의원들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 2항 연회에서 거출된 기금

1. 연회 경비

1. 연회 경비는 연회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에 의해 결정되고 연회 재정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대로 나사렛국제선교회를 위해 제공된다.

2. 연회 경비의 일부는 분할 보관되었다가 중앙 대회에 파송되는 연회 대의원들의 경비에 충당된다.

3. 세계선교기금과 특별 헌금은 연회경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제 3항 사례비

1.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랑의 봉사이다. 개교회 수준이거나 연회 수준이거나 중앙 수준이거나 간에 어떤 수준에서도 봉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중앙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중앙 간사는 예외이다.

2. 개교회, 연회, 중앙 등 모든 수준에서 협의회 위원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례비가 제공된다.

제 8조 정책과 수행과정

중앙 나사렛국제선교 협의회는 나사렛국제선교회를 위한 추가 정책과 수행과정과 역할 서술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과 함께 나사렛국제선교회 지침서에 수록된다.

제 9조 회칙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 안에 담겨져 있는 규칙들은 관련된 법, 나사렛성결교회의 법인 규정,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가 채택한 또 다른 회의 진행 규칙이 조직에 적용된다.

제 10조 수정

본 회칙은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 대회에서 유권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표결과 중앙위원회의 세계 선교국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제3장 주일학교

812. 주일학교 세칙

소명 규정

주일학교의 사명은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장년들에 대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전 생애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한다.

목적

주일학교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학생들로 하여금 구원 받고 온전히 성결하며 그리스도인의 체험 안에서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
2.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찾아가 가르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영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돕는 일.
3. 불신자들을 찾아 방문함으로써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제1조 회원권

등록명부

각 개교회는 다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주위 사람들을 찾아 나설 책임을 진다.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명부를 보유해야 한다.

1. 회원기록부(장정 25. 및 목회자의 연례 보고와 일치함) : 정통적인 등록 명부로서 정기적 주일학교 활동(제2조, 1항)에 정기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등록한다. 모든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의 등록 명부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지도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2. 준회원 기록부 : 개교회 주일학교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각 주일학교 학급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명부에는 주일 아침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기입된다.
3. 연장 사역 명부(장정 27.에 해당함) : 이 명부에는 매주 열리는 정규 주일학교 반은 아니지만 연장 내지는 개척 형태로 실시되는 각종 주일학교 사역(제2조, 2항)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제1항 : 다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의 활동적인 등록명부, 연장 사역 명부, 혹은 준회원 기록부 중 한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반: 부모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영아부에 등록될 수 있다.

1. 그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유아반의 전도대상자들로 고려되며 부모들은 각 해당 장년반에 들게 된다.

2. 주일학교부장과 장년부 간사는 담임목회자와 협의 하에 매년 가정반 간사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심방과 이들 가정들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그들이 어느 정도의 정규성을 띠고 주일학교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이름은 주일학교 각 해당 연령 그룹반의 회원 기록부에 이명하게 된다.

4. 만약 그들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이름은 영아반 준회원 기록부에서는 삭제하고 유치부 및 장년부 준회원 기록부에 올린다.

5. 어느 정도의 정규성을 띠고 출석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준회원 기록부에 남아있게 된다.

2. 가정반 : 신체적 혹은 직업적 사정으로 정규 주일학교 반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가정 반에 등록될 수 있고, 회원 기록부 또는 준회원 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부장과 장년부 간사는 담임목회자와 협의 하에 매년 가정반 대표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심방과 매주 주일학교 공과 교육의 책임을 맡게 한다.

2. 매주 심방을 받아 주일학교 공과 교육을 받은 자들은 회원 기록부에 등록한다.

3. 매주의 정기적인 심방이나 승인된 주일학교 공과 교육이 없으면 그들은 연장 사역 명부에 등록된다.

3. 양로원/요양원/보육원 : 이 기관들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한 자들로서 개교회가 후원한 집회에 매주 참석한 자들은 하기 조건에 따라 회원 기록부 혹은 연장 사역 명부에 등록될 수 있다.

1. 만약 거주자가 매주 나사렛 주일학교의 공과 공부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는 회원 기록부에 등록되며(장정 25와 일치함), 정규 주일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장정 26과 일치함)

2. 만약 거주자가 매주 예배에는 출석하지만 활동적인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즉 나사렛 주일학교 공과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그는 연장 사역 명부에 등재되며(장정 27과 일치함), 연장 사역 정규 주일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장정 28과 일치함)

3. 어떤 의문이 있을 경우는 모두의 이름을 연장 사역 명부에 기재한다.

4. 교회 형태 선교 : 나사렛성결교회를 조직할 것을 목표로 개교회 또는 연회에 의해 후원을 받는 그룹으로써, 승인된 주일학교 공과를 공부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30분씩 모이는 모든 그룹은 후원 교회의 활동적 회원 기록부에 등록하고(장정 25와 일치함), 정규 주일학교 출석으로 간주되며(장정 26과 일치함), 새 개척사역의 명칭/장소를 명시해 둔다.

1. 교회 형태 선교의 출석 인원수는 매월 연회에 보고할 때 후원 교회의 정규 주일 학교 과정에서 분리되어 기록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연회의 월별 전체적 주일학교 출석인원수에는 포함되어진다.

2. 만일 어떤 개교회가 그 교회에 근접해 있는 교회형태 선교를 후원하는 경우, 이 출석인원은 후원교회 아래 그 이름과 장소가 구별되어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그 개교회가 하나 이상의 새로운 사역을 후원하는 경우, 각각의 새로운 사역은 이름과 장소가 명기되어야 한다.

3. 주간, 월간, 연간 참석인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규 주일학교 참석자	125
교회형태 선교(장소명---)	30
교회형태 선교(장소명---)	15
연장 사역	25

4. 연회 또는 개교회가 많은 수의 교회개척을 장려하고 있는 경우, 이 교회형태 선교들은 연회에서 원한다면, 그들 자신의 고유한 이름과 장소를 가지고 구별하여 등재될 수 있다.

5. 나사렛 주간 학교 : 개교회 후원 하에 있는 나사렛 주간 학교의 학생들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 회원 기록부 또는 연장 사역부에 등록된다.

1. 만약 학생들이 현재 나사렛 주일학교에 등록되지 않고 나사렛 주일학교의 정규적인 주간 공부에 적어도 30분, 활동적으로 참석한다면 활동적 책임 명부에 포함된다. 그들은 평균 주간 참석 계수에 포함된다.

2. 만약 학생들이 주간 학급에 참석하고, 나사렛 주일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연장 사역 명부에 추가된다. 그리고 연장 사역 주간 평균 참석 계수에 계산된다.

6. 성경연구반 : 성경적 진리를 공부할 목적으로 개교회의 후원 하에 모이는 그룹의 구성원들은 주일 학교의 회원기록부 또는 연장 사역 명부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되어진다.

1. 그 그룹이 적어도 일주일에 30분씩 성경 공부와 승인된 교과를 공부하기 위하여 모이는 경우, 그 구성원들은 주일학교 회원기록부(장정 25에 일치함)와 정규 주일학교 출석명부(장정 26과 일치함)에 등재된다.

2. 그 그룹이 성경공부와 승인된 교과를 공부하기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30분도 모이지 못하는 경우, 그 그룹은 연장 사역 명부(장정 27과 일치함)와 주일학교 연장 사역 출석부(장정 28과 일치함)에 등재된다.

제2항 : 어떤 사람이 일단 어느 등록 명부에 오르면 그 사람이 교회의 친교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역해야 한다. 명부에서의 제명은 오로지 개교회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해 본 후에 담임목회자의 승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명부로부터의 제명은 오로지 다음의 조건에 한한다.

- (1) 다른 도시로 이사 갔을 때
- (2) 다른 주일학교에 가입했을 때
- (3)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 (4) 죽었을 때

제2조 출석

주일학교 출석인원 집계 : 개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출석수 집계 목적은 매주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노력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주일학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 거듭남과 성도로서의 일체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한 주일학교 활동 이상의 활동에 임하고 있을지라도 주일학교 출석 집계에 있어서는 단 한 번만 정규 주일학교 출석 또는 연장 사역 출석에 계수해야 한다. 만일 주일학교 주중활동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음 주일학교 출석인원에 집계되어야 한다.

중앙 주일학교 사역국에서는 각 연회의 정확한 활동 내역과 출석인원수를 필요로 하며, 이것으로 매년 교단내의 주일학교 성장에 관한 정확한 보고를 편집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일 학교 사역 인원수는 두 범주로 나뉘어 질수 있다: 정규 주일학교(장정 26과 일치함), 연장 사역(장정 28과 일치함).

이러한 부류의 활동에 대해서는 각 개교회가 하기와 제1조, 1항의 표준에 의거하여 매주 개교회에 의해 집계되어야 한다.

제1항 정규 주일학교

정규 주일학교란 매주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그룹으로 정의된다. 이 모임의 목적은 개교회 주일학교부가 검인한 주일학교 공과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있다. 이 모임은 정규 주일학교 주 출석 통계를 이룬다.(장정 26과 일치함)

1. 출석 점검은 주일학교 수업 시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이 규정은 특별한 예배로 인하여 정규 주일 학교 공부가 행해질 수 없는, 연합 / 복합 예배에도 적용된다.
2. 개교회 주일학교에 등록된 각 개교회, 지방회, 연회, 지구 또는 일반교회가 지원하는 각종 수양회, 집회, 캠프 등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 만일 그가 당일 출석한 다른 개교회 주일학교에 계수되지 않는 한 자기가 등록된 주일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활동들은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공부를 포함해야 한다.
3. 모든 정규 주일학교 수업일수는 년 평균 출석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됨으로 출석집계는 매월 연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갖는 주일학교 수업일수는 52일일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간혹 일기불순으로 정규 주일학교 수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타당한 예외에 대해서는 연회주일학교부가 연회감독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4. 가정반, 양로원/요양원/보육원, 교회 형태 선교, 나사렛 보육원/학교(출생에서 고등학교까지), 성경연구반/소그룹은 제 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규 주일학교 출석 또는 연장 사역 정규 출석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제2항 연장 사역 : 개교회의 모든 연장 사역에 출석한 자는 개교회의 연장 사역 출석자로 간주한다.(장정 28과 일치함) 연장 사역 출석자란 최소 30분간의 성경공부에는 참여하지만 정규 주일학교 수업의 기준(제2조, 제1항)에 미흡한 자들로 정의된다.

1. 만약 개교회가 둘 이상의 연장 사역 형태를 갖고 있다면 모두 하나로 합계되어 매월 보고한다. 연장 사역 주일 출석수도 마찬가지이다.
2. 연장 사역은 년 중 아무 때나 착수 혹은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은 총 누계를 사역을 행한 주일 수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제3조 주일학교 분회 및 반

제1항 : 주일학교는 학년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분회로 나눈다. 장년을 위한 분회들은 공통 관심을 기초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항 : 어린이, 청소년, 장년분회의 수가 많아지면 반으로 조직되고 주일학교부에 의하여 반장이 임명되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제3항 :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반 내의 교사들의 일을 조정한다.

(2)필요시 반 회의를 집행한다.

(3)반 내의 각 교사로 하여금 필요한 공과와 추가 자료 및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4)반에 필요한 모든 공과와 자료들 주문에 책임을 진다.(주문은 서기에게)

(5)주일학교 등록 및 출석 증원과 어떤 특별 활동 전개를 위해 주일학교부의 각 연령 그룹 지도 간사와 함께 일한다.

(6)해당 연령 그룹지도 간사에게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의하여 그것을 주일학교부에 제출한다.

(7)반을 위해 등록과 출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모든 결석자 및 전도 대상자들과 정기적으로 교섭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8)반이 전반적으로 학습에 호감을 주고 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교사들과 함께 일한다.

(9)반 내에 후보 교사를 확보해 두는데 책임을 진다.

제4조 교사

제1항 : 교사들은 장정 145.8에 일치하여 매년 임명된다.

제2항 : 각 교사는 1년간 봉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봉사를 위해 교사들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제3항 : 불건전한 교리,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임무 태만을 정확히 입증한 경우가 발생하면 주일학교부는 장정 145.8에 일치하여 어떤 임원 또는 교사를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4항 : 모든 주일학교 교사와 후보 교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적으로 교사 모임에 참석한다.
- (2) 각 학생 및 결석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일.
- (3) 제공된 모든 교육 훈련의 기회들을 선용한다.
- (4) 주일학교반을 위해 주기적으로 친교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 (5) 가르치는 일이 학습에 호감을 주고 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책임을 진다.
- (6) 매주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준비한다.
- (7) 각 학생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일에 각별히 유의한다.

제5조 임원과 임원의 임무

제1항 주일학교 부장은 장정 113.9-13.10과 127에 의하여, 매년 임명된다. 주일학교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담임목회자의 지도하에 주일학교 교장이 된다.
- (2) 교회 제직회 월례회 때 주일학교 사역을 대표한다.
- (3) 정기 교사 및 임원회를 계획한다.
- (4) 교사들 및 후보 교사들 그리고 교사 후보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5) 주일학교 등록과 출석 증가 운동 계획을 모든 임원에게 알린다.
- (6) 매월 지방회 주일학교부장에게 주일학교 통계보고를 한다.
- (7) 연회 및 중앙 주일학교 활동에 출석하도록 권면한다.

제2항 : 연령 그룹의 지도 간사들의 임무는 장정에 열거되어 있다.

제3항 : 주일학교부는 주일학교의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선출한다. 그는 전체 주일학교를 위해 회원 기록부와 연장 사역 명부 및 전도 대상자 명부에 출석자, 방문자 그리고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보해 둔다.

제4항 : 주일학교부는 재무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매주 주일학교에 의해 거출된 모든 금액을 정확히 집계하고 주일학교부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매월 주일학교부장에게 보고한다.

제5항 : 주일학교부는 연령 그룹의 간사들 및 반장들이 요구한 주일학교 공과 및 다른 자료들의 주문 책임을 맡을 사람을 선출한다. 그는 나사렛 출판사로부터 입수한 모든 자료 정보를 해당 연령 그룹 간사에게 공급하고 부장과 담임목회자의 승인을 얻어 주문한다.

제6조 행정과 감독

제1항 : 주일학교는 교회제직회에 순응함과 동시에 목회자의 보살핌과 주일학교부의 전반적인 감독 및 부장과 연령 그룹 간사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제2항 : 만약 전임 기독교 교육 간사를 채용한 교회가 그 사람을 주일학교부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교회 추천위원회는 교회 사무총회에 차기 교회 년도에는 별도로 부장을 선출하지 않고 전임 강사가 부장으로 봉사할 것을 천거한다.

(2) 교회 회중은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그 결정을 확정해야 한다.

(3) 전임간사는 주일학교부의 부장이 되고 기독교 교육의 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교회제직회에는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다.(160.4)

개교회 연령 그룹의 간사들로 봉사하게 되는 전임 유급 보조자들을 위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이것은 일시적인 배치인 이상 가능하면 이런 자리들을 위해 개교회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평신도 지도자의 자원을 배양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항

개교회에 아동, 청년, 성인을 위한 목회자가 고용되어질 때, 담임목회자는 교회 제직회, 주일학교 사역부, 또는 나사렛국제청년 협의회와 상의하여, 연령별 목회자들에게 아동, 청년, 장년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 경우, 아동, 청년, 장년들을 위한 목회자는 개교회의 아동부 간사,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또는 장년부 간사에게 부여된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 그러나 개교회 아동부 간사,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장년부 간사의 중요성은 그들이 개교회의 아동사역과 청년회 사역과 장년부 사역을 위한 근본적인 평신도 지도력과 후원과 대표적 위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담임 목회자는, 아동과 청년과 장년을 위한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또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와 함께 공조하여 이 세 위치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며, 그들의 개교회의 연령별 사역의 유익과 관련하여 어떻게 함께 일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대회

제1항 연회대회

모든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영력과 동기를 불어넣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연회가 매년 연회주일학교 대회를 계획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주일학교의 증강이 매 대회의 강조점이 되어야 한다.

(1) 직책상 연회주일학교 대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연회감독, 모든 담임목회자들, 연회인정전도사, 전임 보조원, 그리고 연회 및 개교회 주일학교부장, 연회 및 개교회의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간사들, 연회주일학교의 피선 부원, 연회의 회원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나사렛 교수들.

(2) 각 개교회 주일학교는 교회 사무총회에서 주일학교의 임원들과 교수들의 25%의 상당하는 추가 대표회원들을 선출한다.

(3) 주일학교부는 추천위원회로서 최다 득표에 의해 선출될 자의 배수에 해당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일에 봉사한다. 이 후보들은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임은 물론 주일학교 사역 중 어느 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각 연령 그룹(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사역자들) 가운데서 선정되어야 한다. 피선된 대표 회원들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득표 차수에 따라 후보 대표들을 지명한다.

(4) 연회주일학교 대회에 파송된 대표들은 연회주일학교부장과 239조에 일치한 연회주일학교부의 피선부원들 그리고 정한 시기에 개최될 중앙 주일학교대회에 파송될 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다.

제2항 중앙 대회

1. 직책상 중앙 주일학교 대회의 대표들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연회감독, 연회주일학교부장들, 주일학교국의 국, 부장들 및 임원, 나사렛 대학 및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 교수들, 연회아동 및 청년 장년부 간사들.

2. 연회는 연회의 직책상 대의원(나사렛 청년대회에서 선출되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은 제외)수와 동일한 수인 4명의 추가 대표나 또는 그 연회에 소속된 주일학교 임원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추가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 중 어느 쪽이든지 큰 숫자를 택한다.

3. 주일학교부의 중앙대회 대표 선출에는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추천위원회는 연회감독, 연회 주일학교부 부장, 그리고 연회주일학교부가 임명한 최소 3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들은 실제로 선출된 대표숫자의 3배되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2) 연회대회에서는 모든 주일학교 사역 분야(청년부는 제외)에서 동등수의 대표를 선출한다. 피선인들은 그들이 대표하여 선출된 사역분야에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중앙 나사렛국제선교대회나 중앙 나사렛국제청년대회의 대의원으로 봉사할 자들은 선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이들 세 대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 (3) 대표들은 중앙총회가 개최되기 전 16개월 이내, 또는 여행 비자 발급과 관련한 준비 작업이 지체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24개월 내에 연회주일학교 대회(나사렛 청년대회들은 제외)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 (4) 가능하면 동수의 평신도와 목회자를 선출해야 한다. 즉 50%의 평신도와 50%의 전임 현역 목회자, 안수목사, 혹은 인정전도사들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전체 수자가 홀수인 경우 1명의 추가 대의원은 평신도이어야 한다.
- (5) 중앙대회 개최 전에 새로 선출되고 대회 개최 당시 현직에 근무하는 연회 주일학교부 지도자들은 직책상 대회 대의원들이 된다.
- (6) 연회대회에 출석하여 피선된 모든 대의원 및 직책상 대의원은 투표권이 있다.
- (7) 선출방법으로는 최다 득표에 의한 것으로 족하다.
- (8) 선출된 대표들이 참석치 못할 경우 다음 무기명 투표에서 득표 차순에 따라 후보 대표들을 지명한다.
- (9) 중앙 주일 학교대회에서 각 대표는 그를 뽑은 연회의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이며, 그 지구에 거주한다.(이것은 정규적인 교회 참석의 장소에서 거주자가 연회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10) 만약 연회가 중앙 주일학교 대회에, 장정에 표시된 바와 같은 전체 대표들을 파송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경우는 연회 주일학교부의 결정에 의해 그 연회가 감당할만한 수효의 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다.
- (11)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은 연회가 나사렛국제청년회와 나사렛국제선교회 대회의 대의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를 연회로부터 보조받아야 한다.
- (12) 만약 연회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연회에서 대표들을 선출한다.

제8조 수정

본 부칙들은 중앙총회에서 유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9부

서 류 양 식

제1장 개교회

제2장 연회
제3장 기소장

813. 개교회

813.1. 연회에 추천하는 추천서

나사렛성결교회 제직회는 _____을(를) _____*
을(를) 위해
연회에 추천합니다.

제직회 의장 _____인

제직회 서기 _____인

주 : 본 양식은 7가지의 다른 추천서로 사용된다.(*)표로 표시된 곳에 원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

*: 인정 교역자 자격

인정 교역자 자격 갱신

기독교 교육 교역자 임명

성가 부흥사 등록

여사역목사 자격 갱신

종신 여사역목사

음악 교역자 임명

813.2. 추천서

_____는 _____나사렛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서는 이번에
이적하기를 위하여 추천하오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_____년 _____월 _____일

담임목사 _____인

813.3.제적서

본 증서는 _____가 당일까지 _____나사렛성결교회
정회원으로 속해 있었으나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 제적서를 발행함.

200 _____년 _____월 _____일

담임목사 _____인

주 : 제적서 발행과 동시에 회원권이 중지됨

813.4. 이명 증명

본 증서는 _____가 _____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범적인 회원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_____ 연회의
나사렛성결교회로 _____ 이명하오니
받아주시고 이명 확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담임목사 _____인

주소 _____

주 : 이명은 3개월간 유효함(111).

813.5. 이명확인서

본 증서는 _____가 200 년 월 일자로
나사렛성결교회 정회원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담임목사 _____인

주소 _____

813.6. 개교회 전도인 증명

본 증서는 _____가 심령과 행실이 기독교적인 복음에
부합하고 또한 그의 가르침이 본 교회에서 준수하는 확립된 성서적 교리와
일치한다는 조건 하에서 1년간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 전도인으로 인정함을
증명함.

나사렛성결교회제직회의 명에 의함.

장소 _____

일시 _____

제직회 의장 _____

제직회 서기 _____

제2장 연회

814. 연회공식 서류 양식은 6401 The Paseo, Kansas City, MO 64131-1213에 사무소를 둔 중앙총무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제3장 기소장

815. 기소장

제1항 교회 회원의 재판

제2항 안수 교역자의 재판

제3항 인정 교역자 재판

(기소장은 6401 The Paseo, Kansas City, MO 64131-1213에 사무소를 둔 중앙총무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제10부 부록

제1장 중앙총회 임원

제2장 행정위원회, 협의회, 교육기관

제3장 운영정책

제4장 교회법 해석

제5장 현행도덕 및 사회문제

900. 중앙총회 임원

900.1. 중앙감독

James H. Diehl Jesse C. Middendorf

Paul G. Cunningham Nina G. Gunter

Jerry D. Porter J. K. Warrick

은퇴 및 명예 중앙감독

Orville W. Jenkins, Emeritus

William M. Greathouse, Emeritus

Eugene L. Stowe, Emeritus

Raymond W. Hurn, Emeritus

Jerald D. Johnson, Emeritus

Donald D. Owens, Emeritus

John A. Knight, Emeritus
William J. Prince, Emeritus
Jim L. Bond, Emeritus
W. Talmadge Johnson, Emeritus

900.2. 중앙총무

Jack Stone

900.3. 중앙재무

Marilyn J. McCool

국제본부

6401 The Paseo
Kansas City, MO 64131-1213
U.S.A.

제2장

901. 행정위원회, 협의회, 교육 기관

901.1. 중앙위원회

지구위원

교역자 평신도

♣ 아프리카 지구

Emanuel David Lima Araujo Stanley Bhebhe
Collen Smith Magagula Jafete Alberto Mabote
Timothy Mogorosi Mecildes Tavares

♣ 아시아-태평양 지구

Andrew Moime Graeme Sheppard

♣ 캐나다 지구

Ian Fitzpatrick Hugh Hawthorne

♣ 캐리비언 지구

Victor George Carmen Luisa Checo Acosta
Raul Puig William H. Woolford

♣ 미중부 지구

Ted R. Lee John Q. Dickey, Sr.

♣ 미 중동부 지구

Eddie Estep James Couchenour, Sr

♣미 동부 지구

Jossie E. Owens Jan Lanham

♣유라시아 지구

Hans-Guenter Mohn Paul D. Tarrant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Marcos Joel Galicia Rodriguez Juan Alfonso Cienaga R. Danilo Solis
Ana Maria Crocker de Diaz

♣미 중북부 지구

James Spruce D. Ray Cook Edmond P. Nash Larry McIntyre

♣미 서북부 지구

Randy J. Craker Bob Helstrom

♣남아메리카 지구

Amadeu Aparecido Teixeira Haroldo Millet Neves
Flavio Valvassoura Oswaldo Quispe T.

♣미 중남부 지구

Duane E. Strader Ron Mercer

♣미 남동부 지구

Larry D. Dennis Charles Davis
Gary A. Henecke Dennis Moore

♣미 남서부 지구

John H. Calhoun Dan W. Spaite

교육

John Bowling Loren Gresham

나사렛국제선교회

Eunice Brubaker

나사렛국제청년회

Mark E. Holcomb

901.2. 중앙 소청부

David Wilson, 회장 Dan Boone, 총무
Jossie Owens Duane Strader

Tim Stearman

901.3. 나사렛국제청년회 중앙협의회

Gary Hartke, 회장

Monte Cyr, 중앙총무

Mark Holcomb, 부회장(미국/캐나다 지구)

Ronald Miller, 아프리카 지구

Dave Harris, 아시아 태평양 지구

Rudolf Prescod, 케리비안 지구

Tim Evans, 유라시아 지구

Josue Jimenez,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Zeida Perales, 남미 지구

Ed Belzer, 미국/캐나다 지구

Danny Dyer, 미국/캐나다 지구

Paul Coy, 아시아 태평양 지구 Coordinator

Eduardo Donath, 캐리비안 지구 대표

Savine Wielk, 유라시아 지구 Coordinator

David Gonzalez,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대표

Timothy McKeithen, 남미 지구 대표

Dave Curtiss, 미국/캐나다 지구 Coordinator

Jennifer Wilson, 소년부 Early Youth Member-at-large

Simone Finney, 청년부 Senior Youth Member-at-large

Tobias Ambs-Thomsen, 청장년부 Young Adult Member-at-large

USA/Canada Council

Gary Hartke,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Dave Curtiss, 미국/캐나다 지구 Coordinator

Mark Holcomb, Chair (미 중부 지구)

Danny Dyer, Vice Chair (미 중남부 지구)

Ed Belzer, 미 북서부 지구 총무

Pat Wiens, 캐나다

Roger Bonzo, 미 중동부 지구

James Hayward, 미 동부 지구

Brian Smith, 미 중북부 지구

Michael Johnson, 미 남동부 지구
Charles Brodhead, 미 남서부 지구
Jennifer Wilson, 소년부 Early Youth 대표
Carissa Ulmet, 청년부 Senior Youth Member-at-large
Simone Finney, 청장년부 Young Adult Member-at-large
The Assigned Responsible General Superintendent in Jurisdiction (Adviser)

901.4. 나사렛국제선교회 중앙 협의회

Dr. Daniel D. Ketchum, 중앙 책임자
Rev. Eunice Brubaker, 회장
Mrs. Esther Ribisi, 아프리카 지구
Mrs. Raquel Fausto, 아시아 태평양 지구
Mrs. Elizabeth Wall, 캐나다 지구
Mrs. Jennifer Brown, 캐리비안 지구
Rev. Carol Techau, 미 중부 지구
Mrs. Sue Fox Call, 미 중동부 지구
Mrs. Geraldine Perry, 미 동부 지구
Dr. Philip Weatherill, 유라시아 지구
Sra. Ana Maria Crocker de Diaz,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구
Mrs. Susan Dillow, 미 중북부 지구
Mr. Bob Shea, 미 북서부 지구
Rev. Marcos Vinicio Pedrosa Monteiro, 남미 지구
Mr. Wes Harper, 미 중남부 지구
Rev. Theron Friberg, 미 남서부 지구
Dr. Louie E. Bustle, 세계 선교국장
The Assigned Responsible General Superintendent in Jurisdiction (Adviser)

901.5. 나사렛 고등 교육 기관

국제 고등 교육 협의회

아프리카 지구

Africa Nazarene School of Extension
Nairobi, Kenya

Africa Nazarene University
Nairobi, Kenya
Institut Biblique Nazareen
Abidjan, C?te d'Ivoire, West Africa
Nazarene College of Education
Manzini, Swaziland
Nazarene College of Nursing
Manzini, Swaziland
Nazarene College of Theology
Siteki, Swaziland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Honeydew, Republic of South Afric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of Central Africa
Lilongwe, Malawi, Central Africa
Nigeri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Abak, Akwa Ibom State, Nigeria, West Africa
Seminario Nazareno em Mozambique
Maputo, Mozambique

아시아-태평양 지구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Manila, Philippines
Indonesi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Yogyakarta, Indonesia
Japan Christian Junior College
Chiba Shi, Japan
Japan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Tokyo, Japan
Korea Nazarene University
Chonan City, Choongnam, Korea
Luzon Nazarene Bible College
Baguio City, Philippines
Melanesia Nazarene Bible College

Mount Hagen, Papua New Guinea
Nazarene Nursing College
Mount Hagen, Papua New Guine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Thornlands, Queensland, Australia
South Pacific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Suva, Fiji Islands
Southeast Asia Nazarene Bible College
Mae Taeng, Chiang Mai, Thailand
Taiwan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Peitou, Taiwan, Republic of China
Visayan Nazarene Bible College
Cebu City, Philippines

캐리비언 지구

Caribbean Nazarene College
Santa Cruz, Trinidad
Seminaire Theologique Nazareen d'Haiti
Petion-Ville, Haiti
Seminario Nazareno Dominicano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Seminario Teologico Nazareno Cubano
Ciudad Habana, Cuba

유라시안 지구

CIS Education Centers
Moscow, Russia
Eastern Mediterranean Nazarene Bible College
Beirut, Lebanon
European Nazarene College
Busingen, Switzerland
Nazarene Nurses Training College
Washim, Maharashtra, Indi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Manchester
Manchester, England
South Asia Nazarene Bible College
Bangalore, Karnataka, India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Instituto Biblico Nazareno
Coban, Guatemala
Seminario Nazareno de las Americas
San Jose, Costa Rica
Seminario Nazareno Mexicano, A.C.
Mexico City D.F., Mexico
Seminario Teologico Nazareno de Guatemala
Guatemala City, Guatemala

남아메리카 지구

Brazil Nazarene College
Campinas, Brazil
Faculdade Teologica Nazarena
Campinas, Brazil
Instituto Biblico Nazareno
Bagua Chica, Amazonas, Peru
Seminario Biblico Nazareno
Santiago, Chile

Seminario Teologico Nazareno
Chiclayo, Peru
Seminario Teologico Nazareno de Bolivia
La Paz, Bolivia
Seminario Nazareno Del Cono Sur
Buenos Aires, Argentina
Seminario Teologico Nazareno Sudamericano
Quito, Ecuador

미국/캐나다 교육협의회

Canadian Nazarene University College

Calgary, Alberta, Canada

Eastern Nazarene College

Quincy, Massachusetts, U.S.A.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Olathe, Kansas, U.S.A.

Mount Vernon Nazarene University

Mount Vernon, Ohio, U.S.A.

Nazarene Bible College

Colorado Springs, Colorado, U.S.A.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Kansas City, Missouri, U.S.A.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Nampa, Idaho, U.S.A.

Olivet Nazarene University

Bourbonnais, Illinois, U.S.A.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U.S.A.

Southern Nazarene University

Bethany, Oklahoma, U.S.A.

Trevecca Nazarene University

Nashville, Tennessee, U.S.A.

제3장

902. 운영정책

902.1. 은급 :

중앙위원회 및 교회의 기관들은 은급 수혜자가 사망한 후 그 은급 지급금이

그들의 합법적인 재산이 될 때까지 은급 지급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지급금은 보통 법정에 의해 신탁 기금의 형식으로 수납되어 조심스럽게 투자되어야 한다.(2005)

902.2. 채무 :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현금 서약에 의지하여 채무를 질 수 없으며 또한 현금 서약은 자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2005)

902.3. 성경 출판 협회

(1) 공인 성서 공회. 나사렛성결교회는 성경이 서면화 된 신의 계시라는 점에 특별한 강조를 두며 성경이야말로 새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유일 효과적인 대개체임을 믿고 또한 성경의 발행부수를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앙총회는 전 세계적인 연합 성서 공회 연합회에 대하여 심심한 협찬을 표하며 그 사업에 동조한다.

둘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관심을 돌리면서 세계 성서 주일을 준수할 것을 지지한다.

셋째, 중앙총회는 중앙총무 또는 그가 임명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4년간 회기 동안 매년 뉴욕시의 성서 회관에서 12월에 개최되는 미국 성서 공회 자문 협의회의 연차 회의를 참석하게 할 것을 인준한다.

(2) 성서 공회 현금. 나사렛성결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지정하여 이 중요한 사업의 의의를 성도들에게 계몽시키고 자국의 성서공회를 위한 현금에 참여하도록 한다. 교단 산하 각국의 성서 공회 협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경 출판사 간의 연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2005)

902.4. 연극 : 나사렛성결교회의 학교 및 대학에서 지나칠 정도로 연극 작품을 이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면밀히 제한하고 보다 많은 영적인 활동을 강조하여 건전한 기독교적인 경험으로 인도할 것을 결의한다.(1997)

902.5. 장정 편집 결의 : 중앙감독회는 장정 편집 위원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장정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것을 결의하며 그 장정 편집위원회로 하여금 장정 변경에 관한 제 26차 중앙총회의 의결 기록상에 나타난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함과, 현재 장정 중에서 그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상의 변경과 또한 새로 채택된 의결 사항들에 관해서도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상의 변경 시행 권한을 갖게 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장정 편집위원회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 대신에 명확히 이해되는 단어와 표현을 대치하고 제26차 중앙총회가 채택한 결의 사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정상의 장, 절, 항목 및 기타 구분상의 숫자를 재편성하고 또한 제 26차 중앙총회가 채택한 결의 사항들과 조화가 되도록 색인을 재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할 것을 결의한다. 더 나아가서 장정의 모든 번역들에 대한 감독권을 장정 편집 위원회의 임무 하에 둘 것을 결의한다.(2005)

902.6. 장정 편집 검열 : 3회의 4년차 회기(12년) 동안 장정 부록 제3장 및 제4장에 재 고려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항목들은 참조 분과 위원회에 의해 중앙총회의 적절한 분과 위원회에 회수되어 중앙총회에 제출되는 결의안과 동일한 검토를 받도록 한다.(2001)

902.7. 분과 위원회의 위임 기간 :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기 중앙총회에서 그 위임이 중지된다. (2005)

902.8. 중앙총회 업무

(2005 대의원 수첩에서)

규칙 26. 결의안 및 청원안 제출 : 연회, 연회가 인준한 분과위원회, 중앙위원회 또는 그 산하의 공인 국들, 중앙 교회의 공식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혹은 중앙총회 대의원 5명 이상은 하기 규칙에 따라 결의안이나 청원안을 제출하여 중앙총회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결의안이나 청원안은 중앙총무가 제공하는 공식 소정 양식에 타자하여 3부를 제출한다.

(2) 제출된 각 결의안 또는 청원안은 그 안의 제목과 제출하는 대의원들의 이름이나 집단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교회 장정 변경 제안은 반드시 서면 제출해야 하며, 고쳐야 될 장정의 조항 및 부분은 물론 채택되어야 할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4) 그 안들은 총회 개최 전 12월 1일 이전에 중앙총무에게 제출되어 번호가 주어진 다음 규칙 37과 305.1에 따라 참조 분과 위원회로 송부되어 대의원 지침서에 인쇄되어야 한다.

규칙 27. 연차 결의안 및 청원안 : 총회의 동의를 있으면 총회에서 고려될 결의안, 청원안 및 기타 안건들을 중앙총무에게 제출하여 적어도 6월 1일 이전까지 입법 분과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규칙 28. 장정 변경 : 중앙총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들은 장정 편집위원회에 제출되어 장정의 다른 규정들과 일치를 이루도록 한다.

902.9. 중앙 교회 위원회 회원권 제한 : 누구도 다음 위원들 중 둘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겸임 봉사할 수 없다. 중앙위원회, 나사렛 신학교 이사, 나사렛 성서대학 이사.(2001)

902.10. 역사적, 또는 기념비적 장소 지정

연회, 또는 지구 총회에서 해당 구역 내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를 선정하여 기념비적인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장소가 기념비적인 것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년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 역사적 장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꼭 원래의 건물이나 구조물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회, 혹은 연회총회는 새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에 대해 중앙총무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동의 제청의 절차 및 그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그곳의 중요성 또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각 연회와 지구 총회는 중앙총회로 하여금 충분한 역사적 근거와 중요성이 입증되는 장소에 대해 교단적 차원의 역사적 기념비가 되는 곳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에 한 번 역사적인 장소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중앙감독들이나 추천된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검토할 목적으로 임명된 위원회는 중앙총회의 인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서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326.2) (1997)

제4장

903. 현행 도덕 및 사회 문제

903.1. 인체 기관 기증

나사렛성결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유언이나 위탁을 통해 해부용 인체 기관을 기증하고 받는 일에 후원하도록 권면한다. 우리는 또한 인체 기관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호소한다.(2001)

903.2. 인종 대우

모든 종족의 인간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동정에 관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심과 모든 인간들은 한 피로 태어났음을 믿는다. 우리는 각 개인이 인종이나 피부 색깔 혹은 신조에 관계없음은 물론 직업이나 경제적인 차별 대우 없이 투표권, 교육 기회 및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일한 생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인종간의 이해 및 융화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들은 또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 : 14)??한 성서적 교훈이 우리 신도들의 행위를 인도해야 한다고 느낀다. 교회와 전 지역 사회의 생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완전 참여를 지향하는 기독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로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신도 각자는 다른 인종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태도와 행위를 겸손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의 성결이 올바른 삶에 기초하는 우리들의 신념을 재강조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인종 집단 간에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이 깃들게 된다는 것과 참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는 자기의 영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있음을 믿는다.(2005)

903.3. 노, 유약자 학대

나사렛성결교회는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연로자에 대한 학대를 거부하며 출판이나 적절한 교육을 통한 정보로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강되어 가기를 요청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교회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노, 유약자에 대한 성적 학대는 물론 어떤 유형의 학대도 금지하는 역사적 정책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누군가에게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를 부과할 경우, 나사렛성결교회는 과거의 습관이 장래의 태도가 어떠할지를 예측하도록 해주는 관건이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회는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악용하여 노, 유약자에 대한 성적 학대나 그 외의 학대를 일삼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못을 예방할만한 충분한 개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신뢰와 권위를 요하는 지위에 앉게 되는 일을 적극 금하는 바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장래의 그(녀)의 행동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변화된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한 때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받아야만 한다.(1997)

903.4.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나사렛성결교회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라고 명령했음을 믿는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그 자체가 소박하며 부와 사치에 대한 강조에서 떠나야 하며 둘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경과 예수의 본이 되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그리고 사회에서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약자들과 같이 하며 돕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한데 어울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호 사역이 자선의 행위는 물론이고 그들을 위해 기회와 평등과 정의를 애써 제공하고자 고난에 동참함을 포함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행위로 보이는 믿음을 추구하는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개인 자신의 완전을 넘어서서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와 세계를 창조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가난한 자에 대한 사역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성결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세계 사람들을 멀리 외면하는 신자들과는 달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일치하여 우리의 욕심을 조정하도록 해 준다.(2001)(출 23 : 11; 신 15 : 7; 시 41 : 1; 82 : 3; 잠 19 : 17; 21 : 13; 22 : 9; 렘 22 : 16; 마 19 : 21; 눅 12 : 33; 행 20 : 35; 고후 9 : 6; 갈 2 : 10)

903.5. 여성의 목회사역

우리는 여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는 여성들이 나사렛성결교회 내의 지도적 위치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이러한 구속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회 지위적, 인종적, 또는 성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갈 3:26-28)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딤후 2:11-12)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 (고전 14:33-34)에 나타난 모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성의 사역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의 영도 지도력을 인정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 (골 2:28-29; 행 2:17-18; 21:8-9; 롬 16:1, 3, 7; 빌 4:2-3)과 웨슬리안 성결론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것을 통해 볼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903.6. 교회와 인간의 자유

우리의 위대한 기독교적 유산이 이해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우리들의 종교적 및 정치적인 자유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존엄과 개인 양심의 신성을 말해주는 성서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도들은 상기해야 한다. 우리들은 신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서적 개념을 지지하는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것과 우리들의 고귀한 자유에 대한 위협을 항상 경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할 때 다만 하나님과 그들을 선출해 준 자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선출하여 정부의 공직에 임하도록 할 것을 강권한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 의해 상기 원칙들이 침해받는 것을 배격한다. 우리는 교회의 역할이야말로 예언자적이어서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잠 14 : 34)??는 것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2005)

903.7. 전쟁 및 군복무

나사렛성결교회는 우리들의 이상적인 세계 상태가 평화 상태라는 것을 믿고 교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을 찾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을 개신교 교회의 완전한 의무로 생각한다. 그러한 우리들은 사악한 세력과 철학이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상과 적극 대치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과 한 국가가 자기의 이념, 자유 및 존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쟁에까지 호소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국가 간의 비상사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평화 유지에 전력할 것을 서약하는 한편,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충성은 하나님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본 교회는 그 회원으로 하여금 전쟁의 경우 군복무에 가담하는 것에 관해서 신도의 양심을 구속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한 시민으로서 기독교적인 신앙과 생활양식에 조화를 갖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국가에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들은 또한 지상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염원의 발로로서 우리 회원 가운데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군복무에 관해서는 양심에 입각한 반대자들이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나사렛성결교회는 군복무에 관하여 회원 중 양심에 입각하여 반대한 자들에게는 전쟁에 불참하고 있는 공인된 종교단체들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고려와 면제 혜택을 베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나사렛성결교회는 중앙총무를 통해서 등록 명부를 작성하여 거기에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임을 입증하는 자들로 하여금 양심에 입각한 반대자라는 그들의 확신을 기록하도록 한다.(2005)

903.8. 천지창조

나사렛성결교회는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 : 1)을 믿는다. 우리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그 어떤 불경한 해석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감안하여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모든 지질학적 발견과 다른 일반 자연 현상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신조 I. 1., V. 5.1, VII.)(2005)

903.9. 성령 세례의 증거

나사렛성결교회는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한 신생과 마음의 정결 곧 완전성결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우리는 완전성결 곧 성령의 내적 충만에 대한 성령의 한 증거는 사도행전 15 : 8-9에 진술된 대로 믿음에 의해 원죄로부터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임을 확증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으셨느니라.?? 그런데 이 정결은 성결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입증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 : 22-24).?? 어떤 유별나거나 자제하지 못한 육체적 증거 혹은 ??기도의 언어??가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단언함은 본 교회의 성서적 및 역사적 입장에 상반하는 것이다.(1997)

903.10. 음화

음화는 사회의 도덕을 저해시키는 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저하시키고 결혼의 신성 및 성의 건전성에 대한 성서적 견지에 상반하는 인쇄물 및 시청 자료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음화는 남자, 여자 및 어린이들을 저하, 노출, 방탕하게 한다고 믿는다. 음화업은 그 동기가 탐욕으로서 가정생활의 적이며 위법을 초래하고 마음을 악독하게 만들며 몸을 불결하게 만든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써서 음화를 적극 배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러한 악에 젖은 자들을 찾아 구하기에 힘껏 노력할 것을 강권한다.(1997)

903.11. 그리스도인의 정숙한 의복

공공장소에서의 정숙하지 못한 의복을 입는 경향에 대하여 우리는 정숙함이 성결의 한 표현임을 상기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숙을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천하기를 촉구한다.(2005)

903.12. 물질 남용

나사렛성결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의 악덕인 물질 남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교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도 아주 현저한 임무를 띠고, 물질 남용이 그리스도인의 체험 및 성결의 생활과는 상반됨을 보여주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권면한다.(2001)

903.13. 알코올 비사회화

나사렛성결교회는 공공연히 알코올 소비 비사회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시민, 노조, 상업, 전문업, 사교, 기부제 경영, 그리고 사립 기관이나 조직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비사회화 운동을 도와 ??알코올 문화??에 대한 사회의 용인을 장려하는 광고 및 미디어를 배격하도록 권면한다.(2001)

903.14. 담배 사용 및 광고

나사렛성결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건강의 위협과 사회 악덕을 초래하는 담배 사용에 담대히 반기를 들도록 강권한다. 우리의 역사적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니, 그 말씀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지속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전 3 : 16-17; 6 : 19-20). 어떤 형태의 담배 사용이든지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전 세계를 통한 우수한 사회 및 정부 그리고 보건기관들에 의해서 서류화된 의학적 증거가 또한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 그들은 담배 사용이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며 정상적인 신체 생리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백만 불의 돈을 들여 행해지는 담배광고와 그것에 대등한 알코올 주류 광고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잡지, 게시판, 그리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한 담배 및 알코올 주류의 모든 광고를 반대한다.(2001)

903.15. HIV/AIDS

HIV/AIDS(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odeficiency)

1981년 이래로 이 세계는 에이즈로 알려진 파괴적인 질병과 직면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들에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AIDS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도록 동기를 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이 환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으로

대화할 방법을 찾도록 한다.

한국교회 특별규정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회

제 1 절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총회(이하 '총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나사렛 성결회 장정을 한국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지방회)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 산하에 지방회를 둔다.

제 4 조(주소) 총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3 동 600-7 (40주년 기념관 내)에 둔다.

제 2 절 총회 대의원

제 5 조(대의원) ① 교역자 대의원은 총회에서 신분을 부여받은 은퇴교역자와 사역 중인 안수목사 및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인정전도사로 한다.

② 개교회 평신도 대의원은 정회원 100명 이하에 있어서는 1명, 정회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00명마다 1명씩을 추가하고 마지막은 100명의 과반수가 될 때 1명을 추가한다.

③ 장정이 정하고 있는 실행협의회 회원은 대의원이 된다.

제 3 절 총회 부담금

- 제 6 조** ① 총회는 개교회 전체 수입결산의 5%를 총회 부담금으로 결정한다.
- ② 총회 부담금은 개교회 수입결산 중 당해년도의 수입예산이나 지출결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 및 대지구입비, 교회차용금, 특별기금(교회개혁비축금, 장학비축금)을 뺀 금액의 5%를 말한다.
- ③ 총회 부담금의 배분 항목은 총회비, 지방회비, 목회자후보생 교육지원비, 개척기금이다.
- ④ 총회 부담금의 배분 비율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총회 부담금은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45 일 전까지는 완납해야 한다.
- ⑥ 최근 3 년간 총회 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는 총회 산하 모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어떤 직책에도 추천되거나 선임될 수 없다.

제 4 절 총회감독

- 제 7 조(직무)** ① 총회감독(이하 '감독' 이라함)은 대내외적으로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총회를 대표한다.
- ② 직책상 유지재단의 이사가 된다.
- ③ 직책상 학교법인 나사렛 학원의 이사가 된다.
- ④ 직책상 나사렛 신문사의 발행인이 된다.
- ⑤ 감독은 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

제 8 조 (피선거권의 제한) 피선거권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① 최근 7년간 교단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 본 교단의 안수목사로 한다.
- ②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의 전체 토지 및 건물이 유지 재단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단, 국가법으로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최근 7년 이내에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 9 조 (임기) 감독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 5 절 총회 총무 및 재무

제 10 조(선출방법) 총회 총무와 재무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절 총회 임원 및 교역자와 평신도의 정년

제 11 조(정년) ① 교역자의 정년은 만 70 세로 하고 65 세부터는 자원은퇴할 수 있다.

만 70 세가 넘어서는 개교회 담임과 총회나 지방회 임원 및 교단의 모든 직책을 맡을수 없다.

② 평신도의 정년은 교역자와 동일하다.

③ 한 교회를 20 년이상 담임하고 은퇴하는 교역자는 개교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로 추대될 수 있다.

④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담임했던 교회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7 절 실행위원회

제 12 조 (구성) ① 실행위원회는 각 지방회에서 추천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 명의 후보를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인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에 공석이 생기면 해당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13 조 (기능) ①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실행위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 산하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추천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의제를 검토한다.

제 14 조 (회의) 정기 실행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별로 하되 일 년에 최소한 4 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기)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보선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절 총회본부조직

제 16 조(본부조직) 총회 본부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규정과 같다.

- ① 사무국
- ② 전도선교국
 - 1) 국제선교부
 - 2) 국내전도부
 - 3) 사회구제부
- ③ 교육국
 - 1) 아동.학생부
 - 2) 청.장년부
- ④ 정보.출판국
 - 1) 정보사역지원부
 - 2) 출판.홍보부
- ⑤ 북한선교위원회
- ⑥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 ⑦ 규정위원회

제 17 조 (기능 및 기타) ① 총무가 사무국장을 겸하며 사무국은 소속 교역자의 인사 관리 및 공문서의 수발과 제직증명서의 발급 기타 총회 사무를 담당한다.

- ② 전도선교국장은 전도부장을 겸한다.
- ③ 전도선교국은 전도부와 국내외 선교부를 총괄하며 감독의 지시를 받아 나사렛 국제 선교회의 업무를 지도, 지원한다.
- ④ 교육국장은 주일학교부장을 겸한다.
- ⑤ 교육국은 주일학교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국제 청년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 지원한다.
- ⑥ 정보.출판국은 교단을 홍보하며 교단 및 개 교회 정보화 사역을 지원하고 나사렛 신보사와 나사렛출판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⑦ 북한 선교 위원회는 북한선교 업무를 관장한다.

⑧ 이단 사이버 대책위원회는 이단 사이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단 사이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범법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한다.

⑨ 규정위원회는 총회의 규정을 연구 보완한다.

⑩ 위의 기능 외에 기타 사항은 실행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18 조 (보고) 각 국장은 해당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9 조 (선임 및 채용) ① 각 국장과 부장 및 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독이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부 직원은 감독이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채용한다.

제 20 조 (임기) ① 국장과 부장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선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 장 지 방 회

제 9 절 총 칙

제 21 조 (명칭) 지방회 명칭은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총회
○○ 지방회라 칭한다.

제 22 조 (구획) 30 개 이상 50 개 미만의 교회수로 구획한다.

제 23 조 (분할 및 조정) ① 분할은 최소 35 개 이상의 조직 교회로 성장했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 분할한다.

② 지방회 분할시 인접지방회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분할한다.

제 24 조 (사무실) 각 지방회 사무실은 회장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 내에 둔다.

제 10 절 회의 및 대의원

제 25 조 (회의) ① 지방회 정기 총회는 매년 총회 45 일 이전에 감독 또는 감독의 위임을 받은 자가 소집한다.

- ② 지방회 임시 총회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에 따라 지방회장이 감독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 ③ 임원회는 연 4 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지방회 월례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 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지방회에 소속된 안수목사, 은퇴교역자, 인정교역자, 개교회 선교회장 1 인 및 주일학교 교장, 청년회장과 개교회 정회원 50 명 이하에 있어서 1 명, 정회원이 50 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50 명마다 1 명씩을 추가하고 마지막은 50 명의 과반수가 될 때 1 명을 추가하여 개교회 평신도 대의원으로 한다.

② 지방회에 소속된 총회실행위원, 나사렛국제선교회장, 국제청년연합회장, 총회주일학교 부장은 대의원이 된다.

제 11 절 지방회 임무

- 제 27 조 (임무)** ① 지방회는 총회 결의 및 위임 사항을 수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 및 전도, 교육, 교세 신장을 위한 연합회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임무로 한다.
- ② 목회자의 목회보고는 지방회 정기 총회에서 받는다.
 - ③ 총회 실행위원회의 후보를 지방회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목회자와 평신도 각 1 인을 선출한다.
 - ④ 전도사를 총회 심의부의 위임을 받아 심의한다.
 - ⑤ 지방회의 모든 활동은 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 12 절 임원 및 직무

제 28 조 (구성) 각 지방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지방회 회장 1 인, 목회자 부회장 1 인, 평신도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재무 1 인, 전도부장 1 인, 교육부장 1 인을 둔다.
- ② 필요에 따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9 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과 부회장은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② 기타 임원은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되어져야 한다.

제 30 조 (회장의 선출 제한) 회장은 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수목사로 한다.

제 31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32 조 (직무) ① 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지방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감독의 위임을 받아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와 목회자를 보살피고 지방회 행사를 주관하며 정기적으로 감독에게 보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목회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특히 회의록 보존 및 문서 수발을 담당한다. 또한 매년 지방회에 소속된 교역자들의 목회 보고를 접수하여 총회 총무에게 제출한다.

⑤ 재무는 지방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⑥ 기타 필요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직무는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총회 산하 법인

제 33 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총회 산하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 시행 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에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실행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의 나사렛대학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 34 조 이외의 것은 장정대로 한다.

제 35 조 (시행일) 본 규정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36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실행위원 정수의 2/3 이상으로 통과되고 국제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에게 찬반투표를 묻고 그 중 유효한 투표의 2/3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제 37 조 (본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본 규정은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법인의 규정 또는 정관보다 상위법이다. 그러므로 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즉시 모든 기관이나 법인은 관련 규정이나 정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 . **시행일** : 2002년 3월 29일 통합총회

. **1차 개정** : 2003년 3월 12일 제 48차 총회

. **2차 개정** : 2005년 3월 15일 제 50차 총회

장로직 내규

제1조 장로의 자격

- (1) 만 35세 이상 된 자로서 흠 없이 해당 교회에서 만 7년 이상 제직으로 봉사한 자.
- (2) 나사렛성결교회 장정 제 2장 5절에 기재된 일반 규약을 이행하는 자.
- (3) 성결의 체험과 성경 지식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지도 능력이 있는 자.
- (4) 가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 건강, 경제, 건전한 직업 등 실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제2조 장로의 청원

- (1) 정회원 50명 이상이 되었을 때 개교회는 지방회에 2명까지 청원할 수 있고, 그 후 정회원 30명마다 1명씩 청원할 수 있다.
- (2) 사무총회를 거쳐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개교회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제3조 장로의 선택

- (1) 장로후보는 담임목회자의 추천으로 제직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 (2) 제직회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다시 교회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 (3) 장로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로 고시에 합격함과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피택이 확정된다.
- (4) 기타 필요한 절차 후 장로로 시무한다.

제4조 장로의 고시

- (1) 개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3개월 이상 장로고시 위원회의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받은 후 장로 고시에 응하여야 한다.
- (2) 장로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신구약 성경, 나사렛 장정, 일반 상식, 신앙 간증문, 면접(인품 검사)

제5조 장로의 직무

- (1) 장로는 담임목회자를 도와서 예배 및 성례 기타 행사를 보좌한다.
- (2) 장로는 목회자의 전적인 보조자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 업무(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돌보는 일)에 전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3) 장로는 교회의 재정 유지에 힘쓰며 자신이 청지기의 본분을 다 하며 전체 교인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4)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6조 장로의 임직

- (1) 소정의 장로 고시에 합격한 자는 소속 개교회에서 1년 이내에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단, 사정으로 취임식을 거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개교회제직회 결의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2) 취임식의 예문은 차후 연구하여 삽입한다.

(3) 임직위원은 담임목회자가 위촉하는 3명 이상 7명 정도의 나사렛성결교회 안수목사로 하며 이 사실을 지방감독에게 보고한다.

(4) 교단 내 타교회에서 이적하여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하면 제직회의 추천으로 개교회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게 한다.

단, 복음주의 타교파 장로이면 개교회에서 원할 시 전입 1년경과 후 교회 사무총회를 거쳐(2/3의 찬성) 지방의 장로 고시 위원회의 시취를 거쳐 취임식을 거행한 후 시무하게 한다.

제7조 장로의 관리

(1) 장로의 시무 연령은 만 70세로 한다. 그 후에는 은퇴 장로로 하고 단, 소속 교회에서 장로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제직회가 추천하고 사무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는 원로 장로로 추대한다.

(2) 장로가 공공연히 장정을 위배하거나 품행에서 교회 질서 및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방회에 통고한다.(근신, 자격 정지, 제명 등)

제8조 장로의 내규 개정

(1) 장로직 내규 개정은 전국 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출석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되 반드시 각 15개 지방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주) 장로직 내규에 대한 중앙 감독회의 지침서**

나사렛의 중앙감독회는 이번 장정(2001-2005)에 실린 장로직 내규는 한국 나사렛성결교회에 의해 추가된 것임을 밝힌다. 이 내규는 국제 장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적 관습이 되지도 않는다. 오직 중앙감독회가 한국 나사렛성결교회를 위해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문화적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장로는 국제 나사렛 중앙감독에 의해 안수되지 않는다.

1998년 9월 2일